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vol.417 / January / 2004

대한건축사협회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 137-070
전화 : 02-581-5711~4 팩스 : 02-586-8823 E-mail : korea@kira.or.kr
http://www.kira.or.kr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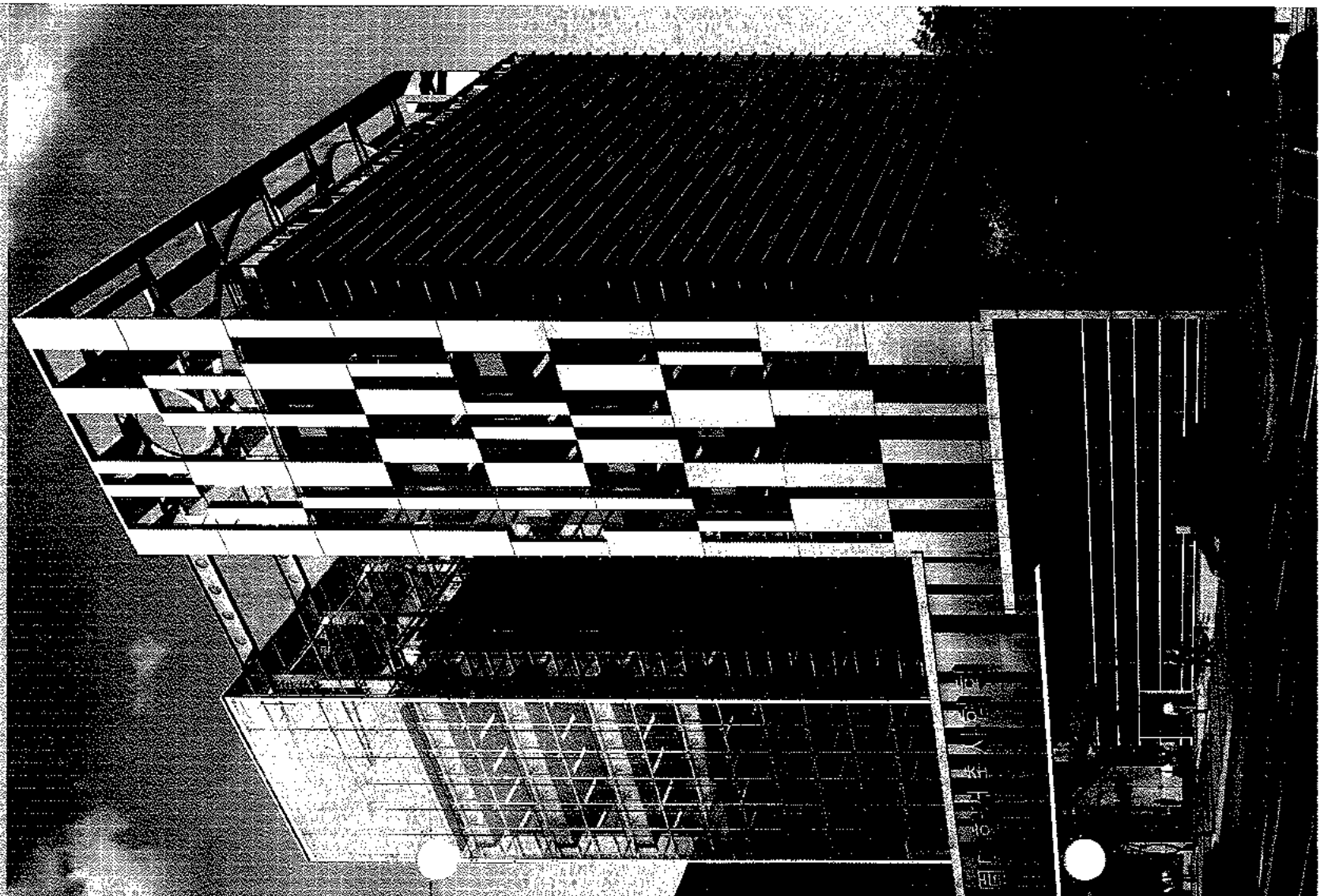

LG전자

전기료도 공간도 멀티로 절약

첨단 시스템에어컨—

MULTI V™

한 대의 실외기에 접속되는 냉매 배관을 단배관으로 직렬구성한 인버터 멀티 시스템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탁월하며, 설치가 편리하고 설치 비용의 절감은 물론 다양한 실내기를 자유롭게 연결하는 효율적 배관 구조의 시스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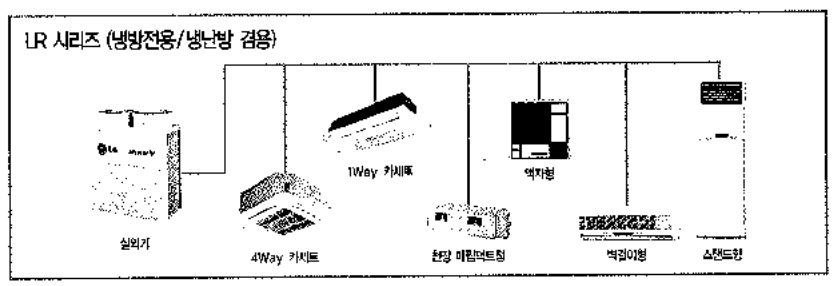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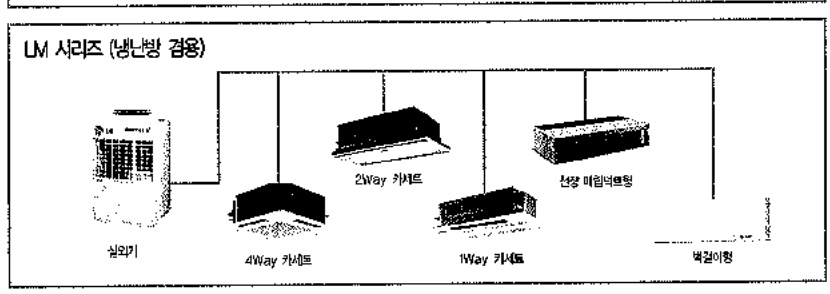

공간 절약과 에너지 절약의 고효율 냉난방 시스템

별도의 실내기 설치 공간 및 기계실이 필요 없고, 초절전 인버터 멀티 시스템을 적용하여 기존 냉난방 시스템 대비 최고 32%까지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ESCO자금 지원 대상 제품)

빠르고 강력한 인버터 냉난방 시스템

강력하고 유연한 인버터 압축기 채용으로 ±0.5℃의 미세 온도제어와 1.5배 빠른 쾌속 운전은 물론 영하15℃ 혹한기 난방도 가능합니다.

자유로운 설계/설치가 가능한 효율적 배관구조 시스템

5~30Hp의 실외기 용량, 다양한 실내기 기종 및 빌딩에 적합한 장배관 시스템(허용최대길이 100m/고저차 50m)으로 설계가 자유롭고 설치가 간편합니다.

편리하고 다양한 개별/중앙 제어 시스템

실내기 개별제어/그룹제어/중앙제어/PC제어/인터넷 제어/적산전력 분배시스템 등 다양하고 편리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영하 15℃의 혹한에서도 우수한 난방능력

실외온도가 -15℃까지 내려가더라도 실내기 토출온도가 40℃이상을 유지하여 정상난방이 가능합니다 (한랭지향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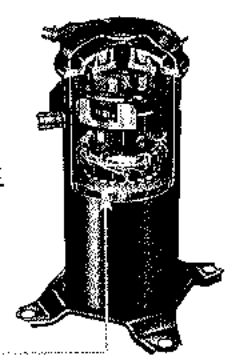

국내최초 인버터 단배관 시스템

구입 문의 • 건설사 영업팀 02)2005-3052 • 강남 02)2005-3596 • 강북 02)727-4183 • 경기 031)267-0673 • 인천 032)321-9162 • 호남 062)510-5842 • 충청 042)388-0633 • 부산 051)807-3242 • 경남 055)264-7494(제주포함) • 경북 053)257-0808 ※인터넷 홈페이지 www.systemaircon.com 또는 www.whisen.com

세계를 휩쓴 LG에어컨

WHISEN 휘센

세계(8개국) 발명특허 획득! (미국, 러시아, 일본, 독일, 스웨덴, 한국, 중국, 캐나다)

심야전기 보일러 난방비보다 시설비 및 유지비가 저렴!

난방비 걱정끝!

온돌전용

유류비의 70%, 가스비의 30% 절감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로…

제품특징	물은 대기중에 100℃이상 가열시켜야 증기가 발생되지만 밀폐(진공)상태에서는 그 비점이 달라지므로 25℃이상 가열하면 증기가 발생하는 원리

● 안전한 난방

축열식 히터온돌의 취약점을 없애기 위해 두가닥의 80℃의 정온 열선과 열매수를 사용하여 과열방지 장치 없이 고열에 의한 코일단절 보안과 함께 화재 위험을 없애고 전자파 차단 효과를 가져왔다.

● 에너지 절약

특허기술로 밀폐한 온수관 내에서 1평당 1.9ℓ 정도의 온수를 열이동에 의한 열손실 없이 직접 가열하기 때문에 평당 소비전력 190W부터 난방이 가능해 여름철 냉방용 전력을 겨울철 난방용 전력으로 절체사용할 수 있어 증설비용 및 기본요금 절감. 일반 니크롬선 및 시트형 발열체보다 70%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고효율 제품이다.

● 보일러실과 관리비 없는 개별난방

별도의 보일러실 없이 안내실 조작 판넬에서 ROOM별 온도를 따로따로 조절(ON/OFF)과 원격제어가 가능하며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로 난방할 수 있다.
유지보수 및 관리비 불필요

● 기존배관 재활용으로 A/S기간 10년

기존 배관이 있는 경우 바닥을 뜯지 않고 가구이동 없이 전열선 삽입 및 관출 특허 공법으로 간단하게 재활용하여 당일 시공 당일 난방이 가능하다.
기계적 장치가 없어 고장이 거의 없다.
(차단기 무상A/S 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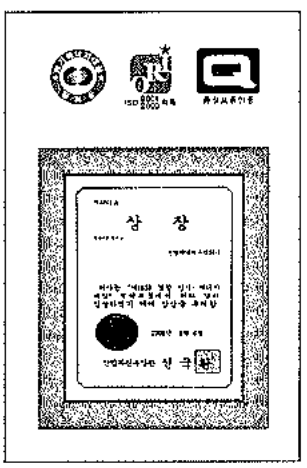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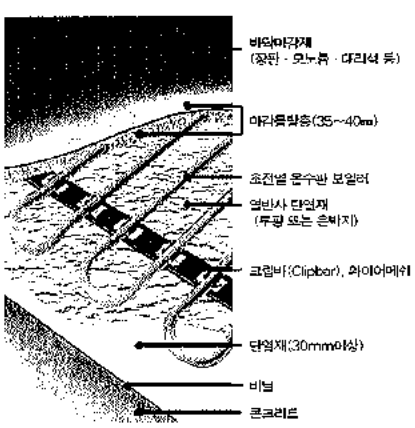

초절전 온수관 보일러사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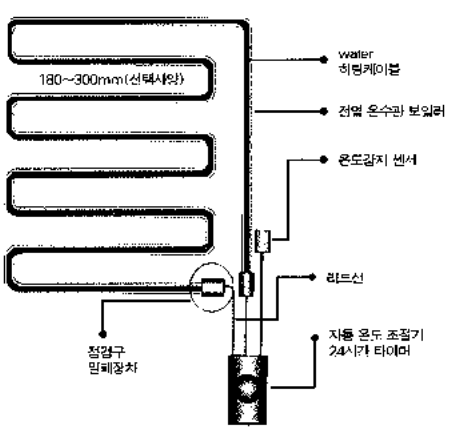

소비전력 용량비교표

시공선택사양 방열관간격(㎜)	평당시공 길이(m)	평당소비 전력(kWh)
300	10	0.19
275	11	0.21
250	12	0.23
230	13	0.25
200	14	0.27

※ 주택용 전력 수용가 제외
※ 건축법 제59조 규칙 단열시공건물 기준

온돌 몰타르 시공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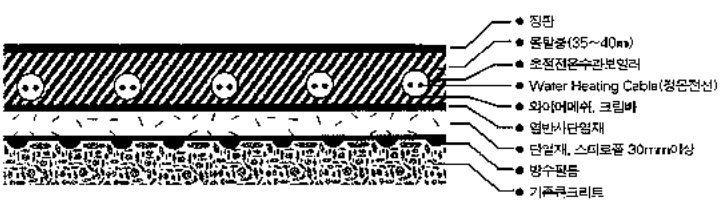

제품 주 수요처

호텔, 숙박업소, 콘도, 오피스텔, 연구소, 교도소, 실버타운, 사찰, 종교시설, 기숙사, 연수원, 유치원, 초등학교 교실, 군 · 경내무반, 병원,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작물 일정온도 유지, 지중난방 등

▶ 경향전기에너지 절약 부문 산업자원부장관 수상제품
▶ 정부 각 부, 처, 도, 시, 군, 구 우수 발명품 우선구매 추천제품
▶ 중소기업청 「신기술 개발 벤처 기업」 인증
▶ ISO9001:2000 인증획득업체 ▶ 품질보증인증(Q마크)획득업체

※ 당사 온수관 보일러는 **특허기술**이므로 무단사용시 특허법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계약시 필히 본사에 계약 내용을 통보하여야 **본사 사칭 유사 제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A/S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천열에너지(주)
Chunyul Energy Co.,Ltd.
대표전화 02)928-1090
팩스번호 02)925-5353
본사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월산리 212-1
서울본부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3가 234 성신빌딩 3층
홈페이지 www.chunyul.co.kr
E-mail : 1010cy@korea.com

Let's KT

bizmeka

예비사장님을 위한 빌려쓰는 IT서비스

"비즈메카 IT통합지원"

비즈메카 IT통합지원이 드리는 창업 체크리스트!

창업을 준비 하신다면 꼭 확인해 주십시오!

1. 창업계획과 입지분석은 끝났습니까?
2. 점포, 사무실은 준비되었습니까?
3. 컴퓨터와 복사기, 스캐너와 프린터 등 OA기기는?
4. 구내는 물론, 각종 전화회선 가설과 유지, 관리는?
5. 초고속 통신망과 무선인터넷 네스팟은 준비되셨습니까?
6. 싸고 저렴하게 빌려쓰는 IT솔루션을 찾으셨습니까?
7. 비즈메카에서 IT를 통합해서 지원받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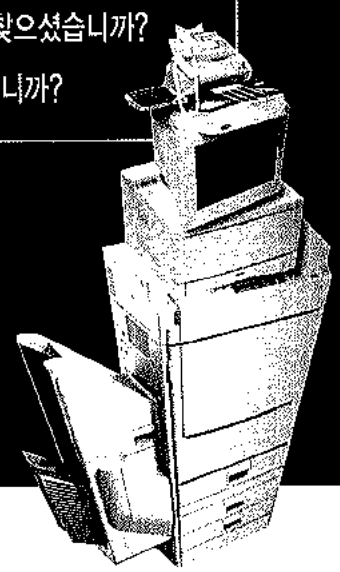

좋은 아이템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십니까?
인터넷에서 전화, 컴퓨터, 팩스, 복사기, 스캐너까지.
그 많은 회선관리와 OA기기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저렴하게 빌려쓰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며
앞서가는 무선 네트워크, 네스팟으로
보다 편리한 오피스 환경을 구축해 드립니다.
비즈메카 IT통합지원에 맡겨주십시오.
당신의 창업을 위한 성공파트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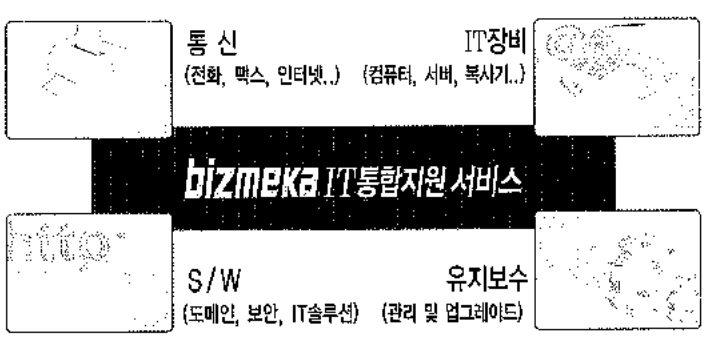

2004년 2월 28일까지 신규가입 고객 중 IT장비 임대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고객에게 한해 1개월 무료혜택을 드립니다.
지금 http://itall.bizmeka.com 에서 만나보십시오. ☎비즈메카 고객지원 : 080-2580-612

세·계·최·초·의·독·자·모·델·로·대·한·민·국·을·대·표·하·는·주·차·기·가·되·겠·습·니·다.

스카이파크

미니로타리식 입체주차장치

SKY PARK

PL법영업배상책임보험 3억 원 ★ 국내해상화재

전문건설업등록업체

인정번호 대구 제1-15호

인정번호 대구 제1-16호

실용신안등록 제20-0190325호

실용신안등록 제20-0246310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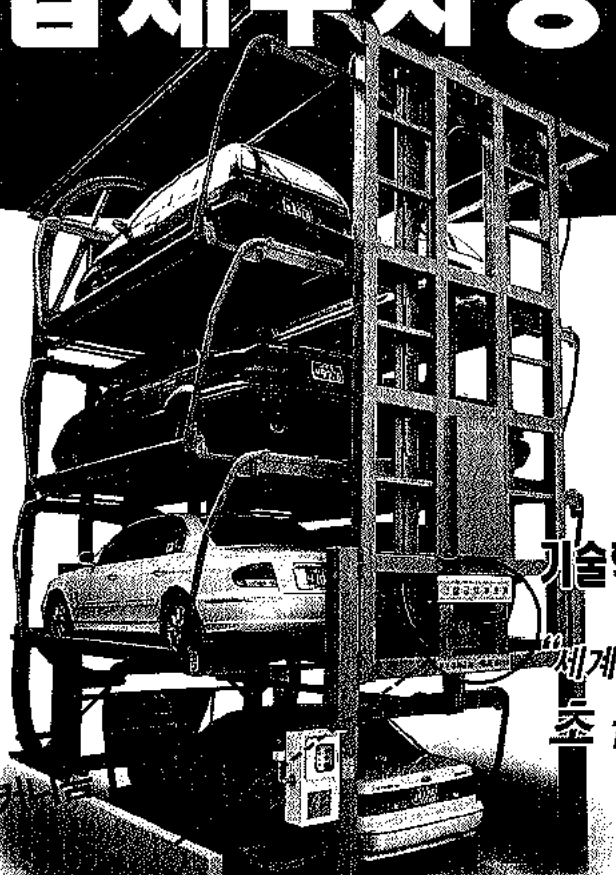

10年이상 쓸 수 있는 주차장치

"자신있습니다"

기술혁신이 품질향상과 가격혁명을!!

"세계최초의 주차기폭 4.57M를 실현한

초슬림형"

세계적 특허방식인
메인체인 접속구동의 新메카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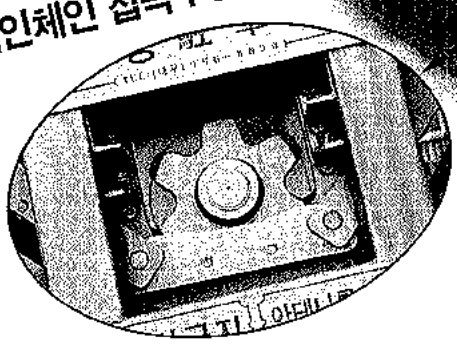

■ 이렇게 다릅니다

- 엄청나게 간단해진 구동부 만큼 가격은 대폭 내렸습니다.
- 지상자주식(2.3M×2대=4.6M)보다 좁게 폭(4.57M)을 대폭 줄였습니다.
- 구동부가 간단하여 구동효율이 높아 성능은 향상되고 소음, 진동은 대폭줄였습니다.
- 정밀가공 및 JIG이용 제작으로 완벽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 도면, 사양 등 상세정보는 인터넷 주소창에 '주차'를 입력하십시오.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자재정보(www.Archidb.com)의 '주차'를 검색하십시오.

☞ 자매품 Pit를 파지 않고 2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특허품 2단주차기도 있음. (인정번호 : 대구 제4-25호)

■ 사양(뉴그랜저급 진입가능)

모델명	수용대수	주차기폭 (最小)	주차기 길이 (最小)	소요높이 (最小)
SKY PARK-5	5 대	4570	6090	6830
SKY PARK-6	6 대	4570	6090	7720
SKY PARK-7	7 대	4570	6090	8600
SKY PARK-8	8 대	4570	6090	9380
SKY PARK-9	9 대	4570	6090	10390
SKY PARK-10	10 대	4570	6090	11280
SKY PARK-11	11 대	4570	6090	12170
SKY PARK-12	12 대	4570	6090	13060

신제품 **지상설치형 턴테이블** - 피트(pit)를 파지 않고 지상높이 70mm!

실용신안등록 제0233726호

명칭	창공턴테이블(신형)	
수용 차종	중 소형 승용차(무게 2000kg 이하)	
구동부 사양	구동방식	매찬 구동식
	구동모터	0.15 kW × 4P = 37
	정격속도	0.1 RPM
조작 방법	PUSH BUTTON	
전원 선정	AC 380V/220V ×3 φ ×60HZ	
지재 중량	약 1000 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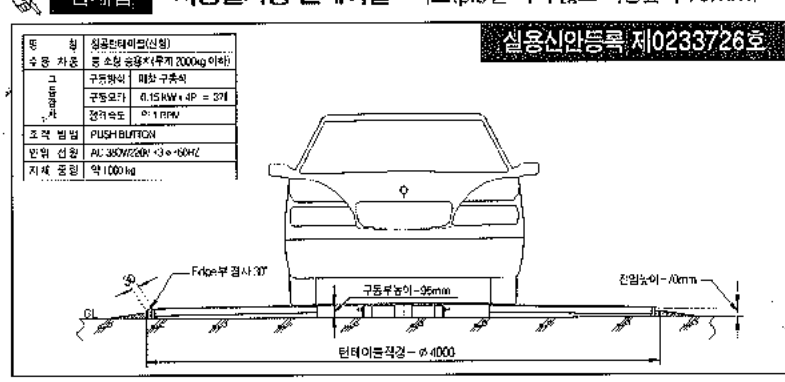

아주 특별한 주차기회사

(株)창공駐車産業

since 1989

www.Juchagi.com

본사 · 공장 :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64번지

- TEL : (053)956-8838(代)
- p.p : 011-507-8838
- 전국무료전화 : 080-567-7788
- E-mail : cgp210@komet.net
- 서울A/S센터 : (02)333-4448
- 부산 A/S센터 : (051)784-6721

디지털 프론티어 - 삼성

건축사의 신용, 대출名家의 자존심을 약속합니다!

보험으로 쌓은 신뢰, 대출로 이어가겠습니다.

고객여러분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
이젠, 보험뿐만 아니라 대출도 삼성생명과 상담해 주세요.

내일을 위한 희망설계 - 삼성생명 대출

삼성생명 대출 특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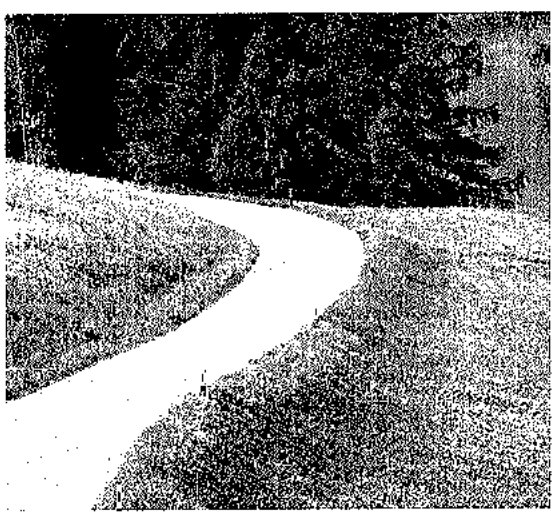

신용대출 안내 (무담보 무보증 원칙)

대출자격_ 건축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 및 교사, 기타 공무원

대출금액_ 1천만원~1억 5천만원

예상금리_ 연 6.4%~7.2%

기 간_ 1년~5년(수시상환, 연장,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가능)

대출기관_ 삼성생명, 제1금융(은행), 제2금융(보험사, 금고 등)

- 창업자금 특별상담
- 담보대출 : 최저금리, 설정비 면제
- APT 소유자, 구입예정자 : 6.0%~7.0%(10년, 15년, 20년, 30년형)
- APT, 단독주택 등 주거용 전세자금이면 담보설정이 가능하고, 상가, 빌딩 등 임대보증금을 담보(질권설정)로 설정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아파트 라이트 플러스 대출 : 최저 6.0%
- 스피드 학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최고액 대출

최저의 금리

삼성생명
Seed Bank

신속한 처리

상담문의

삼성생명 강남 AM
Seed Bank

Tel_ (02)545-8853~4
Fax_ (02)545-4939
HP_ 011-9738-0087

내일을 지키는 힘 SAMSUNG LIFE INSURANCE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하신다면,

ZHUAI STONE®

건축물의 가치는 단순히 설계상의 디자인에 의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건축가의 의도에 부합되는 색상과 질감이 시공 및 유지되는가가 중요합니다. 주아이스톤®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 수 있으므로 어떤 설계에도 시공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최첨단 과학 소재로 귀사 건축물의 가치를 높여 드립니다.

이것이 요즘 수 많은 건축 자재 중 고급 건물에 주아이스톤® 이 선택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자유로운 조형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정제된 세라믹과 엄선된 자연석을 섬세하게 형상화한 금형을 사용하여 자연석의 섬세한 질감과 색상까지 재현할수 있으므로 시공도면과 스케치 사진 등에 의한 어떤 형상의 설계에도 제한 없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ZHUAI STONE®은 건물 처마의 길이가 3.5m 이상 대형건축물에 시공이 가능합니다. 천연소재의 색상 채용을 통해 자연스럽고 변질되지 않는 아름다움이 유지됩니다. 하중부담을 고려한 건축공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공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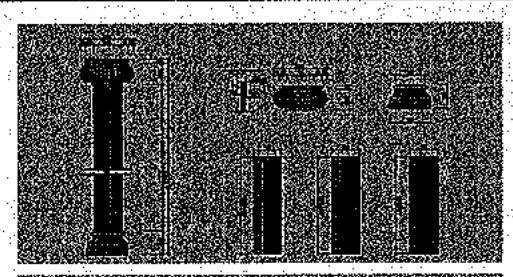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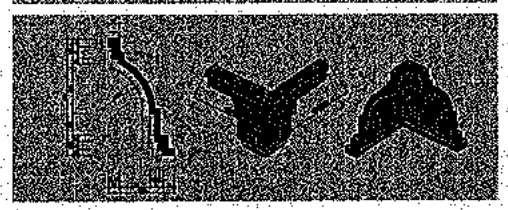

완전 친환적인 첨단 과학 소재로 인체에 무해합니다.

유리섬유, 세라믹 등의 혼합재로서 석면과 알카리에 의한 공해가 전혀 없습니다. 완전방수가 가능하면서도, 세라믹과 같이 공기의 투과성이 있어 조형물 자체가 숨을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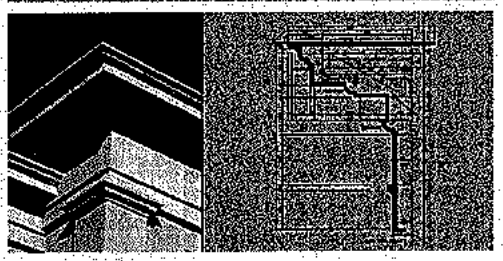

백년 이상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완전불연성 특성을 통해 시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이 없는 고신장력을 갖고 있어 일반 건축 내 외장재와 비교시 탁월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일반 시멘트보다 3배 이상의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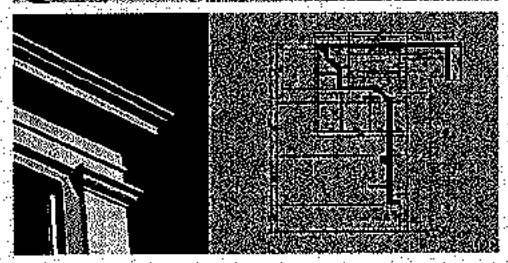

MOLDED MILLWORK & 해렌하우스 장재도

TONE

대리점 모집

상담문의 02) 785 1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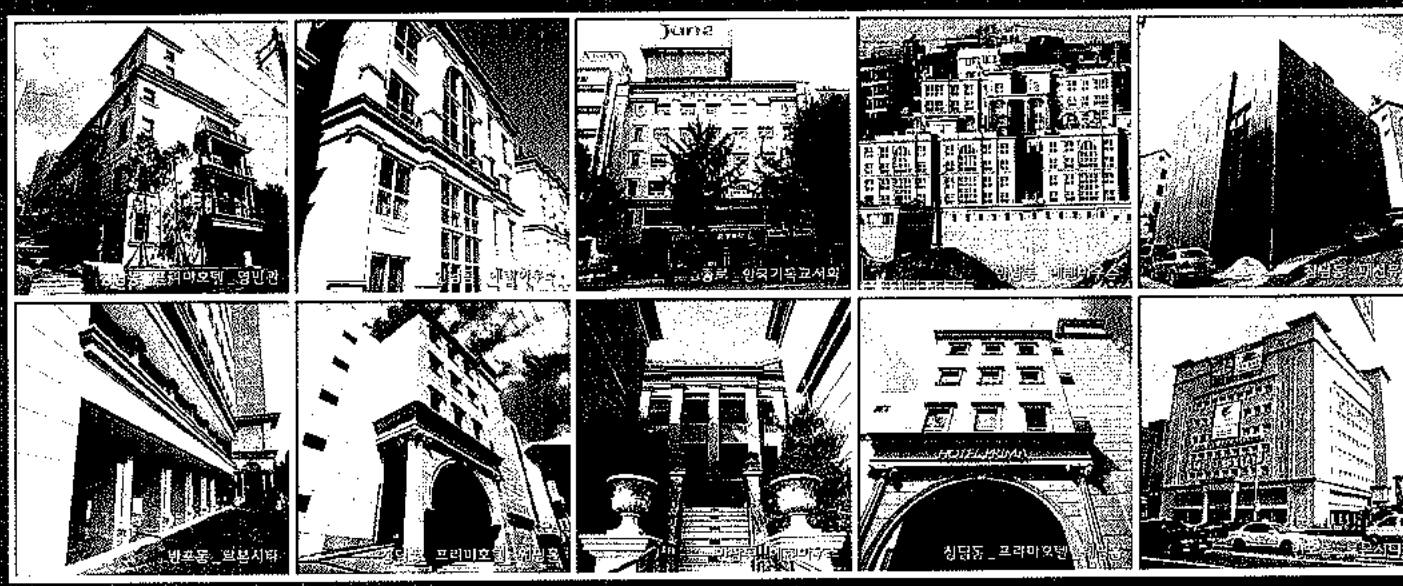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 대영빌딩 TEL 02/785 1822 FAX 02/785 1824 WWW.ZHUAISTONE.COM

대한건축사협회 대강당 대관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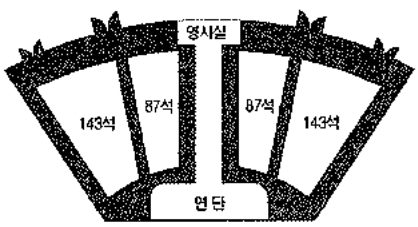

대강당(460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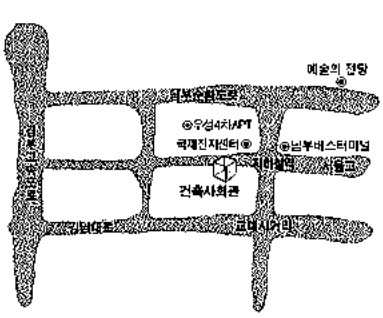

약 도

▪ 대 강 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 / 세미나 / 강연회 / 교육 / 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　　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석(좌석수)

• **부속설비** : 녹음 / 음악 / 영사실 / 무대 / 무대영사막 / 흑판 / OHP / VPM / SP

1.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구 분	좌 석 수	사 용 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요금(시간당)
대강당	460석	400,000	80,000

※ 사용기간 : 하절기(3월~10월) / 09:00~18:00

동절기(11월~2월) / 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

(연 30일 또는 연 10회 이상)의 경우 상기금액의 30% 할인

※ 야간 및 토요일 오후, 공휴일의 경우 상기금액의 20%를 할증

※ 예식행사 : 90,000원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890cm × (세로) 90cm

▪ 대 관 문 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

(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Tel _ 581-5711~4

Fax _ 586-88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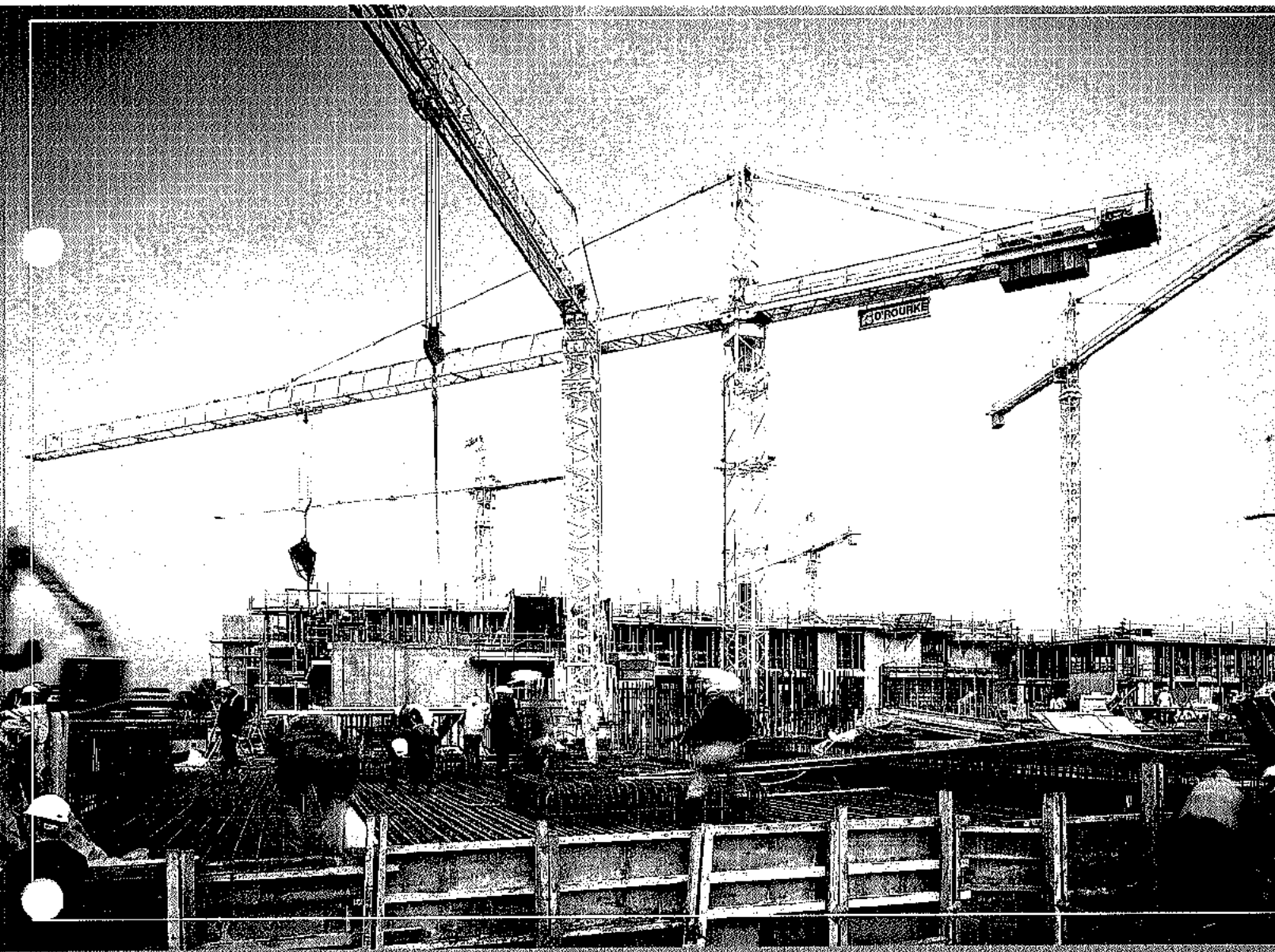

건 축 자 금 대 출

■ 대출대상 : 제한없음(공사진척도 50% 이상 된 건물에 우선 대출됩니다.)

■ 대출금액 : 2억원 이상, 상한금액 제한없음

■ 대출기관 : 시중 금융기관(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대출

■ 그 밖의 대출상품

- 부동산담보대출
- 경매취하자금대출
- 하자정리대출
- (근)저당권부 채권 담보대출
- 경락잔금대출
- 부동산매입자금대출
- 건축관련 Project Financing

(주)한성브릿지

TEL : 02-535-9773 FAX : 02-535-9774
Mobile : 018-359-1472 (담당 : 이동욱)

대 관 안 내 _

대한건축사협회 전시장

건축과 문화와의 만남을 위한 전시공간

Architect's Gallery

건축사협회 회관 1층에 문을 연 아키텍트 갤러리는 60여평(198㎡) 규모의 현대적 감각의 전시공간으로 밝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최신의 조명시설과 이동식 중간벽체를 설치하여 전시규모 및 특성에 따라 원하는 공간을 개성있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렴한 대관료(1일 7만5천원, 부가세 별도)로 건축인은 물론 관련단체나 학생, 일반인들이 부담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건축분야 외에도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이 가능한 다목적 전시공간입니다.

건축인은 작품활동을 알리는 공간으로, 일반인에게는 건축과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널리 활용되길 바랍니다.

대 관 문 의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총무팀(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2번출구 150m지점)

Tel _ 02-581-5711~4 **Fax** _ 02-586-8823

실용신안 제0003710호
의장등록 제28886호

세이프강화도어

제조물 책임(PL)법에 의해 제작된 안전한 문. 세이프 강화도어! — 정우는 안전한 제품만을 생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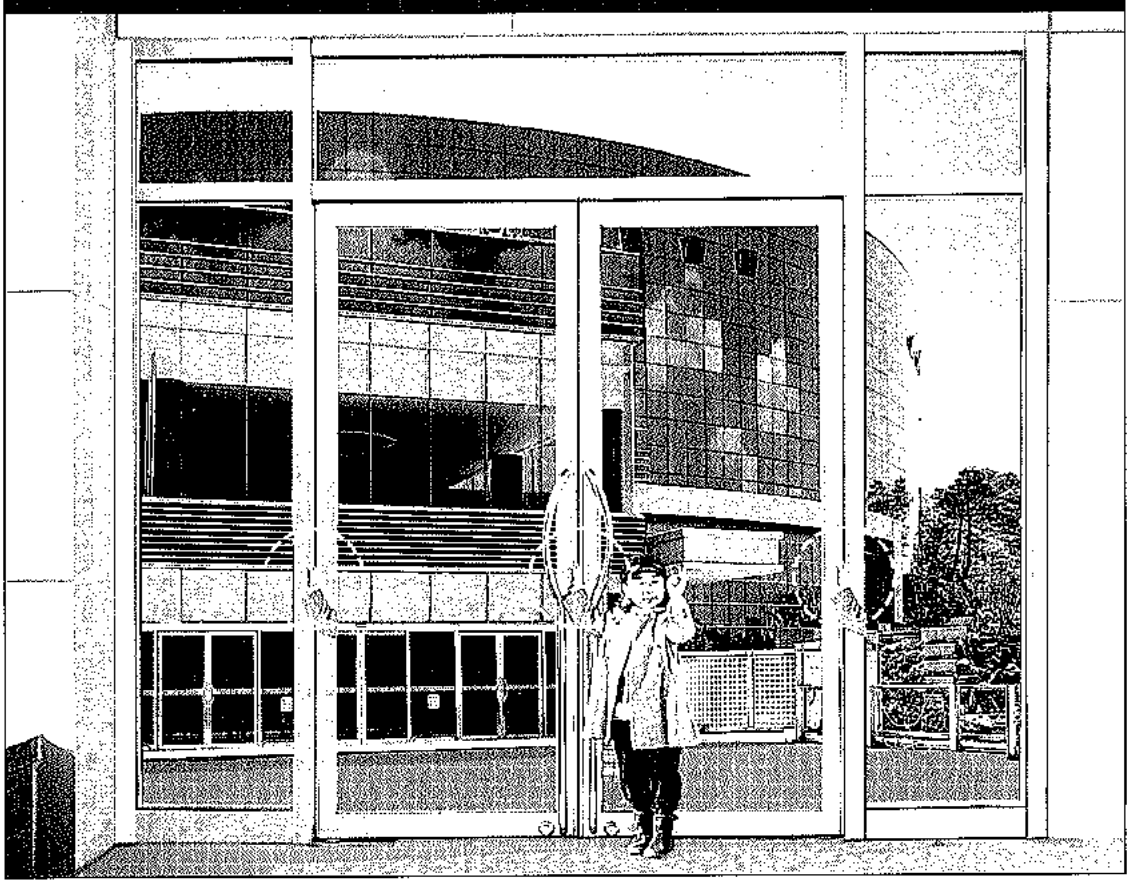

어린이 "손"을 보호하는 도어,
유리 "문" 파손방지 및 에너지 절약, 방음, 방풍이 완벽한 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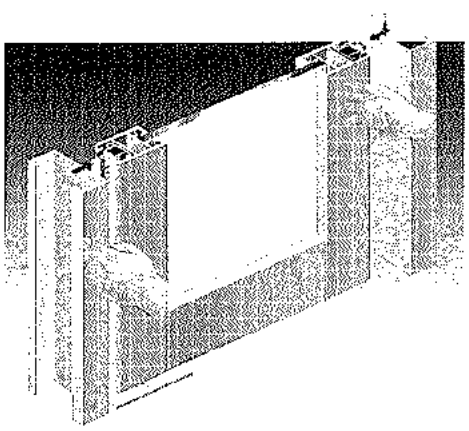

단면 상세도

사용시에는 방풍, 방음, 단열이 완벽하고 손가락이 끼었을 시에는 이중케이스가 유연하게 작동하여 손가락을 보호하여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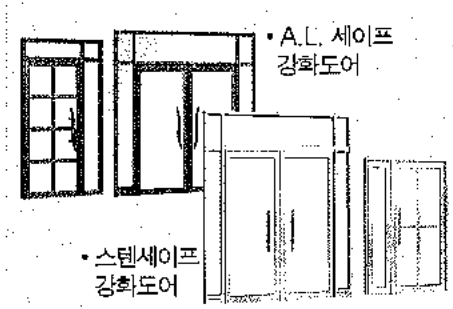

설치 장소

- 학교 • 관공서 • 종교건물 등
- 예식장 • 은행 • 아파트 • 빌딩
- 목욕탕 • 상가건물 • 유치원
- 백화점 • 병원 • 호텔 • 기타

평면 상세도(홈페이지 설계 다운로드 참조)

▫ 사용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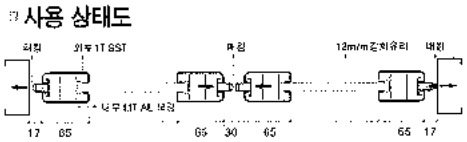

▫ 어린이 손가락이 끼었을 때 작동 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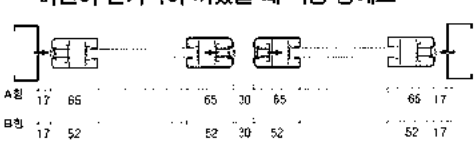

기존의 일반 강화도어는 안전사고 및 에너지 손실이 많아 단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물가 자료집에서 삭제되었음)
▫ 단가표: 한국물가 자료집 416p 참조

어린이 「손」 안전과 에너지 절약을 선도하는 기업

정 우 산 업

www.safedoor.co.kr

본 사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 374번지
전 화 : (053)325-9800/325-9801~2
FAX : (053)325-9802
E-mail:jungwoo9800@hanmail.net

벤 처 기 업 등 록 업 체

대한건축사협회발행, 2004년 1월호 통권 417호

Contents

2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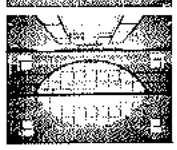
36

건축사
Korean Architect

차례 2004 01 417호

신년사		이재훈	16
칼럼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	장양순	18
건축만평		유원재	21
회원작품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영희 · 정영균	22
	안산 제일교회 제2교육관	윤덕찬	30
	림스코스모 치과	임재용	38
	분당 예수소망 선교원	최동규 · 김은수	46
	함양장례식장	문철수	54
작품노트	영암교회	김종복	60
특집 I	설계 · 감리제도 이대로 좋은가		64
연재	공간 클럽 - 08	이재훈	84
기고	설계, 감리 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공청회를 듣고	이종엽	90
	부산자갈치 시장 현대화 현상설계 심사를 하면서	이영복	92
특집 II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신축 현상설계		94
건축마당	건축계소식		124
	해외잡지동향		128
	2003년 총 목차		133

반 행 인 이재훈
편 집 기 획 김선양, 장양순, 김종복, 이승열, 박영순, 손기천, 윤상기, 윤시덕, 이상림
취재 · 편집 홍보편찬팀(조한국 과장)
발 행 처 대한건축사협회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66
우 편 번 호 137-070
전 화 대표 (02)581-5711~4
팩 시 밀 리 (02)588-8823
인 터 넷 http://www.kira.or.kr
E-mail korea@kira.or.kr
인 쇄 인 김충식 / 제이아트 (02)2269-7619
광 고 문 의 홍보편찬팀(이충식 팀장)

■월간 '건축사'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의 기재된 기사나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44

52

59

Korean Architect

Vol. 417
January 2004

Newyear Address — Lee Se-Hoon — 16

Column

What We Should Do for Ourselves — Chang Yang-Soon — 18

Cartoon — Yoo Won-Jai — 21

Works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 — Lee Young-Hee & Jeong Young-Gyun — 22

Traning Center II, Ansan Jeil Church — Yoon Deok-Chan — 30

Lim's Cosmo Dental Clinic — Lim Jae-Yong — 38

Jesus SoMang Mission Center — Choi Dong-Kyu & Kim Eun-Su — 46

Hanyang Funeral Parlor — Moon Chul-Soo — 54

Design note

Young-am Church — Kim Jong-Bok — 60

Special Issue Ⅰ

Current Problems in Systems of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 64

Serial

Space and Rooms — Lee Jae-Hoon — 84

Feature

After Attending the Public Hearing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echniques — Lee Jong-Yeop — 90

As a Jury of Design Competition for Jagalchi Market, Busan — Lee Young-Bok — 92

Special Issue Ⅱ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 Competition — 94

Architects' Plaza

Archi-Net — 124

Overseas Journal — 128

2003 Annual Index — 133

Publisher	Lee Se-Hoon
Assistant Editor	Kim Sun-Yang, Chang Yang-Soon, Kim Jong-Bok, Min Seung-Ryeol, Park Young-Soon, Son Ki-Chan, Yoon Sang-Ki, Yoon Si-Deok, Lee Sang-Li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Printer	Kim Jung-Sik (J-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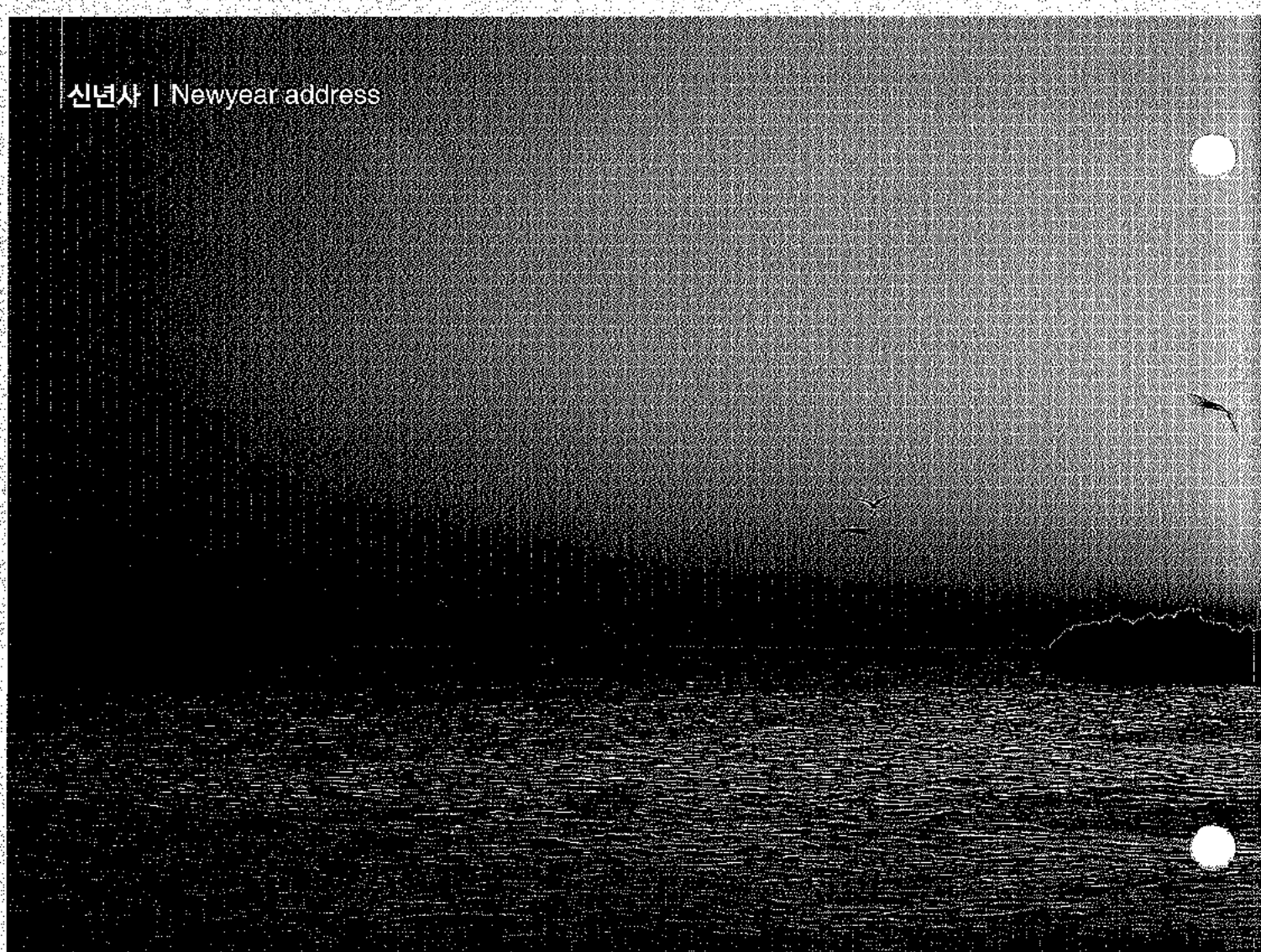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를 보내고 희망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지난 2003년 한 해는 본인이 회장으로 취임하여 우리 협회가 진정한 회원의 구심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협회, 열린 협회를 구현하는 초석을 다지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 협회의 활동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였고, 회원의 협회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한편, 외부기관의 회원추천 등에 대하여도 공개적으로 하였으며, 회원의 다양한 의견과 고충을 수렴코자 토론방 및 회원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협회의 일신과 민주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회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작성기준과 표준 계약서를 정비하였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한 중 ·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불합리한 적용(종세분화 경과조치)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하는 등 건축사업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이 모든 성과와 노력들은 회원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4년 갑신년에는 지난해의 초석을 발판 삼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계 · 감리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저지하겠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업무활동 규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동안 규제개혁과제로 불합리하게 완화된 건축신고제도, 용도변경 제도, 건축물의 유지관리제도 등을 건축사의 업역확대, 위상강화 측면에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의 생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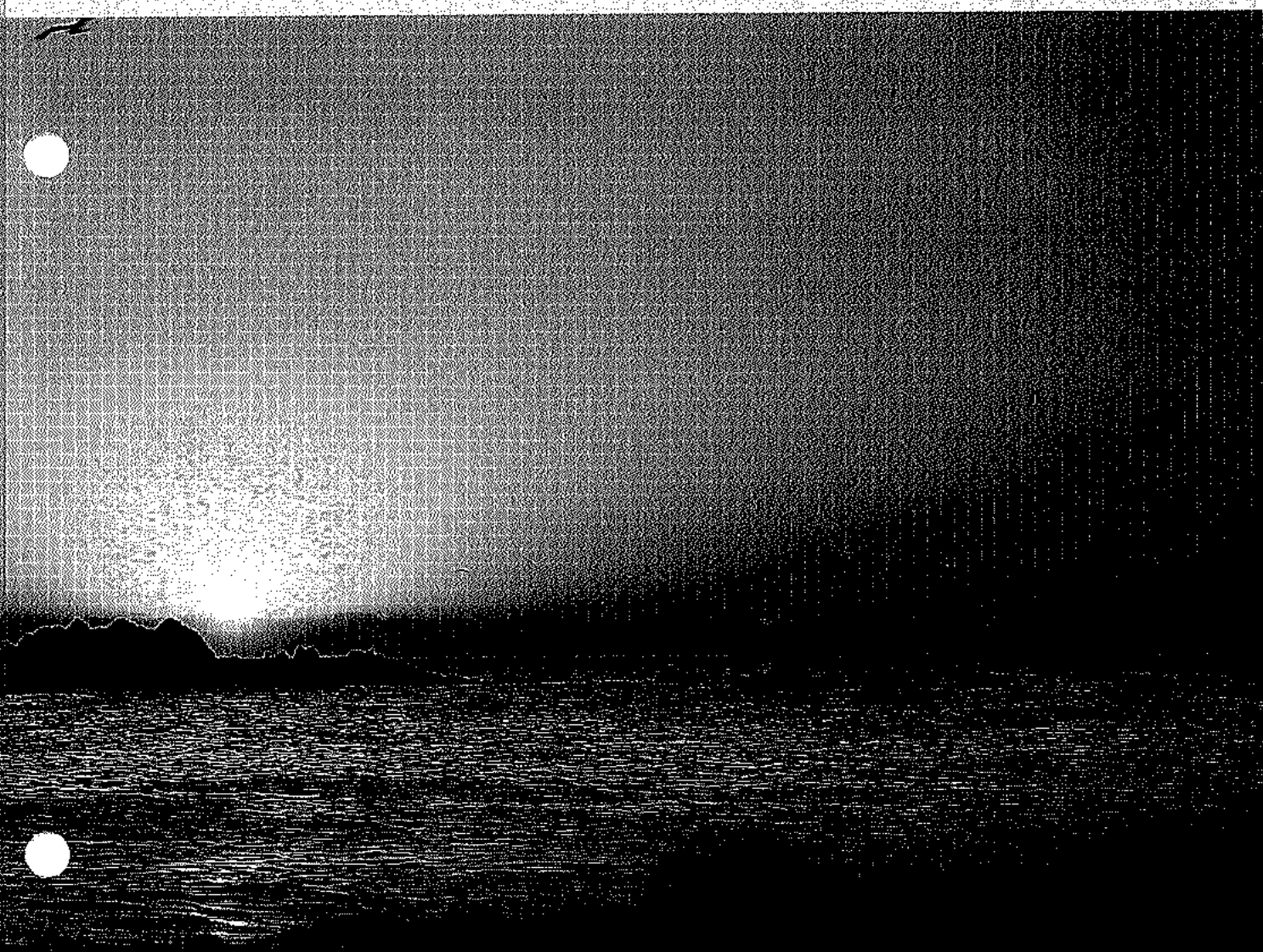

권과 관련된 각종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온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록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올해는 93년 이후 중단된 전국건축사대회를 개최하여 IMF이후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건축사들의 위상과 사기를 드높이고, 회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추진해온 건축정보화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회원여러분 !

앞으로 극복해야 할 난관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지나간 과거의 모습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들과 사고 속에서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협회와 회원여러분의 위상제고와 재도약을 이루는 위대한 성과가 있길 소망합니다.

협회는 이러한 회원여러분의 권익과 발전을 위한 최일선에서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자로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도 우리 협회가 회원여러분을 위한 굳건한 구심체로서 그 역할과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그리고 애정어린 충고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갑신년 한해 회원여러분의 번영과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길 다시 한번 충심으로 기원하며, 이만 신년인사에 갈음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甲申年 元旦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이 세 훈

장양순 / 본협회 편찬위원장, 동명건축사사무소
by Chang Yang-Soon

우리가 우리를 위해 해야 할 일

What We Should Do for Ourselves

한국전쟁 이후 이 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 아래 반공(反共) 방일(防日)을 부르짖으며, 국론을 통일하고 흩어진 민심을 한 곳에 모아 전후복구 및 부흥에 노력하려고 하였다. 3공 때는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어 전 국민을 하나로 묶었다. 전자가 자유당의 부패로 유종의 미를 남기지 못한데 반하여 후자는 "하면 된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어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는데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우리나라 부흥의 한 축을 이루었다. 양자는 위로부터 내려온 계몽형이며 리더의 의도에 따르는 방식이란 공통점을 가진다. 결과는 다르나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리는 재작년 대망의 월드컵대회를 한일 공동으로 개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우여곡절 속에 사상초유의 2개국 공동개최를 하게 되었으나 개최 한 두 달을 남기고도 매스컴들이 전하는 해외소식들은 허탈 그 자체였으니, 이는 대부분이 월드컵은 일본에서 열리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었다. 기본적으로 국력의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정부차원의 홍보가 너무 부족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었다. 향후 코리아 브랜드의 효과가 얼마이며, 역대 개최국의 성공사례 등을 매스컴들이 떠들었으나 마이동풍 같은 느낌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청 앞 광장에 붉은 악마 옷을 입고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인파는 광화문 일대까지 차고 넘쳤으며, 이윽고 전국 방방곡곡에 차고 넘쳤다. "대-한민국"의 연호는 교민들이 있는 전세계 도시들까지 울려 퍼졌고, 4강까지 연승행진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전 세계인이 함께 외치는 한국의 소리가 되어 버렸다. 결국 한일 월드컵은 한국 월드컵이 되어 버렸고, 4강 신화의 축구실력보다 붉은 악마가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을 더 깊이 각인시켰다. 이는 IMF사태 이후 찌들었던 한국인의 경제와 자존심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우리 모두의 자랑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자랑스러운 것이 있으니, 이는 위로부터가 아닌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대동단결을 이루었다는 동기와 시작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전자들과 또 다른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점이다.

지난해 우리협회는 세 건의 설문조사를 행하였다. 그런데 그 호응도는 낙망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7월에 건축규제에 대한 온라인상의 참여자는 단 45명, 오프라인이 189명이었으며, 8월에 시행된 건축사법 관련은 155명만이 참가하였다. 8000회원의 2~3% 수준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9월에 실시한 공제사업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227명을 포함하여 모두 1,430여명이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회원의 20%에도 못 미치는 미미한 결과였다. 협회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은 회관건립위원회 등에서 의견 제시를 요하는 온라인 상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협회란 무엇인가? 국어사전에 보면 '회원들이 어떤 목적을 위하여 협력하여 설립하고 유지하는 회'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협회의 원형은 우리 고유의 계(契)에서 찾을 수 있겠다.

멀리 삼한시대로 소급되는 우리의 계는 근세조선에서 향약(鄕約)으로 발전하여 경작의 두레에서부터 애경사는 물론이요 자치적인 사법, 행정권까지 가짐으로 해서 인. 의. 예. 지. 효 등 삶의 바탕과 관치행정을 돕는 일까지 두루 미치지 않는 것이 없었다. 비록 조선 말기에 문제가 있었고, 일제가 그 조직이 두려워 해체하는 바람에 그 맥이 쇠잔해졌지만 아직도 시골과 동창, 지인들 사이의 상포계 등은 훌륭히 그 기능을 해내고 있다. 우리가 대형사무소와 작은 사무소로 그리고 대도시와 읍 단위까지 분포한 것처럼 이들도 산하귀천을 가리지 않고 조직됐으며 의무와 권리도 동일하였다.

회원들 중에서도 참여하고 있을 상포계의 경우 회비만을 내는 것으로 의무를 다하는 곳은 없다. 적어도 상사에 참여하며 같이 슬픔을 나누게 되어있다.

우리협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의무가입의 형태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가입으로 바뀌었다. 1공이나 3공의 "뭉치면.." 이나 새마을의 상명하달식에서 월드컵 때의 시청 앞 시민처럼 자의로 회원이 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옛날에 안주하면서 바라기만 하고 있다.

우리회의 정관에 있는 목적 중 공익적인 것 외에 건축사의 권익옹호가 있다. 이제 이러한 권익옹호는 누가 주는 것도 아니요, 회비만 내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다. 회원 각자가 스스로 참여하고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 때만이 얻어지는 것이다. 아니 얻는 것이 아니고 쟁취하는 것이 될 것이다.

미국이 오늘 날 세계의 최강대국이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기독교의 청교도 정신에 입각한 나눔과 봉사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독교에서는 소득의 1/10을 교회에 냄으로써 선교와 구제에 그 돈을 쓰고 있다. 2002년의 경우 그들 가정의 89%가 연간 1,600달러를 기부하였으니, 이는 수입의 3%를 넘는 금액이다. 또한 성인의 44%가 1주일 중 3.6시간을 몸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들은 이권이나 관계가 없는 곳에 돈과 시간으로 봉사하고 있다.

우리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에 대한 봉사는 소수의 임원과 각 위원회의 위원들뿐이다. 옛날에는 교통과 통신이 여의치 않으니 봉사를 하려해도 할 수가 없었으며, 법에 의한 유일무이한 존재니 크게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는 상전벽해(桑田碧海)로 변하였다. 건축 환경은 온실에서 혹한의 광야에 버려진 것처럼 어려워졌다. 우리의 권리와 업무영역은 날로 침범 당하고, 회원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일감은 그 반대로 줄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 이러한 일감 축소현상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점 그 속도가 가속화 될 것이다.

어떤 일이 터질 때마다 회원들은 "협회는 무엇을 했느냐"고 질책한다. 심지어 회비가 아깝다는 등 협회 무용론이 튀어나오곤 한다. 물론 잘못한 것은 질타를 당해야하고 잘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임직원들은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하며, 협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끌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일까? 아니다. 손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수레도 두 바퀴가 있어야 굴러가듯이 임직원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회원은 회원대로 바퀴의 한 축을 이루어야 한다.

지금은 온라인 시대이다. 한 주일에 1시간만 협회를 위하여 현안을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여 준다면 우리협회의 기반은 공고해지고 따라서 우리의 권익은 신장될 것이다. 회원의 몫은 그뿐만이 아니라 협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까지도 해야 된다. 또한 회원은 미리 미리 의견을 개진하고 협회는 이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하며, 일단 합의된 것은 일치 단결하여 밀고 나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회원과 협회가 하나가 될 때 믿음은 회복되고 불신은 사라질 것이다.

'국가가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 보라' 는 케네디의 말이 아니더라도 올해부터는 봉사의 차원에서라도 인터넷에 참여하여 명실공히 내가 주인인 능동적인 협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일어서자.

이영희 · 정영균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by Lee Young-Hee & Jeong Young-Gyun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College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

●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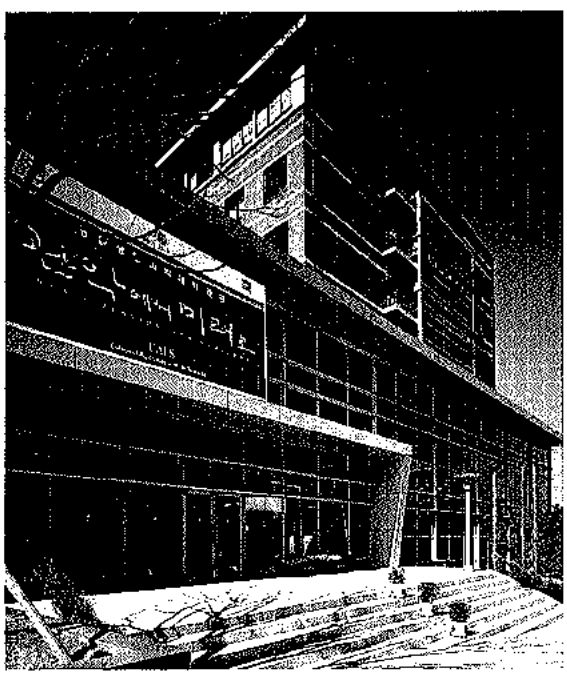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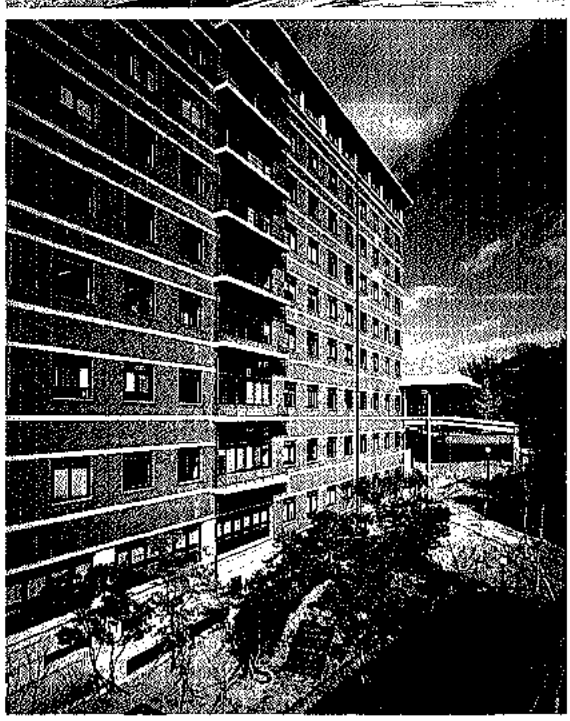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학교용지지구
주요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3,889,012㎡
연 면 적	12,164.09㎡
건 폐 율	0.16%(학교부지전체를 대지면적으로 산정)
용 적 률	0.96%(학교부지전체를 대지면적으로 산정)
규 모	지상 9층, 지하 2층
구 조	철골콘크리트조
최고높이	40.85m
외부마감	점토벽돌, 복층유리커튼월, 화강석
건 축 주	서울대학교
시 공 사	현대산업개발 + 삼성물산
총 괄	이승도
설계담당	고원준, 김성원, 박건의, 황금순, 치영한, 정태형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은 대학원 중심대학을 지향하는 서울대학교의 교육, 연구 시설을 국제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캠퍼스 종합화계획의 일환으로서 학제간 폭넓은 교육과 효율적 연구를 위하여 수원에 위치한 농업생명과학대학의 교육, 연구시설을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려는 계획에 따라 시작되었다.

배치계획은 대지 남쪽에서 시작되어 북쪽으로 흐르는 관악산을 배경으로 한 좋은 경관의 대상지로서 남-북의 access axis, 동-서의 main axis가 형성되어 동-서의 20m도로와 평행하게 아트리움 및 저층부를 배치하였으며, 전면의 외벽을 커튼월과 내부의 'open space'를 두어 접근성과 개방성을 주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아트리움 및 저층부의 양단에 수직방향으로 두개의 mass를 배치시키고 저층부에는 지원시설과 교육시설, 고층부는 학과별 연구시설을 배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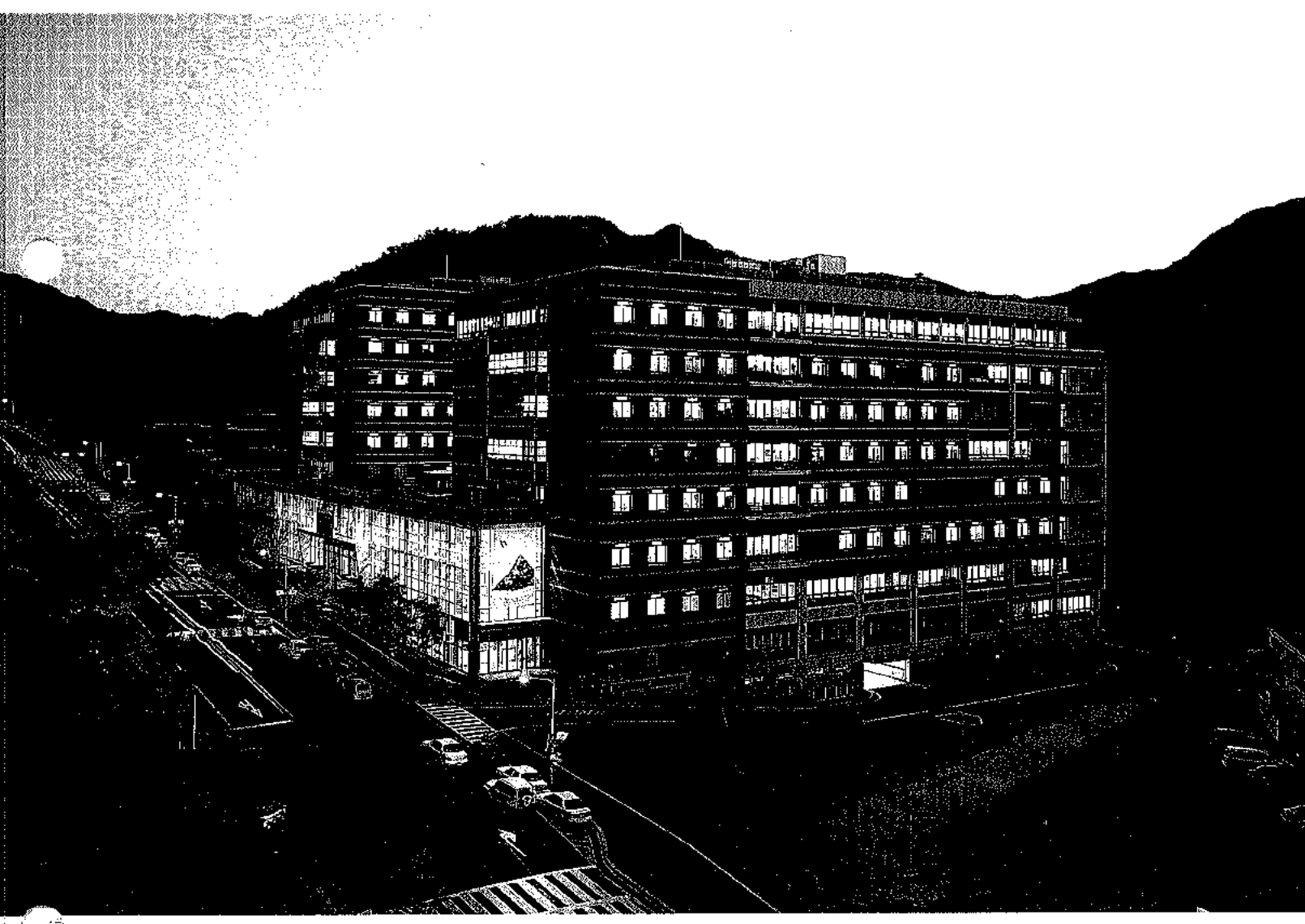

여 기능배분을 꾀하였다.

건물의 중앙에 계획된 'open space'는 GREEN CONCEPT + COMMUNICATION CORE의 약함을 부각시켰고, 저층부의 옥상과 후면에는 HUMAN GREEN을 위한 정적인 조경공간을 설치하여 관악산의 자연환경이 건물로 연계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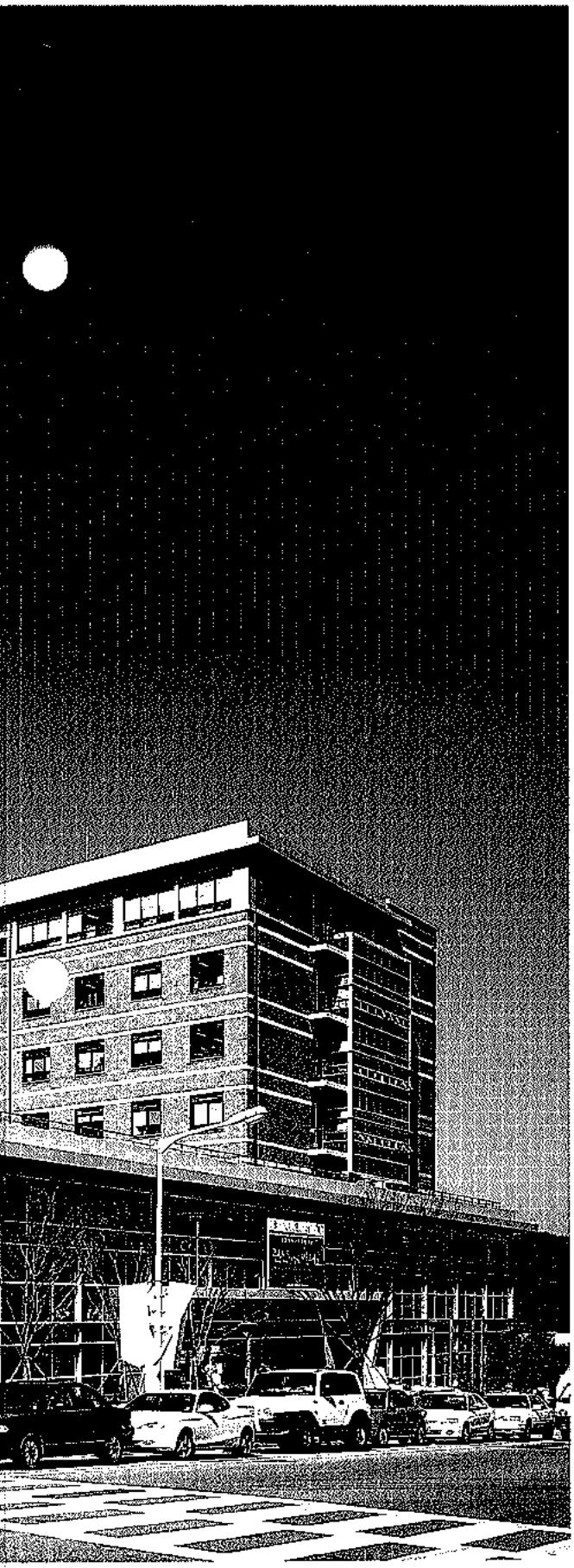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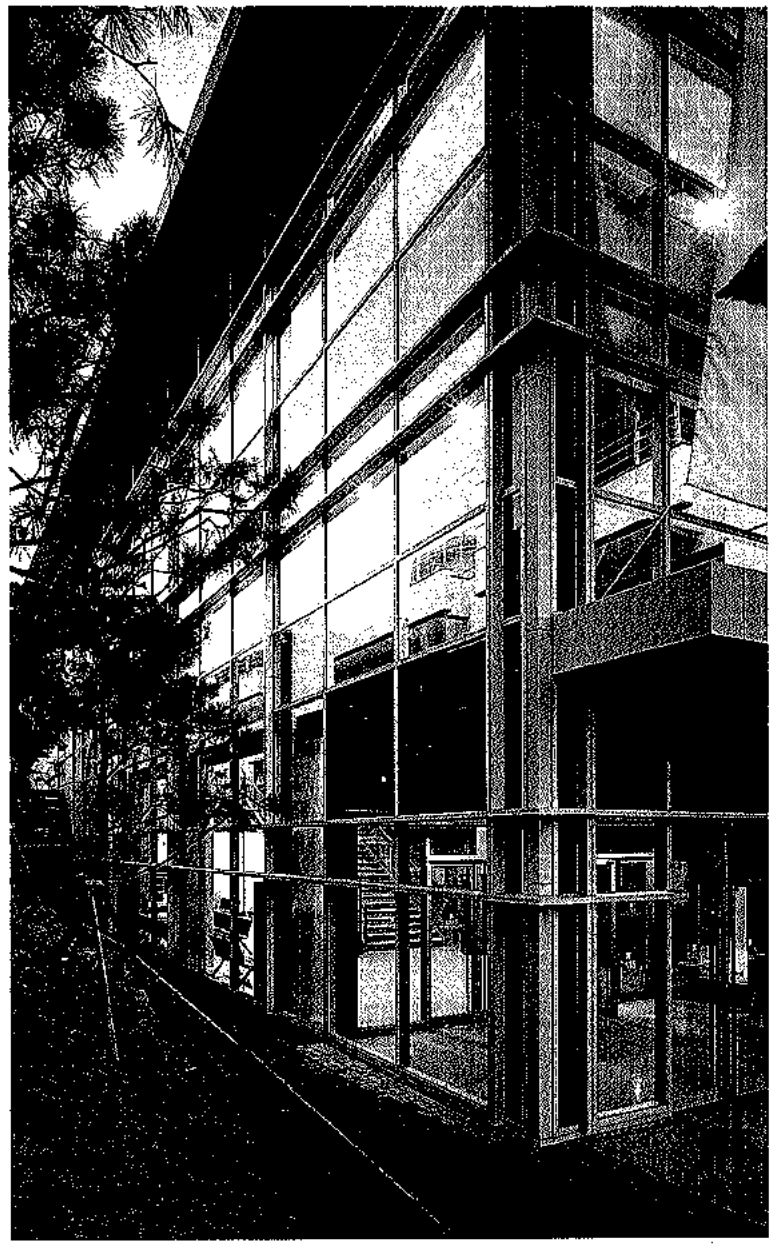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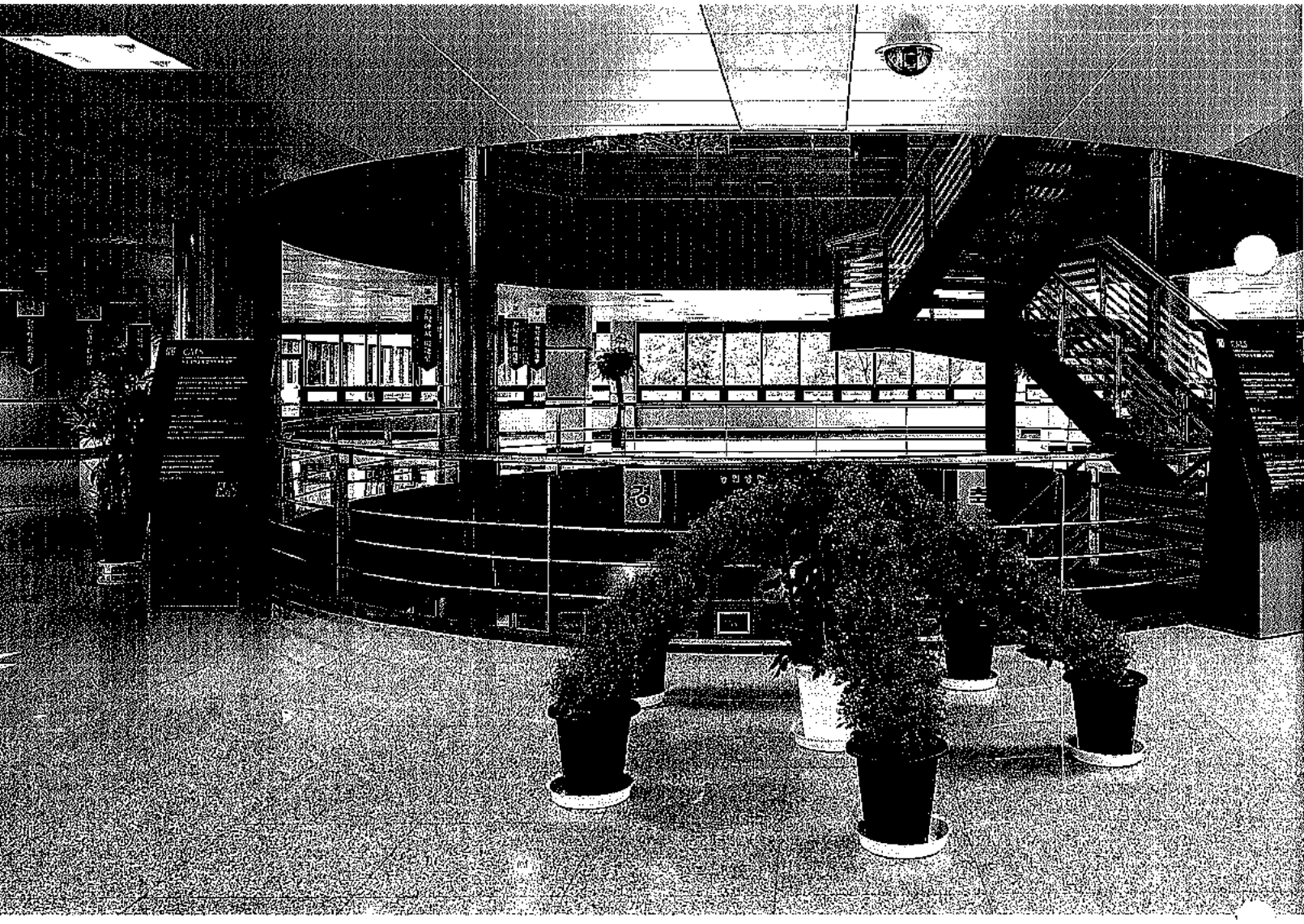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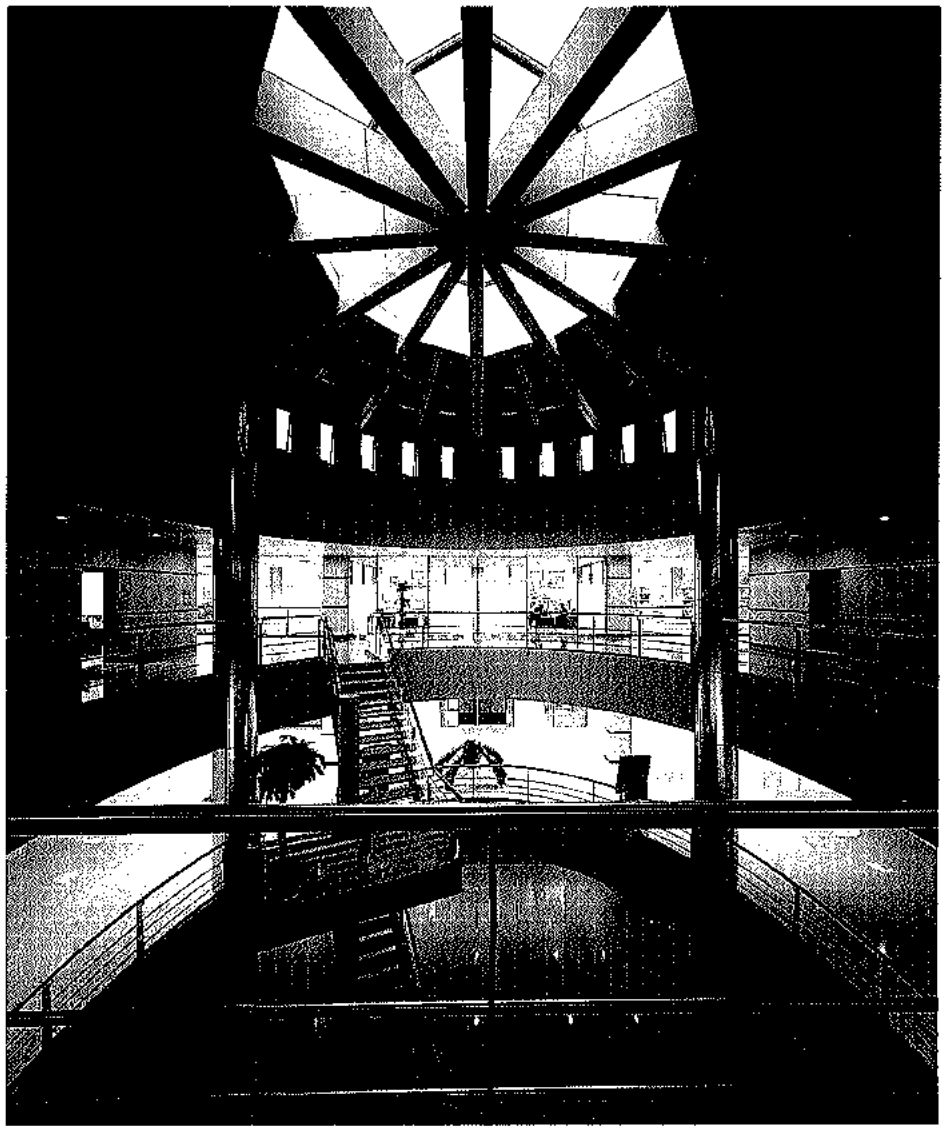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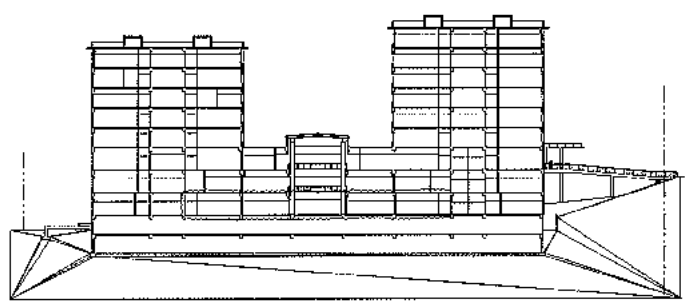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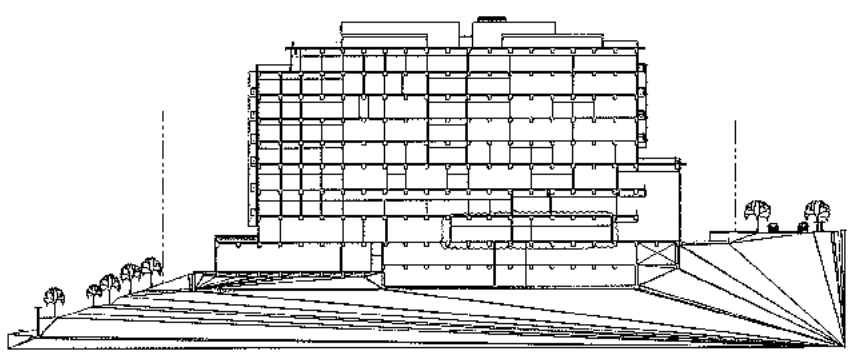

종단면도

01_ 선큰
02_ 부출입구
03_ 강의실
04_ 연구실
05_ 주출입구
06_ 전시/휴게공간
07_ 대학원 연구실
08_ 대학원 연구용 실험실
09_ 교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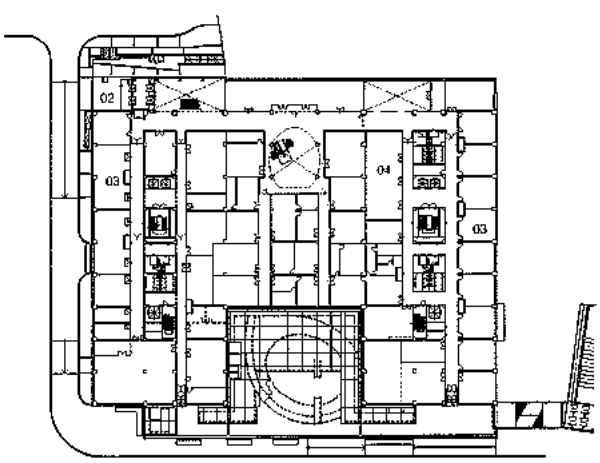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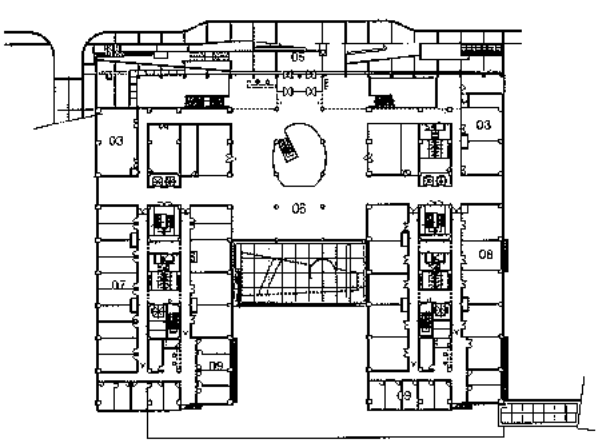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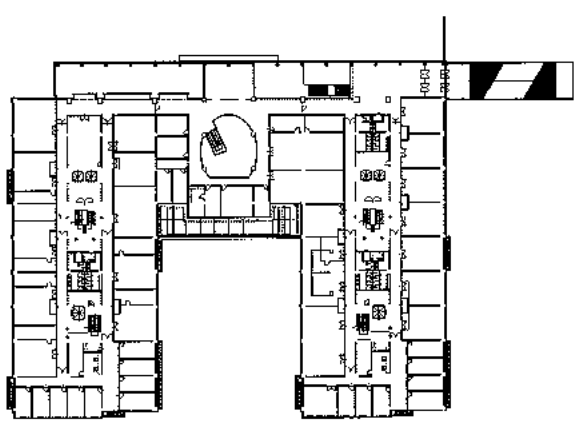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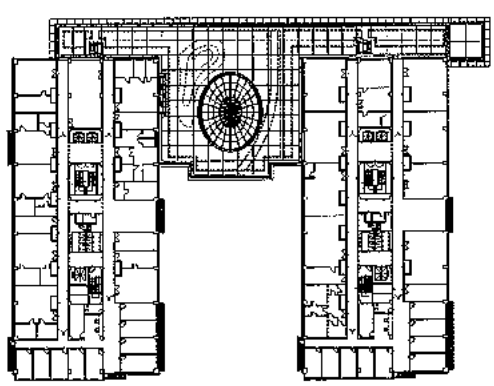

4층 평면도

윤덕찬 / (주)윤건축사사무소
by Yoon Deok-Chan

안산 제일교회 제2교육관

Traning Center Ⅱ , Ansan Jeil Church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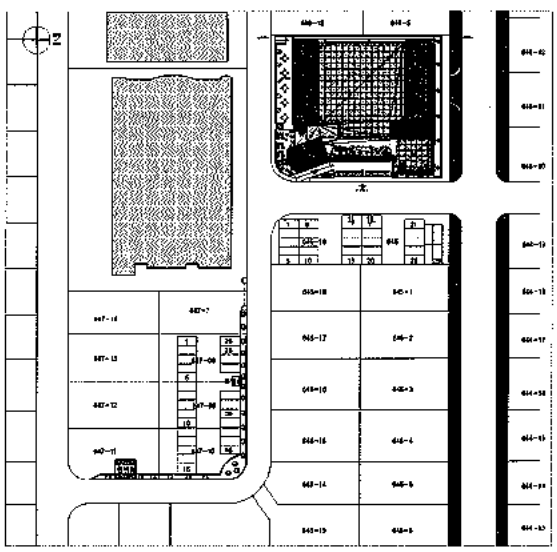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646-6외 5필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대지면적	1,700.00㎡
건축면적	992.52㎡
연 면 적	5,364.53㎡
건 폐 율	58.38%
용 적 률	233.53%
규 모	지하 2층, 지상 4층
구 조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점토벽돌, 티타늄 아연판
설계담당	문일성, 장희조, 박정원
시 공 사	(주)예일종합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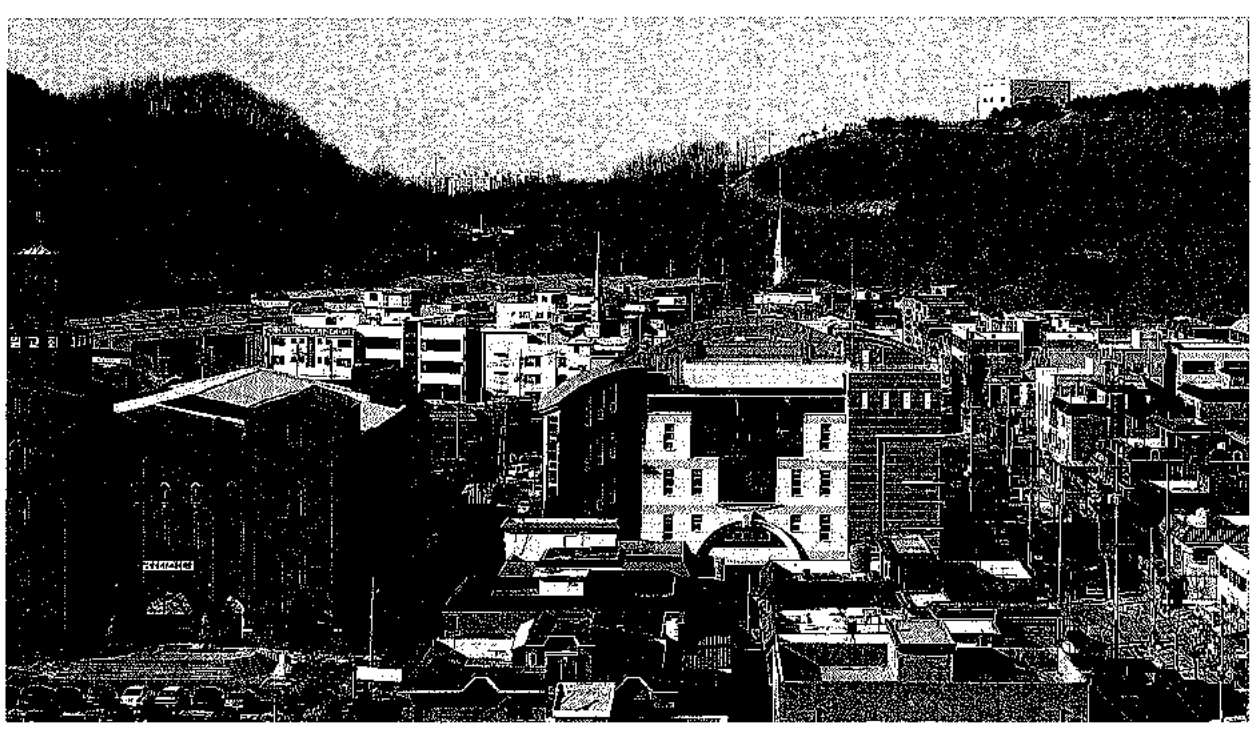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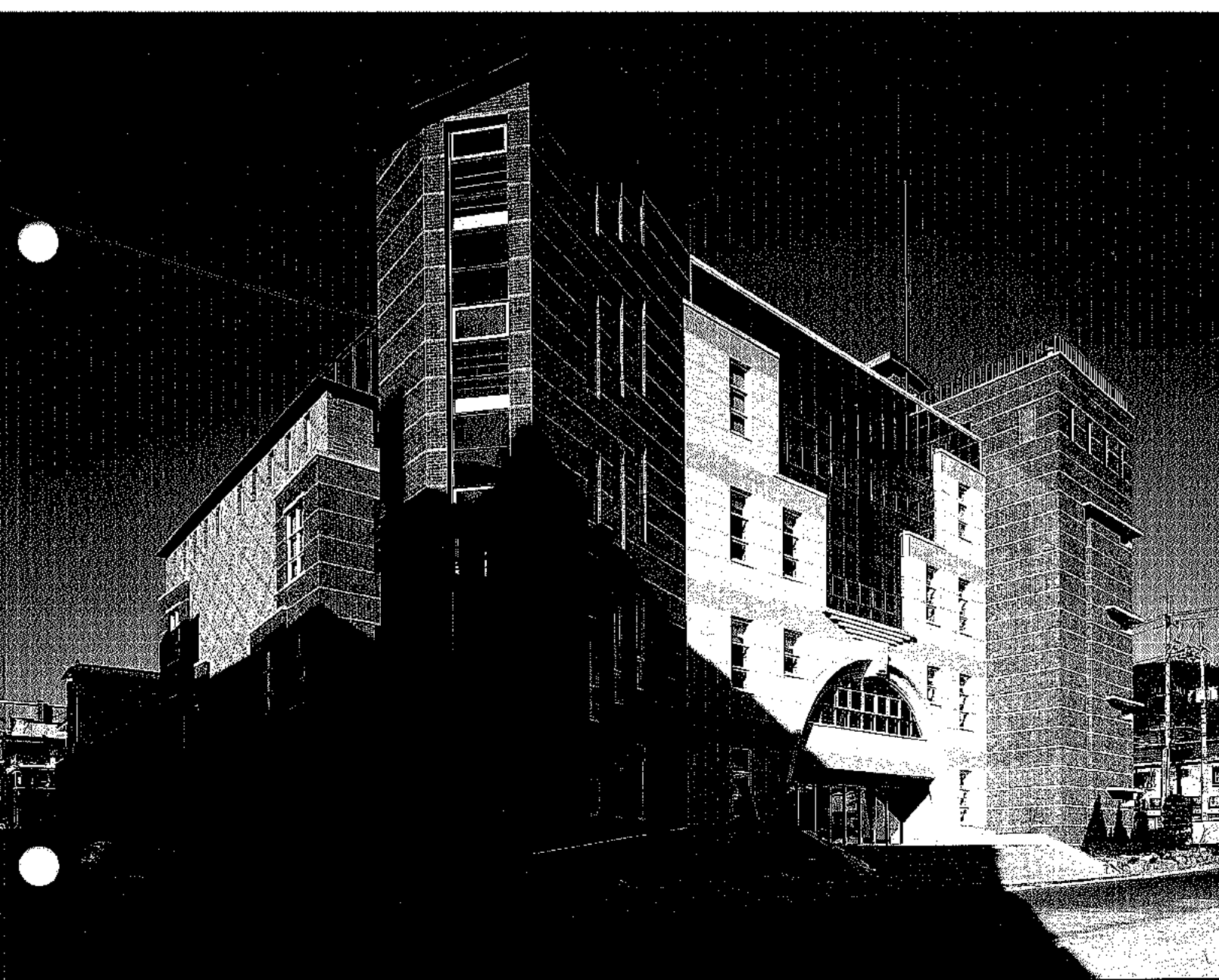

이 건물은 약 7,000여명의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부속건물로 주로 청소년들을 위한 체육시설과 교실, 도서실, 웨딩홀, 친교실, 다목적 공연시설 등으로 계획되었다.

계획개념

주변환경과의 조화 : 4층 이하의 주택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6개의 택지를 합병하여 법적 건폐율을 채워 거대한 매스를 형성하게 되므로 주택단지의 도시환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택단지에는 어울리지 않을 큰 덩어리에서 오는 위압감, 지루함, 스카이라인, 개방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스를 가능한 분절하려 하였고, 2가지색의 점토벽돌을 사용하여 주변 환경과 알맞게 교통하며 사이좋게 공존하도록 시도하였다.

종교시설이기보다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 : 항상 열려있어 어무나 편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문화공간의 역할에 손색이 없도록 배려하였다.

외부 디자인개념 : 주로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바람, 간구, 희망, 기대감, 보호본능 등을 부각시키려 하였다.

엄숙, 긴장, 왜곡되기 쉬운 종교적 사실적 표현 등은 절제하고 밝고, 경쾌하고, 라드미컬하여 청소년들의 정서에 맞도록 함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외부디자인과 주출입구 동선을 계획하였다.

작품후기 : 2001년 6월 설계를 시작으로 2003년 10월 사용검사에 이르기까지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쉬지않고 설계와 공사를 추진해 주신 안산세일교회 고흥 목사님께 감사 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공사를 깔끔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건축위원장 이근익 장로님과 시공회사 예일건설 김백수 현장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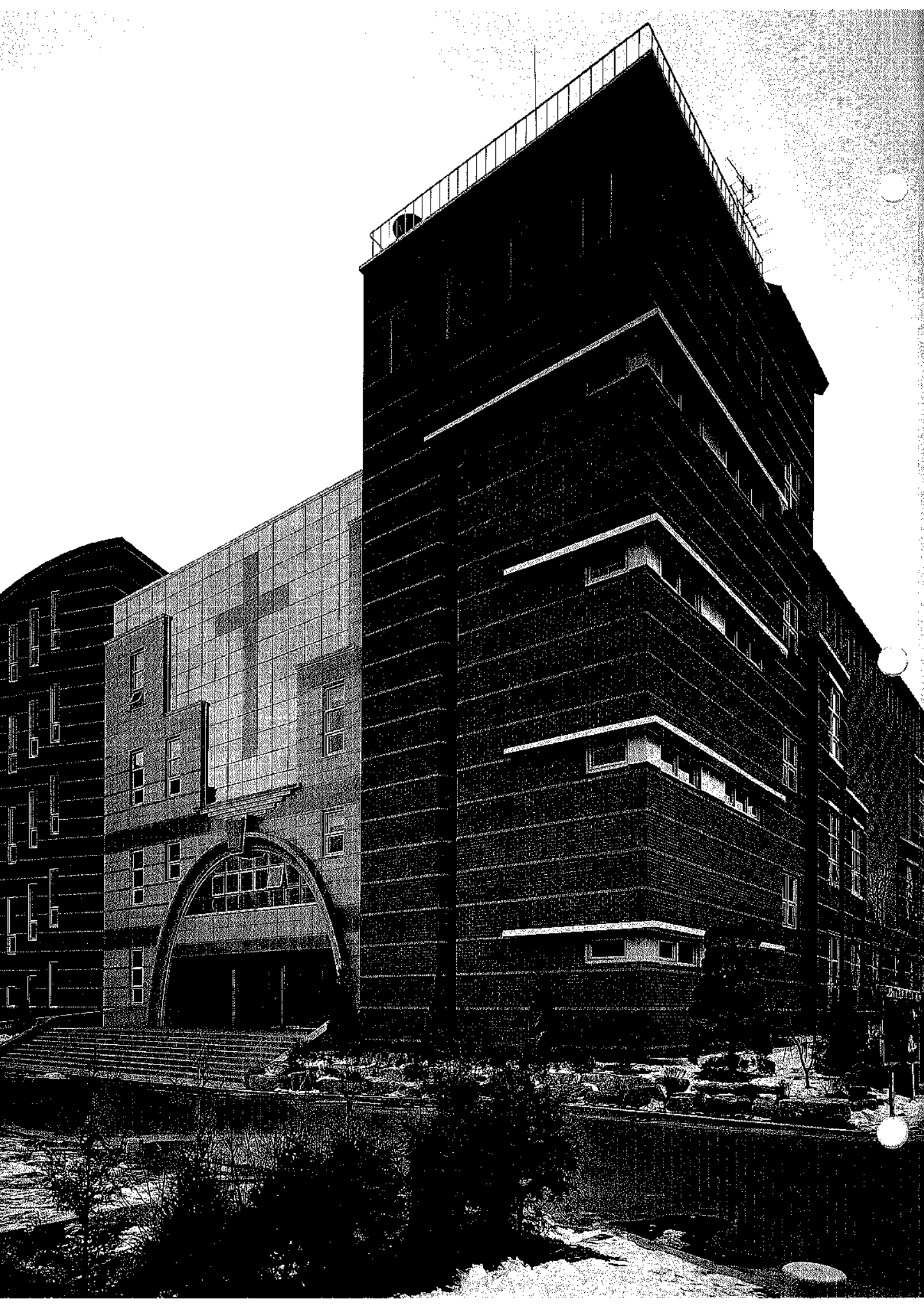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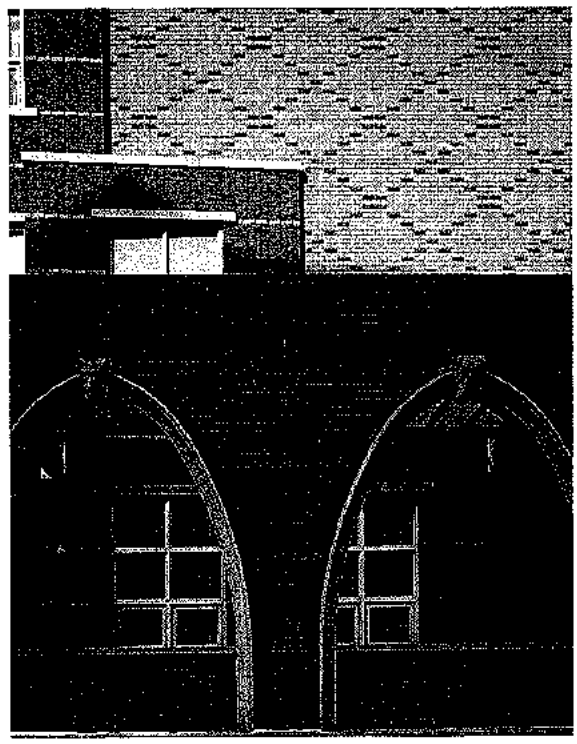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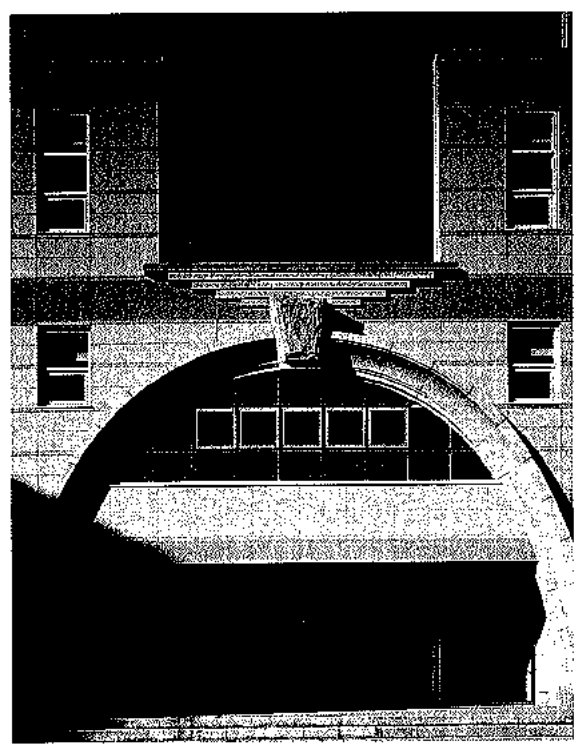

01_ 하늘마당
02_ 체육관
03_ 로비
04_ 사랑부
05_ 다목적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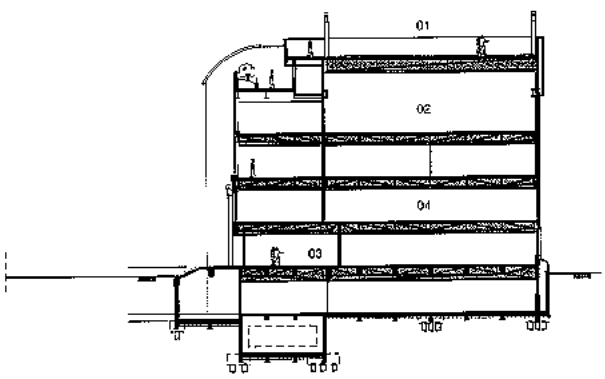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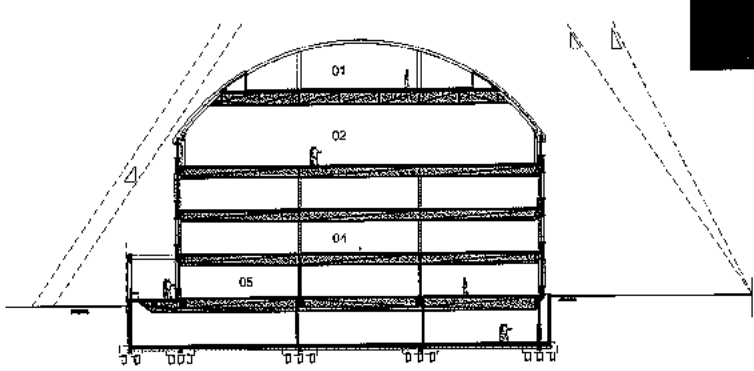

주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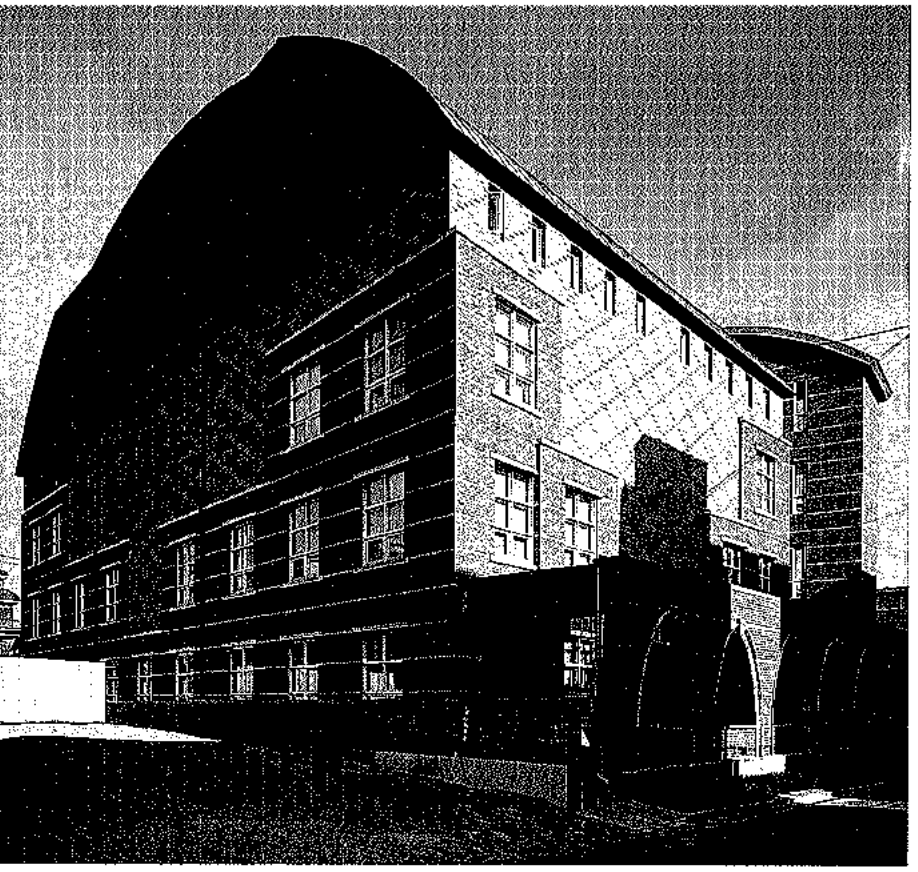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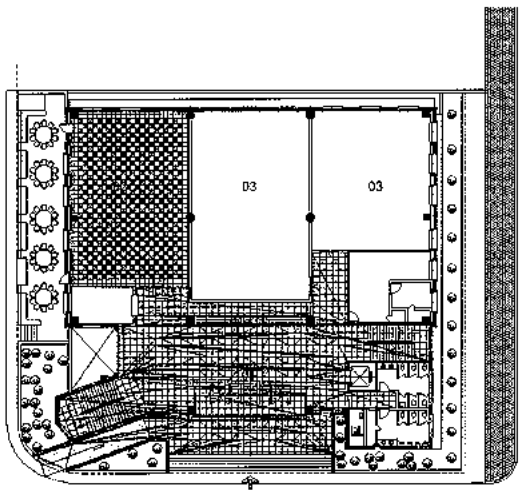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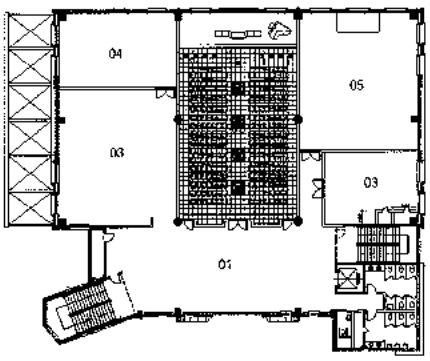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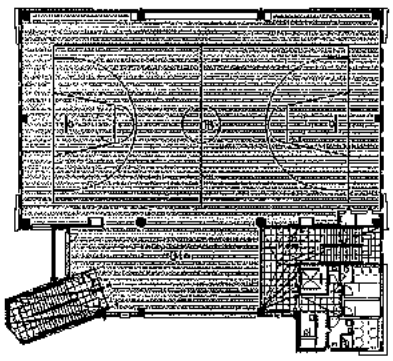

4층 평면도

01_ 로비
02_ 다목적실
03_ 교실
04_ 성가대실
05_ 사랑부
06_ 제직관

임재용 / 건축사사무소 O.C.A
by Lim Jae-Yong

림스코스모 치과
Lim's Cosmo Dental Clinic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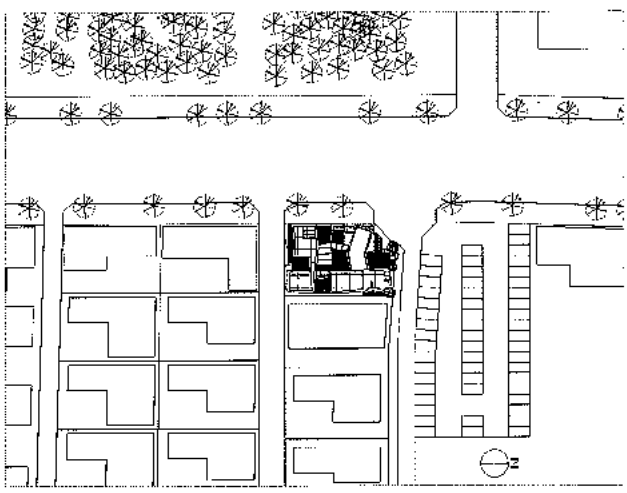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397-1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420.7㎡
건축면적	251.68㎡
연 면 적	1,011.11㎡
건 폐 율	59.82%
용 적 률	173.31%
규 모	지하 1층, 지상 4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압출성형시멘트패널, 티타늄-아연합금판, 노출콘크리트, 투명/불투명 복층유리(THK24)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수성페인트, 내수합판 위 투명락카, 체인링크
설계담당	문희경, 최희모
시 공 사	(주)예림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촬영 : 김종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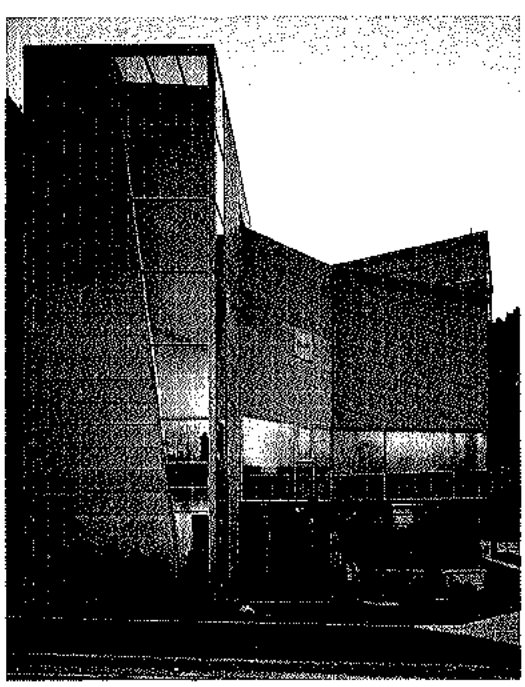

림스 코스모 치과는 외부 공간이 관입하여 풍경의 틀을 만든다.

1층에서 세 방향의 길이 관통하여 도시 조직을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시 외부 공간이 수직적으로 중앙을 관통하여 틀의 중심을 구축한다. 다시 3층에서 수평적으로 외부 공간이 관통하여 틀을 완성한다.

5M 폭의 남은 부분이 내부이다. 이 틀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의 풍경이 서로 교차하며 주변과 소통한다.

림스 코스모 치과는 치과, 주택, 전시공간, 카페가 공존하는 도시 속의 도시이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은 주어진 폭 5M의 선형의 틀 속에 삽입된다. 이 선형의 틀은 삽입된 기능에 따라 표피의 투명도를 달리 할 뿐 가변적이고 유연한 장치이다. 이 틀은 관입된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감겨 있는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본질 자체는 선형이다. 1층에 카페와 치과 접수 및 대기실이 있고 지하 1층에 치과 특진실, 2층에 진료공간, 3층에 원장실이 있으며 반대쪽 3층에는 전시공간/주택거실이 있고 4층에는 주택 침실과 가족실이 있다. 서로 성격을 달리하는 공간이 같은 층에 수평적으로 배치될 때는 그 사이에 외부공간이 관입하여 충들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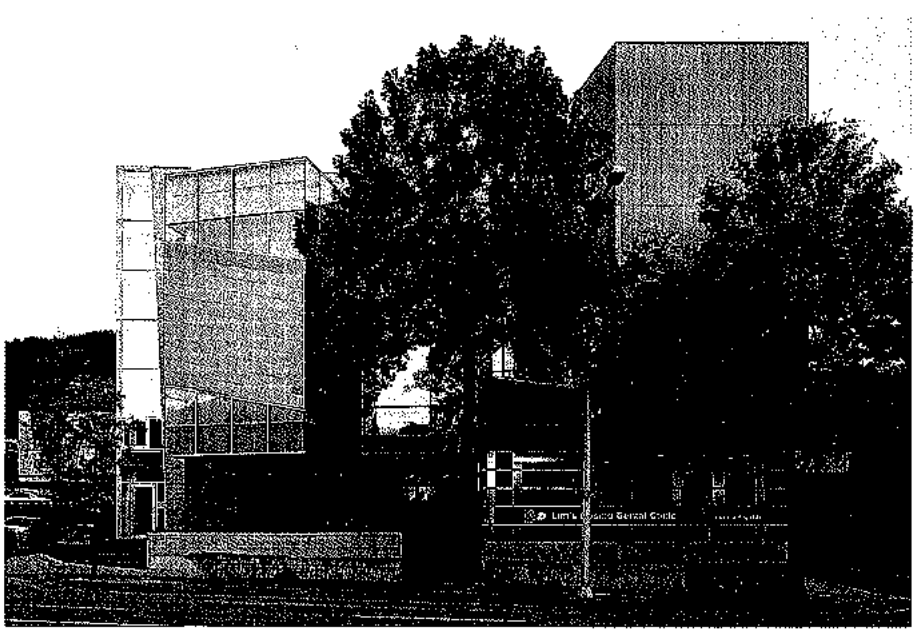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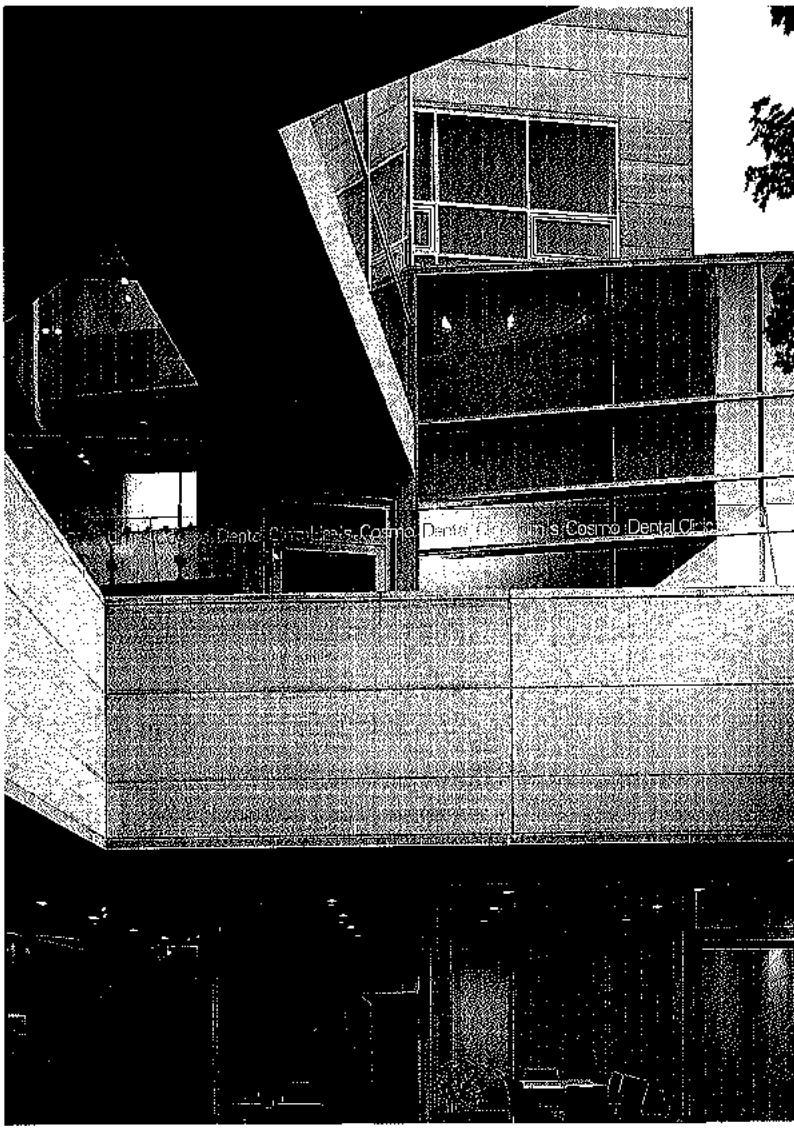

01_ 거실
02_ 현실
03_ 원무과
04_ 대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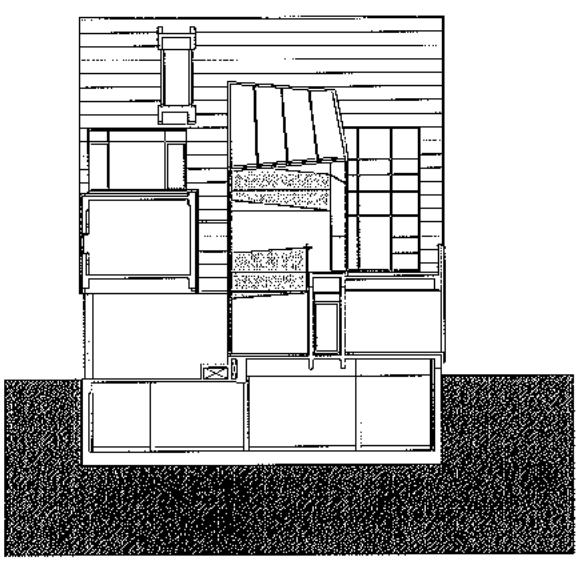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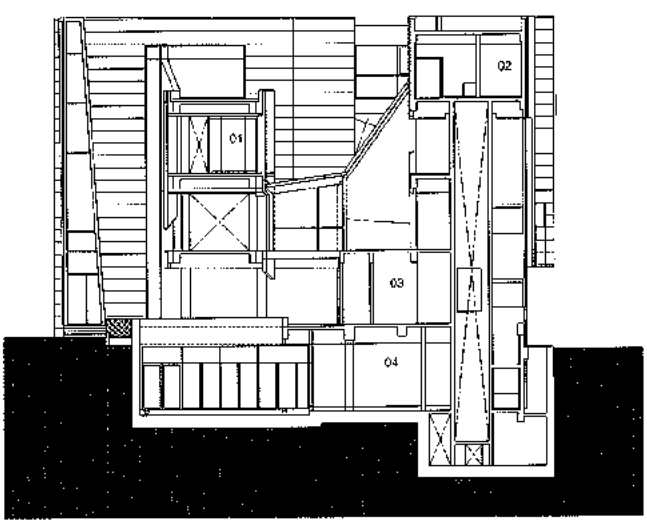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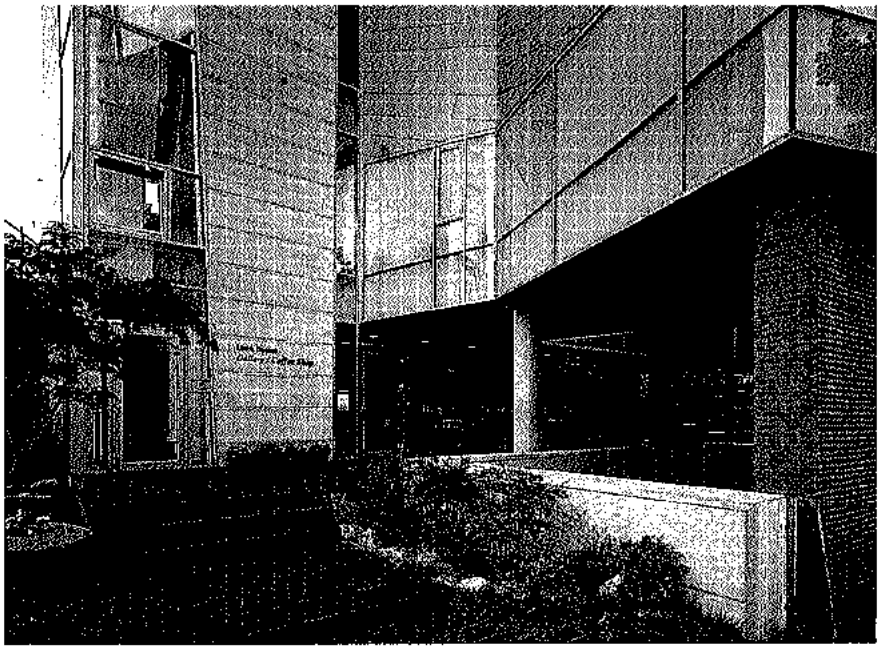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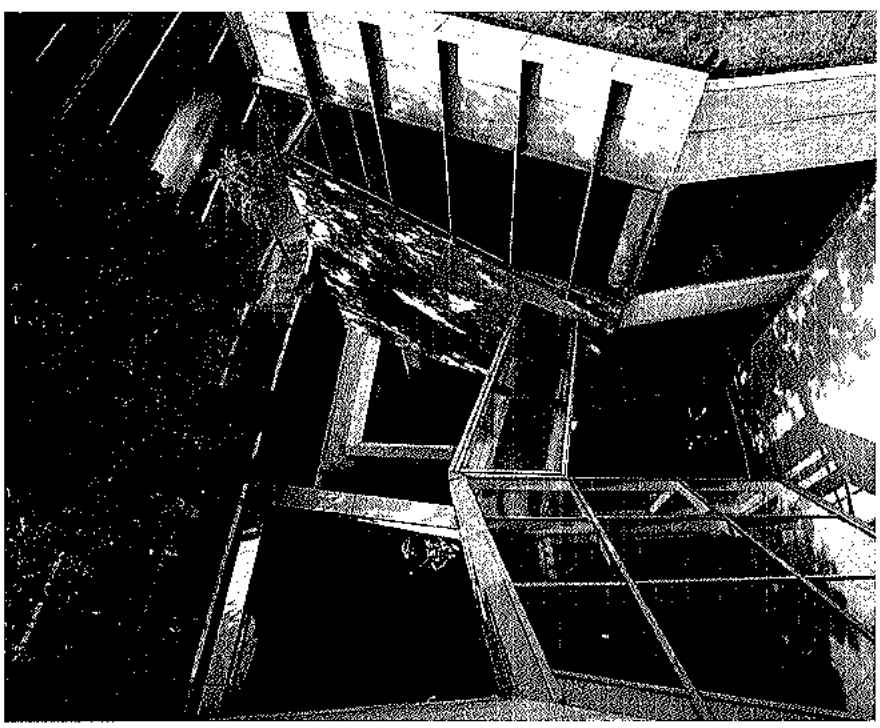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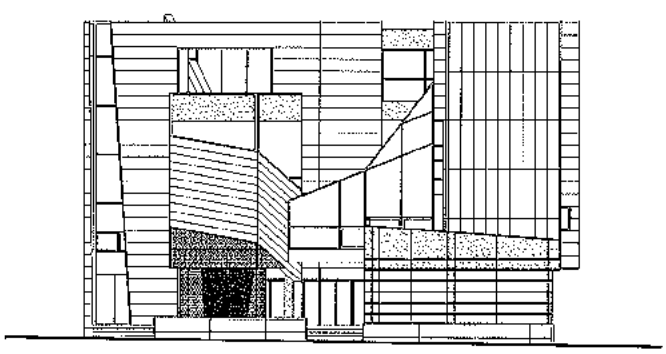

서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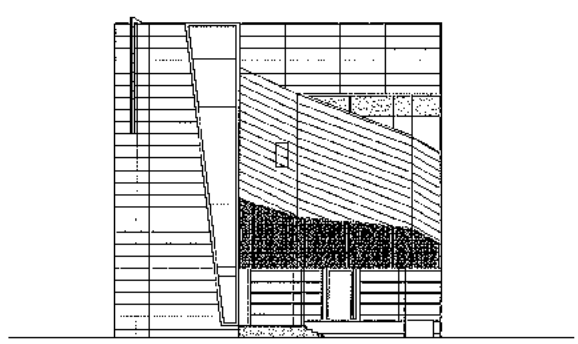

북측면도

Lim's Cosmo Dent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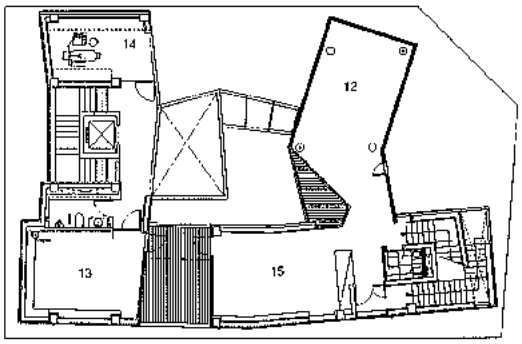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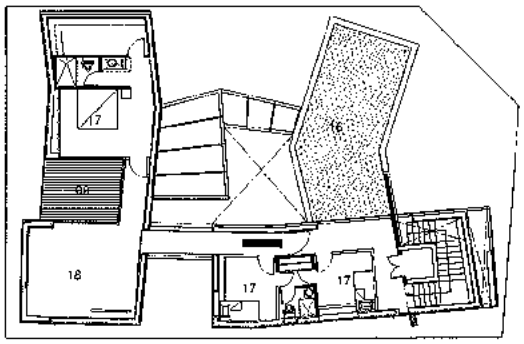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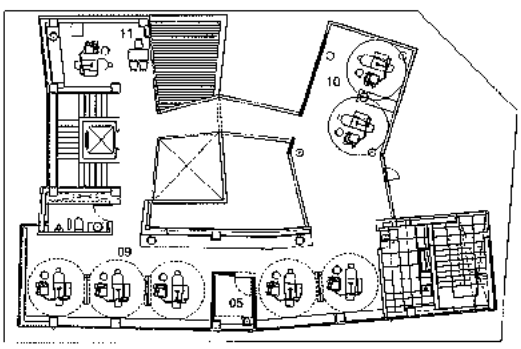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01 신촌데크
02_ 특진실로비
03_ 직원식당
04_ 세미나실
05_ X-레이실
06_ 치과로비
07_ 카페
08_ 데크
09_ 진료실
10_ 수술실
11_ 예진실
12_ 전시공간/거실
13_ 원장실
14_ 의사실
15_ 전기공간/식당
16_ 옥상정원
17_ 침실
18_ 가족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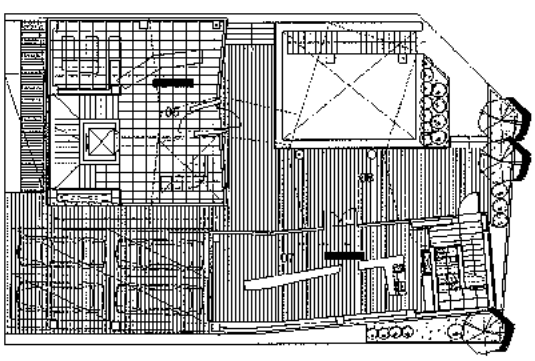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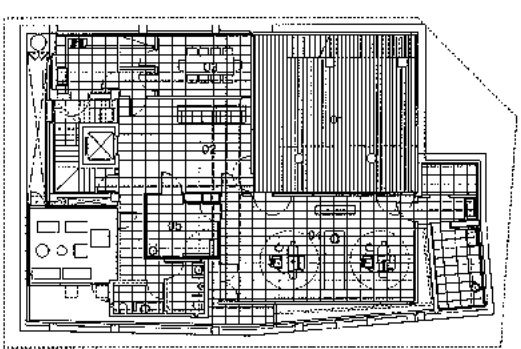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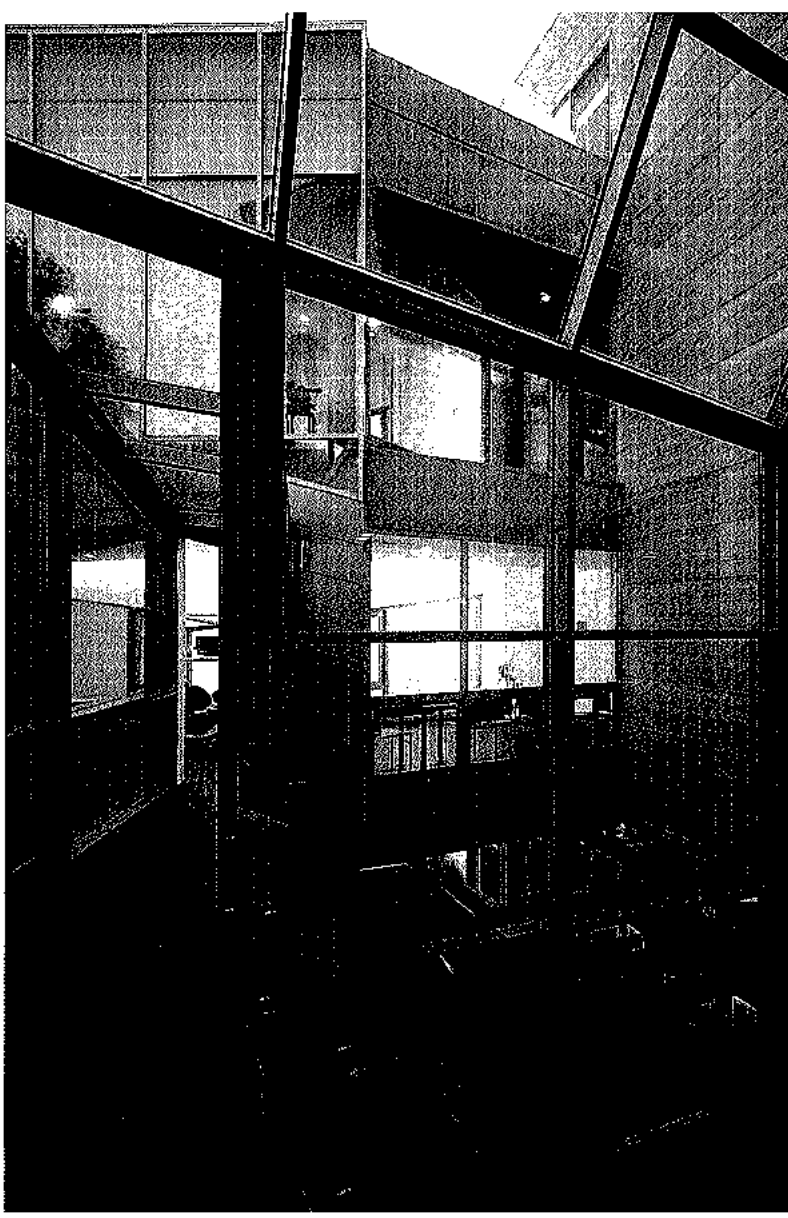

최동규 · 김은수 / (주)서인종합건축사사무소
by Choi Dong-Kyu & Kim Eun-Su

분당 예수소망 선교원
Jesus SoMang Mission Center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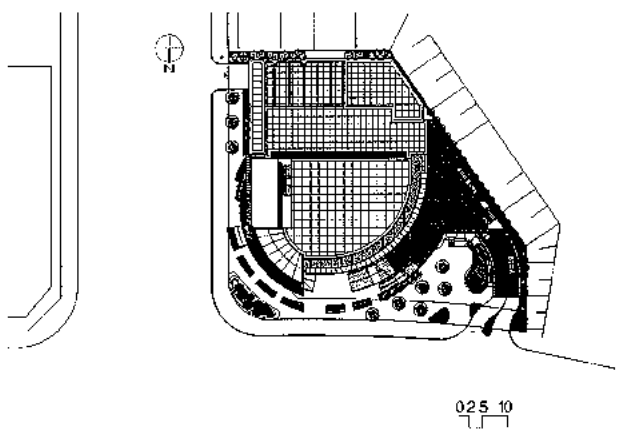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1-1외 1필지
지역지구	근린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
대지면적	3,912.6㎡
건축면적	2,382.24㎡
연 면 적	17,561.27㎡
건 폐 율	60.89%
용 적 률	268.74%
규 모	지하 3층, 지상 8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주차대수	실내 172대, 실외 9대
외부마감	강화유리, 건식타일, 시멘트베이스보드
내부마감	비안코, 석고보드 위 스토니타일
설계담당	김현삼, 정협, 김운학, 김종원, 주원태, 김재범, 김인철, 김도경
시 공 사	LG건설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주어진 기능 즉, 건축주의 요구사항 중 물리적인 것은 다 껴안아야만 한다. 그중 중요한 것은 이천명이 예배볼 수 있는 대예배당, 오백명수용의 중예배당 등의 예배공간, 식당 및 북카페 등의 친교공간 그리고 세미나실 유, 초, 중, 고,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공간 등이다. 이들 제요소를 한몸에 수용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필연외에 더 중요한 것은 그다음에 무엇을 부가해주느냐에 따라 건축이 달라진다고 생각한다.

외부에서 이층 대예배당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계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누구든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은 즉시 예배공간으로 인도되어야할뿐만 아니라 시각적 인지면에서도 즉시 눈에 띄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이계단의 연장이 삼, 사층에 이르기까지 넓은 데크와 맞물려있게 한 것은 사용자들로 하여금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도록 하게끔 한 것이다.

6층 옥상에 있는 넓은 마당의 존재는 이 건축의 모든 사용자들이 이 마당을 통하여 서로 조우할 수 있도록 하여 각개인과 절대자와 연결되어 있는 신앙생활과 교우끼리의 수평적 공동체생활을 활성화하기위한 주요한 목적이 담겨있다. 목적이 뚜렷한 각 개실은 닫혀진 기능을 위하여 존재하지만 모양새그대로 열려있는 이러한 공간들은 비정형의 자유로운 삶의 형태를 담아낼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마당을 둘러진 땅으로 인식하여 좌측 끝에 있는 계단실 최상부의 커피숍을 1층으로 인지하고 들어올려진 정자모습의 공간은 그야말로 아무도 쓸 수 없고 또 아무나 쓸 수 있는 전통건축의 정자와 흡사한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하늘마당 우측에 있는 과장되어 보이는 트러스모양은 이 마당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존재하는 강력한 구조의 표출이다. 외관모퉁이에서 보여지는 알미늄 그릴은 이 건축이 외부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집중되는 곳(visual threshhold)으로서의 건축적 얼개인데 야구선수 중 캐쳐가 쓰고있는 보호용 철제모자를 연상하거나 결혼식 때 신부가 쓰는 면사포를 연상하면 이해될 것이다.

예수
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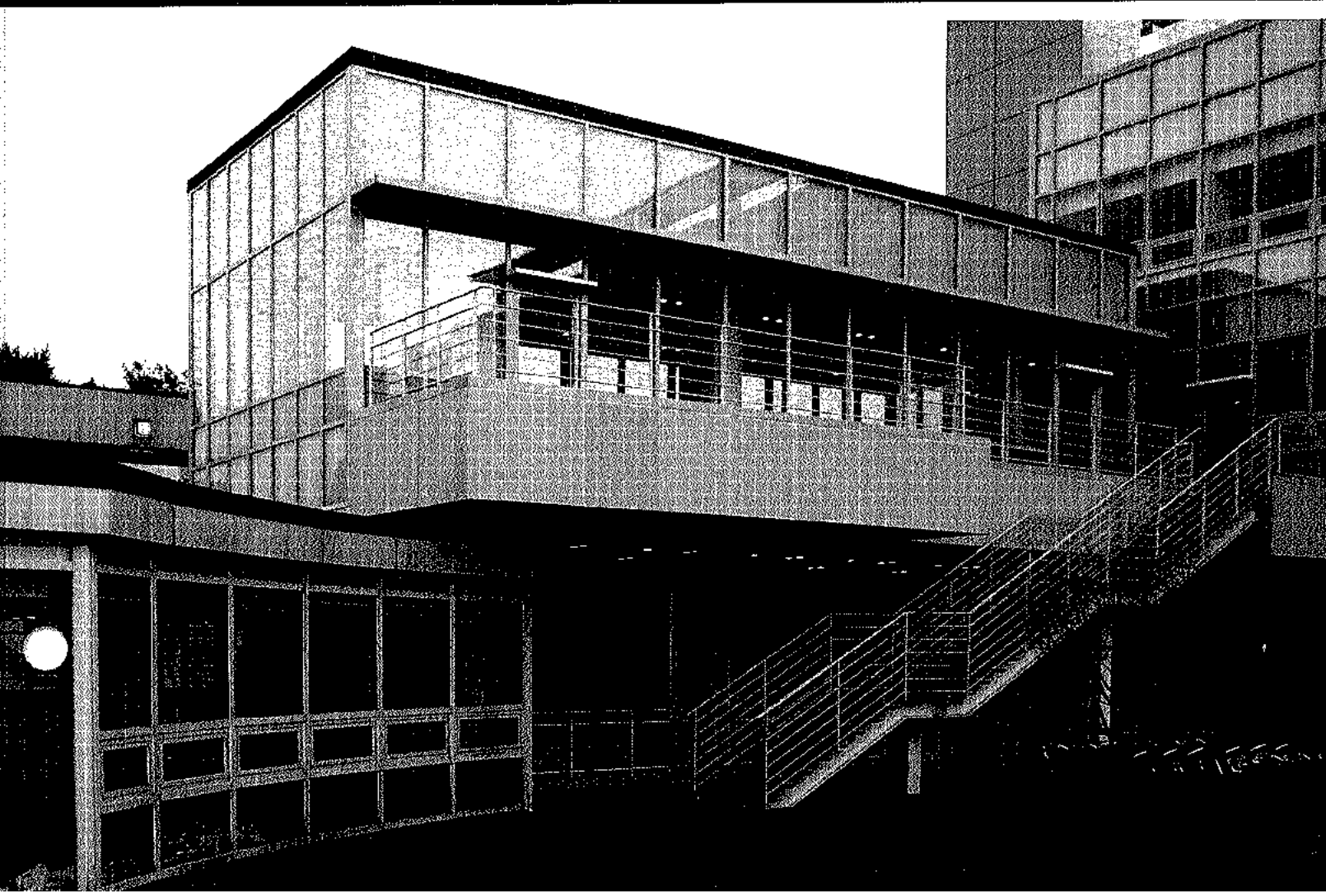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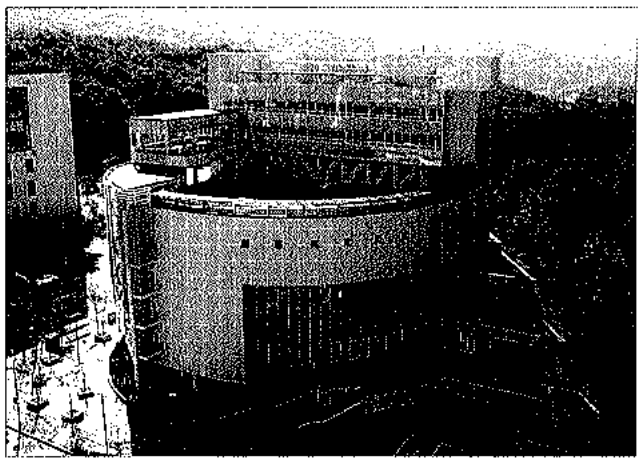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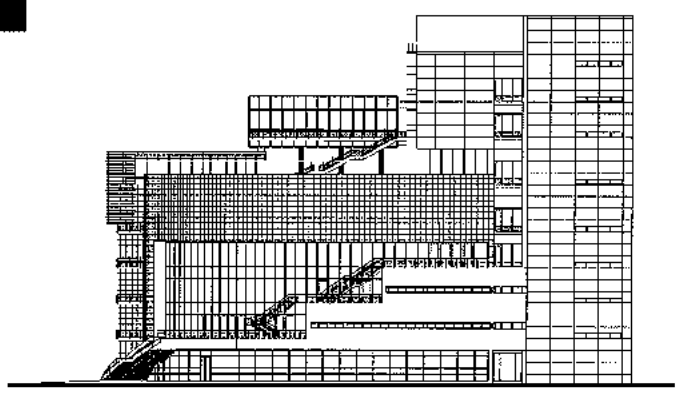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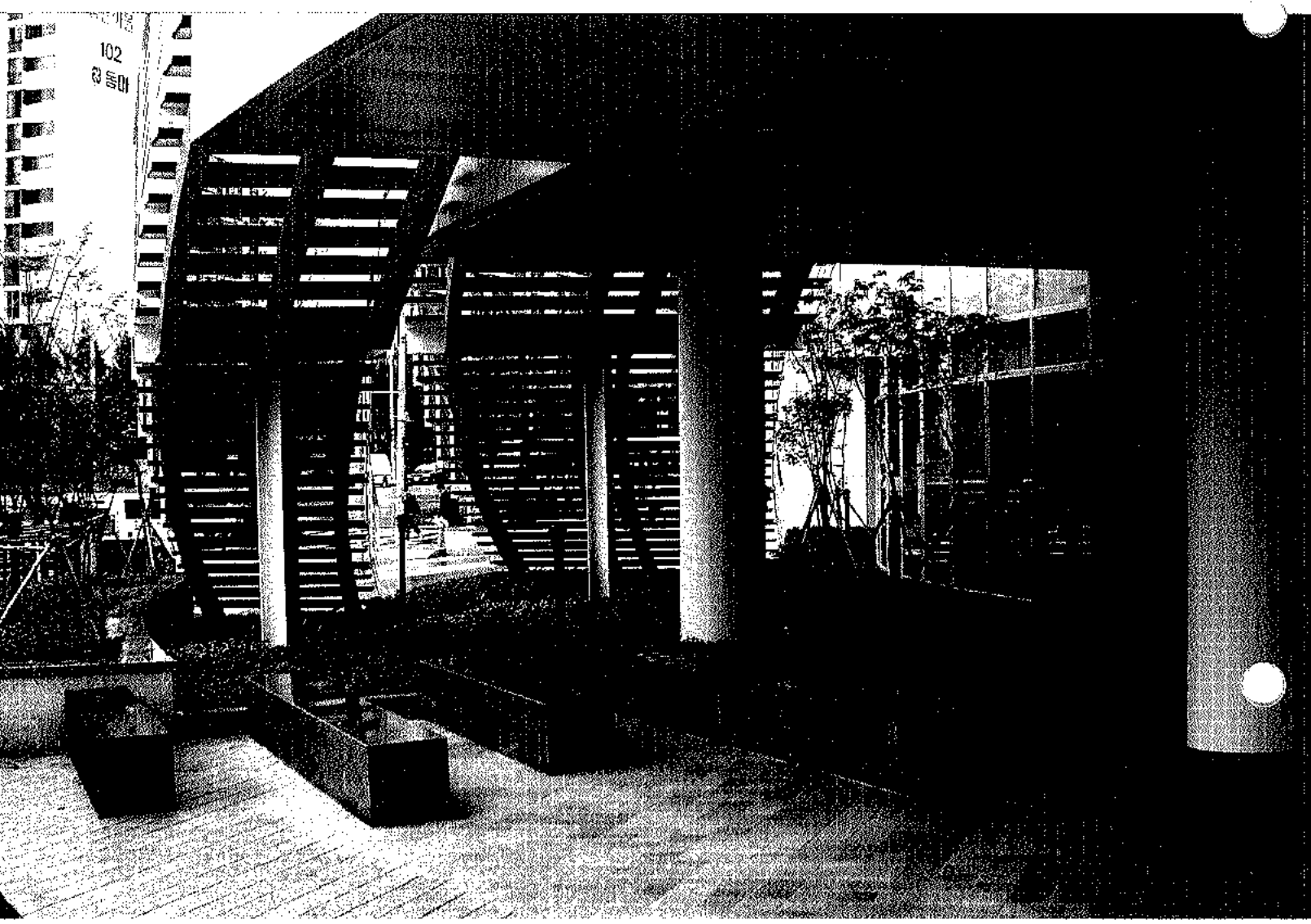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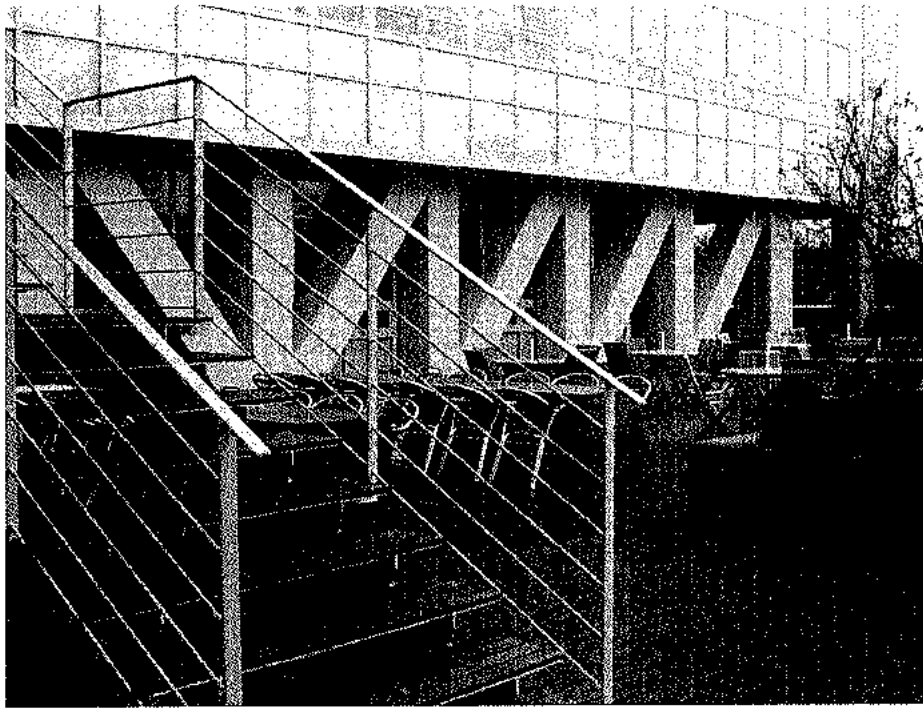

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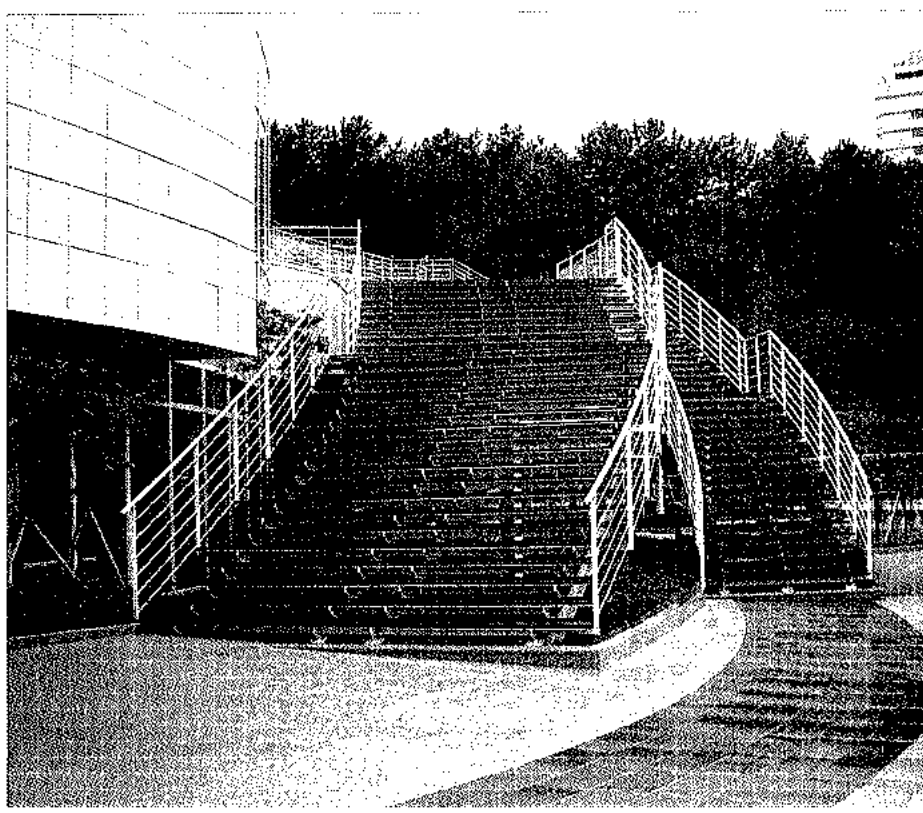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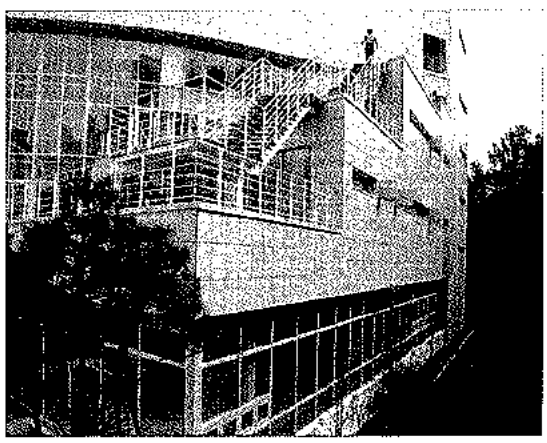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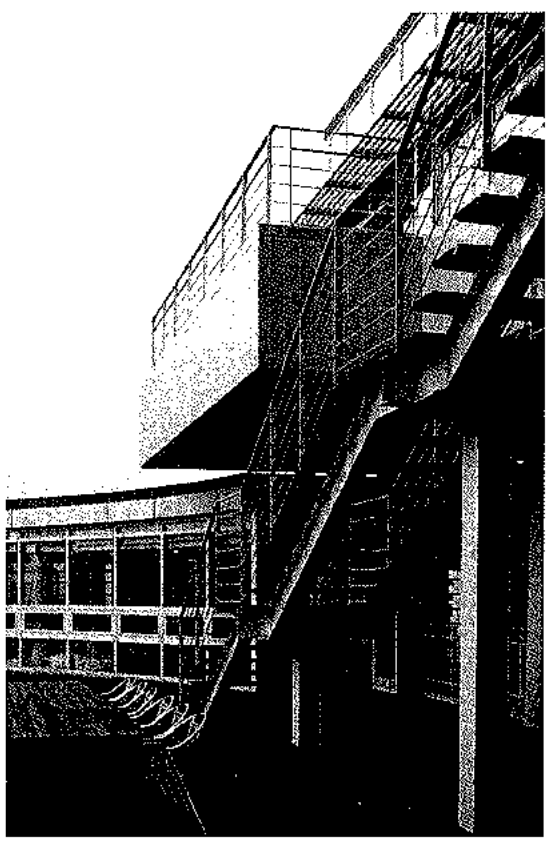

01_ 복도
02_ 자료보관실
03_ 놀이방
04_ 연구실
05_ 회의장
06_ 발코니석
07_ 시청각실
08_ 세미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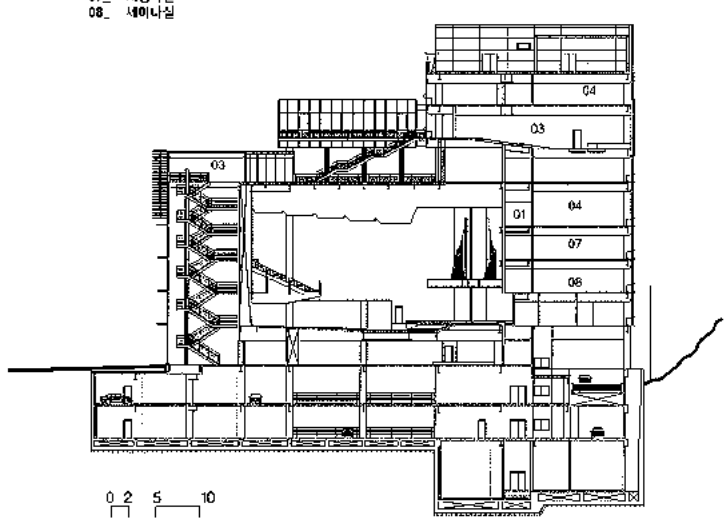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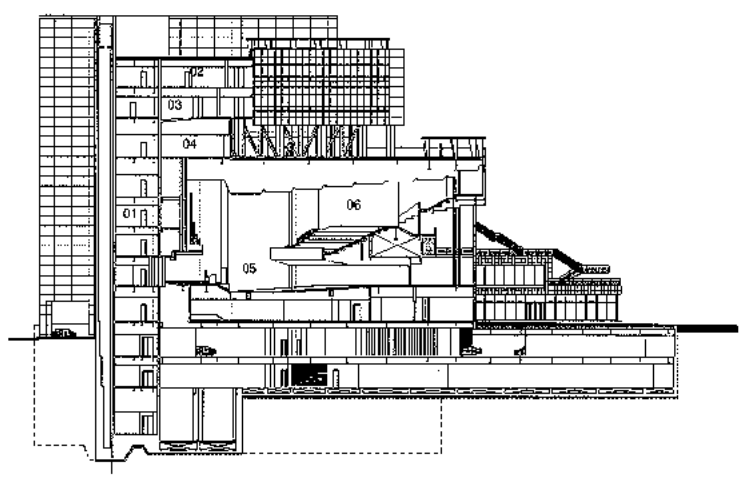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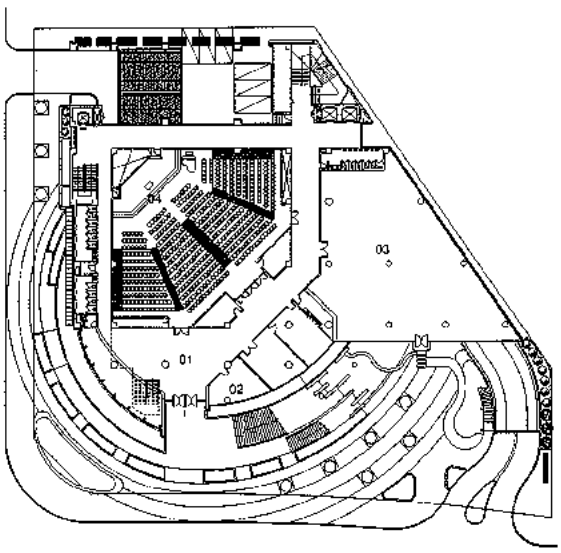

01_ 홀
02_ 관리실
03_ 카페테리아
04_ 중예배실
05_ 본당
06_ 자모실
07_ 유치부
08_ 식당
09_ 목재데크
10_ 시청각실
11_ 휴게공간
12_ 공부실
13_ 상담실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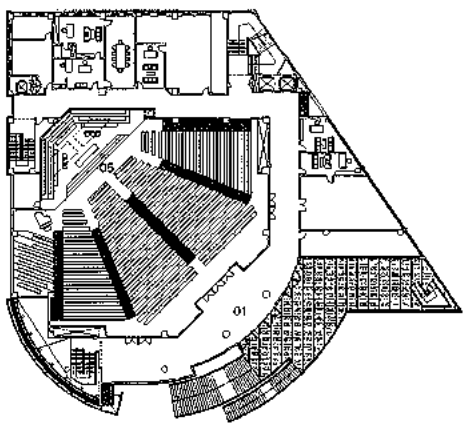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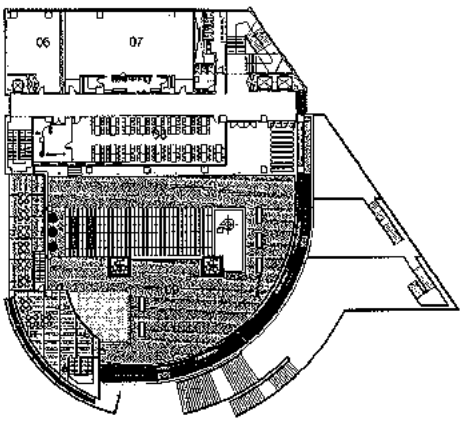

6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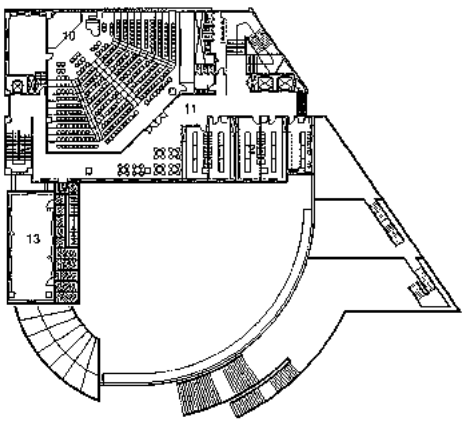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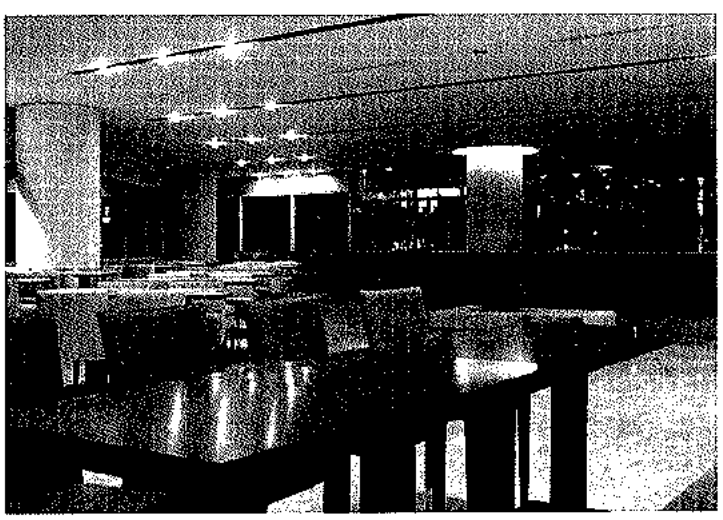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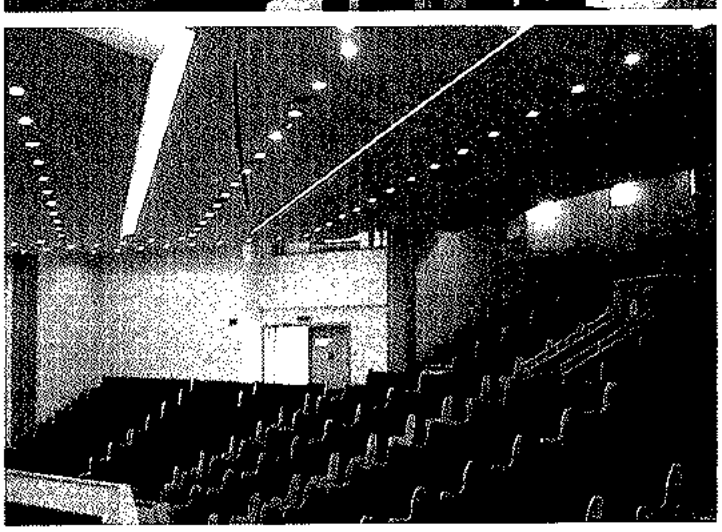

문철수 / 두양건축사사무소
by Moon Chul-Soo

함양장례식장
Hamyang Funeral Parlor

●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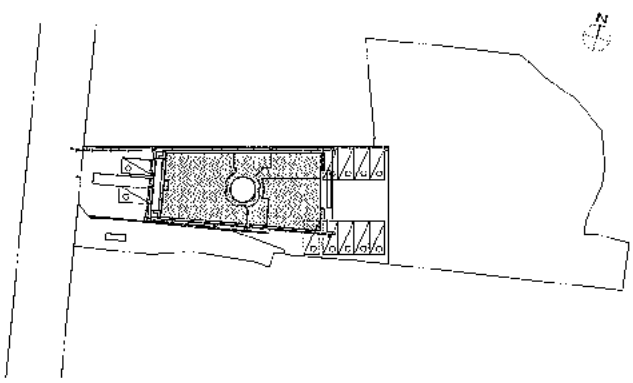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남도 함양군 용평리 613-18 외 3필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일반상업지역
용 도	의료시설
대지면적	619.00㎡
건축면적	252.43㎡
연 면 적	438.32㎡
건 폐 율	40.78%
용 적 률	70.81%
규 모	지상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6"블록 치장쌓기, 16㎜ 컬러 복층유리
내부마감	벽-6"블록 치장쌓기/ 천장- 석고보드/ 바닥- 석재 타일
설계담당	임선주
시 공	이충훈
사 진	건축사사무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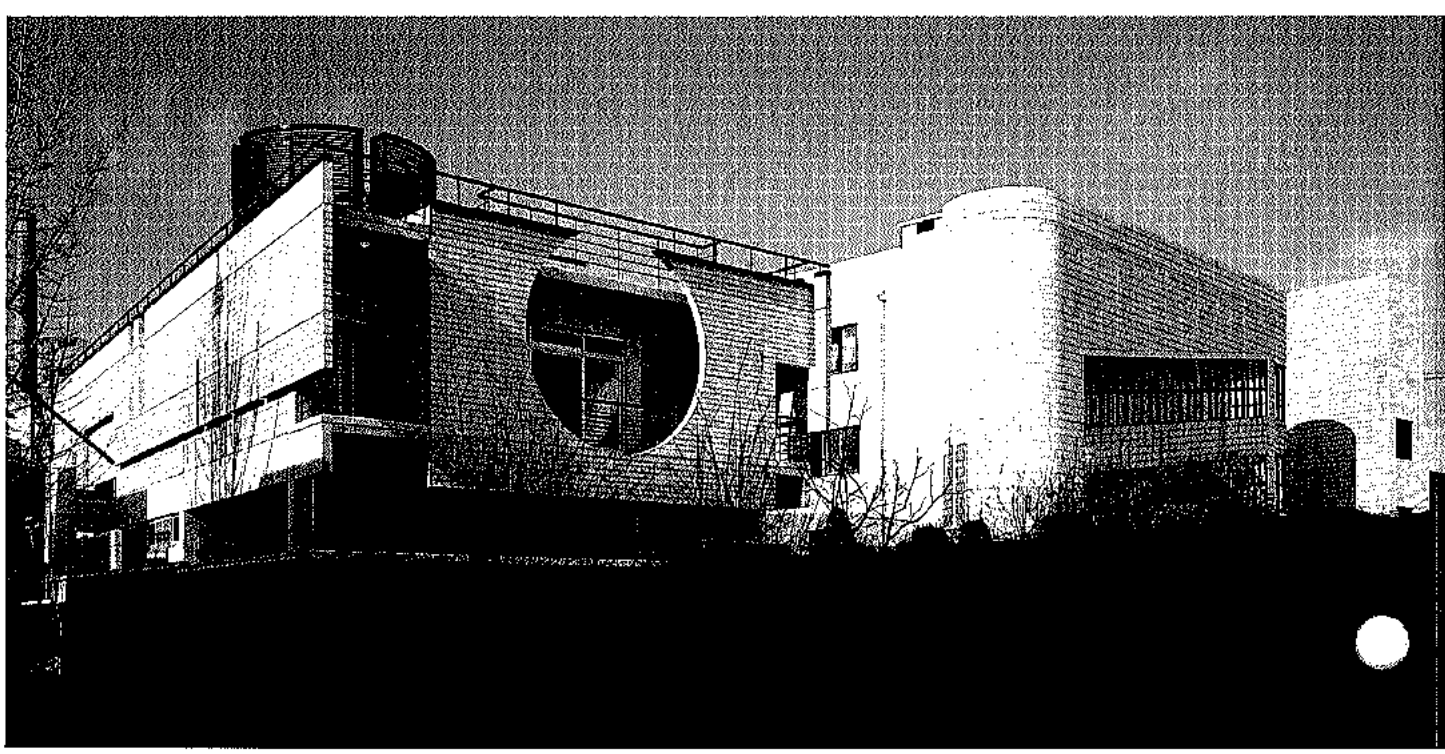

序.

하늘과 땅이 열리기 전, 그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다. 이윽고 세상이 생겨나면서 시간도 같이 열리게 되었다. 태초 이전 뒤범벅의 상태를 카오스(chaos, 혼돈)라 하고, 하늘과 땅과 세월이 생기고 질서 잡힌 상태를 코스모스(cosmos, 질서)라 한다.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하지만 아득한 옛날 북방 삼림지대에서 남하한 우리 민족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지 않는다. 원초적 관념 속에서 인간 존재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물이며, 죽음은 육체라고 하는 순간적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공간적 수단을 벗어나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에게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오히려 존재가 원래 있어 왔던 태초 이전의 시간과 공간이 없었던 상태로의 회귀를 뜻한다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혼은 영원한 것이며, 카오스 세계에서 현실 세상은 반복, 순환하는 영원 불변의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일컬어 '돌아간다'라고 말한다. 제사를 지내는 것도, 무당이 공수를 하는 것도, 돌아간 이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연도(煉禱)라는 것도 존재의 영원성을 전제한다. 인간은 죽으면 '하늘(카오스의 세계, 공간과 시간이전의 영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그 영원 존재에 대한 표상은 圓形으로 나타났다. 원은 영원함을 의미한다. 완벽함이란 영원하다는 것과 함께 현실세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원은 영원함을 의미하고, 또한 영원함은 관념 속의 하늘의 의미와 통한다. 그래서 우리는 天圓地方이라고 했다.

영원으로 향하는 공간.

산 사람은 땅위를 수평적으로 다닌다. 영혼은 존재 이전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래도 '떠' 다닌다. 장례식장은 살았던 사람을 살아 있었던 과정의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그래서 수평적 현실 동선과 수직적 영혼 동선이 만나는 곳이어야 한다.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은 산 사람에게는 땅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서 있는 현실로 보여주었고, 육체가 소멸한 죽은 영혼에게는 하늘로 향하는 통로로 현실 공간 위에 떠 있게 했다. 두 개 동선이 교차하는 장소가 되는 로툰다 홀은 그래서 지상에서의 마지막 작별을 의미한다. 외부에서 접근하는 참배객이 대지로 진입하는 곳에서부터 지면을 떠나 조금 떠 있는 진입참도를 통해 접근한다. 내부에 접어들면 하늘과 땅의 동선이 만나는 로툰다 홀을 향해 점차 넓어지는 통로를 지난다. 로툰다에 서면 하늘의 존재를 느낀다. 여기서 죽음에 대한 의미를 되새긴다. 계속 이어지는 계단은 나선형의 접근을 통해 2층 공간으로 인도된다. 2층에 서면 땅의 아래 공간과 하늘의 위 공간 경계선에 서게 된다. 예식실은 이제 살았던 여정이 영원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結.

장례식장은 이 세상을 살았던 한 인간을 마지막으로 떠나 보내는 장소이다. 그래서 누구나 그곳에 서면, 인간과 그 인생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저승으로 향하는, 지금 까지 살았던 한 영혼의 품위와 인간의 마지막(그래서 더 중요한) 존엄을 어루만져 주는 곳, 그곳이 장례식장이며, 건축가는 남은 사람과 떠나는 영혼의 그 깊은 인연의 아름다운 슬픔을 어루만져 주는 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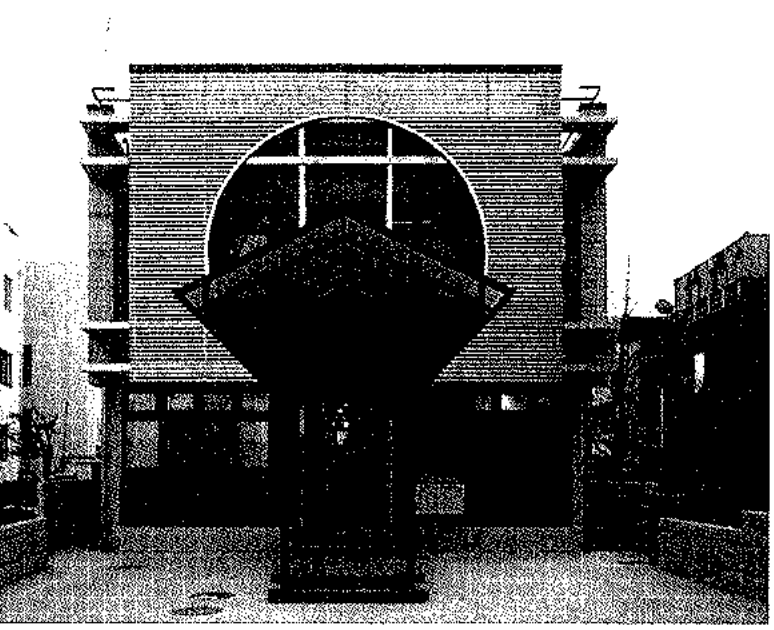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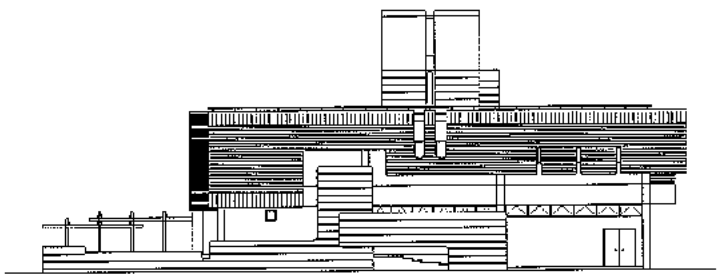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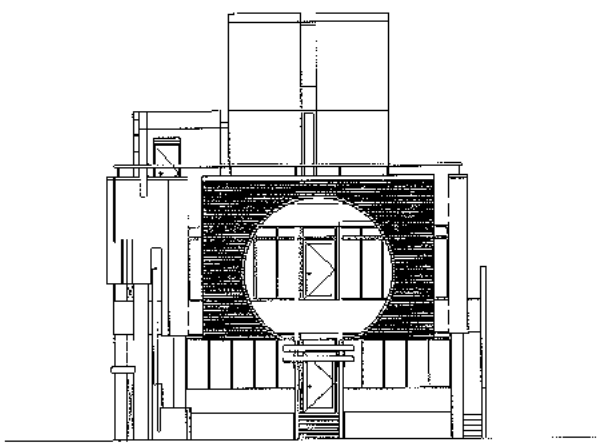

정면도

01_ 전대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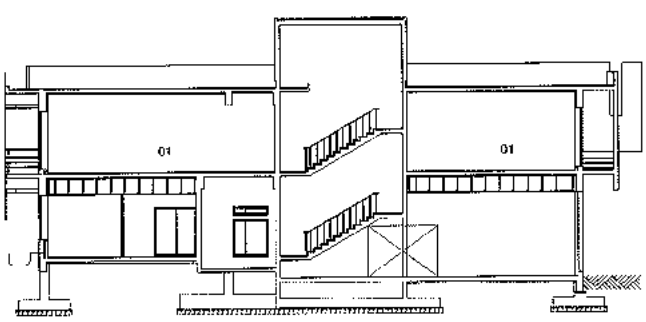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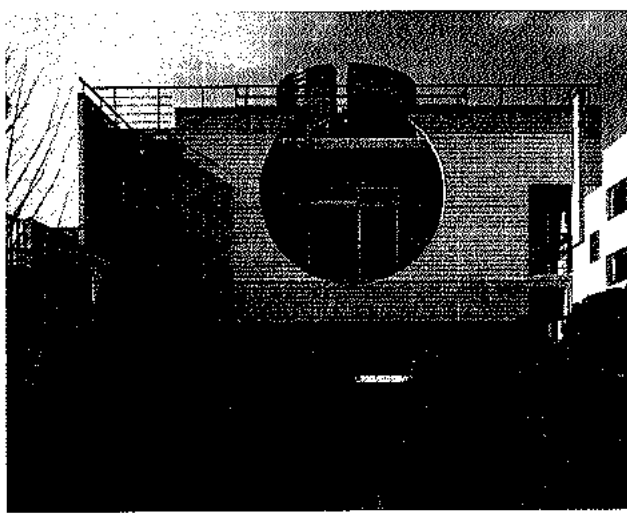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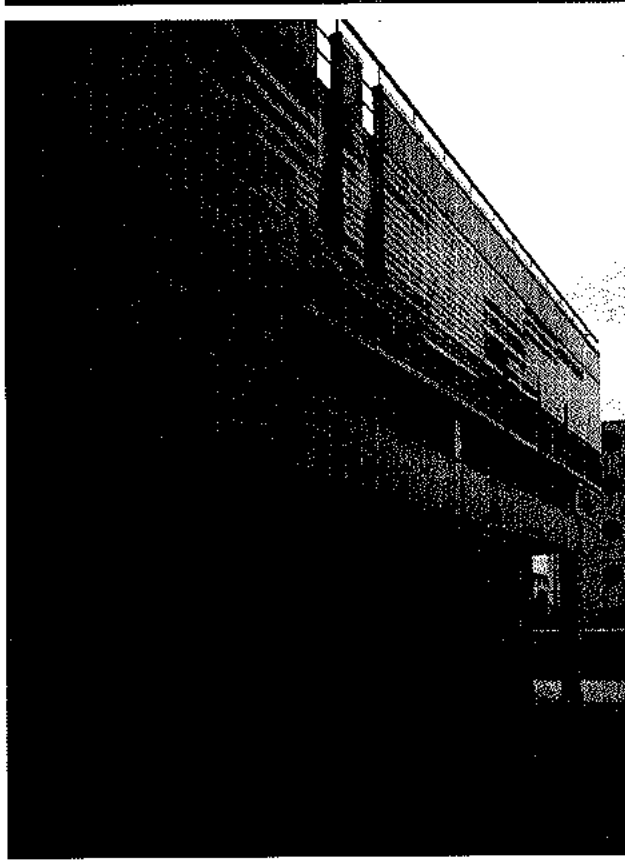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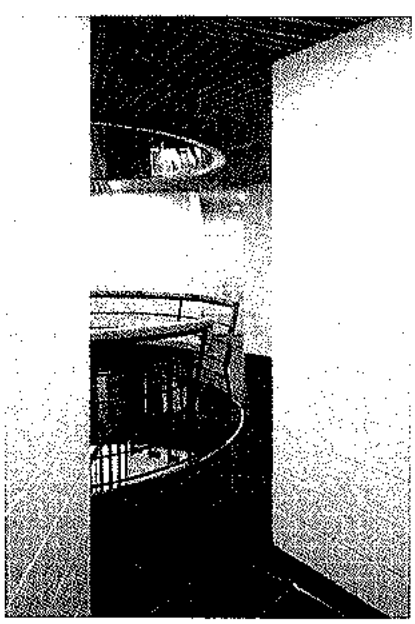

01 사무실
02 판매장
03 기계실
04 현관
05 연습실
06 주방
07 식당
08 접대실
09_ 예식실
10_ 수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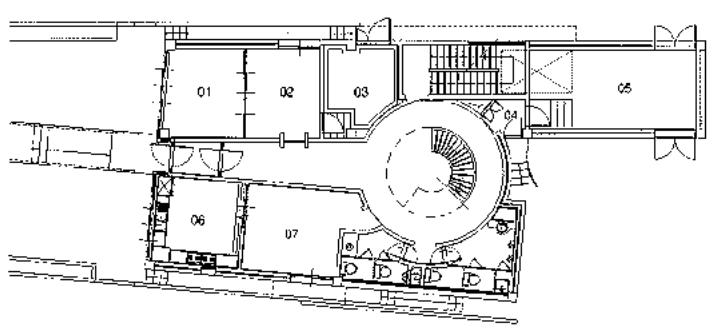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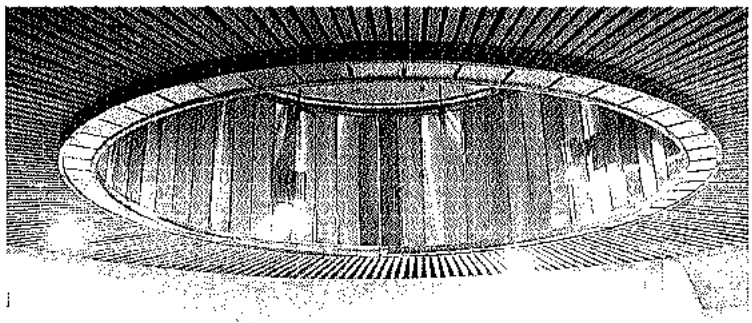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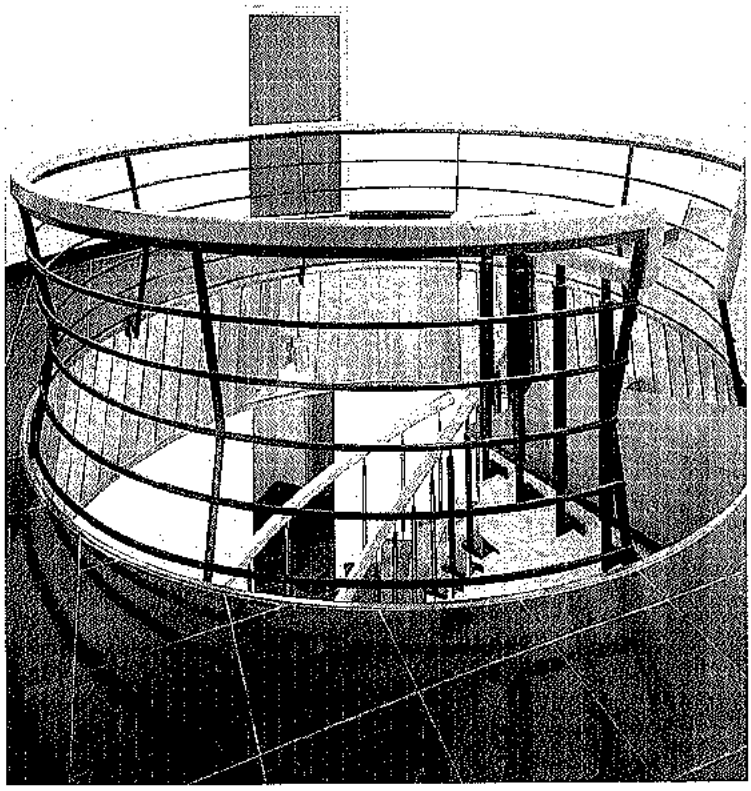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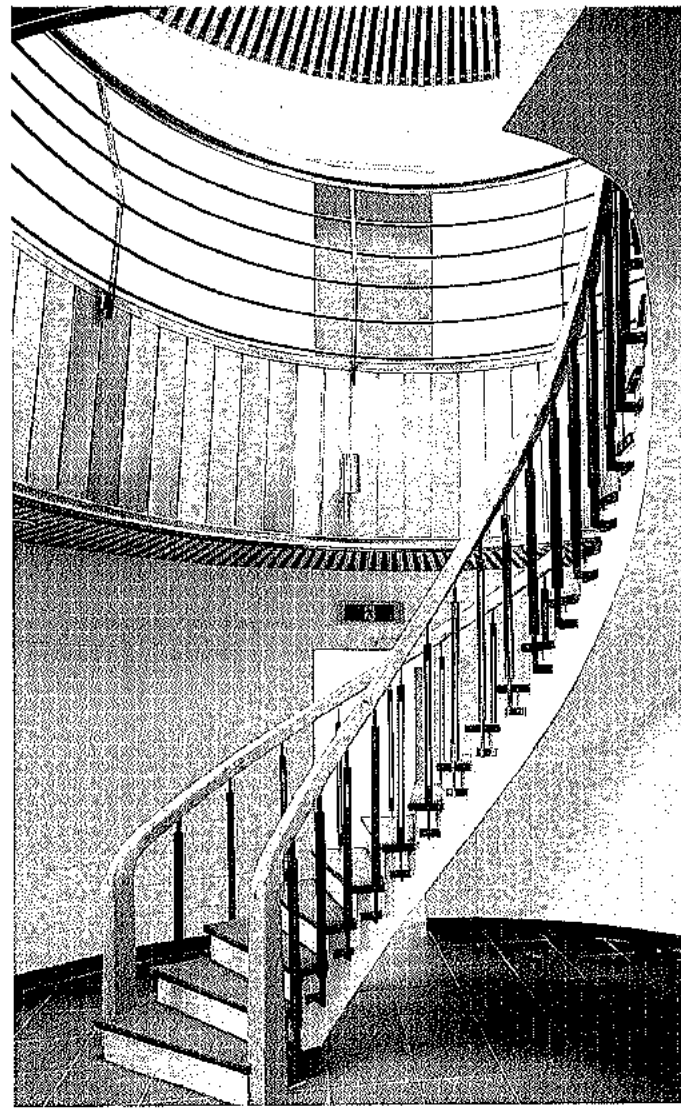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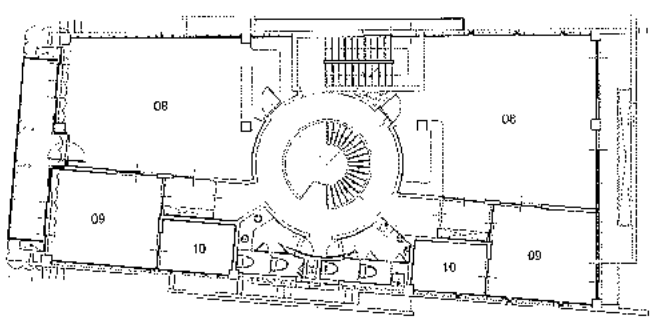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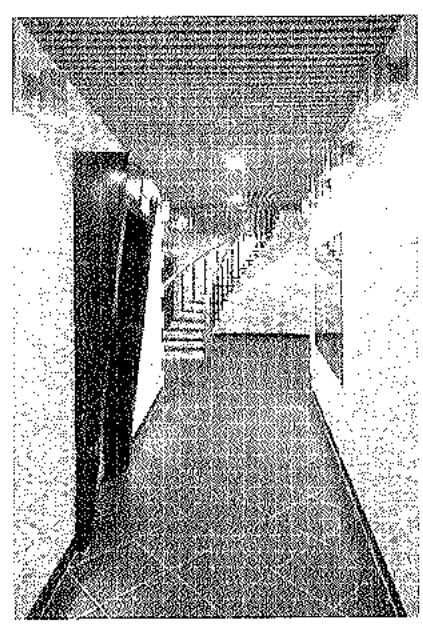

김종복 / (주)유일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by Kim Jong-Bok

영암교회

Young-am Chur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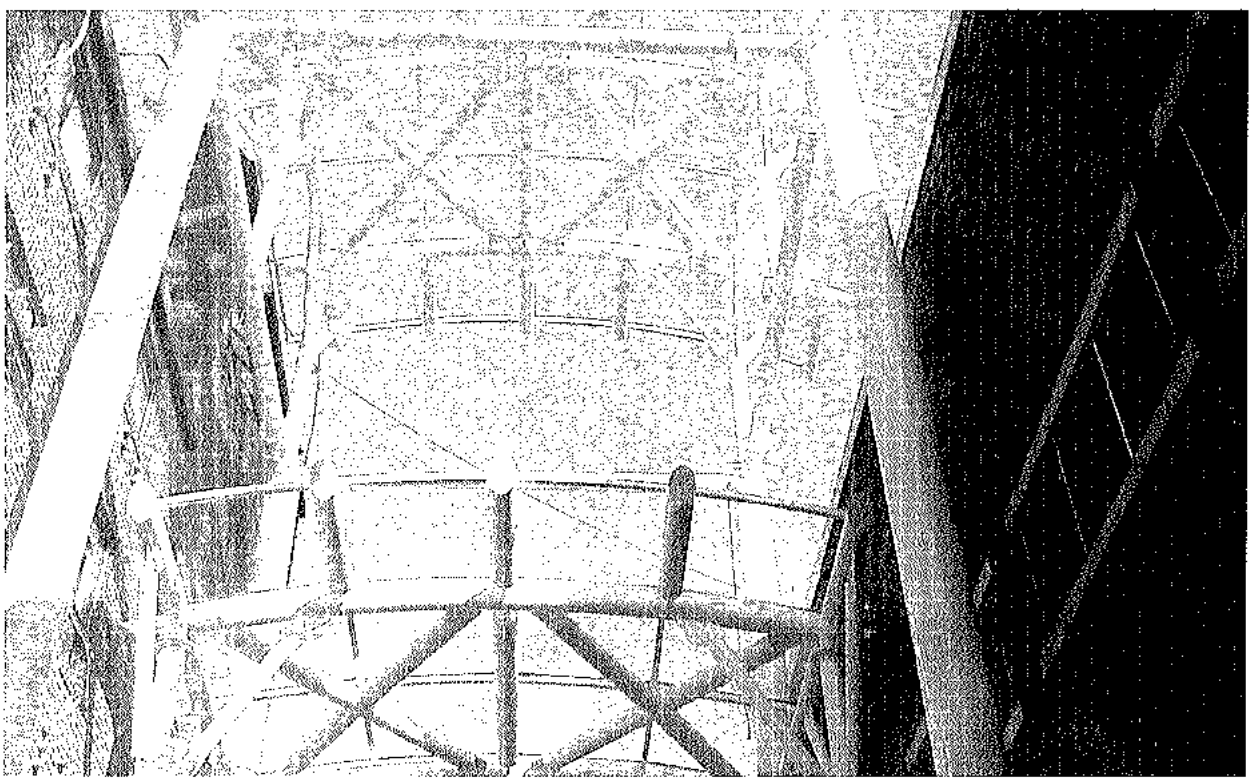

빛과 생명 그리고 건축역사를 창출.....

빛의 공간에 역사를 기득히!

영암 교회는 고 임옥 원로 목사님의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깊은 뜻이 함유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로 천장과 내벽의 전 후 양측 4면 창문에 오색의 성화 스테인드 글라스의 문양과 벽이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어 손을 대는 데는 매우 조심스러운 건물이었다.

1차는 피아건축의 김형석 건축사의 설계작품이고, 2차는 탑건축의 최영집 건축사의 설계작품으로 건축되어 있었다.

건축시에도 훌륭한 교회 건물의 설계를 위하여 많은 교회를 탐방하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방문하여 조사를 해서 디자인설계를 했다고 전하고 있다.

특별히 이 교회는 우리 가족과 뜻 깊은 연관으로 이어가고 있다.

필자가 결혼하여 처음 집을 사서 이사 간 곳이 바로 현재의 교회 대지의 일부분이다. 그리고 아들 셋이 다 이곳에서 출생하였고, 큰 아들이 이번에 이곳에서 결혼하여 집사 직분을 받았고, 우리 아내가 권사, 그리고 필자가 장로로 피택되는 은혜를 입었으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다. 그리고 또 증축 설계를 수행하게 되어 오랜 세월동안 교회건물이 역사를 지킨다 생각하면 더더욱 뜻이 깊다 하겠다.

2001년 6월경 교회로부터 50주년 기념 행사로 증축과 보수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설계 의뢰가 왔다. 교회설계는 처음으로 전연 아는 것이 없었으나 우리교회라는 생각으로 직접 처음부터 손을 대기 시작하였다.

현 건물이 본당과 교육관 건물로 분리되어 있어 그 중간 부분 6m폭의 간격에 지하 2개층을 건설하고 특히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였다. 우선 전후면의 고저차이가 8m 정도 되어서 지하 2개층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을 어떻게 처리할것인가를 고민 끝에 자연 환기 통풍문제를 생각해서 열린공간으로 처리하기로 하였다.

우선 두 건물을 덮어 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면 두건물 보다 높은 6층의 높이로 지붕을 유리로 처리하여 자연채광을 인입시키고, 모양을 부드럽고 미려하도록 곡선처리 하였다.

그리고 지하 층을 핏트 처리하여 어둡지 않도록 자연채광을 인입 시키고 그곳에 대나무를 심기로 하는 계획을 세웠다.

1차 계획을 하는 중 3-D 투시도를 작업중 교회의 장로님 한분이 회사를 방문하시어 기본 설명과 함께 3-D 투시도를 작업 중이어서 작업을 직접 보시도록 안내하였고, 별 말씀없이 가신 뒤 E-mail을 열어보도록 하여, 내가 그림을 보는 순간 나는 너무 황홀했습니다 라고 쓰셨다.

그러나 문제는 그후에 생기기 시작하였다. 왜 실 공간이 없는 지붕을 씌워야 하느냐 지붕 존치 문제로 교회의 당회는 1년 동안을 갑론 을박하며 논쟁이 계속되었다. 지붕이 없으면 건물을 짓는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조언으로 원설계 대로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긴 논쟁은 끝이 났다.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헌금으로 공사를 해야 되므로 많은 의견을 집약해야 했었는데 매우 힘든 과정을 겪었으며, 진짜 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의견을 통합하여 건설을 추진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요구와 설득이 필요했다.

원형 기둥에 원형 파이프 지붕구조로 투명유리로 지붕을 덮어 한국 전통 건축의 서까래 형상의 이미지로 처리하고, 천장의 모양을 어떻게 해야지 예쁜 모양을 할 수 있을까? 하고 한동안 고민하였다. 특히 시양 전통건축의 후라잉 아치의 생각이 떠올라 피이프를 곡선으로 구부려 트러스를 대각으로 보내자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기쁘고 뿌듯하였다.

구조 설계자의 이해와 의지 및 디자인의 의지 등이 또한 중요하다. 다행이 믿음이 독실한 구조사여서 열심히 협력하였다.

지붕 곡선의 유리를 시공하는 문제로 고민하였으나 철골회사에서 훌륭한 디테일로 잘 처리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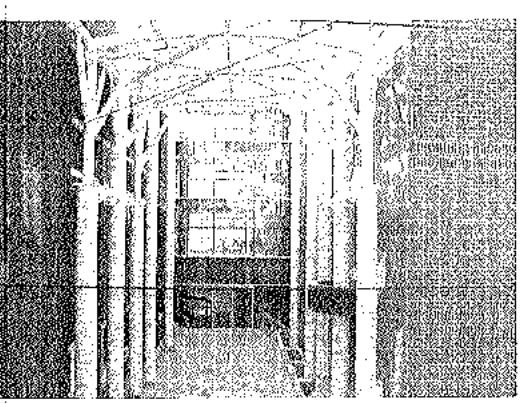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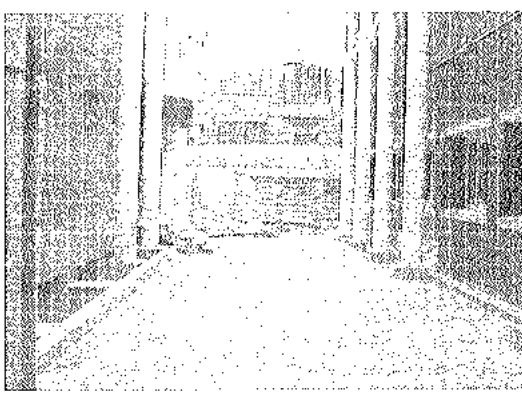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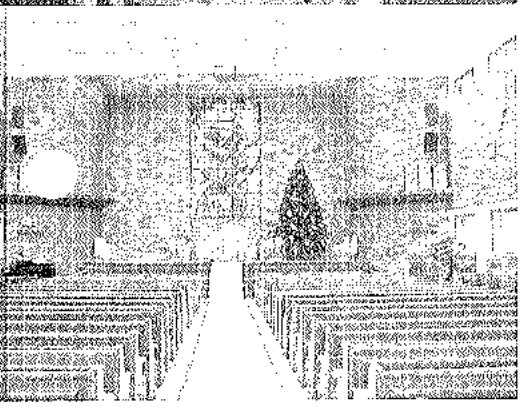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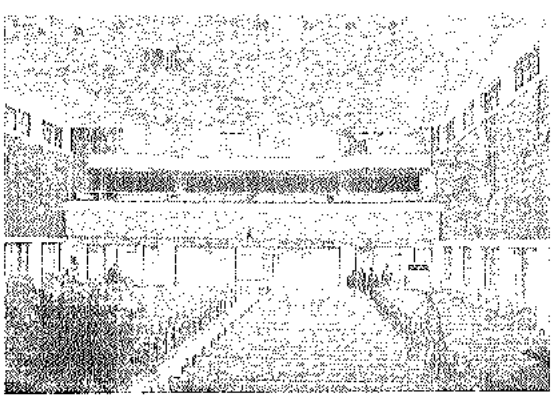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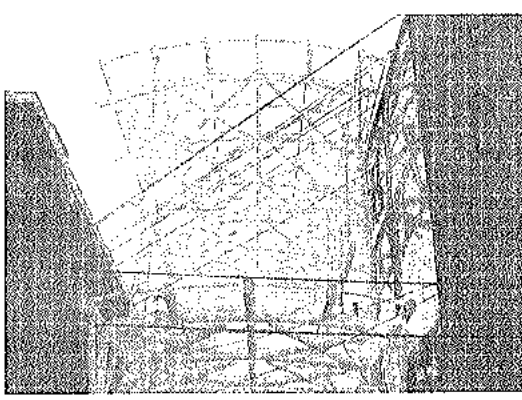

작품은 작가 한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고 아니었다. 건축주의 믿고 맡기는 신뢰성과 작가의 오랜 경험과 시공성의 이해에서 나오는 훌륭한 창직 아이디어와 구조기술사의 협조의지 그리고 실시도면을 그리는 동료들의 성의와 지혜,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작품성을 위한 마음으로 시공하겠다

는 의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준공을 2개월 정도 앞두고 있으며, Open 부의 45cm Dia 원형기둥은 그렇게 보기가 좋고 부드럽다. 매일 보고 또보고 싶은 충동이다.

지붕의 곡선이 부드러워서 보기가 좋고, 지붕의 Pipe로서 석가래 전통 건축의 미를 추구하였다. 그러나 만족하지 못한 이 마음의 한 구석이 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크고, 육의 감각보다는 주신 영의 능력기준으로 분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건축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풍토에서 건축헌금을 헌납해주신 우리 교회 전 성도님들께와 성심성의를 다하여 교회건축에 봉사하신 장로님들, 교회 목사님, 그리고 20여년전 심혈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하시고 특히 성전에 그 의미를 부여하여 주시고 타계하신 임옥 원로 목사님과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특히 건축을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건축문화 창달 역사에 대하여 좋은 이해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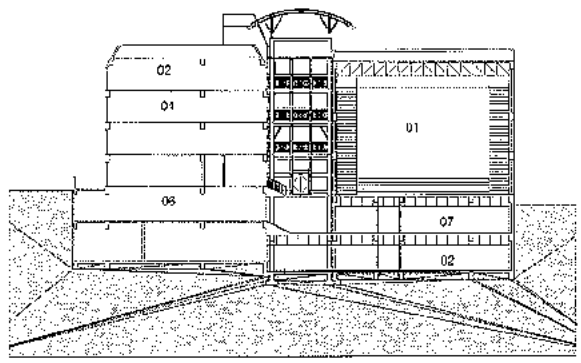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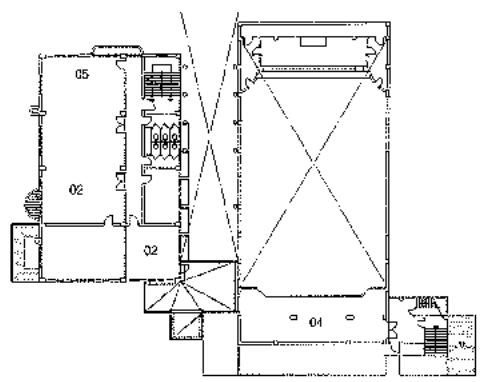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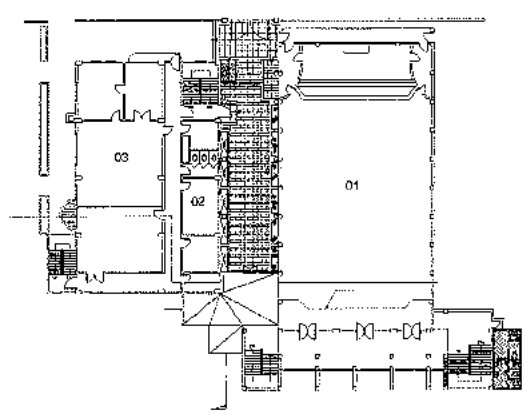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01_ 본당
02_ 사무실
03_ 놀이방
04_ 예배실
05_ 준비실
06_ 식당
07_ 소예배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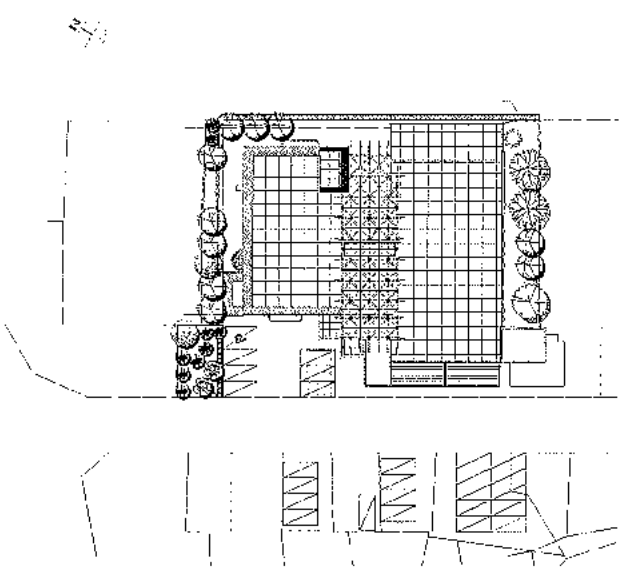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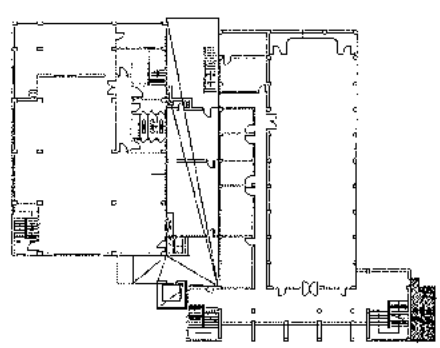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성전과 그 의미

(성전봉헌에 즈음하여)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영원히 임재하심을, 우리의 시각을 통해 기억하고, 날마다 출입하며 그와 동행케 하기 위한 상징으로 모세를 통해 그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 성막 주위에 모일 때마다 새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얻었고 하나님께 친근감을 갖고, 자신들이 홀로 걷고 있지 않는 확실한 증거를 얻었던 것이다.

다음 단계로 그들이 유랑의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안정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최선을 다한 거룩한 성전을 건축케 하고, 온 이스라엘의 여호와에의 구심점을 삼아, 하나님께서 명령을 듣고 이를 좇아 살게하셨다.

이렇게 성전을 중심한 선민의 성별 훈련의 때가 차매, 하나님은 드디어 인간 가운데 친히 임재하실 성전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음으로 우리안에 하나님의 신이 계실, 성전을 마련하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로 쌓으신 십자가 제단 앞에 믿음으로, 감사와 회개, 헌신과 희생, 사랑과 봉사의 제물을 바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그를 모시고, 그와 함께 성별의 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펴내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전의 귀한 뜻을 실현케 하기 위하여 인간 감각안에 하나의 상징으로 이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기에 온 교우는 건축에 착수하면서, 매우 값진 향유의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에게 붓던 한 여자의 믿음과 심정으로 최대의 정성과 성의를 기울여, 어떤 이는 집을 팔아 헌금하였고, 어떤 이는 집을 전세놓아 바쳤으며, 혹은 사개년 생활비를, 또는 집값의 십일조의 기준 등등으로 옥합을 깨쳐 이 제단에 붓게 된 것이다. 이는 실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었음을 온 교우는 감격하게 실감하였다.

왜 그렇게 값진 것을 허비하느냐고, 도리어 그것을 삼백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를 구제함이 더욱 유익했을 것이라고 그 여자를 힐책하던 가룟 유다의 가치관을 못마땅하게 책망하신 예수님의 가치관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 옥합을 깨는 일같이 최고의 가치가 없음을 알고 주의 특별하신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정성과 열의를 다하여 겸손히 이 전을 건축한 것이다.

성전의 구조에 대하여는 이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고백과 성자 예수의 대속적 수난에 대한 깊은 이해와 믿음 성령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에의 제시인 성경에 대한 묵상을 돕기 위하여 구상하였다.

① 강대 : 사도신경의 내용을 따라 삼위일체 하나님에 신앙고백을 상징화 하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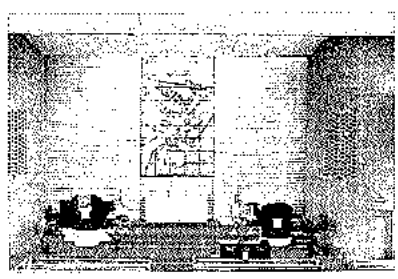

② 내벽 : 성자 예수의 수난 팔처(八處)를 (하반신만) 벽돌조각으로 표현하였으며 (작가 정관모 성신여대 은퇴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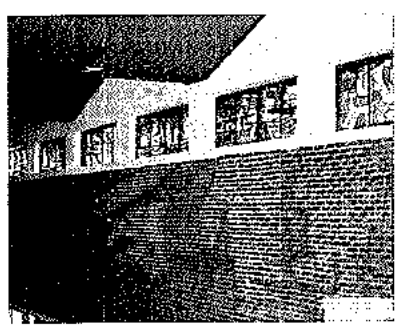

③ 창문 : 성령으로 영감된 예수에의 제시인 성경을 24주제로 나누어 색유리창으로 상징화 하였고

천지창조

인간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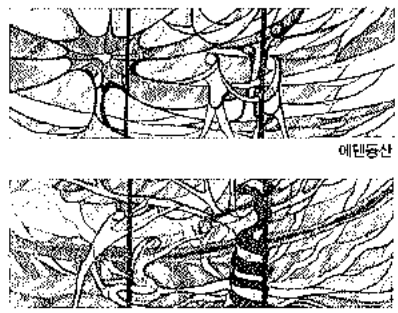

에덴동산

인간의 타락

에덴에서의 추방

아벨의 제사

④ 천정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늘을, 상징화하여 첩첩히 쌓여있는 구름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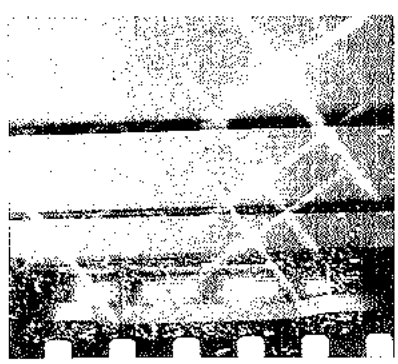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기도중에 주신생각을 따라, 성전을 이렇게 지어 봉헌할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온 교우들과 함께 세세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고 임옥 원로목사님)

좌 담

• 일시 : 2003년 12월 23일 14시
• 장소 : 우리협회 회의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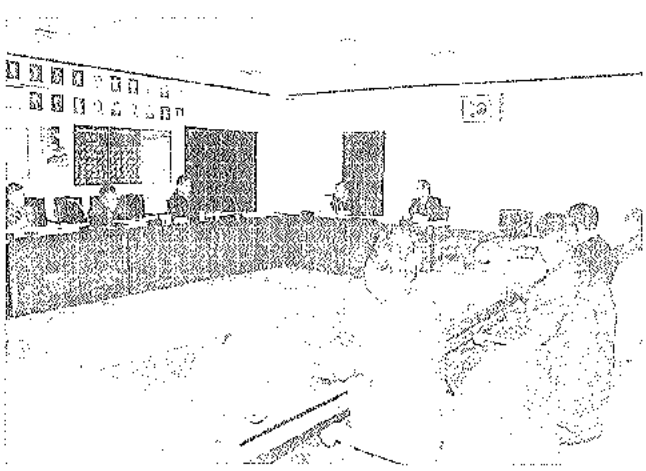

현재 건축사사무소는 지난 IMF때보다 더한 불경기 속에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와중에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가 2003년 말부터 진행이 되어 온 바 우리 모두 이에 대하여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좌담회는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에 대한 우리 협회차원의 의견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으며, 무려 5시간여 동안 문제해결을 위한 패널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고가며 열띤 토론의 장이 되었다.

이번 좌담회는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과 홍익대학교 공청회를 통한 설계감리에 대한 건교부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문제 도출 후 의견을 정리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편집자 주)

설계자가 감리해야 마땅하나 분리한다해도 일정규모 이하로
앞으로 의원입법 등은 총의에 따라 본협회가 주도해야
보고서의 허가단계에서 실시도면과 내역서까지 첨부하는 것은 현행 법 역행하는 일

장양순 : 우리는 지금 2003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감리방안 법개정 문제에 초미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모든 것이 이에 상응하게 변해야 합니다. 감리문제는 현재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2003년 말에는 건교부의 용역에 의해서 홍익대학교에서 설계감리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회원들은 시·도회장들의 공식적인 건의서나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의견들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에 본지에서는 회원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수렴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좌담회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정리하는 의미에서 김기철 위원장께서 그동안 우리 감리가 어떻게 연구되어왔는지 설명을 해주시죠.

김기철 : 1996년 5월 설계도서 작성기준, 공사감리 세부기준과 건축설계계약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 후 보수기준이 없어진 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02년 초에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바로 연이어 2003년 1월 설계도서 작성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건축법 19조에 의해서 의무사항입니다. 96년도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기초로 해서 약간 보완하는 형식이었고, 이어 건축공사 감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협회에서 작업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여의 치가 않았습니다. 2002년 9월경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설계·감리 기술진흥에 관한 연구프로젝트가 나와 제안설명 후 통과가 되어 2002년 12월말 계약을 하고 연구업무수행 중 2003년 3월부터 건설교통평가원이 생겼고, 국토연구원이나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던 모든 연구용역의 발주 내지 평가를 관장하게 됐습니다. 홍익대 대학원장 김억 교수 그리고 서울행정대학원 초빙교수 변영진 前 서울시국장과 의논한 결과 산·학·관의 협동으로 같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사감리문제, 특히 소형공사감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도출이 되었고,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할 것인지에 대한 해결방식 위주의 여러 안들을 종합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설계와 특히 공사감리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인 접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연구 제안서를 낼 때 토목분야와 구분을 해서 건축공사에 부수되는 토목, 전기, 소방, 기계, 통신 등 건축물에 대한 것만 제한을 두고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토목공사 위주로 해서 건기법이나 공사감리도 그쪽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강했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나 외국어로 번역할 수 없는 용어가 이 공사감리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감독기능과 관리기능 그리고 경찰기능까지 포함되고 있는 이 감리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서로의 혼란을 막을 수 있겠는가. 건축사뿐만이 아니라 일반국민들 그리고 시공자까지 감리가 만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건축사들이 감리가 만능인 것처럼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리의 중요업무는 첫 번째가 감독기능이고 또 감리자체가 허가권자의 고유기능이 아니냐는 문제는 감리제도가 도입되어 40년이 지난 지금 논란할 필요는 없고, 허가권자가 최소한 감독 내지는 감시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주로 구조안전뿐만이 아니라 사용상 안전에서의 최소한도 기준부분을 떼어 낸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냐, 공사감리가 잘못되어 시공자가 시공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일부 중소시공회사들은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원인은 시공현장의 시공기술을 협의할 기술자가 없다는 문제, 심지어 시공현장의 기술자파견 같은 것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만 공사비에 따라 규정하고 있을 뿐, 건축공사장에서의 관리라든지 시공자가 관리해야 될 사항은 건축뿐만이 아니라 토목·전기·소방 기타 분야까지도 있고, 하청을 주었을 때는 하청업자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술적 사항에 대한 어떤 주체는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사감리는 건축법에서 설계도서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 시 규제완화차원에서 설계도서를 간략하게 기본설계도면이라고 하는 각층 평면도와 입면도 두면, 단면도 두면, 배치도 정도 수준으로 하다보니 이것으로 공사까지 하는 상황이 되어왔습니다. 착공 때는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검증된 바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또 다른 도면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설계비 덤핑이라든지 여러 문제들과 연계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 개인적으로 지금과 같은 설계도면을 내서 허가를 받는다면 배치도 한 장하고 허가서류만 넣으면 충분히 허가를 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연구한 결과로 설계도서가 불완전했을 때 감리업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서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할 것이냐. 물론 건축사업무 및 설계대가 기준에서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있는 기본설계 대신 중간설계를 넣고, 우리가 일부에서 흔히들 설계감리라고 합니다만 설계자의 감리에 대한 대비책으로 사후설계관리가 업무범위기준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 공사감리업무 중에서 관에 보고 내지는 법적 책임이 가장 많은 안전에 대한 중간검사 등의 검사부분을 허가권자들이 직접

수행을 하고, 허가권자들이 수행을 못할 때는 건축사협회 등에 맡겨도 되고, 2003년 4월경 전문감리까지를 포함해서 감사하는 감찰회사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시공검사는 건축법에 의한 시공검사회사를 만들어서 수행하고 책임 검사자들은 최소한 10년, 15년 이상의 경력 있는 건축사를 원칙으로 하고 건축기술사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약간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주장하던 소형건설업 면허는 건설협회에서는 660㎡미만이라도 3층 이상일 때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하게끔 해달라고 합니다. 면허를 가지고 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의 기술자를 배치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 공사관리자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기술적 사항에 시공자 본인이 하든 시공자를 대신하든 그 사항을 모두 공사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물질적인 책임은 시공자는 물론 건축주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일반건설업자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진다면 공사감리의 문제가 됐던 책임부분은 상당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 공사감리 부분에서 시공자들이 혼돈을 하고 있는 공사관리부분과 허가권자가 수행해야 될 검사부분을 떼어낸 나머지를 공사감독이라고 해서 외국사람들의 Supervision을 하든 Inspection을 계약과도 연계를 시키자하는 의미에서 공사감리를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주 초까지 연구용역 보고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연구용역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서 11월 말에 공청회 형식을 밟은 것입니다. 문제점 내지 대안이 있으시면 얘기해주시고 더 설명이 필요하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장양순 : 국회입법에 대한 사안은 박순종 회장께서 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해서 골자를 말씀해주시죠.

박순종 :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은 그 동안 인천건축사회에서 서상섭 의원에게 의원입법을 노력해오던 중, 지난 2003년 4월말 워크샵 때 13개 시·도회장단이 써준 건의서에 의해 의원 입법된 것입니다. 골자는 설계와 감리 분리입니다. 감리 속에 있는 업무가 조사검사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하고, 타 건축사가 건축주한테 직접 감리비를 받거나 하면 또다시 설계자 같이 예속되므로, 대규모 건축물은 전문감리회사에 대해 감리자 지정권과 감리비 징수권을 허가권자가 행사하듯이 소규모건축물도 그렇게 해달라 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도회장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건축법 모법에 '조례로 감리자 지정과 징수권을 위임한다'라고 써준 것을 박순종이 없앴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모법에서 시행령에 위임을 해야 되고, 다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야 되고, 다시 시행규칙에서 시도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순서이고 법리인데, 건축법 모법에 '조례로 위임한다'라고 써줬는데 없앴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들 때 건교부를 쫓아 가고, 시조례를 만들 때는 각 시·도회장들이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법리를 모르고 오해들을 하며 이것을 시공기술사한테 떼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하는 그런 우려 섞인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건축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어디를 봐도 "설계의도 반영이라든지 건축주를 위해서 시공자를 감독해 주는 것이 감리다"라는 법 조항 및 정의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마치 '건축 학문상의 감리가 건축법에 있는 것 인양 착각을 해서', '그것을 왜 떼어 주냐'라고 반대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건축법에 '설계의도 반영, 건축주를 위해 시공자 감독이 감리'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행 건축법의 감리정의를 보십시오. 품질관리, 안전관리, 공사관리 이것은 분명히 시공행위입니다. 시공자가 시공행위 잘못하면 건축사가 대신 처벌받습니다. 또한 준공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보고서를 건축주한테 보고를 하면, 그걸 다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데 거기에 착공검사감리보고서, 중간검사감리보고서, 완료감리보고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준공사용승인이 납니다. 물론 조사검사확인자가 또 하나의 사용검사조서를 붙이지만, 이건 분명히 조사검사확인업무이고, 시공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건축법에서는 감리라고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설계의도반영, 건축주를 위해 시공자를 감독해 주는 것이 감리라고 건축법에 끌어들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검사업무라든지 시공행위는 모두다 시공자와 건축주 건축공무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제 주장이고 우리 인천건축사들의 주장입니다. 이것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고, 감리를 떼어 왜 시공기술사한테 주느냐하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장양순 : 대략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오늘 이렇게 좌담을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면 앞으로 좋은 결론들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리협회에 관여하고 계신 김우성 회원께서 혹시 의원입법 쪽이나 공청회를 통한 방향이랄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우성 : 주상복합이라든지 다중 이용시설 같은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기 때문에 감리전문회사들이 참여할 기회가 부족하다해서 책임감리회사들이 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려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순종 회장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니 취지는 옳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조사검사에 대한 것은 확실히 구분을 해서 따로 떼어 또 다른 영역으로 하고, 원칙적으로는 공무원들이 하는 것인데 잠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 수 없다면 특정회사나 특정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한테 위임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300세대 이상의 주거라든가 공공에서 발주하는 여러가지 시설에 대해서 책임감리제도

현행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는 운용상태 바로잡아야
용역보고서의 감독, 검사, 관리구분과 기술사 도입은 건축주 부담증가 초래 재고되어야
조사검사업무비의 관 납부제도 만들자

는 토목에서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 거의 다 설계한 사람이 감리를 하는데 유독 건축분야만은 설계한 회사보다는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감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설계와 감리를 병행해서하는 회사들에 대한 반발도 많고 또 대형감리전문회사는 한 10여개 업체 되는데 그 회사는 좀더 그것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감리의 향후 나아가야 될 방향을 건축학회에 의뢰를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인 국민들한테 좋은 건축에 대한 결과물을 주어야 된다는 공통된 목표에는 찬동을 하고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방법에 있어서는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이 가미되어 결과적으로는 다른 입장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기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건축검사, 조사검사를 떼어내고 이것을 하나의 분야로 만들고 설계자가 설계도면내지 시방서에서, 특히 공공건축일 경우엔 자재를 못박지 못하게 되어 있어 성능만 표기하도록 해야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 하느냐에 따라 색깔이나 재질이 달라져 엉뚱한 건물이 될 수가 있는데도 지금 책임감리제도 때문에 설계자가 감리를 안 할 경우에는 전혀 관여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설계자 아닌 엉뚱한 사람들이 다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면 설계라는 작품이 엉뚱한 결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꼭 이번에 설계한 사람이 무조건 감리를 해야된다는 제도로 하려면 감리업무를 세분화하여 각기 업무별로 확실히 용어를 만들어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지금 김기철 위원장께서 얘기한 용어도 애매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이번 기회에 지혜를 모아 용어자체를 봤을 때 감리는 당연히 설계자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 오게끔 그 용어를 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쓸데없이 시공회사한테 책임을 넘겨줘야 할 안전관리, 공정 같은 것을 떠맡지 말고, 확실하게 떼어 내어 시공회사들이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를 확실하게 만드는 작업을 오늘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양순 : 이제 기존 감리에 관한 법규정이나 보고서 내용 중 어느 것에서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차례대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가능하다면 해결점들을 하나로 집약하여 결론을 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부산의 황석규 회원께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지요.

황석규 : 사실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의원입법의 근본적인 시작이 '감리비를 주는 건축주를 어떻게 고발할 수 있겠느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입법되어 있는 것은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자는 자기가 설계한 것을 감리할 수 없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건축사의 업무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법에서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감리 전문회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리비를 예치해서 시행해도 결국 그 비용은 어디서 나옵니까? 결국은 건축주 손에서 나옵니다. 시도건축사회회장들이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이하 규모인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를 분리하는 것에 동의를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서 의원입법이 되면서 단서조항이 빠지고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없게 설계와 감리는 분리하는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건축사회에서 의원입법이 될 정도면 대한건축사협회 본회의 정식의견으로 나가야지 지역건축사회의 대표의견으로 나갔다는 것은 협회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협회의 의견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 건축사 대다수의 의견이 결집된 것이 반영되어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시도건축사회의 회장들이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시도건축사회 회장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설계와 감리가 분리된다는 것은 설계자체가 감리를 하면서 설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것이 감리라고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홍대 연구결과물에도 어느 정도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계자가 권한과 책임을 모두 가지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자기 작품 의도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대 공청회 보고서에 의하면 허가단계에서 실시설계도면과 내역서까지 첨부해서 허가를 신청하자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허가 때 기본도서만으로 건축물이 그 대지 위에 들어설 수 있는지 없는지를 허가권자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심의라는 제도가 있고, 예를 들어 건축법상 전혀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심의라든지 이런 제도에 의해서 조정이 됩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설계를 두 번, 세 번 해야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 설계비 부담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대가는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착공 시에 설비, 전기라든지 디테일한 도면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부 행정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지만 착공 때 제출할 도서의 내용들이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에 아주 잘되어 있는 사항을 허가 때부터 실시설계수준으로 만들자는 것은 잘되어 있는 법을 역행해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와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허가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시공검사에서 옥상옥을 만들자는 얘기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설계제도와 감리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좌담회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많은 건축사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방식으로라도 의견수렴을 해서 건축사들의 의견이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임두기 : 의견을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홍대 공청회 때 보고서와 관련해서 이해가 힘든 몇 가지 의견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물론 설계에 대해서는 황석규 회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하셔서 공사감리의 제도적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현행공사 감리기능은 설계자의 의도를 구현하는 취지와 안전, 품질, 건축기준적 적합 여부 등 공공적인 감시기능이 공존하고 있다.', 또 '설계도서의 충실한 작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계도에서의 부실로 공사감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없다.', '위법보고를 할 수 없다.',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 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갑자기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공사감독, 시공검사, 공사관리 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고 결론을 지으셨단 말입니다. 내용을 보면 수행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행위하고 수행자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공검사' 라는 것을 제외한 '공사감독' 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 법과 제도 없이도 건축주가 스스로 하거나 건축주가 일정한 기술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대신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굳이 법적으로 구속할 수도 없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사관리' 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공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따로 떼어서 법적으로 묶고 건축사를 개입시키겠다는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공검사' 에 대해서 공무원이거나 건축사, 10년 이상의 경력기술사를 개입을 시켰는데 여기서 문제의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법부실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방법을 연구하셨는데 결국 행위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원인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위를 건축사가 했느냐, 기술사가 했느냐, 즉 누가 했느냐 하는 행위자의 문제 때문에 위법부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고,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설계를 해서 허가 시나 감리를 해서 사용승인 시나 제도자체는 우리가 해석만 잘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스템의 문제라 함은 현재의 법과 제도의 문제보다는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건축주 또는 시공자가 위법부실을 해도 되는, 허위감리, 부실감리를 해도 되는 자체가 문제란 것입니다. 누가 행위를 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행위자 처벌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위법 및 부실하게 공사한 사람, 건축주 다 행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묵인하고 허위 감리하는 감리자 처벌이 아울러 강화가 되게 하여, 감히 위법 및 부실사공을 못하도록, 허위·부실감리를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위법부실이 추방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조건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에 따르는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것과 권리는 비용으로 확보되어야 된다는 것이며, 비용이 확보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 또한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리를 전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크거나 작거나에 따라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분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감리자체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감찰도 감시도 아닌 '감리' 자(子)를 썼단 말입니다. 이 '리(理)' 자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치를 살핀다는 뜻이기 때문에 첫째로 건축주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건물의 완공 후 사용자의 이익이 대변되어야 되겠지요. 다음으로 설계자 자신의 의도실현도 개입을 시켜야 되는 사항이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 다시 말하면 '조사, 검사' 라든가 '조사, 검사에 대한 확인' 업무로 집약될 것입니다. 결국 이 조사, 검사 및 조사, 검사의 확인업무의 대행이 문제가 되어 징계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장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에 대해서 이것을 단순하게 '특검' 이라고 생각하거나, 전체가 마치 감리인 양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사, 검사' 라는 것은 감리의 일부분이며, 설계라든가 허가과정에서의 일부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조사, 검사의 확인업무' 는 사용 검사할 때의 국가공무원의 행위이며, 또 건축허가 시에 우리가 허가기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건축허가현장조사, 검사조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이 확인을 하고 허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공적업무입니다. 이것을 건축사면허로 하여금 대행을 시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설계 시나 허가 시, 감리 시, 사용승인 시 똑같이 적용을 하다보면 아주 해석이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감리 시에는 감리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존 의미를 포함시켜서 조사, 검사를 하는 것은 현행법에 기초중간검사라든가 5층마다 중간검사라든가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 완료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감리자는 그것으로서 역할이 끝나는 것입니다. 단, 거기서 비용적인 문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사, 검사보고서를 제출하면 현재의 법 조항에는 바로 사용승인서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조사, 검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확인을 하는 행위자체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특검행위이며 '조사, 검사에 대한 확인' 행위입니다.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것입니다. 허가 시에도 마찬가지로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조사, 검사하였나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어줍니다. 이 확인행위도 대행하는 경우가 현재 서울의 강남구청에서 기술자문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조사, 검사업무라든가 확인업무를 대행하면서 과연 수수료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책임만 우리가 떠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보고서 주제는 '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인데 결론은 주제와 달라
인허가 사항위주 기술사 도입은 건축사 고유권한인 감리를 포기하는 일

인천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문제점의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현행제도상 건축사란 면허로 하여금 조사, 검사를 대행시키고 이에 대한 확인업무를 하여 이중적 체크를 하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비용, 즉 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수수료 부분을 우리가 이 기회에 정당하게 확보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 검사업무 및 확인업무 비용은 어차피 원인자 부담원칙이어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든지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든지 건축주가 허가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착공신고서 제출 시에도 마찬가지로 감리행위에 포함된 조사, 검사 업무비용을 납부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 검사업무 대행을 뺀 나머지 감리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주와 자유계약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국가의 행위대행만큼의 합당한 비용은 허가기관에서 지급을 보장받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와의 자유계약에 의해서 감리비를 확보하게 된다면 결국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인터넷상에 지난번에 공청회를 다녀오고 나서 몇 가지 김기철 위원장께 의문점을 적어 놓았던 것이 있습니다.

감리행위에 기술사를 개입시킨 점에 대한 의문점과 공사감독, 시공검사, 공사관리로 구분을 했을 때 과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 것 인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유계약제도에 의해서 감리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을 상황임에 위법부실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도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아울러 건축사인력이 모자라서 굳이 기술사를 개입시켜야만 되는 것인가의 건축사사무소 숫자가 부족해서 검사전문회사들을 지금 새로이 만들어야 되는가하는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고, 건축사의 감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기술사보다 부족한가도 의문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하면 하루아침에 위법 · 부실이 없어지는 것이며, 부조리도 전부 없어지는 것인가도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꾸만 의미 없이 분리하려고만 하는 자체보다도 현재 되어있는 제도를 잘 활용만 하면 되지 않을까를 먼저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감리업무에서 조사, 검사업무만을 분리한다는 전제는 소규모건축물에서는 건축주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감리하는 사람이 있고, 조사 · 검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설계자가 아닌 사람이 감리를 했을 때에는 설계자도 사후설계관리 한다고 또 개입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조그만 200평 현장에 세 사람이 개입하게 되는 것인데 그 비용을 모두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소규모현장의 감리는 결국 설계자가 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것이며, 현재까지도 이렇게 시행되어온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입니다.

장양순 : 법보다 운용에 문제가 있으며, 차제에 검사비용의 관 납부 제도를 만들자는 말씀이군요. 설계자가 감리에 개입하는 것을 편의상 설계자의 감리권이라 정의하고 세분 말씀을 종합하면, 첫째 설계자의 감리권 확보, 둘째 보고서 상 실사설계와 내역서의 허가 시 제출문제 등 제반사항, 셋째 감리비용의 정상적인 확보 방안 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규홍 : 지난 홍대 공청회에 대전회원 5명이 저와 함께 참석했습니다. 김기철 법제위원장께서 하신 주제발표도 잘 들었고, 그 자리에서 필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첫째는 제목에 나와있는 주제하고 결론의 도출이 왜 이렇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크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배포자료에는 "설계감리 기술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공청회"입니다. 주제대로 어떻게 하면 설계와 감리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기술육성의 방안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저희들도 박수를 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결론에 도달해서는 전부 인허가 사항으로 모든 문제를 귀착시켰습니다. 인허가 사항만 해결하면 과연 육성전략이 완성되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현행 건축법상에 건축설계 및 감리의 업무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건축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권한입니다. "건축설계 및 감리를 제3자가 할 수 있다"라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개입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사 이외의 사람도 감리를 할 수 있게 되어있고 그렇게 유도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동료 건축사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더러, 금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축사들의 고유권한을 침해받는 부분으로서 협회가 강력하게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될 것입니다. 박순종 회장께서 2년 이상 노심초사하고 건축사로서의 불이익을 당한 감리부분에 대해서 시 · 도회장단회의나 임원회의 석상에서도 누차 말씀 하셨던 내용으로 일부는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건축사가 당연히 해야만 되고, 할 행위인 것입니다. 건축사가 공사현장 감리를 충실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설계비 · 감리비 제대로 못 받는다고 감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감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의미로 주제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설계와 감리의 분리과정을 여기에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법 제21조에서 '건축물의 공사감리 부분에 있어서 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고 공사감리를 해야한다.' 라는 법조문이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박회장께서 대한건축사협회의 공식채널을 통하지 아니하고 개인자격으로 국회 서상섭 의원을 통해 '건축사 본인이 설계한 감리를 분리해 달라' 는 요지의 의원발의를 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심각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금년 4월 본부임원 및 시·도건축사회 회장단 워크샵 때의 일로서 본부와 시·도회장들은 갑작스런 돌출발언에 참 난감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 협회 근본입장은 원칙적으로 설계와 감리의 분리는 반대한다. 그러나 기왕의 의원입법형태로 개정안이 상정이 되었다면 부실감리행위가 소규모건축물에서 거의 90%~100%이고 대형건축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인천회장님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하고 우리 대한건축사협회의 분열된 모습을 정치권이라든가 건교부당사자한테 보이지 않기 위해서도 '건축물의 규모가 4층이하로서 연면적 2,000㎡미만의 건축물(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가 아닌 건축사를 시·군 구청장이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자의 지정,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본인 설계·감리 일부분리 단서조항을 첨부하여 서상섭 의원한테 보내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늦도록 이 사안에 대하여 몇몇 시·도회장과 임원들이 토론과 설득 후 결론에 도출했기 때문에 그 이튿날 워크샵은 원만히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단서조항이 빠지면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감리분리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정 동의안을 차일피일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까, 단서조항은 모법(건축법)에서는 표기할 수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펴가면서 전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심각한 입장까지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의 처리방법이 설계·감리 분리 동의냐, 아니냐 라는 논란을 불러온 것입니다.

장양순 :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는 보고서 자체가 제목과는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나중에 김기철 위원장께서 말씀 해주시고, 나머지 설계감리의 분리여부는 먼저 말씀해주셨던 분들과 같이 묶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종복 : 설계자감리제도가 누락되어 있다. 이것은 공히 소규모 프로젝트나 대규모 프로젝트나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설계자 감리가 누락되어 제외돼 있다는 것은 사실 건축설계의 설계자의 모든 권한을 이주 뭉개버리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그 현상이 건축사들이 어렵고 도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사의 기본이 되는 설계를 이제는 제고해야 할 때이다. 설계자가 도산 상태이다. 설계자가 훌륭한 설계를 만들어 내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시공자와 시행자는 엄청난 이윤을 내는 반면 설계자는 점점 영세해지고 있다. 이제는 설계자를 살리도록 법·제도를 우리 자신이 노력해서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일정규모 이하(5,000㎡이하 또는 연속 5개층 또는 3,000㎡이하)의 현행 감리제도의 문제점은 설계와 감리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는 것은 우선 설계는 서비스업이고 감리는 검사업무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은 건축주, 시공자가 하고 그 책임은 우리 건축사가 지는 현실이 비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업무와 봉사업무를 설계자의 서비스 업무와 분리해서 우리가 주장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건축주와 건축사 그리고 건설업자간의 개발 이익의 극대화와 시공비 절감을 위한 위법과 부실에 대해서는 공동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 등이 불가능하며, 무면허 시공업자의 시공에 대한 위법과 부실시공의 제재 및 처벌법이 부재하고 무면허 시공업자가 공사를 중단했을 경우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고, 또한 무면허업자는 과실을 해도 책임질 것이 전혀 없습니다. 또 계약자간의 위치에서 위법과 부실에 대한 설계자의 감리능력의 한계로서 감리자로서 불법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발조치가 아니고 위법과 부실의 대변자역할을 하기 위하여 속죄의 양이 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건축사의 실정입니다. 현실은 건교부로부터 제정된 감리비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 없고, 부실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을 보장하고 지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설계비가 요율로써 제정되어 있으나 설계와 감리를 공동수주 시에 덤핑 수주하여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주나 제3자가 봤을 때 비판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건축사)가 시공을 보완하여 완전한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일정 규모이하의 공사감리는 현행사회 여건상 감리계약은 건축사의 계약대상자가 건축주이고 건축주의 자유권 보장측면에서 감리비 금액확정은 담합에 해당이 되고, 감리비 예치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협회를 통하여 분명히 살길을 찾아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지 해서 협회에서 강력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우리 협회가 분산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단합된 힘을 도출해서 우리가 살길을 찾아야지 결코 어느 개인이 해서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박순종 회장께서 제안한 내용 중 일정 규모이하 건물의 관리는 이번에 지방에서 감리한 것이 벌금을 물게 된 상황에서 예치제도를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부족하지 않나 솔직히 생각합니다. 전기는 예치제도를 해서 다시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지 우리 협회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2안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의 감리는 책임관리회사에서 감리를 하고 있으나 설계와 법규 그리고 디자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처리가 불가능함으로 설계자가 봉사를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상설계에서 당선된 것을 감리비 한푼 못 받고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사항에 대해서 일체 처

대규모든 소규모든 설계자의 감리권은 반드시 확보, 보장돼야
서비스는 끝없고 소송 등 피해막심
적정 감리비 확보 후 설계감리와 공사감리 적정 배분해야

리가 불가능하므로 설계자가 봉사를 하도록 강요당하는 실정입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요. 설계자 감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설계자 감리가 관철이 안될 경우 건축사는 앞으로 변호사를 협회에서 내세우더라도 이런 것을 관철시켜 꼭 판례를 남겨야 합니다. 건설시공 시 설계자가 설계자 감리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공사의 건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그런 공문을 띄워서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양순 : 결론적으로 본다면 대규모든 소규모든 설계자의 감리권이 확보돼야 된다. 설령, 설계감리가 분리되어도 설계자의 감리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영복 : 먼저 의견을 제시한 세분의 내용에 동일한 견해를 가지며, 저는 추가적으로 이러한 소견을 피력합니다. 여기 참석하여 주신 황석규 회원, 임두기 회원, 이규홍 대전회장 세분은 설계감리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박순종 인천회장께서는 설계감리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분석하여 보면, 설계감리 분리는 비교적 소규모(2000㎡ 및 4층 이하) 건축물에 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규홍 회장께서도 시행령에서 다소 수정을 하고 박순종 회장께서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피력하였으므로, 대안은 충분히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건교부에서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설계감리 분리에 대한 의원 입법을 기회로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게 설계감리 업무수행에 대한 정책은 공사감독, 시공검사, 공사관리로 분류하여 건축사가 아닌 기술자의 개입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허가도서 제출에 내역서 작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주의 부담만 유발시킬 뿐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욱이 소규모 건축은 거의 무면허 건설업자가 시공하게 되는 바, 정상적으로 작성된 내역서에 명시되고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실정이므로 소형건축물의 내역서 작성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소형건축물을 시공하는 업자들은 배치도, 평면, 입면 및 일반단면도에 의거하여 설계도와 비슷한 건축을 하는 것이지 도면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소규모 건물에 대한 시공자의 사전도면 검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전문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내역서 작성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감리를 세 가지 형태로 세분하였는 바, 내용면으로는 공사감독 그리고 시공검사는 우리가 말하는 감리이며 공사관리는 시공에 포함됩니다. 공사감독 시공검사는 내용에 있어 구분이 되지 못하는 바, 업무의 통합으로 건축사의 감리업무에 예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규모 이하인 건축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바, 일정규모 이하를 제외하고 설계감리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김종복 회원께서 제시한 안은 의견으로서 검토를 하고, 시행 불합리한 것은 보완 처리토록 하여 시공검사부분에 있어 검사업무의 수행자는 건축사에 국한해야 합니다. 기술사의 참여는 우리의 감리업무를 건기법에 의하여 탈취 당한 빼아픈 경우의 재현이 될 것입니다. 또한 발주처나 허가기관에서 대행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도건축사회 감사간담회, 고문위원회에서도 결정되어 본 협회에서 처리토록 통보된 상태입니다.

장양순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정리한다면, 5~6항목이 되나 실질적인 이슈는 하나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설계자가 감리권을 계속 유지하고 행사하느냐, 아니면 설계자의 감리권이 분리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경우 어디까지가 설계자의 감리권으로 봐야 하는가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는 감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김기철 위원장과 박순종 회원께서 답변 내지 해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김기철 회원께서 보고서의 제목과 결론의 상이점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허가 시 실시설계와 내역서의 필요성 그리고 시공검사 회사가 옥상옥이 된다는 점. 마지막으로 시공감리회사를 설립할 경우에 건축사만 감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기술사까지 들어가 있느냐 이것이 나중에 건기법처럼 돼서 결국은 우리가 권리를 빼앗기는 것이 되지 않느냐는 점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박순종 회원께서는 의원입법에 면적규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철 :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감독관이 건설교통부가 됐습니다. 때문에 감찰회사 얘기가 나오고 문제점이 발생하고 설계감리에서 감리용어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업무용역 자체를 행위자로 분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제도개선 제안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설계 · 공사감리 · 기술진흥 쪽의 포커스가 약간은 변질되었는데, 특히 감리부분에서 참고할 방법이 일본 이외에는 없는데 일본은 건축주사가 하고 있는 제도라서 우리의 입법취지, 업무자체와 사회적인 교육이라든지 분위기가 다릅니다. 임두기 회원께서 우리 제도자체는 좋다고 말하셨습니다. 사실 제도자체는 나무랄 데 없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입니다. 악용을 하는데 우리들까지도 일조를 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의원입법까지 해서 건축법이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해보자

해서 그동안 검토했던 내용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황석규 회원께서 건축허가 시 실시설계 도면까지 낸다는 것은 무리라고 했는데, 98년도 규제개혁위원회가 생겨서 건축허가 시 기본설계도서를 내기로 된 것입니다. 실시설계도서를 내는 것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같습니다. 허가대신 신고사항은 단순하게 신고만 합니다. 또 우리처럼 신고사항이 400㎡까지 크지 않습니다. 일본 10㎡, 독일이 50㎡이며 창고 · 차고만 신고하지 나머지는 전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받은 건물은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감리도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법규정에 건축사가 감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만, 설계건축사가 감리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고 있는 것은 일본건축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분리해서 수행을 하고 민간공사에서는 반드시 분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설계자한테 맡깁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감리비를 받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동안 얘기하는 과정 중에 공사감리와 현장조사검사업무를 조금 혼동하시는데 현장조사검사업무는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건축사를 한테 대행을 시키고 있고, 비용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다 보니까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거부를 하면 됩니다. 강남구청 식으로 비용을 대고 위탁을 하든지 대행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국에서 설계를 해도 건축허가는 됩니다. 그것은 주변의 여건이 갖추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로 하시고, 영국과 일본은 건축허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건축과정 중에 상당히 변질이 오기 때문에 최종 준공검사 시에 마지막 도면을 정리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김종복 회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와 감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면서 색깔이라든지 재질이라든지 더 나은 품질이 가능하겠지만, 설계만 계약을 했다면 설계도서가 완벽하지 못할 때 설계도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얘기를 못하고 큰 주장을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도서를 검토하지 않으면 설계의 끝이 없습니다.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랐을 경우, 특히 책임감리 쪽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설계자가 설계도면을 계속 설명을 해야 되고, 거의 샵드로잉까지 그려야 되는 현행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도서를 끝낼 수 있는 어떤 맥이 있어야 됩니다. 아예 설계도서를 실시설계도서까지 제출을 해서 끝내든지 아니면 건축사협회가 그걸 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 감리를 하지 않는 제 3의 어떤 법인체한테 대행시킬 수 있다는 안을 제시했을 뿐, 다른 입법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설계자 감리제도가 누락되었다는 것은 설계도서 대가기준에 사후설계관리 업무라고 해서 있습니다. 설계자가 감리를 하는 것을 건축주가 싫어했을 때, 설계자를 바꿀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연구는 자율경쟁 체제 하에서 방안으로 결론을 낸 것입니다.

공사감독에 대해서 설계도서에 표현되지 못한 것을 감리를 통해서 설계도서가 완벽하게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는 전체적인 흐름에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참고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건축사들이 계약에 의해서 공사감독을 합니다. 책임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Inspector들한테 별도로 나가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규홍 : 그런데 현재 기본설계도면만 제출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건축사지 3월호 요약부분을 보더라도 김기철 법제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기본설계도면 몇 장만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계획설계, 기본설계, 중간설계라고 해서 그래도 비교적 어느 면에서는 관공서에서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부분까지를 요구합니다. 공사규모에 따라서는 정화조, 소방, 구조계산 부분도 포함됩니다. 공청회에서 부산시 건축과장도 똑같은 의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디테일과 잡다한 실시설계 잔뜩 붙여봐야 양만 많아지고 자기들은 검토할 이유가 없답니다. 분명히 그것은 '품질에 대한 내용으로서 「갑」과 「을」 사이에 결정할 문제이므로 행정관서에서 건축허가시에 실시도면 내역서까지 전부 붙이면 나중에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책임지라는 얘기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그럼 과연, 그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 김기철 법제위원장께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철 : 시공검사부분에 허가권자가 책임을 지라는 얘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설계도면을 다 줘야 됩니다. 자기들이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 대행을 시킬 수 있으므로 대행회사에 넘겨라 그런 얘기이고, 허가에 필요한 도면은 배치도 하나면 대지에 대한 종횡단위, 법규검토 다 되고 용도는 허가서로 충분합니다. 부산건축과장이 얘기한 3층 이상의 구조계산서 필요한 것은 계산서 첨부시키면 됩니다. 황석규회원께서 건축허가 시 설계도서를 넣을 때 심의를 해서 자꾸 바뀐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산 경우는 심의가 끝난 다음에 허가 집어넣지, 심의 전에 집어넣습니까?

황석규 : 부산 경우 심의와 허가 동시에 접수를 합니다.

김기철 : 동시에 집어넣더라도 최종은 다를 것입니다.

황석규 : 제도는 물론 바뀔 수도 있고 개정이 가능하겠지만, 작은 규모라 하더라도 허가권이 건축사에게 있고 건축법이라든지 관련법의 규정을 적용해서 건축사가 책임을 지고 사용 승인 시까지 권한을 가진다면 가능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다보면 건축사라고 해서 상하수도, 배수설비, 정화조라든지 소방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 건축허가를 신

설계감리 분리는 불가
설령 분리된다해도 감리는 건축사만의 고유권한

청했다하더라도 단지 건축법 내용만 체크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허가 시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규모와 용도가 확정되고, 그 규모에 맞춰 나머지 실시설계를 해서 착공 때 도면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실제공사는 허가를 받아 놓고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 1, 2년 후에 착공할 수도 있는데, 허가 시 실시설계비까지 건축주에게 부담을 준다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착공 때 실시설계 도면이 제출되는데 굳이 허가 때로 다시 환원하자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 아닌가하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건교부에서 허가과정에서 서류를 간소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 법의 개정과정이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해보고, 그 제도가 괜찮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전국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주한테 부담도 줄여주고, 허가 때 기본도면만 제출해서 법적인 체크만 한 상태에서 허가를 해주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업승인이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용어자체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층수, 평형대와 필요한 부대복리시설시설들의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고, 사용승인 시에 실제 시공된 도면들을 제출하여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제도에서 충분히 가능한 것을 역행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일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하여 감리비도 예치를 한다든지 다른 제도를 활성화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방법이지 연구과제이지 욕상욕을 만든다든지 또 다른 제도를 만든다든지 설계 · 감리를 분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우성 : 지금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구분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설계를 허가제도로 만든 이유는 근본취지가 소비자들의 위생, 보건,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계자나 시공자가 제멋대로 지어서 나중에 무너지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화재 때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허가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것을 다 막기 위해서는 허가도면에 그런 것들이 다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적절하게 국민을 위한 위생과 안전, 보건, 재난을 다 대비한 설계도서인가 체크할 수 있는 정도의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심의제도라는 것이 그런 것을 체크도 하면서 동시에 건폐율, 용적률 어떤 용도가 들어가나 이런 것도 체크를 하면서 주관적인 미적 기준과 함께 종합해서 심사하기 때문에 설계도서를 실시설계 도서 수준까지 제출해 놓고도 기술적인 것은 별로 검토 안하고, 미관적이고 공간적인 지적사항으로 그 많은 실시설계도서까지 다 다시 작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처럼 심의 때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규모, 재질 등의 심의기준에 맞게 먼저 심의통과를 하고 나서 구조라든지 안전에 대한 문제, 재난에 대한 문제에 대한 관계되는 도서를 추가로 제출해서 허가도서로서 제출하게끔 하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만, 구조라든지 재난에 대한 것을 공무원들이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의 검사기관한테 대행을 시킨다는 문제인데, 선진국에서 공무원들은 행정만 하고 구조에 대한 검토는 구조기술사가 어느 구조기준을 적용했느냐를 확인하고, 만약 잘못 적용시의 책임을 지겠느냐 등의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공무원들의 할 일이 끝납니다. 공무원들은 구체적으로 구조계산을 제대로 했는지 기술적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어떤 구조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느냐만 확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소방재난 문제 같은 것은 소방에 관한 협회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재난검사를 하려면 이 정도의 건물은 이 정도의 기준이 돼야 된다. 그런 규정을 적용했느냐, 안했느냐만 공무원이 그 기술사한테 확인을 받습니다. 각서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첨부만 하면 자동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제3의 기관한테 의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얘기하는 시비거리가 저절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제도를 건의하고 적용을 한다면 선진국처럼 설계자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과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준공도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공사가 된 대로 도서를 작성해서 시공자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관리할 때라든지 재난에 대한 계획 및 검사할 때 어떤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공회사가 준공도서를 작성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자에게 서비스차원으로 하도록 유도합니다. 준공도서를 확실하게 시공자가 제출하게끔 한다면 허가도서와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시공자가 책임지게 되어 설계자가 괜히 뒤집어쓰는 문제도 없어질 것이고 서비스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건축사가 설계감리한 것을 건축사가 공무원으로부터 위임받아 검사하다보면 관계자체가 모호해지고, 건축사가 건축사를 믿지 못해서 또 검사한다는 모순점이 나타납니다.

사실 행정적이고 수치적인 것을 검사하는 일에 무슨 건축사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아주 행정적인 관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확실하게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넘겨서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사가 한 것을 검사하다보면 건축사를 검사하는 사람이 더 잘하는 것처럼 인식이 돼서 그 사람한테 설계까지 준다는 것입니다. 외국처럼 공무원이 위임하

는 검사업을 전문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건축사자격증보다는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특정 분야별로 전문화된 검사관 자격증제도를 만들면 됩니다. 외국에서는 보통 해당 분야 십장 출신들이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하는 사람은 설계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하는 사람은 검사를 하려하지 않습니다.

임두기 : 지난번에 설계도서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공무원이 공청회 때 참석하여 도서관리상 창고만 채우는 것이지 별로 역할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결국 설계도서라는 것은 허가 시의 경우 조사, 검사하고 확인할 때는 기본설계도서만으로도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설계의 순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착공 시 제출하는 실시설계 도면도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현행제도를 우리가 너무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이며, 분명히 공무원이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실정 상 공무원이 그러한 시간적, 인원적 역량이 부족하니까 착공신고서 제출하면 그냥 도서는 보관하여 놓고 마는데, 결국은 이 도서에 대한 확인제도를 강화시켜서 확인업무도 대행하는 것을 건축사가 이제 맡아서 하는 것이 하나의 역할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물 성능보장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대행수수료도 확보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제 3의 기관이 대행한다는 것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이 현행 건축법에도 건축사가 확인업무 대행을 할 수 있게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어차피 비용지체는 건축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므로, 대행수수료를 확보하면 우리 건축사의 업역도 일단 확대가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 감리에서 조사, 검사업무대행을 분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데, 왜 이것이 분리가 되면 안 되느냐하는 이유는 감리에서 조사 · 검사업무대행을 분리 해버리면 소규모건축물에서 감리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감리를 시킬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는 말이지요. 내가 내 업자선정해서 내가 잘 짓는데, 법에만 맞춰서 지으면 될 거 아니냐, 어차피 국가에서 조사, 검사업무는 할 거 아니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뜩이나 감리업무를 제대로 안 시키려고 하는 건축주, 시공자들한테 조사 · 검사업무마저 분리를 해버리면 건축사나 건축사가 아닌 사람에게도 감리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이것을 법으로 제약한다고 해보아야 결국 건축사는 도장값이나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조사, 검사업무라는 이 대행행위 자체를 감리가 안고 가야하며, 이것을 비롯한 나머지 업무를 가지고 금액확보를 해서 우리가 감리업무를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고 나머지 업무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비용을 어떻게 확보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불성설이라는 말입니다. 감리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조사, 검사업무만이 나중엔 감리업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계자가 감리권을 유지해야 되느냐하는 문제인데, 이건 현행법에서 설계자가 감리를 하든 제2의 건축사가 감리를 하든 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의 선택권은 건축주가 갖게 하고 개별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업무에 조사, 검사업무가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확인업무는 공무원이 하든지 또는 설계자, 감리자 아닌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승인 시의 확인업무를 공무원이나 건축사이외의 행위자가 하는 것보다 제3의 건축사가 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의 업역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건축사의 업무를 건축사가 체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시는데 결국 우리가 체크를 하는 것은 기준법이란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설정해 놓고 그것대로 잘되었느냐 못되었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잣대를 가져다가 대는 경우도 있지만 잣대에 대해서 의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공장에서 기계에 의해서 생산되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공산품이라 하더라도 불량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건설현장에서 진짜로 불량품 없는 건축물 있습니까? 자들고 가서 재면 다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입니다. 이것의 정도자체를 체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건축사가 감리행위를 한 것을 건축사가 아닌 공무원이 개입됐을 때 충돌하는 것하고, 건축사와 기술사와 충돌했을 경우, 건축사와 건축사가 아닌 또 다른 검사원이 충돌했을 경우, 어느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이 문제도 심각히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사를 건축사가 제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고, 결국 책임만 같이 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급하게 결론짓고 싶은 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순종 회장께서 헌법소원 하셨는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위헌의 소지가 절대로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다각도로 연구를 해봐도 위헌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방의 의무라든가 또는 의사에게 있어서의 공공의 제도와 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 되기 전에 군의관을 한다든가 어디 보건소에 가서 의무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공공의 행위를 하다가 의료사고 났을 때 그 의사에게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의사가 이거 위헌이네하고 위헌 제청한다고 그게 위헌의 여지가 있느냐는 것과 똑같습니다. 건축사의 면허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에 위헌의 여지가 없으므로 지금단계에서 취하를 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하는 생각이 들고, 건교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는 사실 현행대로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법 조항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오류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류부분들은 정정하여 시행하고, 건축주와 시공자를 진짜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감리에 대해서 처벌규정을 강화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건축사가 스스로 자성하겠다.' 건교부에 가서 아실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상섭의원이 국회에 의원입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입법철회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사례의 적용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외국사례를 연구하고 검토하여 적용하곤 하는데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 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제도들은 민족적, 문화적 차이라든가 경제적 상황 그리고 생활수준에 따른 국민들의 건축문화 인식이

소규모 건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설계자와 감리자 분리
감리분리란 조사검사업무를 분리하자는 것

다 각각 다릅니다. 결론은 어느 한 특정국가의 좋은 제도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무조건 따라야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국가들이 실제적으로 똑같이 적용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의 무슨 제도가 좋으면 그 제도가 좋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 나라마다 실정이 있고,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맞춰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개선하여 조금씩 바꿔나가고 하여 안전하게 하는 것이지, 어느 날 아침에 우리는 미국 제도가 좋으니까 미국의 제도를 따라하자는 것이 우리나라 공무원 시스템이라든가 우리나라 재정현황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나 한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요소 요소 절차상으로 문제점 있는 것, 우리가 비용 확보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비용이라는 것의 권리를 찾고 또 그만큼 의무를 져야 되는 것만 잘 정리를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제대로 설계비 받고, 감리비 받으며 건축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 지금 말씀하신 것 좋습니다. 외국제도 좋다해서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무작정 따라하면 안될 것입니다. 다만, 제가 아까 그 검사대행업무를 설계자가 못하게끔 하면 그나마 감리비도 못 받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임두기 : 감리비를 못 받고 하도록 강제로 강요해서 시키는 건축주 있습니까?

김우성 :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검사를 하는 설계자도 검사까지 하게끔 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검사대행을 지금 분리하자는 얘기도 양쪽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검사대행을 설계하는 사람이 하다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검사대행이라는 게 뭡니까? 설계하는 사람, 시공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국민입장에 서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소모하는 사람 입장에서 문제된 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잘못된 거 찾아내고, 시공자가 잘못된 거 찾아내는 것입니다. 설계자가 자기 설계검사를 맡기면 그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것입니다.

이영복 : 두 분께서 현행 집행되고 있는 건축주의 감리자 임의변경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감리자 변경서류는 관계자 변경서류 양식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그러나 양식에는 감리나 시공자의 날인 없이 임의로 건축주의 날인으로 처리되는데 두 분의 말씀은 현행 감리가 설계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임두기 : 그렇습니다. 현재는 선택권 그러니까 설계자가 꼭 감리를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장양순 : 자꾸 논지에서 벗어나는데 '실시설계도면을 허가서에 내야 되는가.', 아니면 '현행대로 기본설계서만 내야 되나.' 이 문제에 한해 이야기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임두기 회원께서 언급한 것은 건축허가서는 현행대로 한다. 단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착공 시 실시설계 도면이 들어갔을 때 그것을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면 업무영역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니 좋지 않겠느냐는 보충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종복 : 전에 법이 집행되다가 오순이 있어서 바꾼 것을 다시 바꾼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대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홍 :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오늘 토론 주제에서는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난 6월 건교부에서 부실감리와 부실시공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가를 본 협회와 합동으로 전국행정관서 및 일선 현장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분석한 바, 일부 건축사의 덤핑 대량수주로 인한 부실설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방안으로 건축허가 시 또는 착공 시에 제3의 건축사에 의한 도서검토제도를 도입하여 보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했었고 그 역할을 각 시도건축사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의 질 향상과 아울러 업무영역이 늘어나는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영복 : 시공검사에 있어 도면검토 사항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해야 합니다. 소규모인 경우 소액의 설계비와 시공자의 시공능력에 합당한 도서가 작성되어야하며, 관계당국에 제출되고 있는 도서의 검토가 당국이 아닌 별도의 기술자에 의하면 건축주비용 부담이 별도로 발생하는바 허가당국에서 현행 검토되고 있는 제도가 합리적이라 제안합니다.

김기철 : 실시설계를 내자고 했던 것은 설계비 덤핑을 막자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배치도 한 장이면 허가는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착공 때 내는 실시설계도면은 검토하는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도면은 현

행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설계도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도면으로 미리 허가받아놓고, 설계권 주장하면 해지해버리고 바꿔치기 하면 하등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설계비의 덤핑관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등록을 해라 뭘 해라 하더라도 계약은 해지가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설계자 변경을 못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것 등은 자율경쟁 관계에서 건축주가 싫다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연구결과에 내역서를 검토하자는 것은 자기 도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규홍 : 한마디 덧붙인다면, 김기철 위원장께서 걱정하시고 덤핑 예방방안으로 실시설계까지 할 경우 설계비가 많이 올라가는 것까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따라가지 못할 경우 모든 부담은 건축사들이 전부다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기철 : 문제는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한다는 것과 그 동안 건축사협회에 관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전혀 어떤 룰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설계대가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키자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다면 다른 대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이규홍 : 인허가 도서작성시 의무적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김기철 : 법제도로 해서 묶으면 되고, 자율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어떤 방식이 있겠느냐하는 것입니다. 허가 시에 실시설계도면을 내는데 설계비 덤핑 등 여러 가지를 바탕에 깔고서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부담이 커진다든지 하는 문제들도 예상이 다 됩니다.

이규홍 : 그건 설계변경도 흔히 있을 수 있고, 분명히 국민부담이 상당히 늘어납니다.

김기철 : 설계변경이 왜 생기느냐하는 이야기입니다. 허가와 심의가 동시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심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장양순 : 이 문제는 우리가 깊게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결론은 현행대로 가자는 쪽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현재 계류중인 법안에 대전회장께서 언급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박순종 회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두기 : 도면을 제출을 하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역량이 부족하고, 필요의식을 별로 못 느끼니까...

황석규 :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건축법에 착공시 제출해야 될 도서목록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그 목록대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할 의무밖에 없습니다. 구조에 관한 내용도 허가 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에 의한 구조안전확인서가 있습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권한과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착공도서목록에 건축, 구조, 소방, 설비, 토목 등 필요한 도면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계통도나 배치도 한 장으로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평면, 입면, 단면도 등 제출도서기준이 있습니다. 설계비대가기준에 기본, 중급, 상급으로 왜 나누어 놓았습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상세하게 그려줄 필요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공사를 많이 해 본 경험이 있다든지 건축주가 직접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서 기본도면만으로도 충분히 공사가 가능한 경우 적은 비용으로 건축사가 도면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것을 상급으로 설계해서 완벽한 도면을 원합니까?

박순종 : 먼저, 인천건축사회회장인 제가 건축사회장들 앞에서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발언을 하셨다는데 이 말은 사실무근입니다. 건축사가 공사감리를 못한다가 아니라 공사감리 정의가 잘못되어 있으니 조사검사업무에 속하는 감리를 타 건축사가 해야된다라고 발언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식채널을 밟지 않았다" 라고 했습니다. 공식채널을 밟아야 정당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의원시절에 우남용 회장께 대의원총회에서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현행 건축법은 헌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본 협회에서 헌법소원을 해주십시오' 라고 건의를 했고, '우남용 회장께서 21세기 위원회에서 헌법소원을 다루어 주겠다' 라고 외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 협회 회의록에 등재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인천건축사회장이 된 이후 2002년도 4월달 경주에서 열린 시도회장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역시나 '우남용 회장이하 15개 시도회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헌법소원을 21세기위원회에서 다뤄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의 필요성에 관한 문건을 모두에게 돌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남용 회장님이하 15개 시도회장들께서 인천건축사회장님이 헌법소원을 하시오. 그리고 헌법소원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모두 본부 및 각 시도회에서 분담해 주겠노라' 고 했습니다. 이것도 회의록을 찾아보시면 있는 사항입니다. 또 2002년도 말 대한건축사협회 회보를 보면 16개 시도회장단이 '설계와 감리를 분리한다' 라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 2003년도 4월말 워크샵 때 이러한 문제로 격돌을 했습니다. 격돌을 하는 중에 서울 김영덕 회장께서 이왕이면 이 기회에 서상섭 의원께 우리

감리에 대한 용어정의를 확실히 해야 건축계 내 업역 싸움 없어져
협회에서 건축설계연장선상에서 하는 감리업무 보수대가를 책임감리 기준식으로 정해놓아야
건축사에 대한 용어도 '건축설계와 이와 연관된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정의해야

가 뜻한 바를 더 얹어서 건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유로 저녁 8시에 회의를 끝내고 한명수 경기회장께서 문건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13개 회장들은 다 사인을 했습니다. 아침 9시에 다시 워크샵이 계속 되었는데 저보고 김영덕 회장께서 '이것을 서상섭 의원께 건의하시오'라고 문건을 주셨습니다.

그 문서를 '그래도 절차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것을 서상섭 의원에게 내겠느냐 서울회장께서 이걸 본부회장께 가져 가서 이사들과 논의를 한 다음 그것을 추후에 나한테 주도록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덕 회장께서 저쪽으로 가서 본부회장님과 숙의를 한참 1, 2분 하더니, 다시 가져와 '박회장께서 제출하십시오'하면서 저에게 준 것입니다. 여기에 서상섭 의원한테 의원입법하기 위해 제출한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물어보시는 단서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실 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건축법 모법에서 무슨 무슨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한다' 이러한 조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단서조항이 건축법 모법에서 조례로서 감리 건축사의 지정과 감리비 징수를 조례로서 정한다'라고 직접 위임할 수가 있는 사항인지요? 시행령을 거치고 다시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을 거치고 또 시행규칙에서 다시 조례로 내려가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기철 법제위원장께서 해석을 해주십시오. 직접 모법에서 조례로 위임을 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까?

김기철 : 원래 세부사항은 법에서 바로 가지 못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가능합니다. 현재 법에서 그 얘기는 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규홍 : 모법자체에 설계자가 감리를 한다. 또는 못한다라는 문구 단서조항을 표기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

김기철 : 아닙니다. 현행법에서 공사감리는 건축사가 하게끔 되어 있고, 설계자가 해라 혹은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시행령에서 바꾸도록 해야 되는데, 대개 정식 루트를 밟아서 협회의 의견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박순종 회장께서는 시행령은 바꾸기가 힘든 입장이고, 오히려 법을 바꾸기가 쉬웠다는 얘깁니다.

이규홍 : 잘못된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 됐습니다.

김기철 : 그건 절차상의 어떤 방향의 문제입니다.

박순종 : 법제위원장께서 하신 유권해석 감사합니다. 서상섭 의원실을 방문하여 '단서조항 이것을 직접 조례로서 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일정규모 이하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해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해서 타 건축사가 일종의 옛날 교체감리 식으로 하도록 조례로 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건교부의 시행규칙으로 만들 때 다들 합심해서 잘 들 하십시오' 라고 법체계가 되어 있다고 하여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건을 제가 다른 곳에 버렸다든지 또 이걸 왜곡해서 다른 글을 써서 건의를 했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성 : 21조에는 공사감리라고 말씀하셨고, 설계자는 공사감리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21조는 잘못됐고 23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종 : 이미 건축법 모법에 건설기술전문감리 회사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들을 공사감리 하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습니다. 1항에 분명히 설계자와 감리자를 분리하도록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건축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안된다'라고 삽입을 한 것입니다.

김우성 : 바로 21조가 제 생각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장양순 : 박순종회장께서 말씀하신 기본 뜻은 일정규모 이하 분리인데 문장자체가 본뜻하고 좀 상이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합시다.

김종복 : 설계자가 감리를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건 언급을 해야 됩니다.

박순종 :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리는 진짜 감리가 아니고 준공사용승인을 낼 때 감리보고서를 내는 착공감리보고서, 중간감리보고서, 완료감리보고서 이것에 의한 조사검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갑자기 건축을 모르는 비전문가 사람들한테 '그것은 감리가 아니고 조사검사업무다. 조사검사업무는 설계자에게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봐야 비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현행에 있는 건축법상의 감리정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현행의

감리의 정의는 어디까지나 조사검사업무에 속하는 감리이므로 그것을 떼어내고자 하는 행위이지 진짜 설계자한테 감리를 떼어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행 건축법에 설계의도 반영과 건축주를 위해 시공자를 감독한다'는 그러한 감리정의는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현행건축법에 집어넣고 싶고, 착공감리보고서 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검사업무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떼어내고 싶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종복 : 단어하나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설계자가 감리를 못한다 이 한 줄은 누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뒤에서 설명을 잘해도 말입니다.

이영복 : 박순종 회장께서 하신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문안을 만들어 주십시요.

이규홍 : 지금 이미 일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장양순 : 이것만해도 상당히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규홍 : 이런 식으로 분명한 말씀만 했으면 전국 16개 시도건축사회에서 이렇게 난리치고, 본회의 이사들께서 이해를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최종단계인 조사검사부분을 본인이 하지 않게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전혀 반대 없습니다.

박순종 : 그 동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회장단 모두다 내 말을 끊고 '다 알았다' 하시고, 지난번 회장단 회의 때도 이 회의실에서도 격돌하지 않았습니까? 회장단들이 '다 아는 얘기를 왜 또 하나' 하면서 전혀 말을 못 꺼내게 했습니다.

이영복 : 박순종회장께서 하신 의견은 일정 소규모에 대한 조사검사 업무로 사료됩니다.

이규홍 : 그런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노심초사하는 것입니다.

장양순 : 법제위원회에서 확인을 하셔서 이사회나 시도회장단 회의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우성 : 그 외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제도 라는 것이 생겨서 사업관리하고 책임감리하고 지금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축설계 하는 사람들이 감리라는 용어를 찾아오려면 감리업무를 세분화하여 업무의 세부종목의 구성에 따른 설계연장선상의 업무를 분리하여 용어를 정리하고, 책임감리로써 정의도 따로 내리고 감리라는 말은 이런 것이다 정의를 내려주시면 건축계 내에서의 업역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자가 설계연장선에서 감리하는 것을 확실하게 찾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계획업무 조사검사업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주면서 사업관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시면 감리라는 말은 건축사들이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업무에만 쓰는 말로만 하시고 조사검사대행은 감리라는 말을 못쓰게 하고 또 감리협회에서 얘기하는 책임감리에 대해서도 이것은 사업관리다 그런 쪽으로 용어를 정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 오히려 지금 감리라는 용어를 건축법에서 빼버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 우리는 감독하고 관리하며, 허가권자가 검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김우성 : 우리가 얘기하는 감리는 뭐라고 용어로 하는 거죠?

김기철 : 감독으로 하고....

임두기 : 그것는 이미 위험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김기철 :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은 연구보고서에 내놓은 것인데 참고로 무슨 용어가 있으면 괜찮지만, WTO에서 Supervison 관계밖에 할 게 없단 얘기입니다.

김종복 : 설계 어휘가 공사감독 · 시공검사 · 공사관리를 Supervison, Inspection, field management 이렇게 분류를 하셨는데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설계자, 감리 시공자가 할 것과 공무원이 할 것을 분류를 해야...

김기철 : 그러면 문제는 대안에서 감리라고 했을 때 영어에 무엇을 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설계자 감리든 어쨌든 공사감리를...

이규홍 : 왜 영어로 꼭 씁니까? 우리말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김기철 : Construction Administration으로 법에 넣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독이라든지 Supervision관계를 내놓은 것입니다.

장양순 : 대부분 정리가 된 듯 싶습니다. 이제 설계자의 감리권, 소위 말해서 설계와 감리는 분리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 하에 '설계자의 감리권이 어디까지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씩 말씀을 하시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는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자신이 감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건축사가 해도 무방하나
건축사가 배제된 감리란 있을 수 없는 일

박순종 : 감리라든지 설계라든지 그 주안공은 건축주입니다. 모든 것은 건축주가 설계도 맡기는 것이고 감리도 맡기는 것입니다. 건축주가 설계한 사람에게 감리를 주고 싶으면 그 사람과 계약하면 되고, 싫으면 다른 사람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감리정의를 억지로 함으로써 모든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헌법에 자유계약 원칙이 있습니다. 감리를 헌법을 위반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건축사들이 내가 설계한 것을 내가 감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건축주가 시켜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의 강제조항에 의해서 내가 설계한 것을 내가 꼭 감리를 하겠다' 그것은 용납이 안됩니다.

그 감리 중에도 떼어낼 것은 다 떼어내고 순수감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건축주입장에서도 보면 자기 집 설계해준 사람에게 감리 맡겨야 그 집이 제일 잘되는 것을 압니다.

황석규 : 공사감리를 자꾸 분리하자 말자하는 말씀인데, 설계자가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도면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것을 현장에서 조정해서 자기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구상이고 시공자가 그것을 구체화시켜주는 과정에서 그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사진행 중에 설계자의 의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설계자가 현장에서 관여를 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임두기 : 결론적으로 박순종 회장께서도 선택권이란 것을 말씀하셨고, 21조 내용 같은 경우에 '설계자인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함.' 이 자체는 원천적으로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23조 같은 경우에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현장조사?검사의 확인업무대행에 관하여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하도록 하여야 함' 이것은 맞습니다. 이미 지자체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된 내용이고, 수수료부분만 황당할 뿐 벌써부터 시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23조 같은 경우에, 소위 말해서 사용승인과 임시사용승인 관련해서 특검행위라고 합니다. 특검행위를 설계자나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조사 · 검사의 확인업무의 대행은 제3의 건축사가 해야 된다.' 이것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황석규 : 그것은 지금 현행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두기 : 대전에는 조례로 하고 있는 것이지 법 자체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법에서 명시를 해놓아야지 그것을 근거로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현실성 있는 비용을 제도화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고 그에 대한 책임도 지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21조에서 설계자는 공사감리를 못하게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과거에도 소규모 건축물을 교차감리했다가 다시 환원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사부재리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적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일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도 괜찮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계한 것을 다른 건축사가 감리하고 다른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내가 감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지나간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새로 다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김우성 : 법규정의 공사감리는 설계연장에 있는 감리를 말하는데, 김중복 회원께서 주신 19조 관련 자료를 보니까 공사감리업무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 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공정표의 검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의 지도는 시공회사에서 해야 하는 업무이고, 공정표의 검토도 우리 건축주가 특별히 그 공정에 대해서 미덥지 못하고 공정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특별히 요청한다면 모를까 당연히 공정을 맞추는 것은 시공과 계약상의 문제이고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괜히 감리업무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히려 이번에 시정해서 제한을 한다면 공사감리에 대한 혼동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감리협회에서 하는 책임감리가 제대로 돈을 받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감리대가기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축사협회에서도 건축설계연장선상에서 하는 감리업무에 대한 것도 보수대가를 좀 더 책임감리하는 기준식으로 정해놓는다면 제대로 감리비를 받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번에 구체적으로 작성했으면, 김기철 위원께서 만약에 좀더 시간이 있으시면 우리가 설계연장선상에서 하는 감리업무를 정확히 내리고, 그것을 감리업무를 꼭 찾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감리대가기준을 감리협회에서는 책임감리대가기준을 정한다면 제대로 감리대가를 받으면서 적당히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는 관행 등도 불식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철 : 감리란 감독하고 관리하고 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용어자체입니다. 이것이 혼동되기 때문에 이 공사감리업무는 법이나 시행령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심지어 시공자들이 감리가 잘못돼서 우리가 시공을 잘 못한다고 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공자가 할 업무는 공사관리로 보고 시공검사를 해야 되는 문제와 현장조사검사업무에서, 그냥 검측만 가지고는 시공 확인관계가 거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시공검사라고 묶고 나머지 부분에서 설계자가 참여를 해서 감독을 하게끔 하고, 특히 Construction Administration은 법에다 넣을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철근 배근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독이 하고 결과에 대한 것은 시공검사에 수행하면 우리는 그만큼 책임은 덜어 질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 대신 허위복명 이든지 중간에 검사해야 하는 것들은 감독으로 가기 때문에 설계감리라고만 해서는 법에 넣을 의미가 없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감리에 대한 문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김우성 위원께서 책임감리 쪽하고 사업관리 쪽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관리파트로 가자 하는데 하나의 의견은 될 수가 있고 건교부에 법제관계가 계속 접촉이 된다면 그렇게 얘기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우성 : 감리라는 용어를 건축사가 하는데 그걸 쓰느냐, 감리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느냐 이걸 정하자는 것입니다.

김기철 : 설계자감리라고 색채를 정하고 재질을 정하는 것이 공공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법제화시킬 수는 없단 얘깁니다. 그 동안 설계감리라고 해왔습니다. 일부 회원들은 설계감리다 해놓고 책임은 회피했습니다.

김우성 : 설계의 연장선상에서 하는 감리는 단순히 색채의 재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샵드로잉(상세시공도면)이 있잖습니까. 검토를 설계자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면 안됩니다. 샵드로잉에 미적인 것도 나오지만 안전에 대한 것도 다 나옵니다. 샵드로잉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구조샵드로잉입니다. 구조에는 철근배근이나 철근굵기, 철근의 모든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설계자가 당연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감리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설계자가 연장선상에서 하는 사람이 쓰도록 정의를 내려주셔야지, 그 감리라는 용어를 검사대행하는 사람들한테 뺏긴다든지 감리라는 용어가 어떤 책임감리하는 사업관련 사람에게 뺏긴다면 그게 나중에 변질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기철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책임한계를 어디까지 가져갈 것이냐, 설계자를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감리라는 용어를 만일 감독으로 했을 때는 누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것이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면 되는데 그동안의 우리가 감리란 용어에 대해서 너무 포괄적으로 더군다나 공무원들과 우리 건축사들과 서로 이를테면 탁구공 식으로 책임회피만 해왔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김우성 : 감독이란 말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기철 : 설계감리는 설계를 감리하는 것입니다.

김종복 : 그래서 설계자감리로 명시 한다든지 시공감리, 설계감리로 분석을 해야지 지금 분석표가 사실 말이 안됩니다. 설계감리와 설계자감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샵드로잉도 분명히 시공자가 사실은 워킹드로잉을 그려야 되는 것처럼, 철근에서부터 Functioning에 대한 것을 우리 설계자가 전부 설계에 표시해야 되고 안전에서부터 미비한 설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설계를 잘해도 그것을 시공 중에 우리가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재선택은 사실상 미국에선 Buy american act라고 해서 대단하게 다룹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시공자한테 모든 권한을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넣지 않으면 잘못하면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설계자감리를 꼭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관리를 시공감리하고 설계자감리하고 분리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지금 식으로 해서는 이해할 사람 없습니다. 생각 외로 건축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휘 정리를 분명히 해서 우리가 유익한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됩니다.

장양순 : 우리가 그동안 감리를 하면서 의무는 무한대로 지고 보수는 거의 없다시피 서비스했습니다. 이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용어의 정의는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지 많은 연구를 해보아야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나눠야 될 것이냐, 그냥 종전대로 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보고서처럼 감독 · 검사 · 관리 이렇게 셋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감독분야에서도 타 건축사가 공사감독을 했을 때는 설계자 감리라는 것을 두어야하느냐 이런 것이 오늘 결론지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한 분씩 종합의견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두기 : 김우성 건축사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사감리업무 내용을 보면 소규모 건축물이나 상주대상 건축물이나 책임감리대상 건축물이 다같이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공정표 검토라든가 안전관리지도 같은 것은 비상주를 하면서는 가당치도 않은 것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 제도를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상주라 해도 말입니다. 그리고 상주

이제 감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해야
그러기 위해서 용어, 범위, 역할 등 감리업무 분장 더 많은 연구 필요

로 하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또 품질시험이나 공사관리 관련 업무 같은 것은 책임감리가 아니면 사실 상주감리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범위와 역할 분담을 적정히 한다면, 실제로 책임감리 현장에도 설계자인 건축사가 감리행위로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범위도 결정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책임감리를 용어를 달리해서 말씀하셨듯이 시공관리라고 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용어를 만들어서 그 분야는 CM이거나 비슷한 업무를 하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발상자체가 CM으로부터 시작됐다 하던데 그 역할은 그 역할대로 가고, 감리는 감리역할대로 규모별로 분리를 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구분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이 뭉뚱그려져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정표도 없는 공정표를 검토해야 되고 안전관리지도를 비상주하면서 현장 돌아가는 것을 지켜볼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관련하여 사고가 나면 책임까지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책임지라 한다 해도 우리 책임 못 지겠다 하면 법에서도 책임져 주지도 않고, 그렇듯 이러한 시행상의 오류 부분을 정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에서는 규모, 용도에 따른 대상별로 이 업무자체를 세 분야로 나누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오류부분을 정정해서 현행대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라든가 책임 같은 것을 전부 구분을 지어서 명쾌하게 분류하여 시행한다면 큰 이상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우성 : 법에서 얘기하는 건축사는 건축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건축사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외국에서 architect라고 하면 자격증을 architect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를 한 사람을 architect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가졌더라도 설계를 한 사람을 architect라고 하고, 현장에 나가서 현장생활을 하면 superintendent라고 합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해도 역할에 따라서 용어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건축사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고, 자격증을 가졌다하더라도 역할이 시공자라면 건축사로 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건축사는 건축설계와 건축설계와 연관된 감리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공회사에 고용된 건축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설계업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혼용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업관리회사에 가서 건축사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지 않느냐? 법에 보면 건축사하면 다 할 수 있는데, 왜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이번에 건축사법을 업무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건축사라는 정의도 건축사는 건축설계 및 그것에 연관돼서 감리업무하는 사람을 건축사로 한다고 정의를 내려야지, 건축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건축사로 한다면 계속 업무구분에 있어서 혼동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주십시오.

김기철 : 우리나라 법체제가 모두 자격증을 호칭하는 체제로 되어 지금 얘기한대로 설계자라 함은 건축사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설계자, 감리자 또 그렇게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사로 하기는 힘듭니다.

김우성 : 바로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여러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도 계약서에 보면 architect, contractor, owner 셋이 정해져 있습니다. contractor가 건축사자격증이 있더라도 contractor면 contractor업무를 책임과 권한을 지는 것입니다. architect는 그 설계를 담당한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지 건축사 면허 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김기철 : 설계자로 따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우성 : 설계자로 정의를 내려줘야지 설계자가 아닌 사람이 건축사라고 해서 건축사가 모든 고유의 설계자 하는 업무를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확대 해석할 수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규홍 : 어쨌건 오늘 감리부분에 대한 것이 많이 압축된 것 같습니다. 감리라고 하는 말로 끝나야지 설계감리다 공사감리다 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규정된 건축사가 설계 및 공사감리업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 중 떼어낼 부분은 떼어내고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해야 되겠지만 그 외의 용어의 정의에 분명히 감리라는 말을 절대 써서는 안되게끔 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토론 또는 좌담회가 진작 열려서 김기철 위원장께서 애써서 만든 것을 우리가 도와드리는 입장으로 진행됐었다면 참 좋았겠는데, 막판에 몰려서 회원간에 오해를 불러온 점에 대하여 저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회원 개인입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당연히 협회차원에서 분명히 어떤 제재가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수습하실 지는 물라도 현명하게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복 : 김기철 회원께 기대가 크고, 지금 김우성 회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기에 동의합니다. 세 번째는 어휘를 꼭 설계자감리로 해서 다른 사람이 금방 이해를 하고, 시공자 · 공사감독 · 감리 · 공사감리 · 설계자감리로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우성 : 변호사가 자격증이 있지만, 그 역할에 따라서 변호사도 되고 검사

도 되고 판사도 되잖습니까. 그러니까 건축사가 자격증이 있어도 역할을 구분해야 합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일을 다하겠다 그러면 이게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순종 : 감리에 대해서 "감리보고서는 건축주한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자기 건축주를 위법보고하게 하는 법 조항을 삭제"하면 감리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리에 뭘 붙이기보다는 모든 걸 다 빼버리면 간단명료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업무는 굳이 법에 명시를 하지 않더라도 국가가 알아서 조사검사확인을 하면 아주 간단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적으로 건축법을 그렇게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이영복 :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설계한 공공건물의 경우 감리가 있지만 발주처의 요청에 의거 설계에 의한 시공에 있어 문제점을 협의 요청하고 심지어 색채의 선정, 현장방문 시 안전공사 관리까지도 건의를 합니다. 기관장도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도록 도면에 의거 모든 것이 완공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본인의 경우에는 설계에서부터 준공 시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사감독 시공검사 업무를 위임받는 바 감리에 대한 업무범위의 용어정리는 되지 않겠습니까?

황석규 :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 쪽에서는 박순종 회장님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서 이사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든지 법제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어 건축사협회의 목소리로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개인은 개인대로 안 들어 주니까 나 혼자라도 하겠다해서 한 것 자체가 양쪽 모두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미 국회에 의원입법이 진행 중에 있고 건교부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데 우리 협회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보여준다든지 또 다른 대안을 여기서라도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것들은 좀 더 연구를 한다면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하는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영복 : 잠깐 현재 감사 간담회나 이사회에서 설계감리 분리대책 대안수립에 본부회장께서 직접 앞장서도록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상당합니다.

이규홍 : 아울러서 15개 전국건축사회장단도 분명히 입회를 해서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야 될 것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임원소집을 하여 최종정리 의견을 국회에 전달함으로써 철회할 것은 철회하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보류하도록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복 : 지난번 고문회의시(12/10) 심각하게 의견을 나눴으며, 회장께서 물불 가리지 않고 국회를 상대로 최선을 경주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김기철 : 감리에 대한 것은 김우성 회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어정의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오해를 좀 없애야겠고, 연구보고에 저희는 이번에 체크리스트까지도 나갑니다. 그것을 건교부에서 상당히 참고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고과정에서 건축사협회에 의견을 물어 올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 경우는 장계처분 하라고까지 올라왔으니 계속 할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감리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시도회장단들이 본부에 건의를 해서 그 안을 홍익대 건축도시 대학원장 앞으로 보낸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제가 대학원 학생들한테 낯뜨거워서 얘기를 못합니다.

이규홍 : 저희가 오죽 급했으면.... 이런 시급한 사안을 본회에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흘만에 작성을 했던 것입니다.

김기철 : 대안이 있으면 충분히 참고를 하겠는데, 대안은 없고 말꼬리만 잡고 계속 얘기가 되다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안)이라고 왔는데 무엇을 하자는 거냐? 지금 그냥 있자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였는데, 현실은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은 어차피 개정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소형건설업 면허관계가 튀어나오고 또 책임감리는 나름대로 건기법에서 모든 공사감리를 그쪽으로 가져간다는 안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참고로 했으면 합니다.

이영복 : 그 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5일 감사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며 조기에 대책수립을 건의하기로 하였고, 심지어 잘못되면 회장책임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하였습니다. 2002년부터 거론되었던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본 협회의 법제위원회 또는 외주용역 처리 대안을 수립, 건교부에 본 협회의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입안토록 하여야하나 이를 시행치 않고 간단한 근거자료조차 없는 본 협회 입장만 제출한바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금과 같은 심각성이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다소 시간적인 제한이 따르나 사무처 및 법제위원회에서 조속히 관계연구학회와 공동으로 작업수행 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김기철법제위원의 말씀처럼 어떤 형태든 감리법개정이 시행될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건교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본 협회의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법제 · 건축위원회 개최, 연구용역 등 본협 차원에서 조속하고 강력한 대처 있어야
인터넷 통한 의견 수렴과 이를 하나로 묶는 일 서둘러야

국회건설위원에게 충분한 설명과 아울러 저지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징계요청이 접수된 김기철 위원장님과 박순종 인천회장님의 의견을 청취한 바 징계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규홍 : 아닙니다. 저희는 징계를 정식으로 요청하고 그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김기철 : 그것은 협회의 법제위원회든지 가동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난 9월 이후에 법제위원회를 한번도 개최를 않다가 법제위원장인데 개인적으로 하는 용역내용이라도 알지해서 제가 한번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건축분과, 법제분과하고 합동회의형식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고 끝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관계를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서 협회 취향에 맞는 것을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줘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갈지는 회장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복 : 김기철 위원장님의 그동안 협회 취향에 맞는 논리적인 대안제시에는 다소 늦었지만 현재 이종정 회원이 법제도 개선기획단에서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 바 거의 작업이 완료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가 설계감리제도의 개선점을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이 법제위원장이므로 어떤 형태든 협회입장에서 총괄 대안제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건교부입장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가 귀찮은 예하 단체지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국가에서 만들어준 법인으로서 그에 따른 권한을 부여하였는데 회원들이 관계법을 위반하여도 징계 업무정지 처분을 정상적으로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모두들 편안하고 싶어하며 건축법 및 관계법 개정 시마다 입법예고나 국회 상정 후에 본회가 불리한 경우 성토나 하고 성명서를 발표한다며 근본적으로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도 반성을 해야겠지요. 공정거래 위원회 방문 정책국 제도개선 담당관에게 본회의 어려움을 피력하여 도움을 요청한 바 우리가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정책입안에 대한 성토 등의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은 건교부와 대등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개인 법인화를 원하면 본회에 부여된 관계법에 의한 권한도 반납 되여야 하는 바 그렇다면 우리의 고유권한도 점차적으로 분산토록 유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방관하여서는 안되며 그러한 맥락에서 김기철 회원께서는 본회 회원임을 자각하여 대책을 강구하서야 합니다.

건축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건축법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에게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설교통부는 논리적으로 불합리한 다른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협회의 관리부서인 건교부를 멀리도 가까이도 하지 말 것이며, 다만 동반자로서 대등하게 협의 및 협조관계를 유지하며 아울러 소수의 담당자에 의거 우리의 고유권한이 유린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장양순 : 말씀하신 것들을 정리한다면 첫째 감리는 건축사가 설계한 것을 자신이 감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 법에 있는 것과 같이 다른 건축사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건축사가 해도 무방하다. 어쨌든 건축사를 떠나서 감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감리를 하면서 실제 책임과 의무는 많았고 감리비는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감리업무도 분장을 해야 되는 바 그 용어라든가 범위 그리고 역할에 대한 것들은 현재 건교부에 올라온 보고서를 더 연구를 해서 가감을 충분히 해야되겠다.

이상과 같은 것을 관철하려면 좌담회뿐만 아니라 이사회, 법제위원회를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찾고 완벽한 대 국민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결론지으며 좌담회를 마칠까 합니다.

귀한 시간, 긴 시간 감사합니다. 토론자와 회원님 모두 금년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재훈 / 단국대학교 건축대학 건축학과 교수
by Lee Jae-Hoon

공간클럽 - 08
Space and Rooms

건축공간에 대해 막연히 동경하며, 좋은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시간을 기억해본다.
그다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 보인다. 어찌보면 건축주의 요구와 구조, 기능, 설비, 건축비의 문제에
매달려 좋은 건축공간이 가져야할 모습을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건축가에게 꿈같은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해본 적이 없는 나만이 만들어낸 건축공간일 것이다.
그것은 영원한 건축가의 꿈이며,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건축인이 건축적 삶을 사는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근래, 건축공간에 우선하여 형태적 유희나 재료의 표현, 프로덕션의 즐거움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향이 보여지기도 하지만, 건축이 존재하는 고유한 영역은 결국 공간이라는 것에 모두 공감하리라고 생각된다.
젊은 시절 건축공간에 대한 향수를 달래며, 잊혀져가는 건축공간의 가치를
새롭게 일으키고자 공간클럽이라는 이름으로 건축공간에 대한 이런 저런 얘기를 던지려고 한다.
더러는 일반적인 이야기도 있겠지만, 소주제를 통해 건축공간을 전혀 새롭게 볼 수 있는
시각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 주〉

목 차

1회
a. 공간은 하나인가요?
b. 공간의 증거
c. 공간은 없다

2회
a. architectonic space
b. 노자의 공간개념
c. 5차원공간

3회
a. 누구의 공간인가?
b. 얼어붙은 공간
c. 서랍속의 공간

4회
a. 공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b. 논리로서 공간을 이해한다.
c. 공간지놈지도

5회
a. 인터 중성의 공간
b. 시간을 넣은 공간
c.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6회
a. 공간의 밀도
b. 공간의 전이
c. 공간의 위계

7회
장면으로서의 건축공간

8회
a. 쉬운 공간만들기
b. 새로운 공간만들기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9회
a. served space & servant space
b. 공간의 종류
c. 공간의 극

10회
a. 공간의 경계
b. 공간의 관계
c. 공간의 모듈
d. 공간의 비례

11회
a. cyber space
b. space syntax
c. spatial behavior

12회
a. 공간속의 가동
b. 시나리오 있는 공간
c. 창으로 본 공간

13회
a. 공간계획
b. 공간디자인
c. 공간문법

a. 쉬운 공간 만들기

Easy Creation of a space

우리는 공간을 만든다고 이야기 하면서 실제는 공간을 만드는 원초적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이 들어가 사용해야 하며, 사람들에게 편리해야 하고,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담아야하고, 인간의 속성에 적합해야 한다는 등등이 그것이다. 사람의 문제에 집중하다보니 실제 공간 만드는 방법보다는 사람의 이해에 치우친 경우가 많다. 그것은 한국, 또는 동양의 전통이 사물 보다는 삶의 가치를 중시하다 보니 생겨진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들의 고유한 업역이라 할 것이다. 공간 만들기라는 고유한 업역에 충실한다고 했을 때, 건축을 수공예적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 생성되는 보다 실질적인 대상으로 치환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술적 가치와 삶의 가치 등의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한 단계 접고 생각하면(이러한 태도의 선택은 삶을 의미있는 행위로 보는가, 삶을 영위하는 행위로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건축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장인들에게 매우 재미있고, 쓸모 있는 작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공간을 만들면서 좀 더 흥미로워질 것이며, 만드는 방법의 개선에 초점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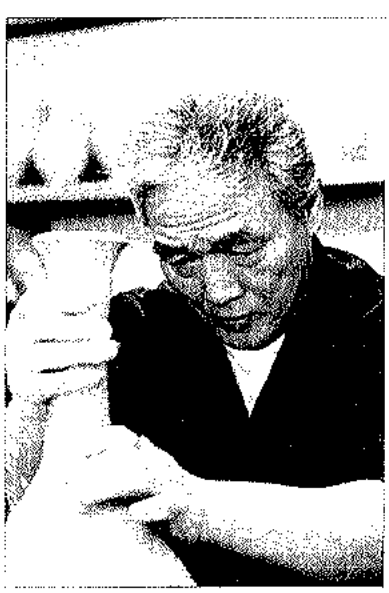

그림. 1 수공예품인 도자기의 제작 과정

르 꼬르뷔제는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우리는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칸막이를 치고, 전면에 개구부를 낸다. 그리하여 내부에 우리를 서브할, 우리에게 영향을 줄 연속되는 공간을 배열한다"라고 매우 쉽게 기술하고 있다. 로지에는 몇 개의 나무 기둥과 삼각형의 지붕구조에 의해 건물로서 필요한 성분을 다 갖춘 셈이 되었다고 하였다. 본질적인 의미로 들어가면 보다 복잡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집은 그렇게 간단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간 만들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여 쉬운 방법들도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똑같은 오류를 범하는 일상적이며 관습적인 방법을 택하거나 전혀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는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된다. 쉽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오히려 공간 만들기의 정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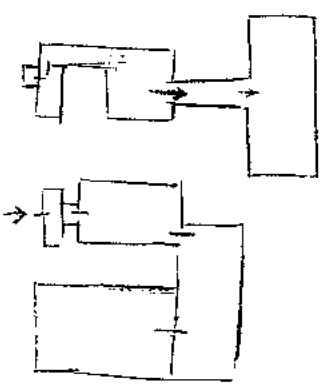

그림. 2 르꼬르뷔제의 평면구성 스케치

역사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쉬운 방법은 벽돌을 쌓아 만드는 방들의 집합이다. 구조재의 속성에 맞춰 방을 만들고, 문과 창문을 뚫고 방들을 엮어 전체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며, 벽돌을 집적하여 벽체를 만들고 지붕을 덮어 건물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방식은 목조기둥에 의해 칸을 형성하고, 칸들을 이어 필요한 실들을 만들고, 기둥사이에 문과 창의 프레임을 설치하고, 나머지 여백을 메워 벽체를 형성하며, 지붕은 초가나 기와의 형태로 얹어 놓는 방식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더 복잡하겠지만 기본 구조는 사람이 비옷을 입고, 우산을 들고 있는 모습과 비슷하며 여러 사람이 함께 우산을 들고 서있는 모습이 연상되기도 한다.

20세기 초 인간의 의식 변화와 함께 건축행위에 대한 의미변화가 생기면서, 건축공간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이 행해졌다. 데스틸의 면(Plane)에 의한 공간구성은 혁신적인 방법으로 많은 건축가들에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고, 오늘날 까지도 매우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공간을 형성하는 면적 요소인 벽체와 바닥판, 지붕판을 이용하여 자유자재로 필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유동성의 공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벽식 구조체계에서 철이나 콘크리트 구조에 의한 기둥식 구조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한 배경이 된다. 이와 같은 공간 만들기는 매우 실험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미스반데로에의 유니버설 스페이스에서 정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르 꼬르뷔제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와 같은 열려진 공간 만들기의 사조속에서 벽돌구조가 갖는 공간의 한정적 특징을 살리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의 초기 작업이 오픈 플랜, 자유로운 평면을 강조한 것을 보면 이와같은 복합적인 자세는 매우 시사적으로 보인다. 오픈 플랜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지만 그의 특이한 공간제조술에 의해 공간체험을 목표로 한 공간 만들기를 보여준다. 그림은 르 꼬르뷔제가 설계한 일본 동경의 서양미술관 평면 스케치 도면이다. 평면의 일부분에 대해 그 공간이 어떠한 공간적 특성을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 해칭으로 공간표현을 하고 있다. 평면은 기둥식 구조로서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었겠지만 르 꼬르뷔제는 하나의 공간을 칸막이와 천정모양, 조명장치, 동선흐름 등을 이용하여 공간속에 만들어지는 성격화된 다른 공간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그가 만들어내려 한 것은 기둥에 의한 자유로운 공간 속에 벽식 구조가 가졌던 공간의 영역적 속성을 이입하려 한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공간 만들기는 건축 결정주의("공간을 만들면 사용자가 알아서 사용한다")의 폐해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사용자로부터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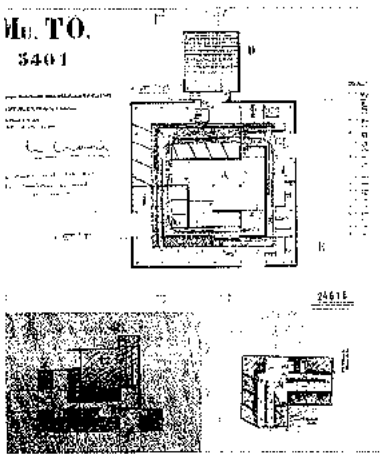

그림 3. 르꼬르뷔제의 서양미술관 공간구성을 위한 스케치: 구조적 공간내에서 공간의 성격을 구별하려는 시도가 보여진다.

간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알렉산더의 패턴랭귀지나 KIT(조립맞추기) 건축이 이러한 조류라고 하겠다. 사용자의 인식이나 사용상의 특징, 행태적 특징들을 찾아 하나의 모범 답안화 하고, 그것들을 묶으면 하나의 건축물로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부분 부분의 공간적 해답들이 서로 묶여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묶는 논리의 개발이 불가능하며, 각각의 해답이 정확한 해답인가에 대한 원초적 의문과, 다양한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무한 가지수에 적용가능한 무한한 부분해를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의해 그다지 보편화되지 못하고 말았다(그러나 컴퓨터 건축이 활동성을 갖게 되면 이에 대한 의미의 부활이 예상되기도 한다).

공간 만들기는 20세기의 마지막에 이르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한 원초적 의문으로부터 해체주의의 흐름을 겪게 되고, 최소한의 건축적 표현만을 의미하는 미니멀리즘의 유행과, 컴퓨터 기술의 발전에 의해 제네시스 이론과 디지털 스페이스의 실현 경향, 그리고 기존 방식의 유형학적 변형에 의한 역사주의의 부활을 예고한다. 21세기의 건축공간 만들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 확언할 수는 없지만 상업주의의 범람에 의한 대중건축과, 컴퓨터의 보급에 의한 디지털 건축경향, 그리고 지구환경보존의 명분을 앞세운 지속 가능한 건축의 그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해 보게 된다.

공간 만들기가 그 시대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유행을 타는 것은 건축이 인간의 삶의 표면적 모

그림 4. 21세기 건축공간의 가능성으로서 생태적 공간 만들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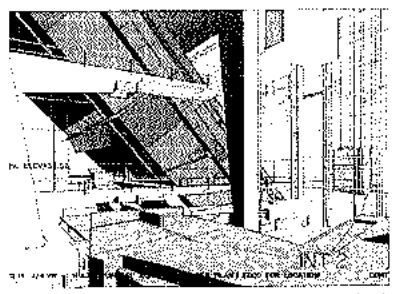

그림 5. 21세기 건축공간의 가능성으로서 가상 공간 만들기

습을 반영하기 때문으로 보여지지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건축공간 만드는 방식이 바뀌어도 사람들의 삶의 가치는 영원하다는 생각이며, 그것은 공간이 영속되는 가치로서 사람들의 삶을 투영하는 건축공간으로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공간을 만드는 방식에서 변화가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사람들의 변화가 있지만, 사람들이 공간을 사용하고 공간에 대해 대응하는 방식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은, 결국 다시 공간 만들기는 사람으로 초점이 이동한다는 이야기이며 사람들의 가치에 의해 새로운 공간 만들기 방식이 설정될 수 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b. 새로운 공간 만들기

Creating a New Space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간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사람들의 삶의 가치를 새롭게 찾아낸다는 것으로서, 그동안 잊혀졌거나 아직껏 발견되지 않았던 삶의 가치를 찾아 건축화 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추구는 매우 어려운 작업임에 틀림없다. 인간에 대해 심도 깊은 통찰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인간의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공간의 창조에 대해 보이지 않던 삶의 가치를 드러내는 역사적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가치체계 속에서 적용성의 변화를 보이는 것을 창조작업에 포함시킨다면 실질적으로 대지가 다른 프로젝트나 건물프로그램의 해석을 달리하는 프로젝트, 형태와 재료, 구법의 변화를 꾀하는 모든 작업을 새로운 공간 창조를 위한 작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것은 앞서 언급한 삶을 의미 있는 실체로 볼 것인가? 적용성을 높여가는 태도로 볼 것인가? 에 따라 그 입장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방법은 새로움 만큼이나 무한하다고 하겠다. 몇가지만 정리해 본다면, 먼저 극한 상황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공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주의 공간이라든지, 깊은 바닷속의 공간, 북극의 건축공간, 원통속 공간, 절벽속 공간 등, 조건이 극한의 경우가 된다면 그 해결책이 일상적인 공간과는 다른 공간 형태로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극단적 상황속에서 만들어진 공간은 극단적 상황에 매칭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새로운 공간으로 일반화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림 6. 홍익대학생의 작품: 절벽에 만들어진 주거단지의 모형

프로그램으로부터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로마에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하던 기독교인들은 이제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기독교를 수용하며 상징하는 교회공간의 최초 모습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은 십자형 평면으로 교회의 모습을 당연시 여기지만 당시로서는 지하공간에서 지상으로 올라오는 교회공간으로서 어떠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지 매우 고민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서양건축사에 의하면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로마의 시장 건물인 바실리카 평면을 기본 모델로 교회 평면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유럽연합이 탄생될 때,

어느 건축가가 한말이 기억난다. '유럽연합은 이 세상에 한번도 존재해 본적이 없는 국가간 통합 조직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논할 수 있는 공간이 지구상에 한번도 존재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유럽연합이 성공할지 의문이다'. 유럽연합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의 건축적인 장치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연합은 성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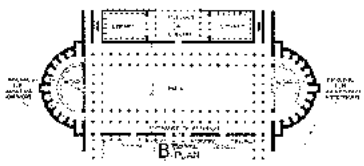

그림 7. 초기 기독교회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바실리카 평면

구조나 재료의 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 질수 있다는 것은 쉽게 알고 있을 것이다. 19세기의 철골과 유리에 의한 새로운 건축, 오토 프라이의 뮌헨경기장 천막구조, 안도 다다오의 노출 콘크리트, 마키의 은은한 벽체로서 천공 철판, 프라스틱 구조, 알루미늄, 요철판, 목재, 자연석, 시멘트 판넬, 그리고 그러한 재료를 다루기 위해 고유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구법과 디테일,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 새로움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이 유행화 되다보면 새로움의 가치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스케일을 통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고도의 학습을 필요로 한다. 인체의 치수와 행동반경, 심리적 공간, 미학적 공간에 대한 정확한 스케일이 습득되어 일상의 건물과는 다른 스케일로 공간이 형성될 수 있다면, 그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김수근의 휴먼스케일은 그가 설계한 많은 건물에서 그 독특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르 꼬르뷔제의 모듈라에 의한 공간 스케일은 공간의 경험에 새로움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독립기념관에서처럼 커다란 크기에서 오는 스케일은 사람을 얼리하게 하는 좋지 못한 사례이다.

공간의 형태를 변화시키거나 공간의 연관관계를 다르게 조직함으로서 새로움을 주는 방법은 일상적인 건축가가 추구하는 성실한 노력이다. 로마의 하드리안 빌라에서처럼 원형의 중심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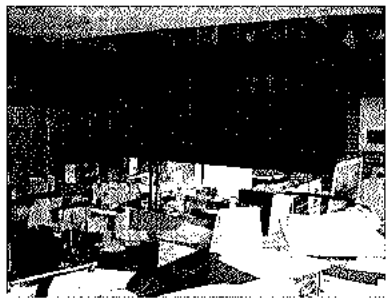

그림 8. 휴먼스케일의 공간사옥 내부

으로부터 축에 의해 공간을 접합해 가는 방법,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으로 연결되는 길처럼 건물을 길에 의해 자연스럽게 엮어가는 방법, 무대와 객석으로 연결되는 공연장을 무대와 객석으로 구별되는 공간구성체계로 해석하여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거나, 건물속의 방을 건물속의 조그만 건물로 해석하고 공간을 만드는 것, 설비공간을 숨겨진 수직적 공간에서 수평적 공간으로 구성하거나,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을 쐐기처럼 엮어 환경과 건축공간을 일체화하는 것, 등등, 많은 건축가들이 공간을 새롭게 조직함으로서 새로운 건축공간을 창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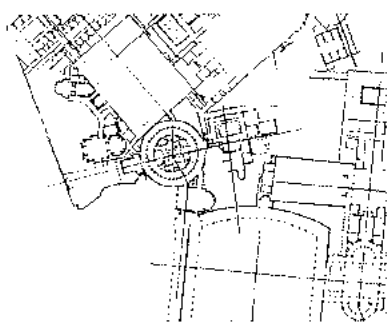

그림 9. 하드리안 빌라의 평면도

설계를 하는 방법을 달리함으로서 결과로서 생성되는 건축공간의 새로움을 얻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음악의 곡조를 건축적 흐름에 이입하여 공간체험에 응용하거나, 추상미술이나 입체파, 쉬르레알리즘 같은 미술의 사조를 건축공간의 생성에 응용하는 경우, 프로세스화된 과학적 진리를 응용하여 공간 체계를 엮는 방법, 문학이나 영화의 씨나리오나 장면의 생략, 비약의 방법처럼 공간의 흐름을 잡는 방법, 생물학적 신경조직이나 혈관흐름을 응용하여 방들의 관련을 찾는 방법, 그러나 건축은 이들 분야와 발생학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직접이입은 곤란할 것이다.

건축의 요소를 강조함으로서 새로움을 얻는 방법도 있다. 낙수장의 건물 밑을 흐르는 물이나 안도 다다오가 물이나 빛을 강조하여 표현시킴으로서 건축적 효과를 얻는 방법, 실내 분수를 강조할 수도 있고, 강하거나 분위기 있는 실내 조명을 활용하거나, 그림이나 의미있는 조각품을 적당한 곳에 위치시키는 것, 실내 조경의 설치, 바람을 통하는 벽체, 건물의 바닥이나 벽체를 흙으로 하는 방법, 영화 세트장과 같은 무대형 공간, 보안요소를 중점으로 한 구성 등등 요소의 강조는 좀 더 건물의 특징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공간의 새로움을 주기 위해 터무니 없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의 거실에 욕조를 갖다 놓는 방법, 욕실에 침대를 설치하는 방법, 소방서처럼 위, 아래가 구멍 뚫려진 사무실 공간, 산 밑에 있는 배 모양의 레스토랑도 이에 속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방법은 삿갓쓰고 양복입는 격처럼 이해하기 힘든 사례라고 생각된다.

그림 10.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애인을 위한 주택 렌 쿨하스의 보르도 주택

피터 아이젠만은 그의 작업에 대한 신중하고 깊이 있는 논리적 설명에도 불구하고, 새로움에 매우 민감한 사람처럼 보여진다. 그의 초기 작업인 하우스X 프로젝트에서만 해도 그는 매우 논리적이며 심층적인 분석을 토대로 건축작업을 한다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콜럼버스 컨벤션센터 프로젝트에서처럼 그의 방법론이 강조되면서 그의 작업은 오로지 새로움을 위한 접근처럼 느껴진다. 바닥이 경사질 수 있으며, 벽이 끼어들 수 있고, 천정고는 축소될 수 있었다. 창조를 위한 그의 방법론은 무작위성으로 발전되는 넘지 못할 선을 넘은 것으로 생각된다.

공간을 새롭게 만들어낸다는 것이 인간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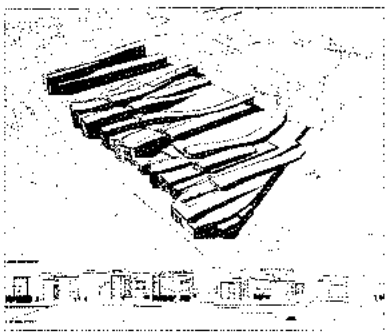

그림 11. 피터 아이젠만이 오하이오에 지은 콜럼버스 컨벤션 센터

치의 새로운 발견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적용의 경우에는 기존과 관련된 의미로부터 새로움의 의미를 강조할 수 있지만, 무조건간에(또는 해석되지 않는) 새롭다는 것 자체로서 인간에게 의미 있을 수도 있을 것인가에 대해 논할 필요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공간에 대해 느끼는 감성이나 논리적 요구의 적합성이 적용될 수 있을 때 새로이 창조된 공간의 가치가 제대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로운 공간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거나 적용성이 없더라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아닐지라도 내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공간의 적합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존재함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새로움을 주는 멋진 집을 가진 사람은 그것의 기능적, 심리적 만족과는 달리 자랑하고 과시하고 나만의 전유물로서 '새로움'을 가짐으로서 만족을 느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치적이거나 적용성의 측면에서 새로움을 갖지 못하는 건축공간은 소유의 의미를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동물적 본능의 소유적 가치에 한정된다고 하겠다.

c. 게임에서 보여지는 공간의 개념

Space Conceptions in Games

20세기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어린 시절 프뢰벨이라는 블록을 갖고 놀았다고 한다. 블록쌓기를 하며 익혀진 구성에 대한 아이디어는 전통적인 건축형식을 벗어난 그의 작품들에서 돋보인다고 해석된다. 길게 뻗쳐 나온 캐노피와 수직 수평의 매스의 기묘한 결합, 중심으로부터 확산되는 듯한 평면 구성 등은 블록 쌓기의 변형된 형태처럼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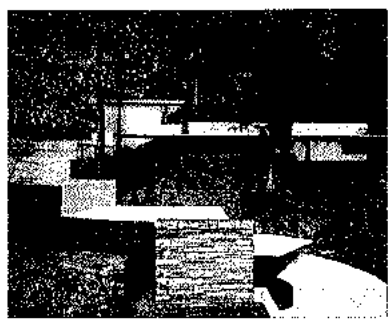

그림 12. 프랭크로이드 라이트의 낙수장에서 보여지는 수평과 수직의 구성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 건물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는 어린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면 목욕탕 욕조에 물고기를 풀어놓고 놀았다고 한다. 물고기를 만지며 물고기 몸의 비늘에 매우 익숙해 있었으며, 이는 그의 많은 건물들에서 비늘 모양의 건물 외피를 보게 하는데 작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빌바오 미술관의 티타늄 외벽 마감재의 결합은 언뜻 보기에 물고기 비늘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림 13. 프랭크 게리가 설계한 웰커 아트센터에 설치된 물고기 장식

어린 시절의 놀이가 건축적 행위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만은 없겠지만, 어린 시절의 재미있었던 놀이 경험이 어른이 되어 건축적 행위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많은 건축가들이 놀이라는 개념을 인용하지는 않지만 어린 시절의 어떠한 경험이 향후 그의 건축적 행위에 많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이 땅에서 놀 수 있는 놀이로 '땅따먹기'를 한 것을 볼 수 있다. 커다란 네모를 그린 다음, 두 세명의 어린이가 각자 한 변에서 시작하여 돌을 튕기며 영역을 확보해 가는 게임이다. 누가 더 많은 땅을 따먹었는가에 의해 승자가 정해진다. 땅을 따먹기 위한 섬세한 손동작과 어느 쪽의 땅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 게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게임에 익숙했던 우리나라의 어른 건축가들이 건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좁은 대지에서 최대한의 면적을 확보하려는 설계자세와 어떤 연관성이 없을까를 생각해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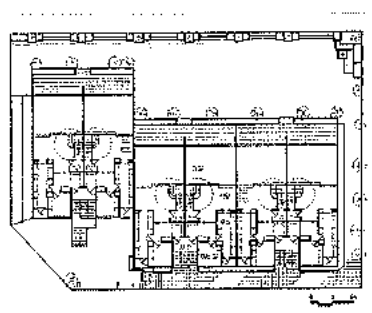

그림 14. 황일인이 설계한 주택평면: 타이트한 평면구성이 잘 보여진다.

미국에 있을 때, 주택지들을 돌아보며 우연히 어린아이들이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기 집과 학교, 공원, 시장 등을 군데군데 띄우어 그려놓고, 차도로 연결하며 왕래하는 행위를 통해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다. 미치칸으로 만들어진 보드에 사다리와 미끄럼을 그려놓고 목적지를 향해가는 주사위 놀이와 유사한 모습이었다. 놀이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영역을 확보하는 의미 보다는 목적지와 움직임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찾는 게임으로 여겨진다.

근래 유행하는 '테트리스'라는 컴퓨터 게임은 정해진 7개의 다양한 모양의 조각을 순간적으로 등장시키며 서로 찌맞추어지면 사라지게 하는 게임이다. 만일 잘 맞추지 못해 쌓이게 되면 지게 된다. 형태 요소의 결합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거기에는 결합의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 요철의 모양에 대한 형태지각과 이들을 엮어 폐합시키려는 전략이 요구되는 게임으로 복잡한 실을

하나의 틀에 맞추어야 하는 기존의 아파트 평면 구성에 응용될 법하다. 보다 진보된 3차원 테트리스는 형태 요소를 3차원의 복잡한 모양으로 설정하여 입체상태에서 결합되도록 하는 게임이다. 3차원 입체감각이 요구되는 게임으로서, 수직 코어나 발코니, 지붕의 입체구조 등과 같은 3차원 복합형태의 결합방식에 대한 훈련을 심어줄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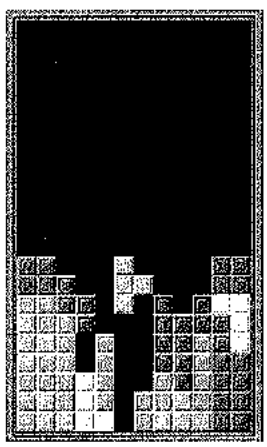

그림 15. 테트리스 게임: 조각을 맞춰야하는 목표점이 분명하다

컴퓨터 게임은 주어진 규칙을 응용하는 단계를 벗어나 점차 게임 참여자를 창조자의 레벨로 상승시킨다. '아바타' 키우기와 같은 게임은 컴퓨터 상에서 또다른 일상의 세계를 만들게 한다. 어린아이를 설정하고, 어린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피아노를 가르치며, 여행을 시키고, 밥을 주고, 학교에 보내는 일상을 조정하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 상의 대상이 어른이 되고, 그 어른의 값을 컴퓨터가 매겨준다. 보편적으로 창의적이며 성실하고, 예절바른 능력있는 사람으로 키워 놓으면 점수를 많이 받는다. 게임을 즐기는 사람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거창한 일을 벌릴 수도 있으며,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내용을 컴퓨터상에 실현시킴으로서 대리만족을 느끼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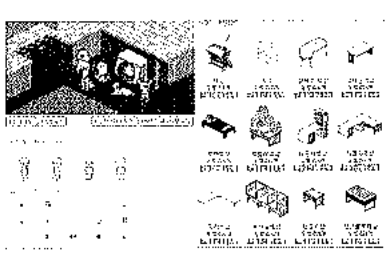

그림 16. 아바타키우기 게임: 가상의 현실을 창조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아바타' 키우기 게임의 연속선상에서 도시문제를 이슈로 하는 컴퓨터 게임인 'Simcity'를 들 수 있다. 이 게임은 대상으로서 인간을 키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시장이나 개발업자가 되어 도시를 꾸며 나가는 것이다. 도로를 어디에 낼 것이며, 도로 폭을 결정하고, 주변에 들어설 건물의 용도와 높이, 크기를 결정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학교는 어디에 배치하고, 상점은 어디에 배치하며, 주택은 어디에, 그 위치를 정하면 그렇게 배치한다. 상수원을 연결해야하고, 전력선을 공급해야 하며, 공항도 연결되어야 한다. 게임 참여자를 대단한 창조자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게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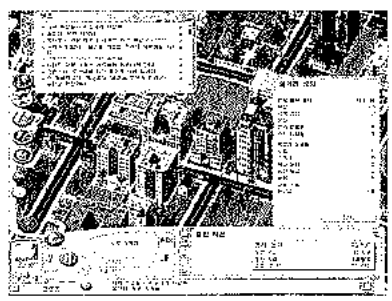

그림 17. 컴퓨터 가상도시 만들기 게임: 요소화된 도시구조물을 조합하여 도시를 창조한다.

게임은 아니지만 영화, '매트릭스'는 이와 같은 가정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된다. 현실 세계와 가상의 세계, 어느 것이 어느 쪽의 세계에 속하는 것인지조차 분간이 안되는 세계, 즉 나라는 존재가 조종당하는 존재인지, 조종하는 존재인지, 신의 존재와 내가 만드는 컴퓨터 상의 세계의 의미 등 현실과 가상을 매우 혼돈스럽게 하는 개념의 영화이다.

이미 건축에서도 이러한 사고는 보편화 되고 있다. 컴퓨터 그래픽의 발달과 CAD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가상 공간의 출현을 돕고 있다. 현실감이 없는-중력, 재료, 구조, 스케일이 없는- 가상공간에서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가상적 공간을 만든다. 중력이 없어진 가상 공간은 무한 균질의 공간이며, 그 공간을 나누는 규칙(Rule)만이 존재할 뿐이다. 규칙은 자동으로 형태를 생성하게 한다. 규칙은 설정하는 자의 것이며 설정된 규칙에 따라 다양한 변형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가상적 건축공간을 기초로 한 현실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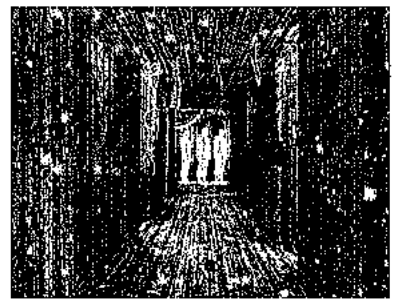

그림 18. 매트릭스 영화의 장면: 현실과 가상의 혼돈을 일으킨다

에의 적용이 현대건축의 한 조류를 형성하고 있다. 그렉 린이나 MVRDV 등의 현실속의 가상적 공간은 그들이 만든 규칙으로 만드는 공간이다. 이러한 경향은 피터 아이젠만의 제네시스 이론이 시작점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그렉린의 작품이나 MVRDV 의 작품이 신기함은 주지만 현실세계를 경험하는(그들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현실세계라고 정의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그다지 어필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상공간 속의 규칙적 방법이 현실세계에서 적용의 방법은 될 수 있을지언정 현실적인 건축적 목표의 달성은 곤란할 수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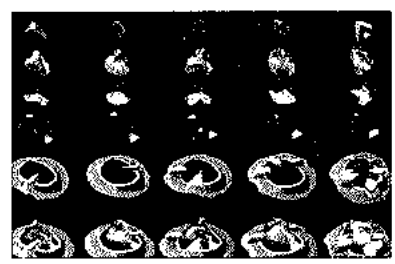

그림 18. 가상공간의 현실화 작품: Greg Lynn의 발생학적 주택모형

어쨌거나 매트릭스는 오늘날 인간에게 벌어질 수 있는 게임의 한 정점으로 보여진다. 컴퓨터 내에서 만들어진 인간과 세계, 그리고 그러한 경향을 원조하는 건축적 추구는 기술의 끝에 존재하는 인간의 이상향을 달성하는 것으로 치부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속에서 구현될 때 정말 현실과 가상이 혼동되지 않으며 의미있는 결과로 인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은 이 틀의 시대에 유행한 매트릭스적 게임의 사고를 통해 그들의 방법론을 형성해 갈 것이며, 그들의 미래에 어떠한 형식으로든 건축적 결과로서 그 의미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이 종 엽
건축사사무소 우일
by Lee Jong-Yeop

설계, 감리기술 진흥 및 육성전략에 관한 공청회를 보고

After Attending the Public Hearing on Promotion and Advancement of Design and Construction Supervision Techniques

건축공사 감리제도에 대한 국회의원 입법제안으로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 건설교통부와 주택도시국은 홍익대학교에「설계, 감리 기술 진흥 및 육성 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 이에 대한 공청회를 지난 2003년 11월 28일 홍익대학교 외우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 앞서 이미 건설교통부에서 짜놓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알고 있지만 이 세미나에서 연구내용의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명확하게 개정골자의 핵심에 대해 논의된 것은 없다. 특히 토론자의 반론도 엉뚱하며 업무의 정의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발표자의 뜻에 미치지 못하였다. 토론자는 발표자의 의도에 대해 전혀 공부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법의 정의내용도 잘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발설하였다.

더욱이 이 토론회의 좌장은 토론자의 잘못된 발언이나 해석을 지적하여 토론의 목적을 유도하지 못하고 시간만 채워 2시간 반에 끝나 버렸다.

특히 이 토론의 성격상 주무를 맡은 건설교통부의 실무자는 청취석에서 팔장만 끼고 관망할 뿐 실제로 당면한 제 문제점의 실상은 감추어 버리고 진지한 토론의 알맹이가 없었다. 이날 청취자에 배부한 자료만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상당하다.

이날 첫 번째의 발표에서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은 이미 우리협회에서「건축사 설계업무 기준」내용의 일부들이다.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완성된 설계도서(실시설계도서)로 공사를 수행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도서를 말하며, 「설계도서 내용대로 ……」라고 정의에 합당한 설계도서라야 한다. 모든 건축물의 크고 작은 규모의 공사라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의 내용이 구체화, 명확화 하여야 한다. 건축주와 시공자간의 분쟁과 건축주의 피해가 없도록 설계도서의 내용이 바로 공사에 이어지도록 충실하며 명확하게 하여 완성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설계도서의 적법성, 공사의 타당성, 공법적용을 검토해야한다(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허가권자가 검토)

설계도서 내용대로 ……」공사 감리하기 위해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며 완벽할 정도로 구체화한 설계도서를 공사 착수전에 검토, 수정, 보완하여 공사에 임하고 있다.

공사 및 공사감리 그 자체는 설계를 고쳐가면서 수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공사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설계도서의 전달, 시공계획서의 제출에 있어서 설계도서를 고쳐야 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내용생략)

또한 건축사법의 정의에서 설계자가 공사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는 어떤 규정도 없으며, 실제로 설계자가 직접 공사감리를 수행할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건축사"라 함은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건축물의 설계 또는 감리업무를 행하는자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는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동일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없다. 이에 대해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라야 한다고 정의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토론자 Y씨는 설계자가 공사감리자로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좌장 B씨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그냥 지나쳐 버린다. 적어도 토론의 좌장은 토론을 바르게 이끌도록 해야하지만 건축에 대해 건축사법이나 건축의 사상, 조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날의 토론은 평가할 가치가 없다.

이 토론을 "공청회"라고 하지만 공청회에 건축사업무 방향에 대해 꼬리를 내리고 알맹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이러한 공청회는 처음 본다. 공청회의 뜻은 법령안의 의법예고에 대해 주관 기관의 장이 예고한 법령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개청문("공청"이라고 함)을 행하고, 이에 관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게 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국가가 공공단체, 기관의 그 권한으로써 일반국민에 큰 영향이 있고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일반국민 또는 학자, 이해당사자의 관련업무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것을 공청회라고 알고 있지만, 이들 토론자들의 자질과 충분한 안건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형식적인 토론에 불과하다. 특히 이 토론회에 안건을 "공청회"라 하여 건설교통부에서 입법예고후에 개정안건을 과연 진지한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예고나 법개정의 문제점의 도출에 즈음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입안자는 본 공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이라고 내세울지 모른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감리의 주대상과 주안점에 있어서 좋은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도서의 전달과 설계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여야 한다. 공사 감리의 주목표는 공사가 적법하며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확보에 있다.

안전과 질적 확보는 공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설계도서의 완성에도 있다.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못하는 공사는 나침반이 없이 항해하는 것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과 질적 향상은 건축물의 규모, 난이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의 기술수준과 공사관리 능력에 따라 감리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감리는 시공자의 자주시공 능력을 전제로 하여 감리 방법 범위가 정하여졌으며,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감리업무는 시공자의 일정한 기술수준의 전제하에 감리기준이 정하여졌으나 소규모의 건축물이라 해서 시공자의 자주시공에 맡기고 조언하여 공사결과에 의한 확인만으로 감리업무의 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였다 할 수 없다.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실공사와 위법시공에 대한 개선에 있어서도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설계도서의 완성과 공사감리에서 공정성이 없다면 어떠한 제도를 개선한다 하더라도 그 업무의 수행을 커버하지 못한다.

설계와 감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동일인이라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성의 확보와 건축주를 보호해야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지역적, 현실적으로 설계도서 작성에 있어서 설계도서를 완성하지 못하고 공사감리를 소홀히 하고 "봐주기식"으로 행하여 시공자의 편의, 편익을 제공하여 설계수주에서 불균형이 생기고 있으며, 이대로 나간다면 우리가 설 땅은 없어진다. 또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영화와 인력활용면에서 과연 그 업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는지 우리들 자신이 냉철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설계자가 설계를 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수임대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들이 수행하는 업무대가는 과거나 지금에도 그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것은 공사감리는 설계의 연장이라는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인식에 있었으며, 업무수임에 있어서 거의 감리비는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업무수임에서 제 값을 받아야 경영이 정상화가 될 것이다.

공사감리에 있어서 공사진행과정의 검사, 검측, 확인이라야 하나 공사결과에 의한 검측, 검사, 확인은 성립되지 않으며 공사결과에 대한 검사가 감리라 할 수 없다. 발표자의 감리 업무개선에 있어서 시공검사는 공사결과에 의한 검사, 확인은 현행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과 다를 바 없으며 감사적업무로 같은 맥락이다.

발표자는 감리업무 개선방안이 있어서 시공자의 기술수준, 공사관리능력, 시공자의 부실과 공사 질적향상, 건축물의안전을 위한 대응, 시공자의 편익제공과 설계수주의 불균형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되는 언급은 없다. 발표자는 공사감리를 공사결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공사가 감리에 대해 발표자의 설명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토론 자체도 코드가 맞지 않는다.

감리 개선 방향은 우리의 업무이므로 발표자의 의도를 재확인하기 위해 본 협회에서 설명회와 모순점을 토의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하고 이대로 법 개선에 옮겨진다면 감리 업무의 혼란, 변질, 우리의 업무가 부류될 것을 염려한다. 이에 대해 협회에서는 제도개선에 대해 강건너 불 보듯 하지 않기를 바란다.

※ 이 글은 우리협회 홈페이지(호현전용게시판)에서 퍼 온 것임을 밝힌다.

이 영 복
대한건축사협회 감사
by Lee Young-Bok

부산자갈치 시장 현대화 현상설계 심사를 하면서

As a Jury of Design Competition for Jagalchi Market, Busan

부산 자갈치 시장 현대화 턴키 현상설계 심사는 단적으로 간접 심사라 할 수 있다.

턴키 현상설계 수행에 있어서 발주 방법은 일반적인 턴키 방식에 의하고, 심사 방법은 당국이 심사숙고 끝에 제기한 (안)으로 이는 기술위원과 평가위원으로 구분해 시행하는데, 참가업체에 대한 건축적인 또한 기술적인 질의는 기술위원들이 시행하며, 참가업체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시행한다.

전술한 방법에 의한 턴키 심사안은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당국에서도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라 인정된다면 점차 확대 시행하겠다 하였으나 기술위원들의 의견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이에 발주처인 부산도시개발의 입찰안내서를 검토한 결과 당초 발주처의 근본적인 타당성 조사가 미흡하였으며, 자갈치 시장 조합에서 요구하는 1, 2층 점포 할애 목적 이외에는 현상설계에서 항상 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성징적 과업인 도시환경과의 조화, 국제관광명소, 첨단기능 겸비, 상업문화화와 현대화 등이었으며, 적용공법에서는 신기술 적용, 경제성, 안전성, 효율성, 배치계획 과업에는 어떠한 현상에서도 공통적인 대지 이용의 효율적인 계획, 창의성, 기능의 극대화, 차량동선, 보행자동선, 장애인 대비, 경관 고려, 환경친화적인 계획 등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은 상식적으로 건물 계획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바 상기와 같은 내용이 입찰안내서 건축계획에 있어 주요 과업 내용이다. 주요 시설별 용도가 있긴 하지만 자갈치 현대화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소요 면적 산출근거가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것인지도 자못 궁금하다. 시설별 용도 및 규모는 사업성 분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건축계획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점유하기 때문이다.

심사를 위한 사전 현상설계 참여자에게 질의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토록 하였는데, 이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설계시 고려하지 않았던 사항을 임기응변 식으로 답하거나 아니면 기술위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제출하는가 하면 이의 불합리함을 기술위원들이 공식적으로 지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므로 굳이 기술위원이 심사장에서 별도 질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질의답변 시간만 해도 불과 15분으로 이 중 질의자에게 부여되는 시간이 불과 5분, 현상설계자의 답변 시간도 각 5분으로, 이것은 질의 내용을 읽고 답변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짧은 시간이다. 더욱이 이번 경우에는 응모사가 2개 사란 것이 다행이었다. 16명의 심사위원들에게 부여된 질의응답 시간이 한 사람당 15분이니 수치상으로 총 240분(4시간)이지만 여기서 중식시간 등 기타 6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었는바 처음 질의한 건축계획 분야의 경우 6시간 여를 진행 과정만 지켜봐야 하는 지루함 역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더욱이 현상설계 작품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질의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적인 질의 내용을 제시하라는 것은 응모작품 개개의 장단점을 심도있게 평가할 수 없을뿐더러 결정적으로 지적 사항이 있어도(실질적으로 있었다) 그것이 모든 제출작에 공통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가 없었다. 과거 현상설계시 외국에 건설되어 있는 건물을 모방하여 제출한 경우가 있었는데, 심사위원들이 이를 지적하며 심사의 정상화를 기한 일도 있지만 금번 심사 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적을 할 수가 없었다.

작품 내용이 다른 현상공모업체에게 공통되는 질의란 있을 수가 없다. 현상설계 심사에 있어 건축계획 분야는 신중을 기하여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질의서를 작성하다보니 네 명의 기술위원 모두가 대동소이한 피상적인 질의 내용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응모사의 답변도 추상적이고 또한 임기응변 식 답변에 불과했으며, 핵심적이고 명쾌한 답변이 제시되지 못 하였다는 것이 기술위원들의 자체 평가이다.

이러한 것은 현상설계 심사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며 가장 중요한 기술심사 위원들의 역할을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이다. 더욱이 기술위원들의 질의 내용은 사전에 노출되서는 안 된다. 심사 당일 신중을 기하며 냉정하게 질의 답변을 하면서 솔직히 설계자와 작품의 장단점을 평가하여야 하며 당선 작품에 대한 시정 사항이 제시되어야 하나 당선작에 대한 시정 사항은 발주처에서만 제시될 뿐 기술위원들의 작품에 대한 평가 내용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것은 보다 나은 작품화에 아쉬움이 될 것이다.

평가위원들의 평가는 단순히 기술위원들의 질의 답변하는 내용을 기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용한 평가 기준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궁금하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술위원들의 전공한 분야와 근무처가 공개되었으며 평가위원들의 직장과 전문 분야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다만 입구 게시판에 부착돼 있는 심사장 좌석 배치도에 기술위원 명단은 인쇄되어 있으나 평가위원은 보안상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필기구로 쓰여져 있었다.

만일에 전문직이 아닌 평가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면 현상공모사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제시한 답변서 그리고 기술위원의 질의 내용이나 현상설계 응모사의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 구사한 전문용어(View Corridor, Human Scale 등)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설계심사의 경우 최종적으로 평가하는 위원은 설계내용을 어느 누구보다 완벽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심의자료를 상당기간 검토하여야 하며 장단점을 충분히 파악한후 질의자와 답변자의 내용을 예리하게 관찰한 후 정확한 평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번 현상설계에서 당일 평가위원에게 현상공모업체에 기술위원이 제시한 질의에 대한 답변과 설계도서가 제시되었다면 심사 현장에서 작품성에 대한 검토 및 평가는 무리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현상설계를 수행하겠다는 발주처의 노고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한 처음 시도 하는 것이라 보완할 사항이 물론 있겠지만 그동안 지속되어온 현상설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는 미흡하다.

돌이켜 볼 것 같으면 현상설계에 있어 당락 결정은 특수 건물을 제외하고 거의가 건축계획에 의하는 바 건축계획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서 재경 대학 건축과 계획교수 및 또한 몇몇 알려져 있는 대형 건축사사무소의 대표에게 의뢰되어 왔으므로 발주처의 심사위원 명단의 보안은 유지되기 어려웠던 것이었다. 심사위원 명단의 보안은 발주처의 방법과 의지에 따라 좌우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위원 선정에 있어 국한된 상태에서 선정하지 말 것이며 다양한 선정방법을 택함으로써 보다 나은 심사를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입찰 조건, 수행 능력의 우위는 업체별로 차이가 없이 매우 근소하다. 이는 결국은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이번과 같이 평가위원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면 직접 기술심사 및 당일 질의를 하는 기술위원도 알려지지 않을 수 있는 바 평가위원이라는 심사제도는 배제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또한 당일 기술위원들의 역할도 다만 질의 및 답변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견이 심사 결과에 반영되어야 한다. 설사 평가위원들이 해당 분야에 대하여 전문직이라 하더라도 미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서로가 의견을 교환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쳐 평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술위원들이 질의하고 현상공모 업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은 평가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었고 기술위원들의 질의가 끝나고 바로 평가위원들의 평가 결과가 취합되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 턴키에는 겨우 2개의 용역 업체가 참가하여도 거의 하루가 소요되었다. 추후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면 심의 시간의 단축을 고려해 분야별 별도의 심의를 시행할 것이며, 심의 과정에 있어서도 심의위원들은 사전에 질의 내용을 검토해 서로 중복되는 내용은 통합하거나 축소해 질의함이 바람직하다.

또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 과정에 있어 해당 분야 전문직 방청객을 초청 참관시킬 것이며, 최종적으로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들의 자유스러운 의견교환을 필수로 건의하며 평가는 기술위원 및 평가위원 공동 무기명으로 업체선정을 하도록 제안한다.

우리협회 회관의 노후로 인한 업무환경의 개선과 미래지향적이고 건축사들의 위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회관을 확보함으로서 대외적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함은 물론 협회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건축사들의 회관을 건립하고자 2003년도 제1회 임시총회(03. 6. 20.)에서 현 부지에 회관을 신축키로 의결하였다. 이에 지난 2003년 10월 21일 현 건축사협회 부지에 건폐율 60%, 용적률 300%이내, 연면적 11,000㎡ [허용범위 ±15%] 조건으로 회관건립을 위한 현상설계공모 공고를 냈다. 총 76개사에서 응모신청을 받아 최종 20개사 작품이 응모된 결과 최종심사를 거쳐 당선작 없이 우수작 1점, 가작 1점, 입선작 5점 등 총 7개 작품이 선정됐다.

◇ **1차심사**('03. 12. 3.)

- 심사위원 표결에 의하여 총 7개사 작품 선정
- 심사위원장: 구윤회
- 심사위원: 강성익, 권오웅, 김규성, 김규태, 김병윤, 김영덕, 김영수, 김선양, 김한진, 김형우, 도무찬, 박문웅, 박성인, 박신욱, 박영순, 송수구, 송기덕, 심우석, 오기수, 오웅석, 오운동, 우남용, 이규홍, 이길웅, 이성관, 이상돈, 이상림, 이영수, 이영희, 이의구, 이재림, 이종정, 이창울, 장기중, 정부교, 정응규, 정진국, 정정치, 조형식 (가나다순)

◇ **최종심사**('03. 12. 30.)

- 당선작은 없으며 우수작 제출자를 우선 설계 협의대상자로 함.
- 심사위원장 : 송기덕
- 심사 위원 : 강성익, 김영덕, 김진균, 오기수, 원정수, 윤승중, 이상림, 이영복, 이재림, 이종정, 이창울 (가나다순)

• 최종입상자

구 분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명
우수작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우규석 · 문 호
가 작	(주)건정 종합건축사사무소	노형래
입 선	(주)건축사사무소 수목씨에스티	하진수
	(주)성문메타 건축사사무소	이규환
	(주)도언 건축사사무소	이대형
	단아 건축사사무소	조민석
	종합건축사사무소 수목에이엔에이(주)	한 철

• 참가작

건축사사무소	건축사명
(주)한도시 건축사사무소	김지현
(주)에터 건축사사무소	이명규
(주)아키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이윤태
주)비욘드스페이스 건축사사무소	나한진
(주)덕원종합건축 건축사사무소	정성길
건축사사무소케이피씨+(주)드반건축사사무소	감지호
(주)건축사사무소 포인트	박종렬 조영진
건축사사무소 일정	신왕선
(주)건축사사무소 한일건축	조원용
(주)열린모임집 건축사사무소	전영철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성낙준
(주)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윤희지
건축사사무소 도연 건축	김도언

◇ **1차 심사평**

본 협회는 미래지향적이고 건축사의 위상과 긍지를 높일 수 있는 회관을 확보함은 물론 협회 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건축사 회관을 건립하고 침체된 건축계의 활성화를 위한 8천여 전 회원이 동참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자 현상설계방식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 현상설계는 과도한 투자비용의 억제를 통한 회원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1, 2차 분리 설계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어 많은 회원의 참여를 기대했지만, 76개사가 응모신청을 하여 20개사의 1차 작품제출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기도 하였다. 1차 심사과정은 투명하고 건축계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55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일 40명의 심사위원이 참여하여 표결을 통해 7개 작품을 선정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다. 1, 2차 분리설계로 인한 응모업체의 준비기간 부족과 많은 심사위원의 구성에 따른 심사과정상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 1차 심사의 주안점은 협회가 요구하는 건립방향과 작품성, 수익성이라는 큰 개념에 근접한 작품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었고 그 과정에 있어 많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다. 2차 심사에서는 좀 더 발전되고 구체화된 다양한 작품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협회 발전과 회원상호간의 친목, 정보교류 및 교육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협회건물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끝으로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1차 작품심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심사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회장이하 회관건립위원회 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심사위원장 구윤회)

◇ **최종심사평**

건축사 회원의 위상과 긍지를 상징하는 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행한 현상설계 응모작품 20점을 1, 2차에 거쳐 심사하여 7점의 응모작품이 최종심사 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다. 최종심사위원회(위원장 송기덕외 11명)가 7점의 작품만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우수작 1점, 가작 1점, 입선 5점을 결정하였고 7점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작품을 당선작으로 심사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수작으로 최종심사가 결정되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우수작품 작가는 설계협의 대상자로 하였다. 현 기존회관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하여야 하는 이 시점에서 현상설계 최종심사에 임하는 심사위원들의 심사기준 잣대는 가히 추상적 건축비평 차원에 이르는 모든 관심사까지 진지하게 대담과 토론으로 시종일관 하였다. 심사위원이 공통적으로 기대하는 건축사 회관으로서 당선된 작품이라면, 건축사의 위상이 일반 시민에게 친근하게 인지되어지는 건축이어야 함과 동시에 협회의 사업수익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선진된 창의적 의지가 감지될 수 있는 작품을 평가하여 선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컸으며, 아쉬웠던 심사과정이었다. 7점의 응모작품을 심사한 작품평가의 내용을 요약하면, 새롭게 재건축하는 목적에 따라 기능상의 임대와 사업성과 효율성의 높은 내용과 입지조건의 지형, 주변환경, 주도로와 도시차원에서 물리적 · 시각적 해석이 세련된 수준차이와 우열을 비교하는 의견과 구조, 설비, 조형상의 경제성과 건설투자의 현실적 해결여부에 관한 논의, 그리고 민원발생으로 작품 변질의 우려에 이르기까지 심사는 진지했다. 자랑스러운 건축사회관이 재건축 될 수 있도록 참여한 응모자의 열의와 노력이 담긴 작품을 심사하면서 응모자에게 격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심사에 임할 수 있었다. 앞으로 우수작가와 더불어 제한된 시간적 여건과 건설지원의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타협, 타개하여 최종 심사과정에서 기대했던 내실있는 당선작품으로 정제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서 총력을 모으기를 바란다. (심사위원장 송기덕)

재 협회건물(1985년 준공, 송광섭 건축사 설계)

우수작 / (주)유진인터내셔날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84.18㎡
연 면 적	5,643.85㎡
건 폐 율	52.23%
용 적 률	299.50%
구 조	RC + S.R.C
규 모	지하 4층, 지상 8층
주차대수	법정 – 75대, 계획 – 86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THK 18㎜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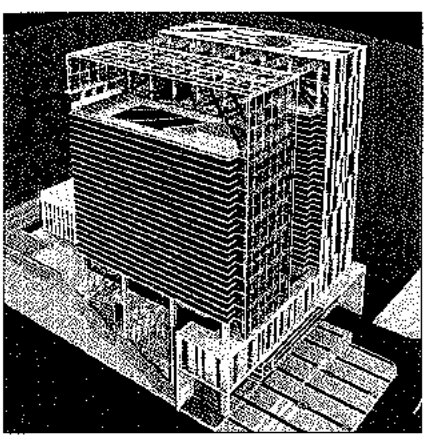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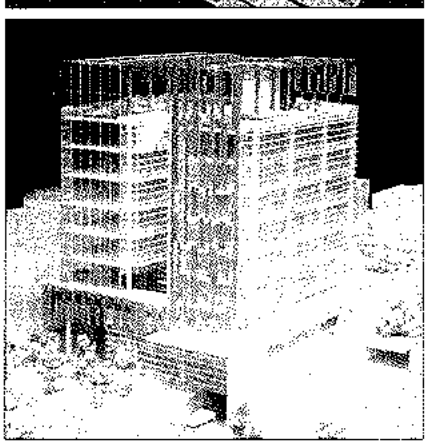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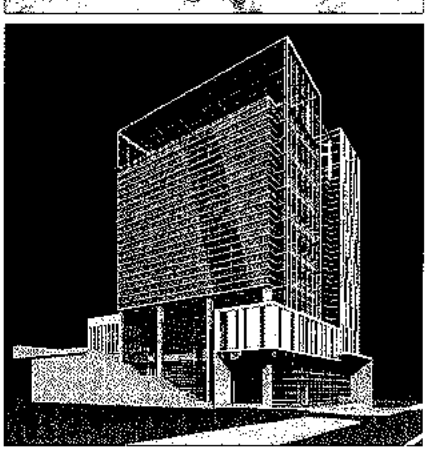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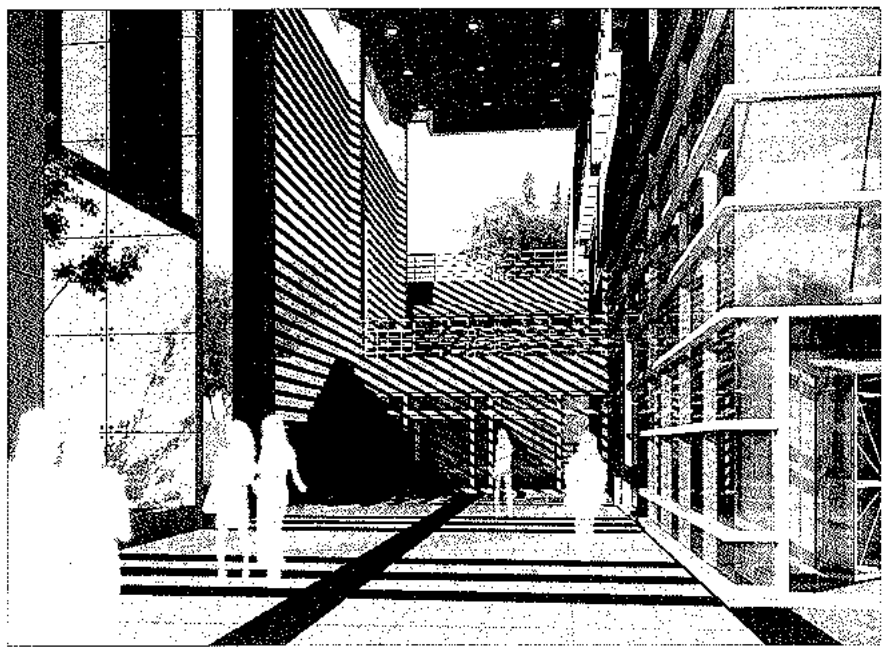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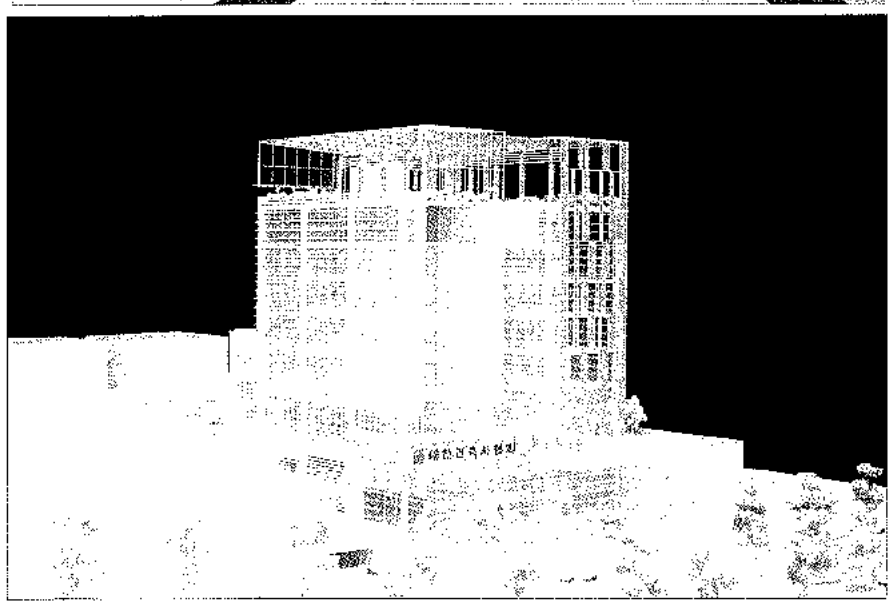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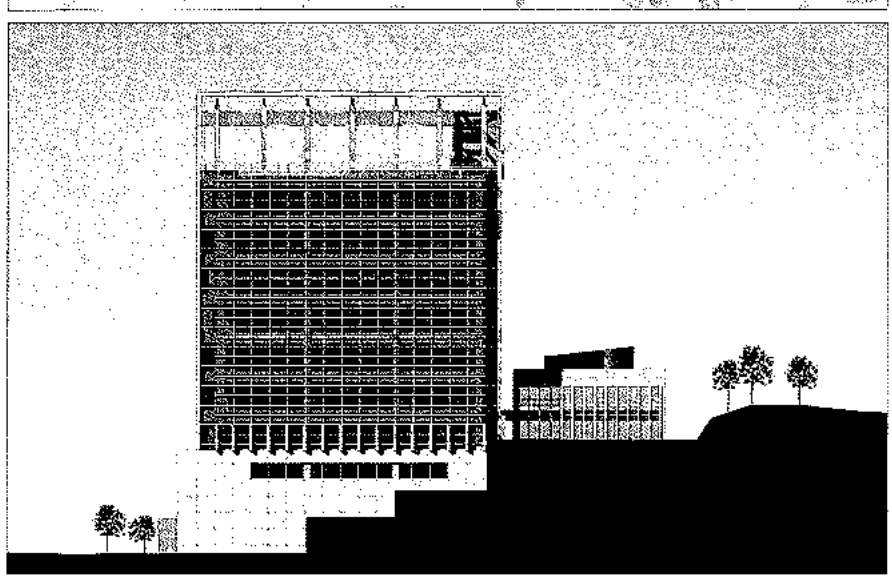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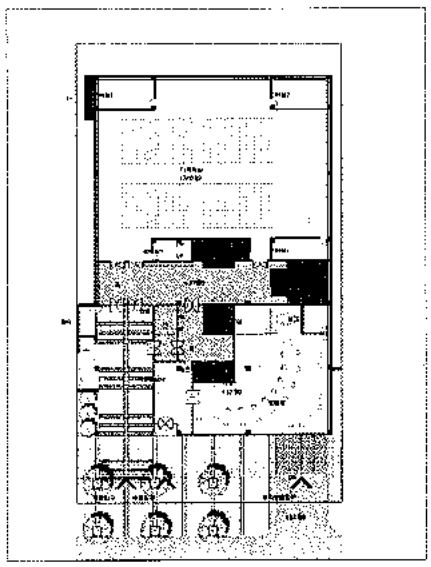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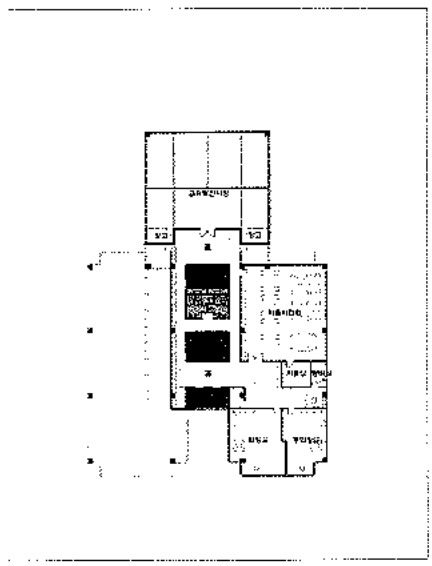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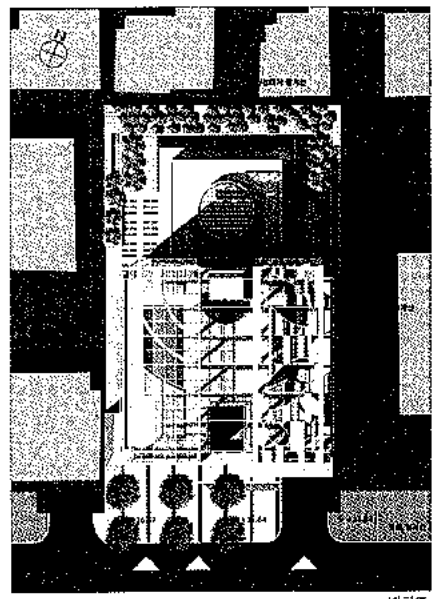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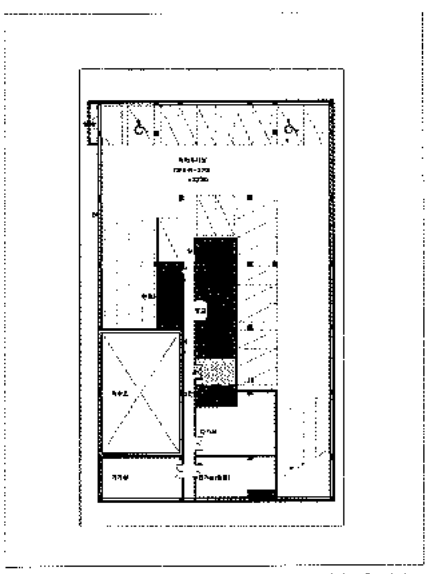

지하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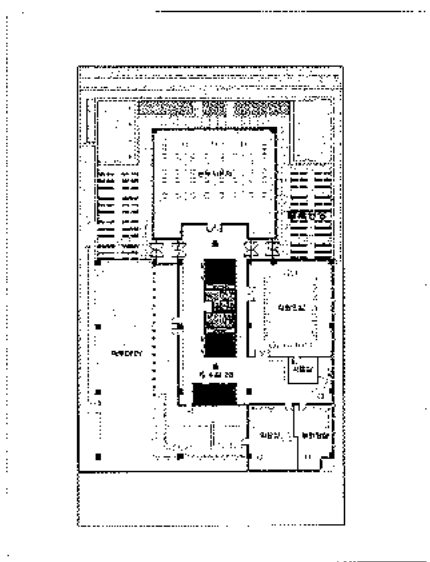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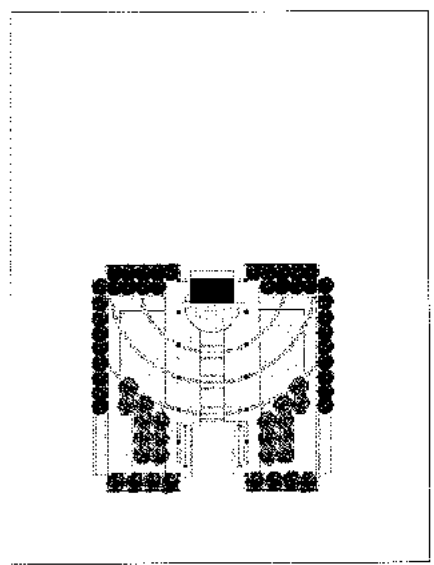

옥상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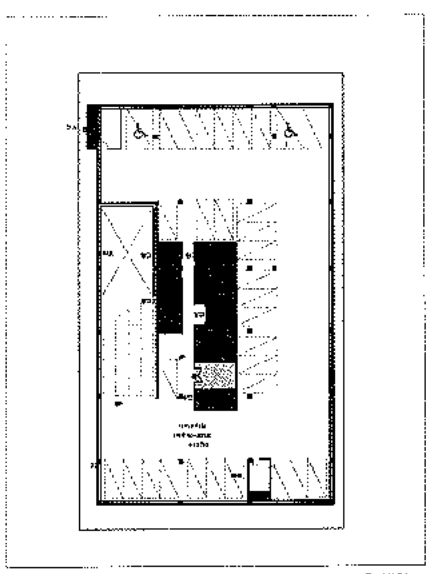

지하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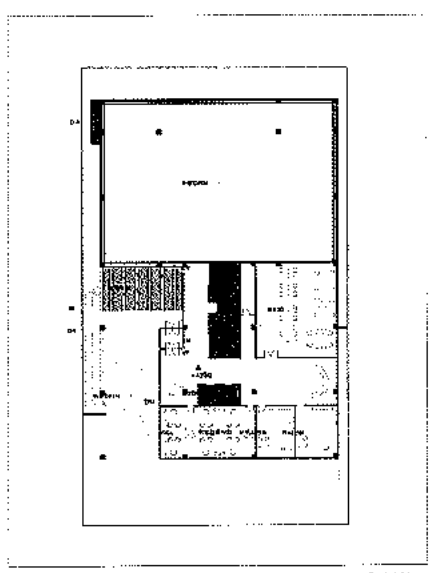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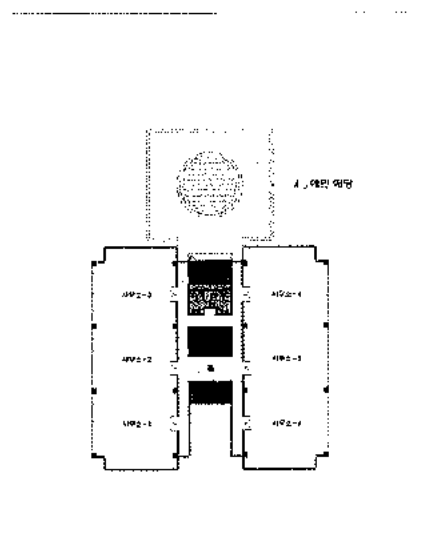

4~8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가작 / (주)건정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75.94㎡
연 면 적	10,989.18㎡
건 폐 율	51.79%
용 적 률	298.20%
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9층
주차대수	78대(장애자 주차 2대 포함)
외부마감	THK18 로이복층유리, THK3 알미늄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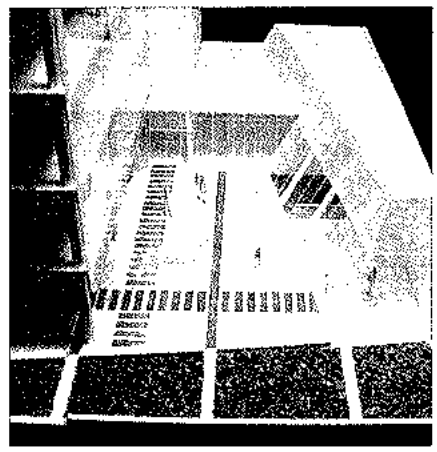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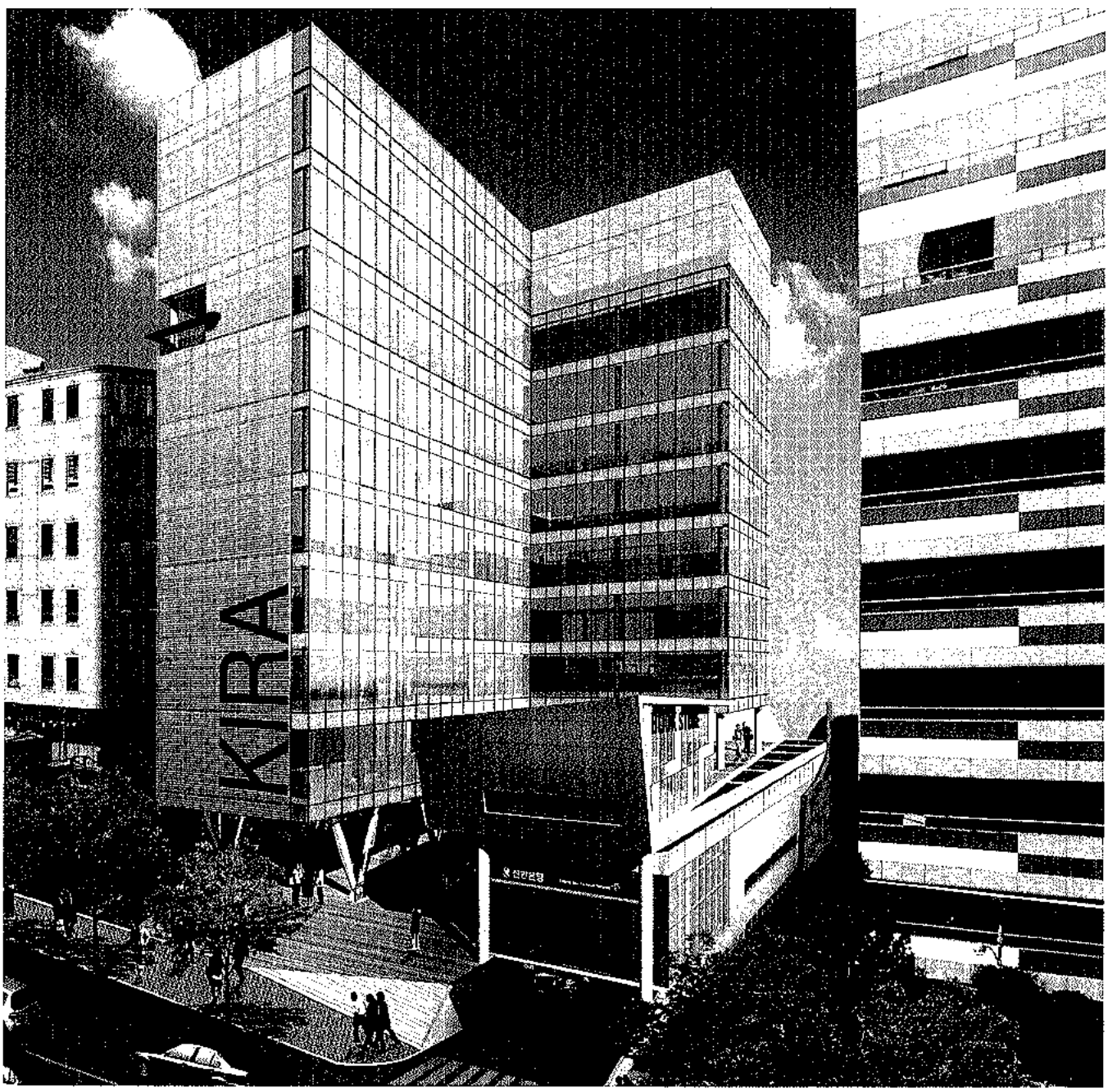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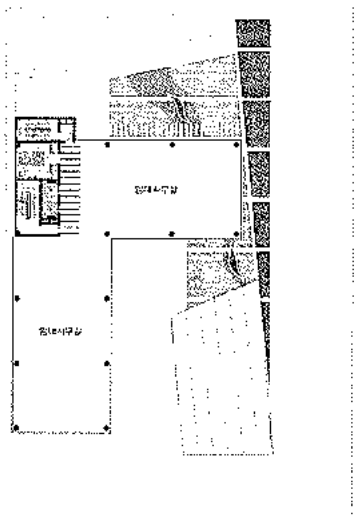

2~8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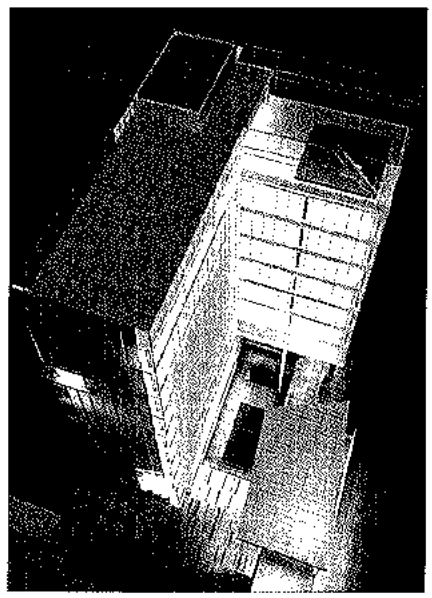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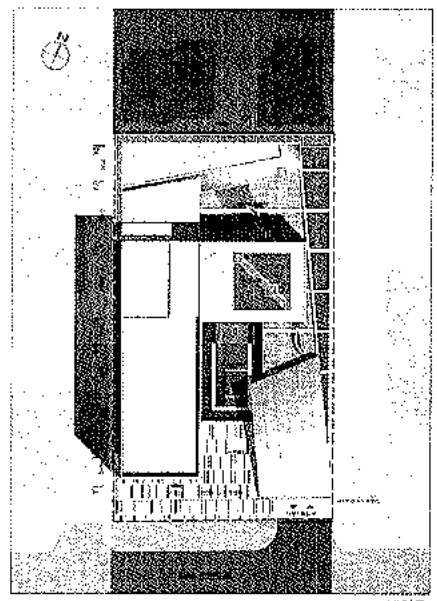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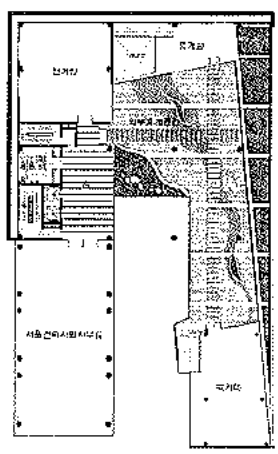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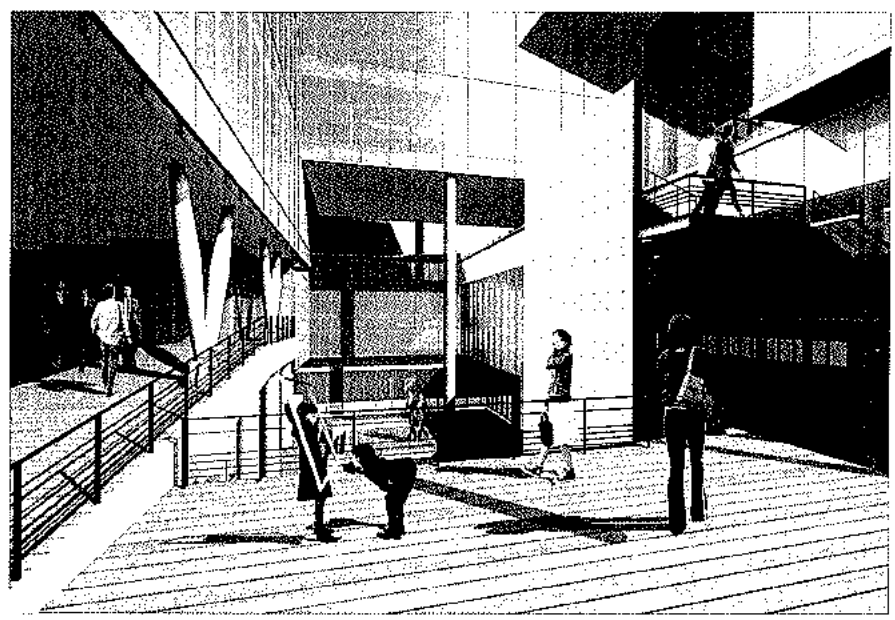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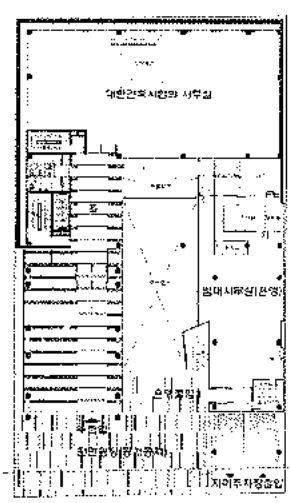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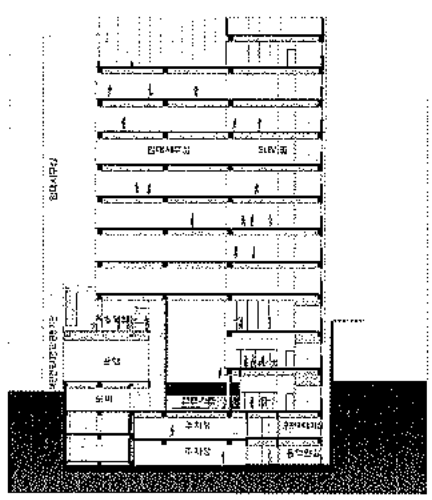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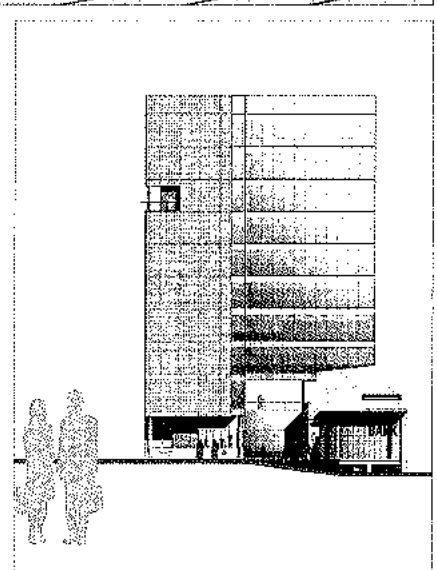

정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입선 / 단아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106.09㎡
연 면 적	9,742.83㎡
건 폐 율	58.70%
용 적 률	298.97%
구 조	철골철근 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13층
주차대수	계획 79대(장애인용 2대 포함) , 법정 78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허니컴패널, THK24 로이복층유리, 알루미늄 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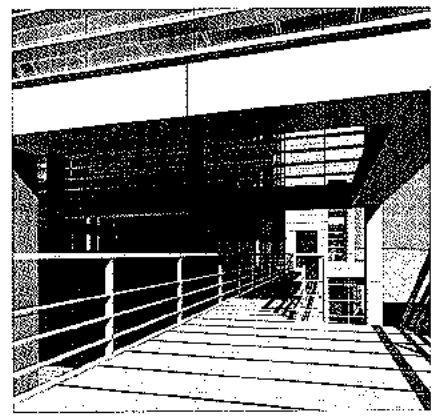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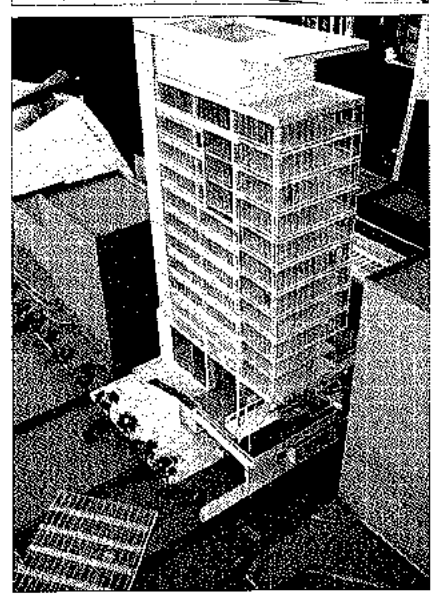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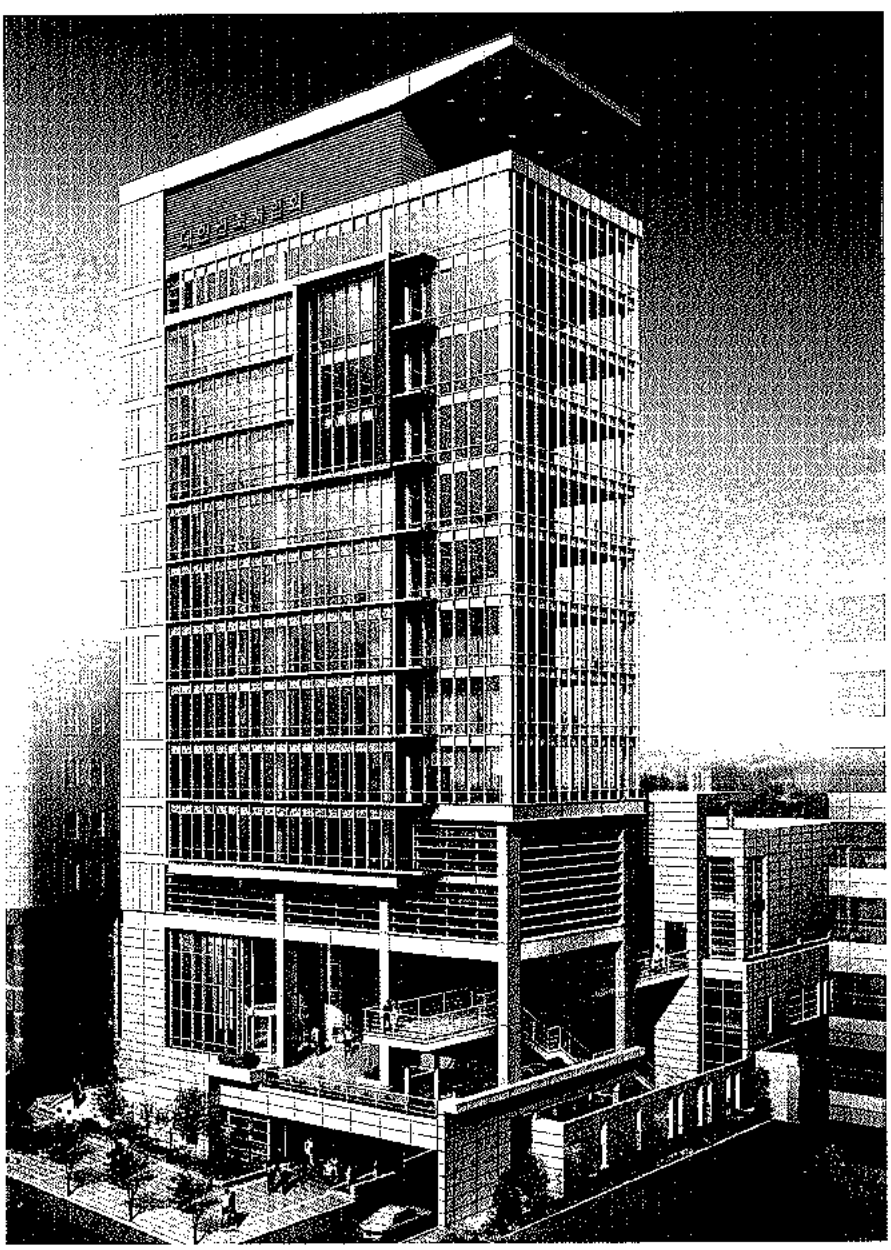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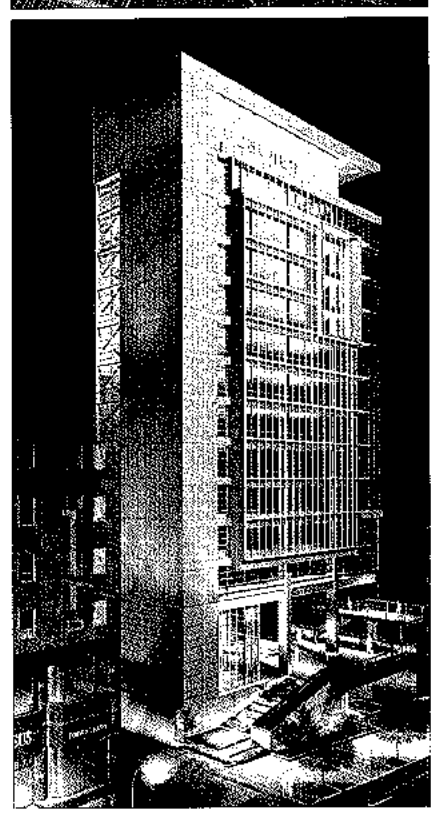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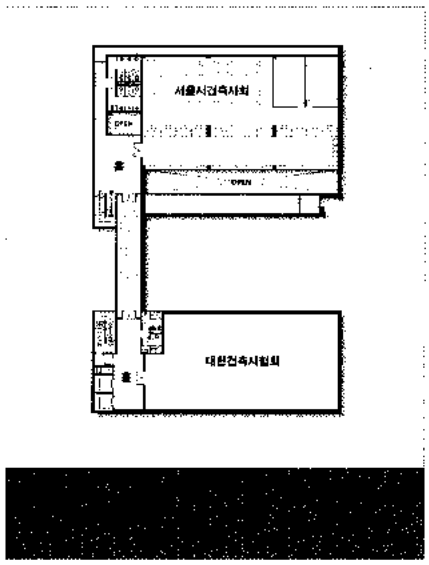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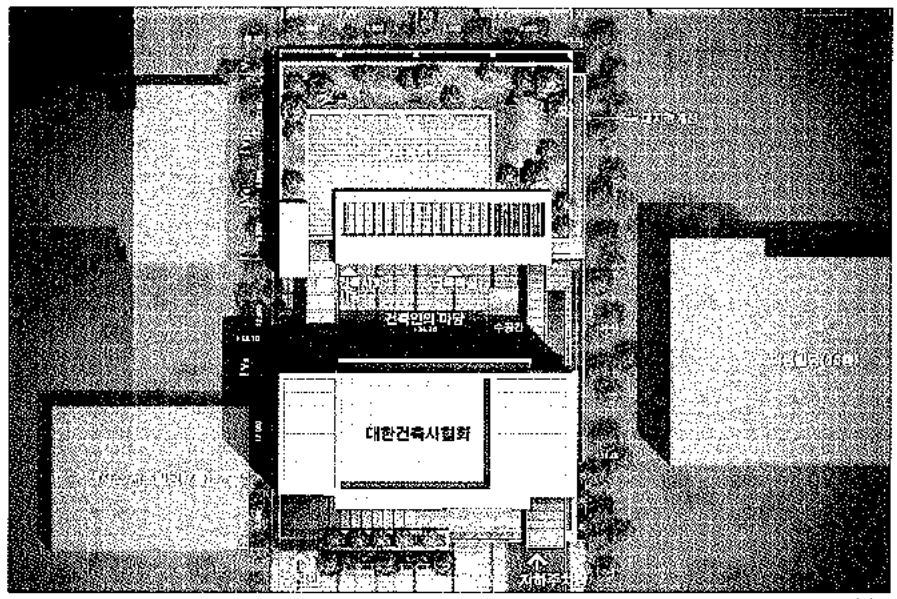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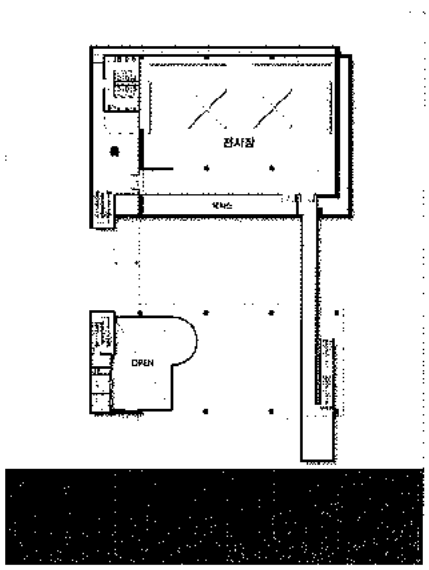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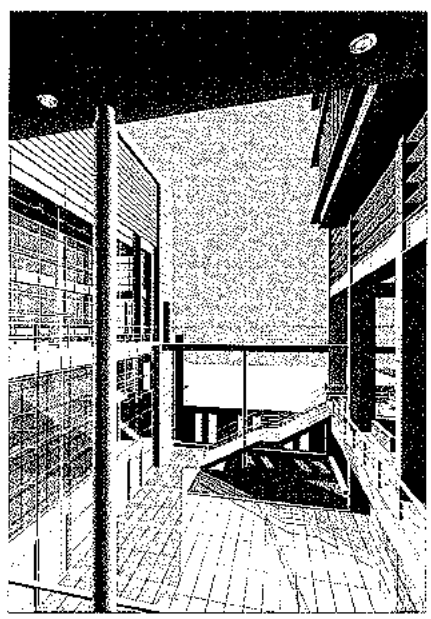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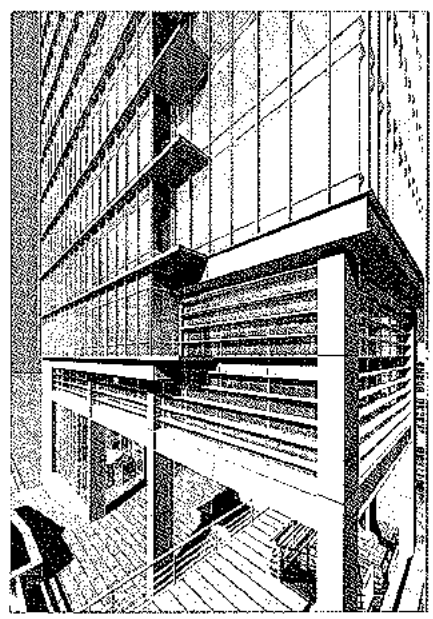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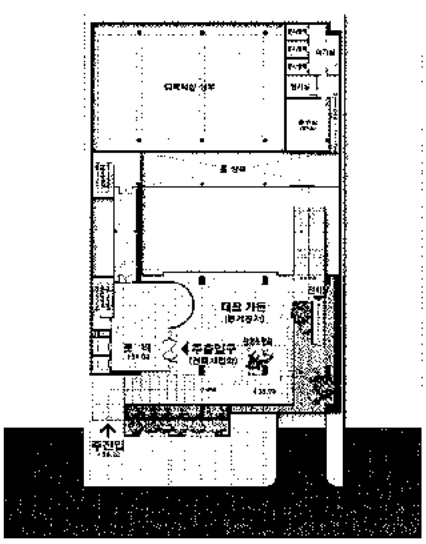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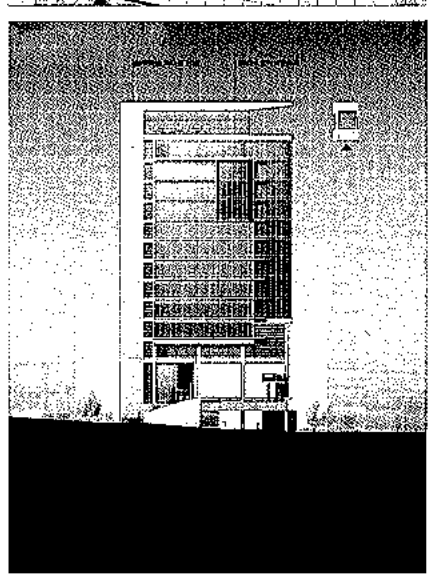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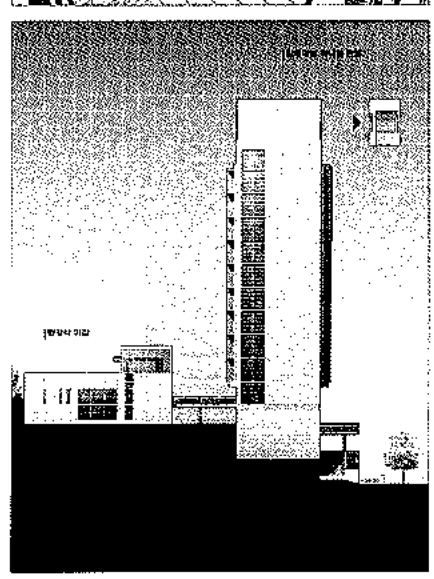

서측 입면도

대한건설기술인협회 회관

입선 / (주)도연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058.66㎡
연 면 적	9,768.4㎡
건 폐 율	56.19%
용 적 률	297.47%
구 조	S.R.C조, R.C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8층
주차대수	90대(장애자 주차 2대)
외부마감	투명 복층유리, 샌드 브라스터, 노출콘크리트, 목재 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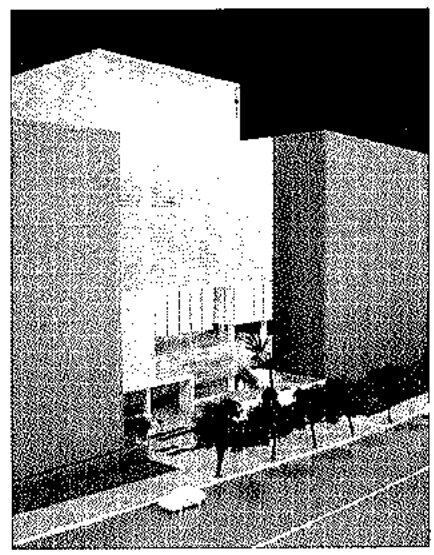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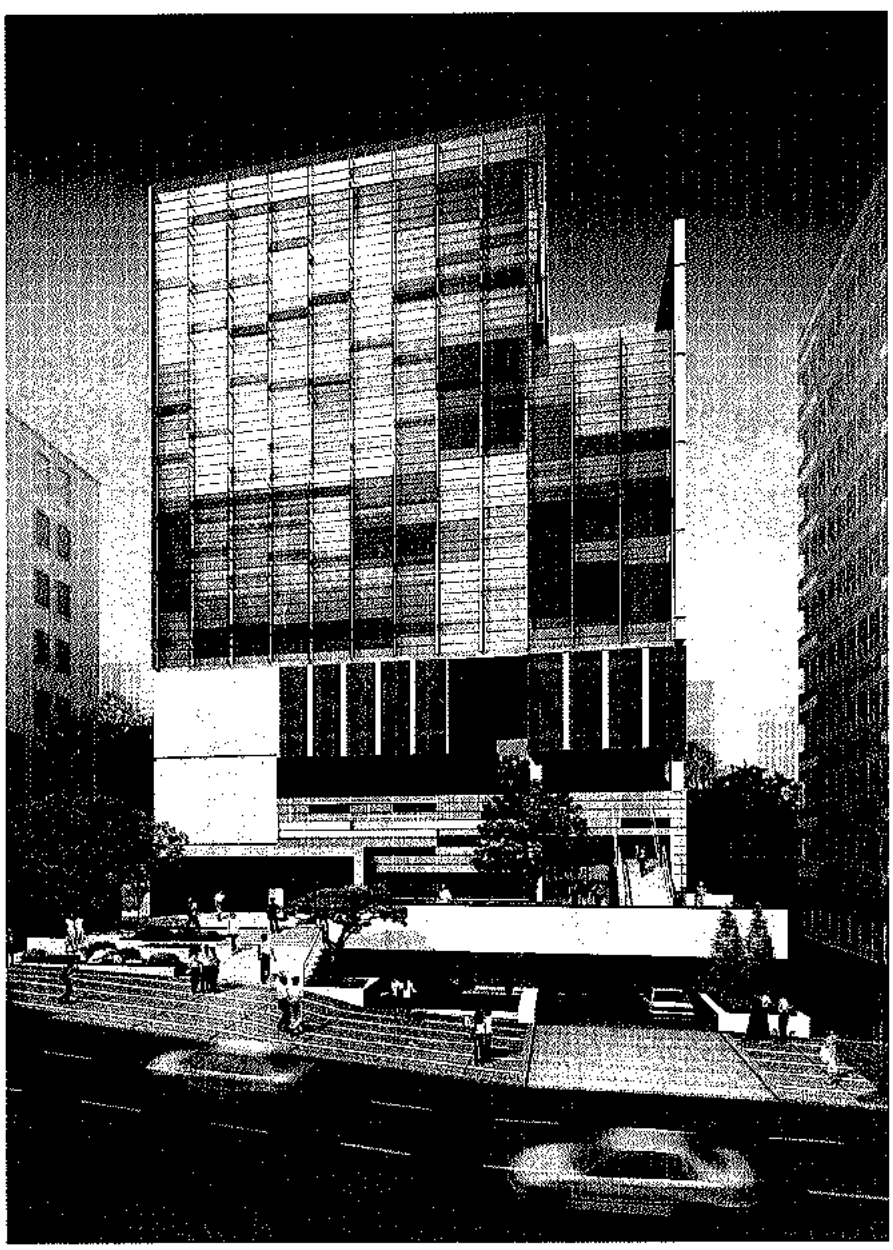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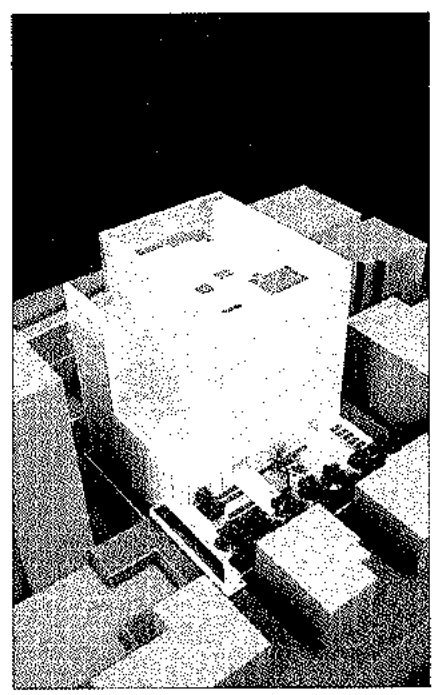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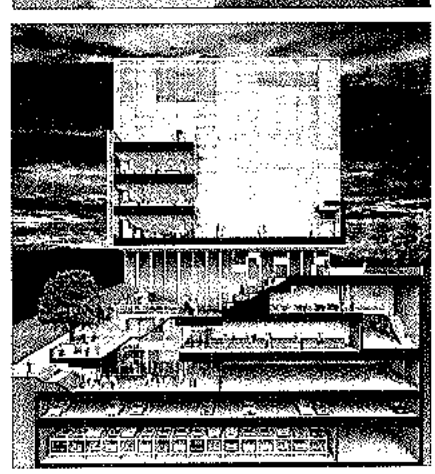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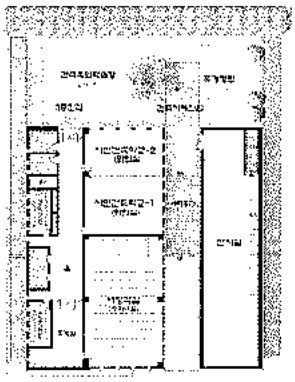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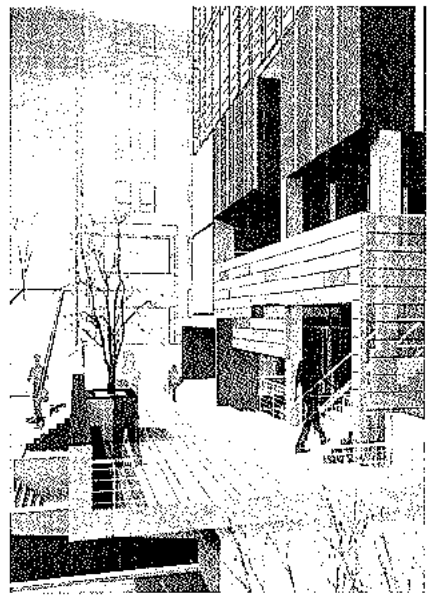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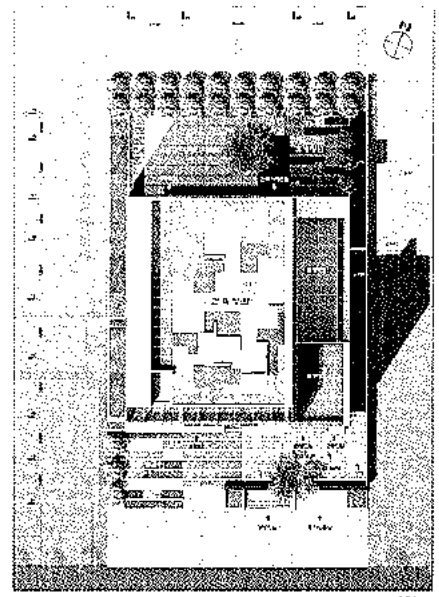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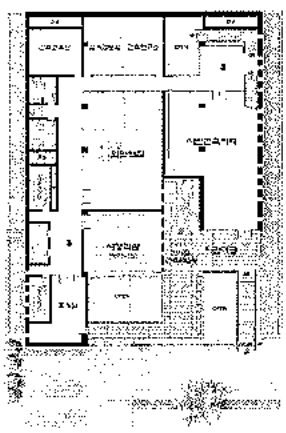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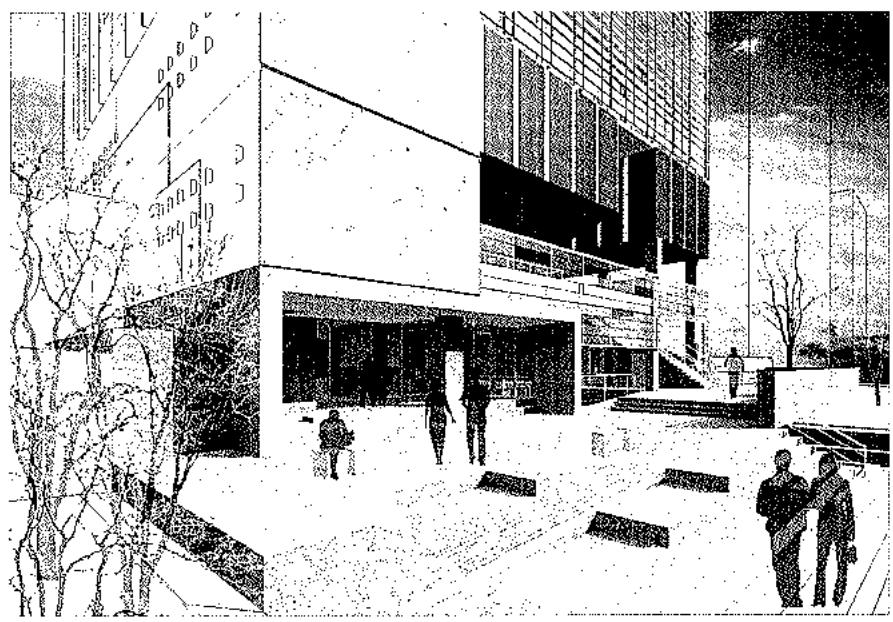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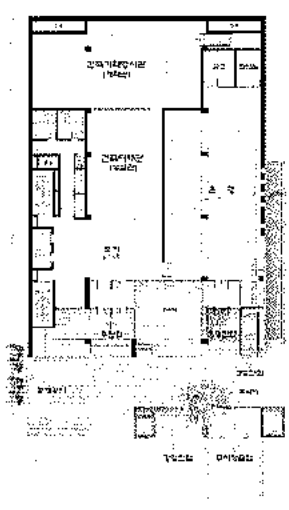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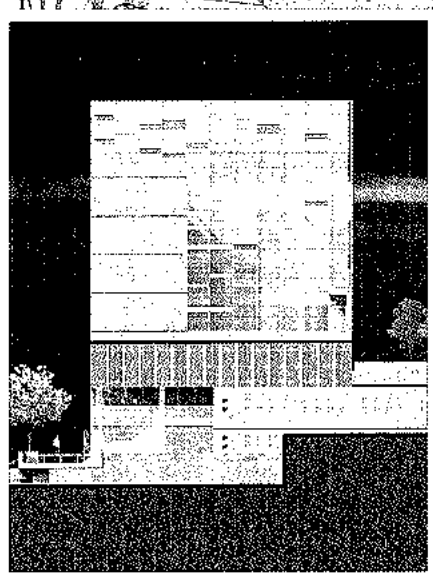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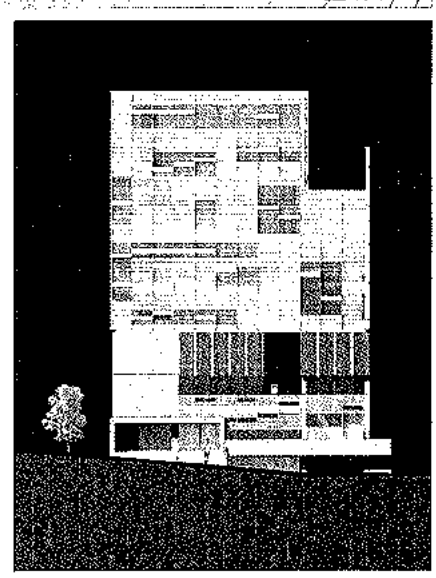

정면도

대한건축사협회회관

입선 / (주)건축사사무소 수목 CST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123.91㎡
연 면 적	11,246.27㎡
건 폐 율	59.64%
용 적 률	296.88%
규 모	지하 4층, 지상 11층
주차대수	92대(장애자 주차 6대로 포함)
외부마감	화강석 (흑색/회색), 로이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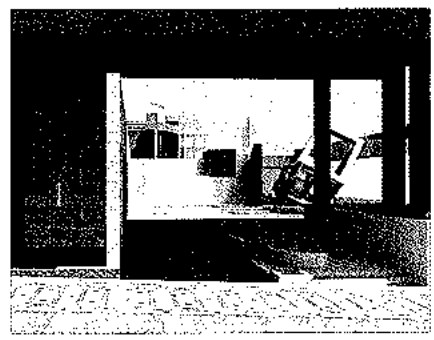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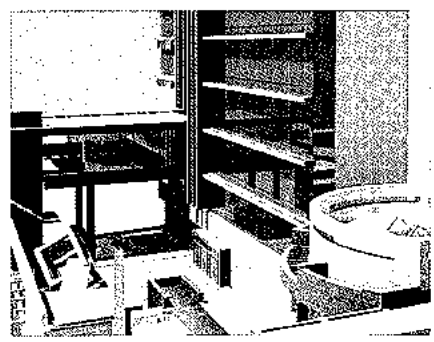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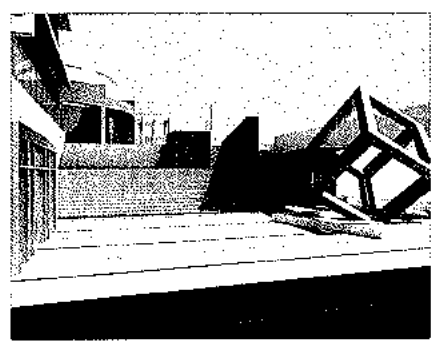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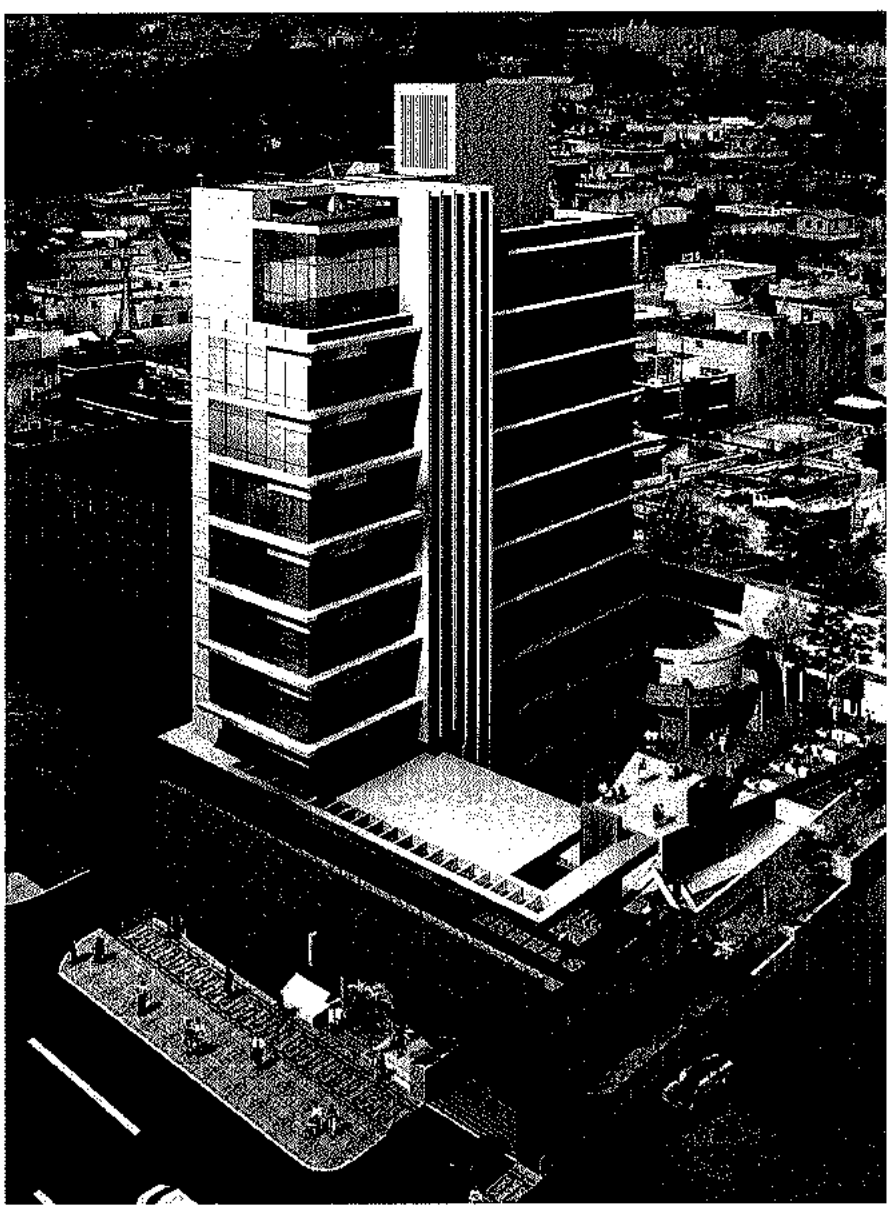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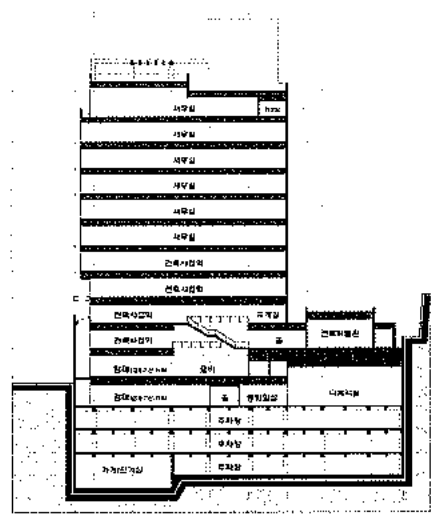

중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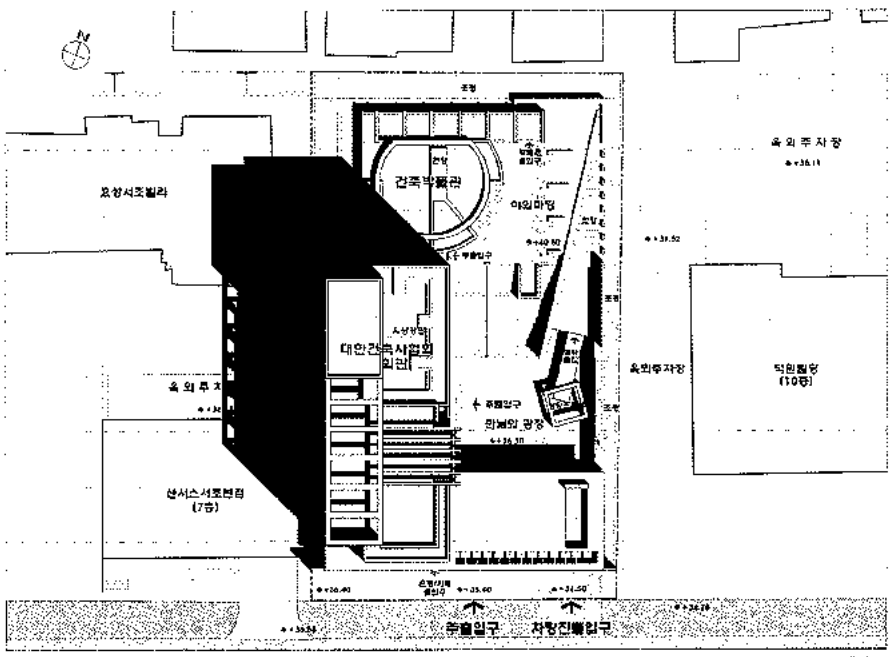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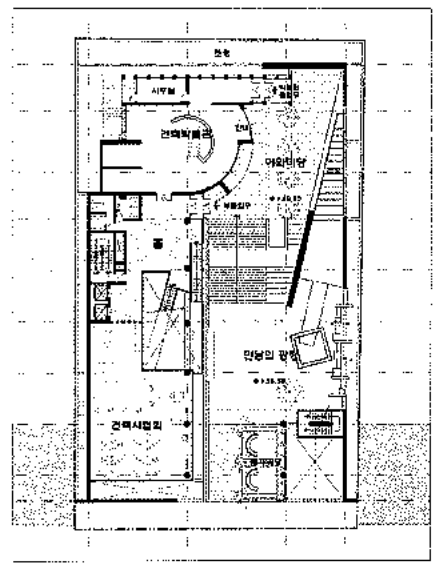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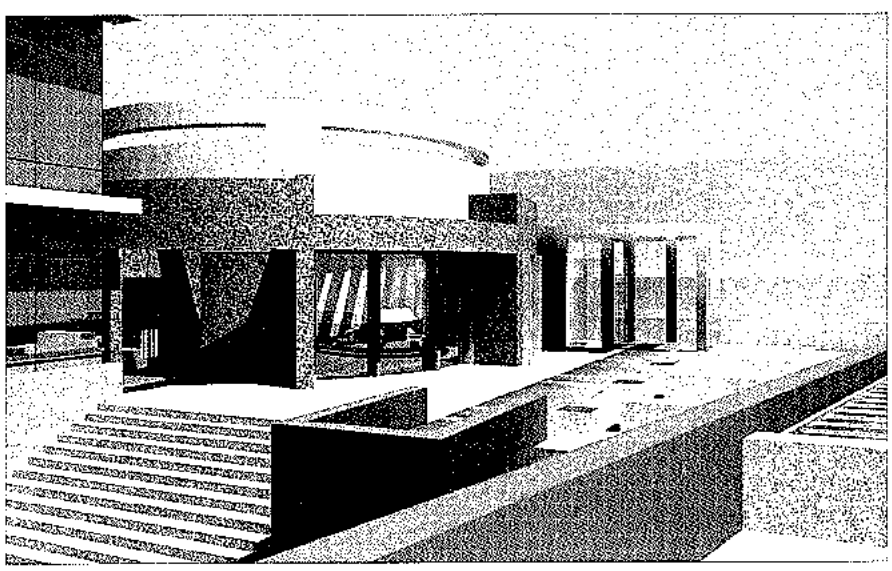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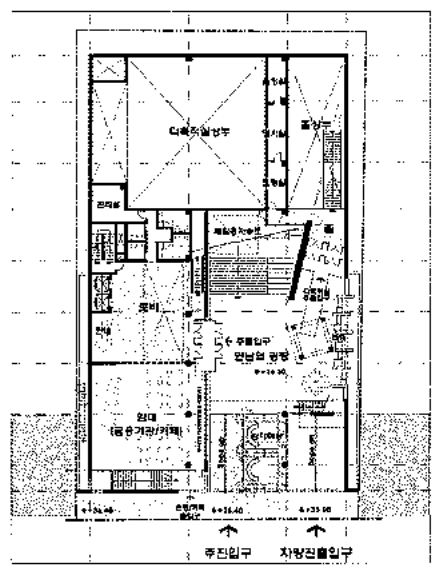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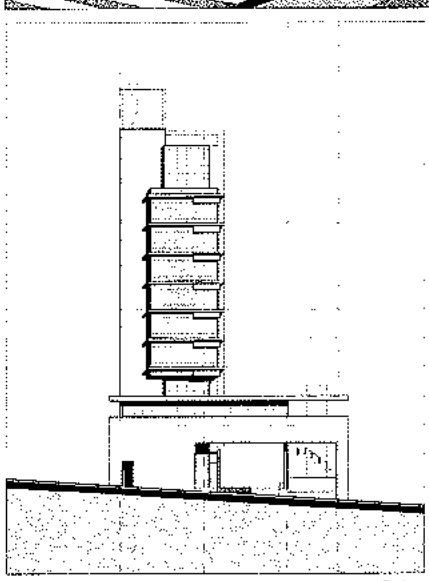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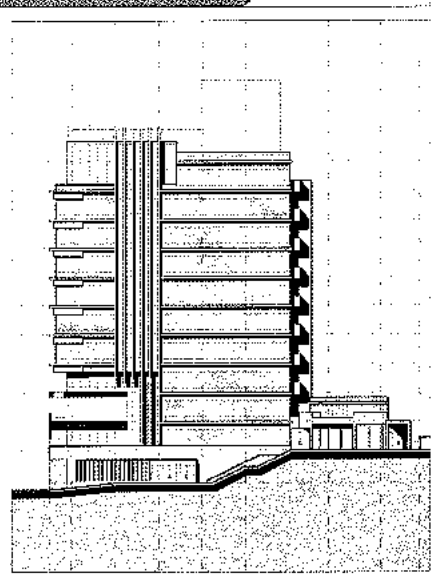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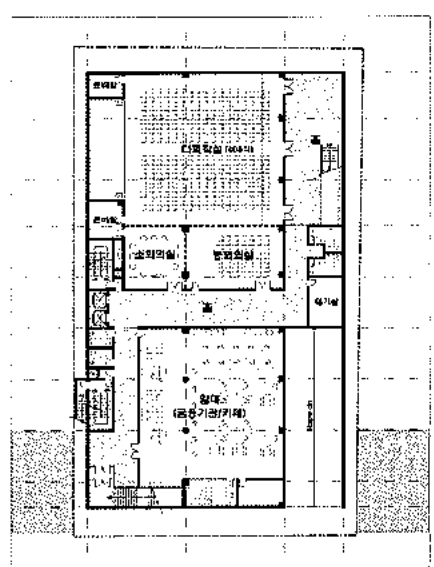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입선 / 종합건축사사무소 수목에이앤에이(주)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055.39㎡
연 면 적	9,887.82㎡
건 폐 율	56.01%
용 적 률	294.10%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주차대수	80대(법규 : 67대)
외부마감	유리, AL 패널, 석재타일, 목재 사이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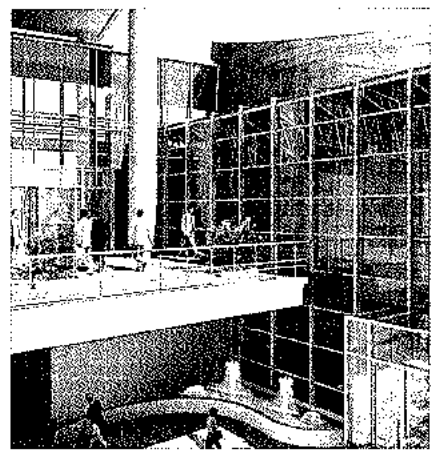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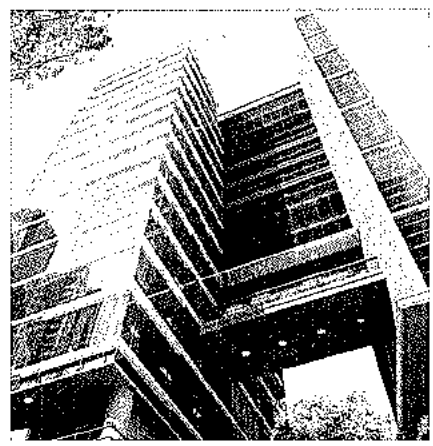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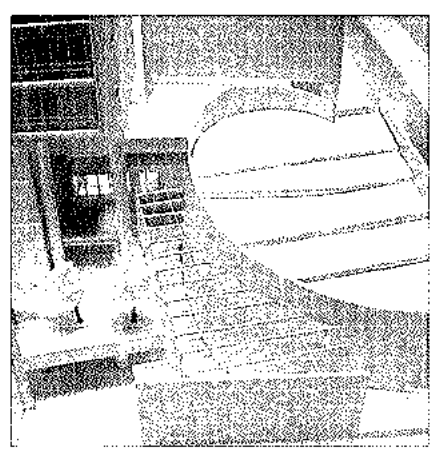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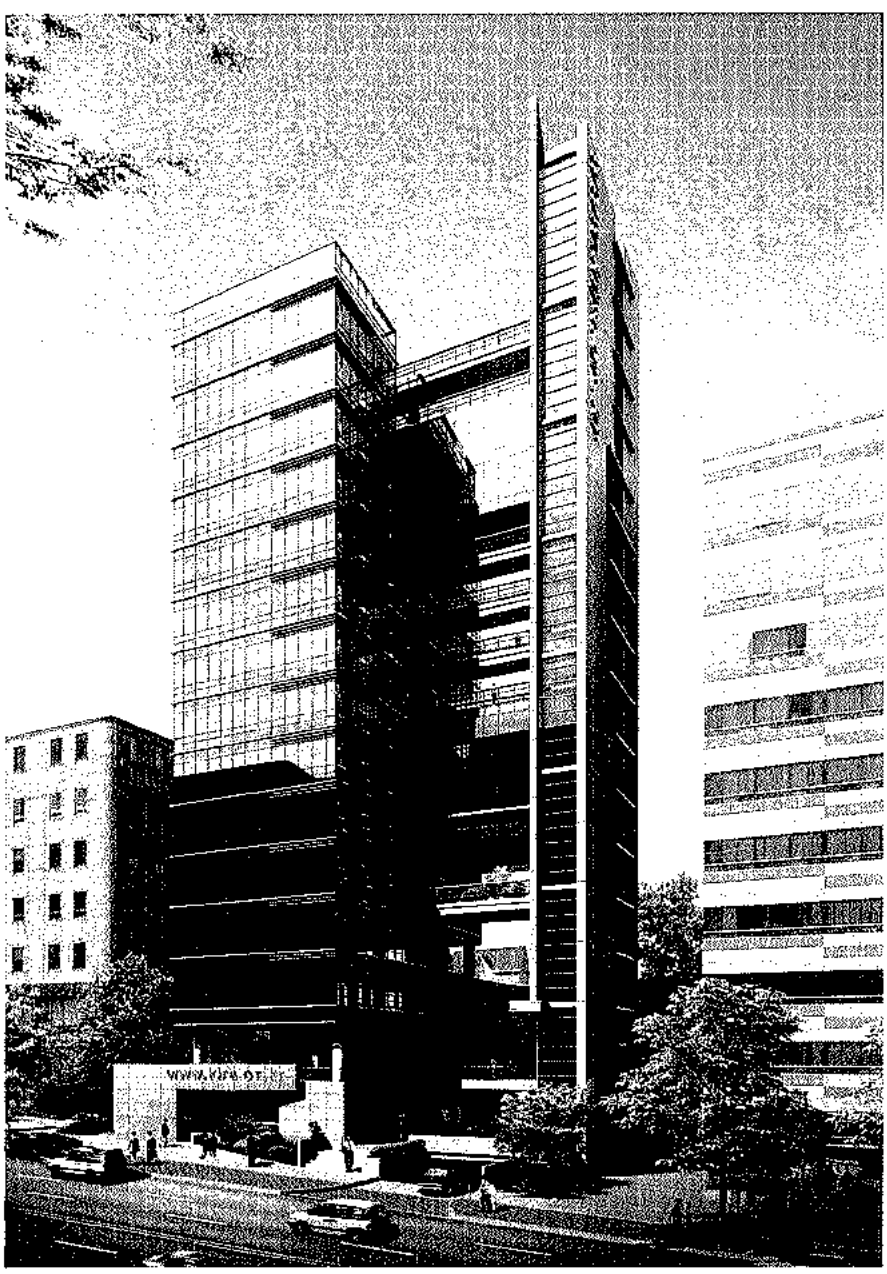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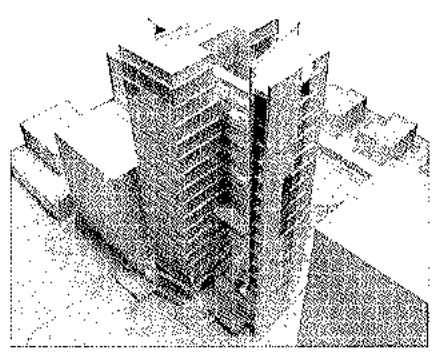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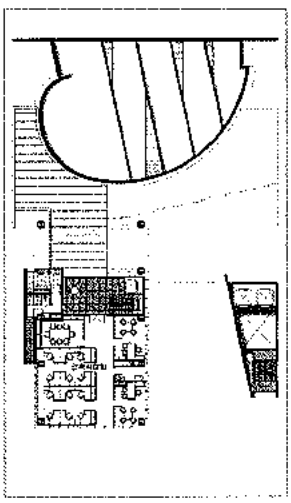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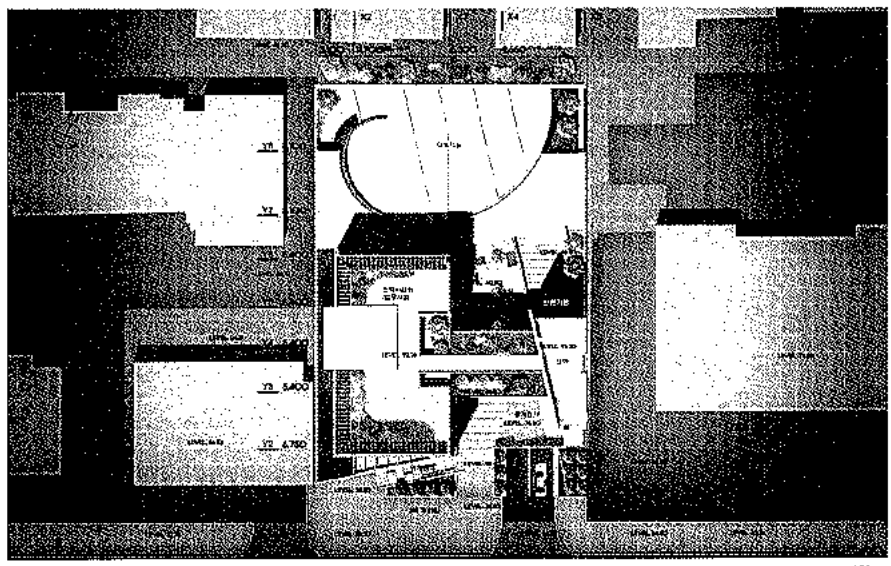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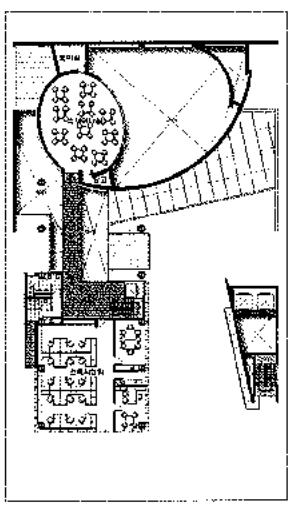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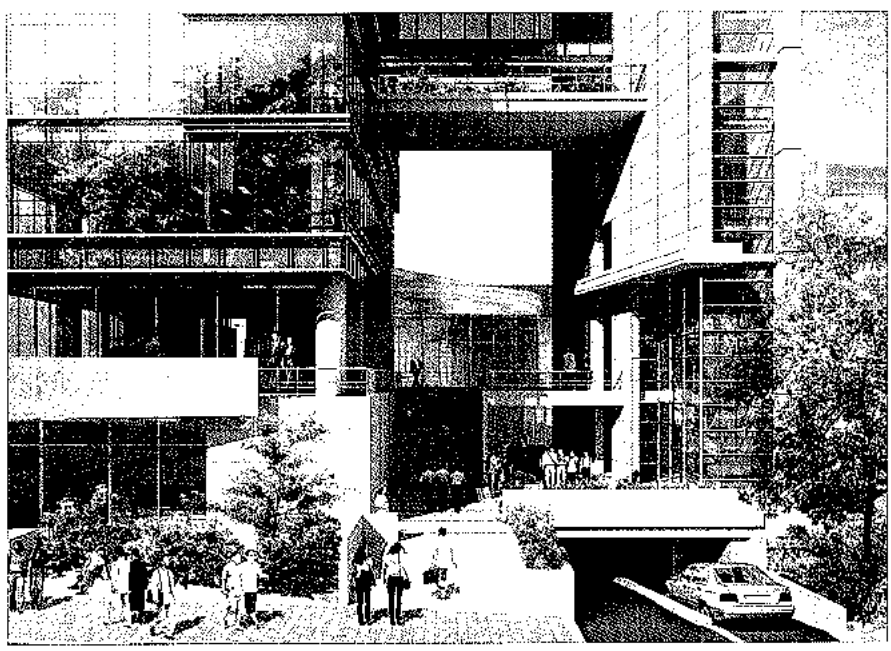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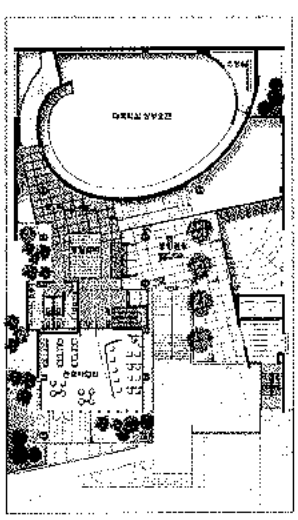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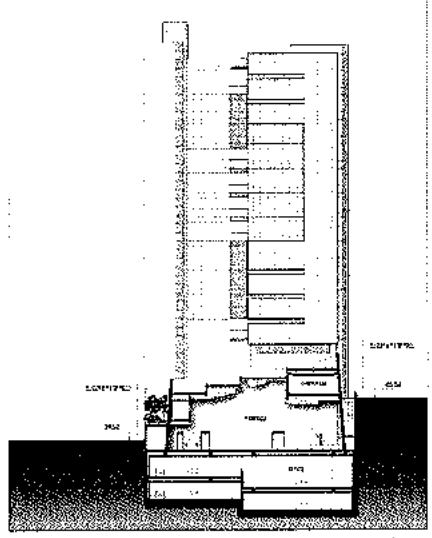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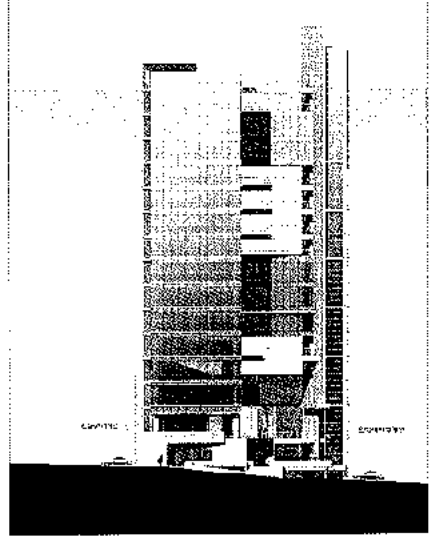

정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입선 / 성문메타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897.00㎡
연 면 적	10,561.41㎡
건 폐 율	47.60%
용 적 률	295.7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8층
주차대수	79대(장애자용 2대 포함), 법정 : 77대
외부마감	THK30 화강석, THK16 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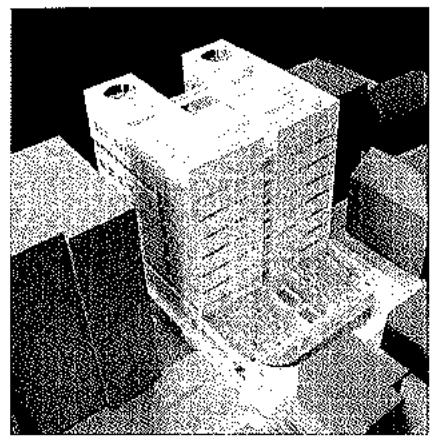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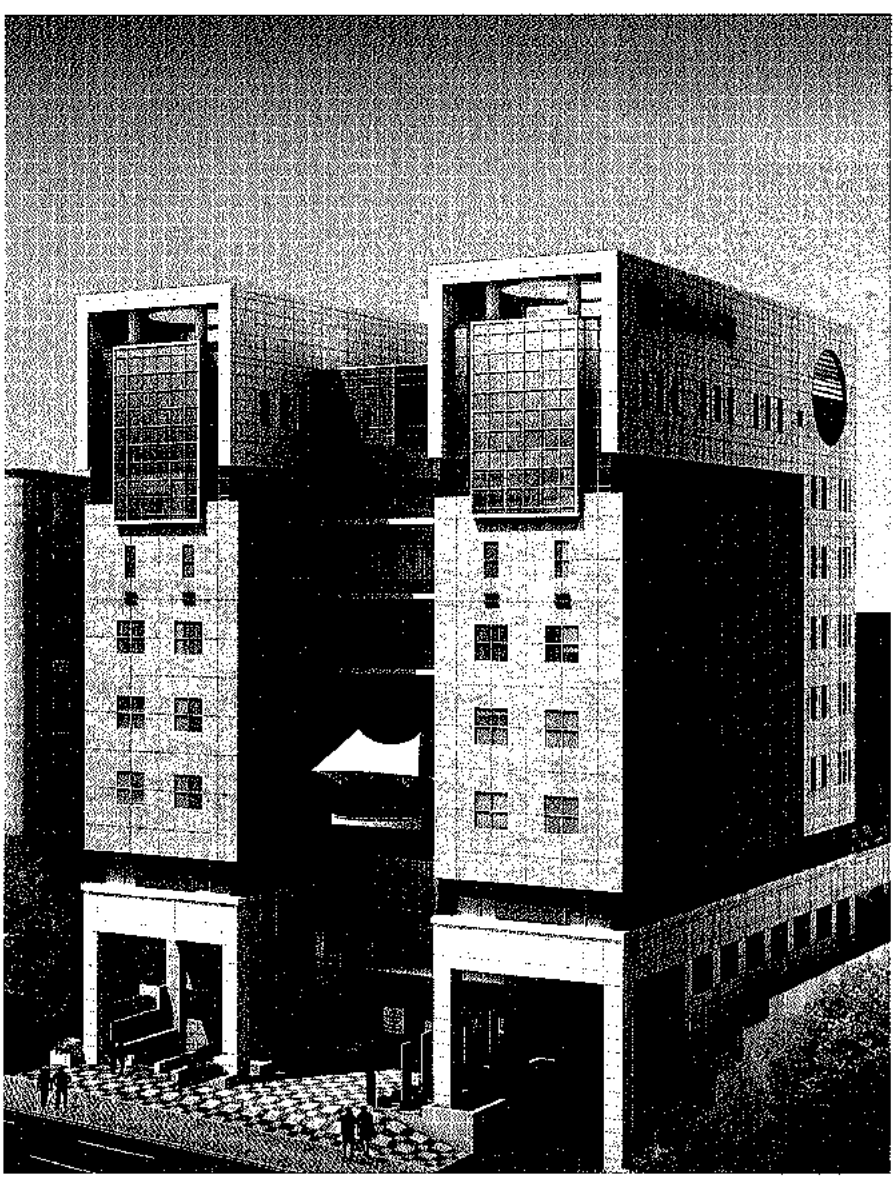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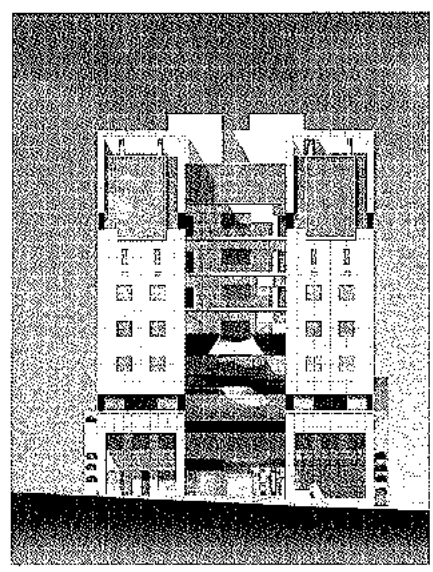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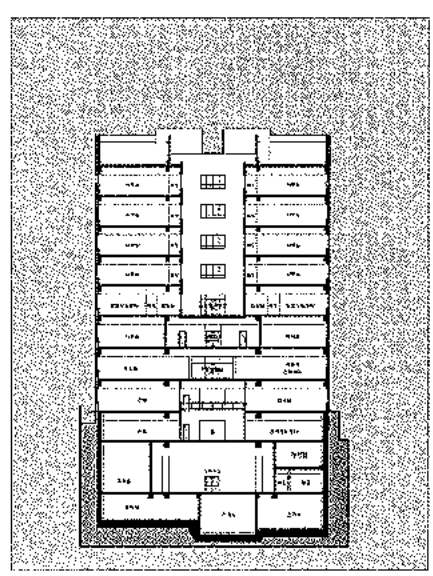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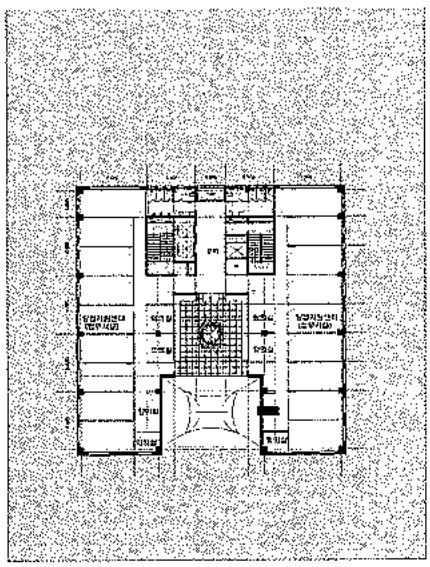

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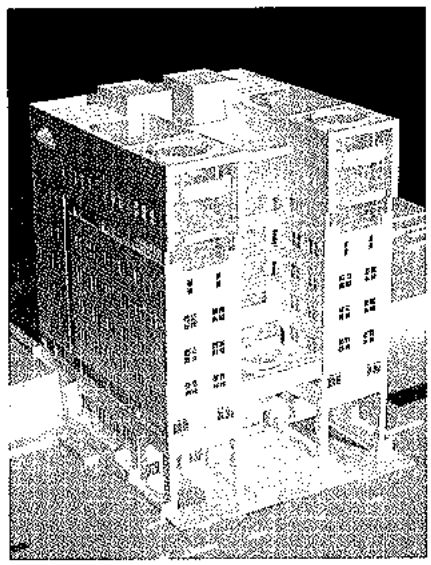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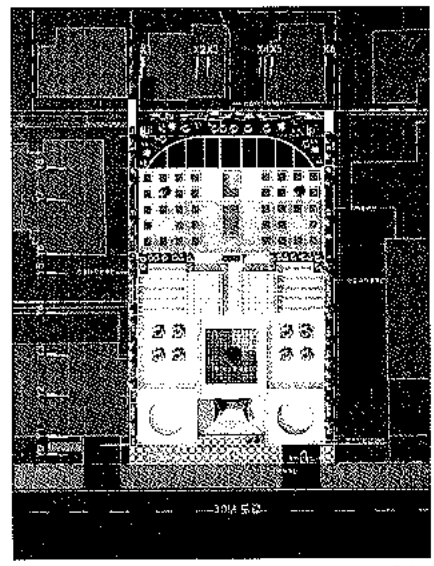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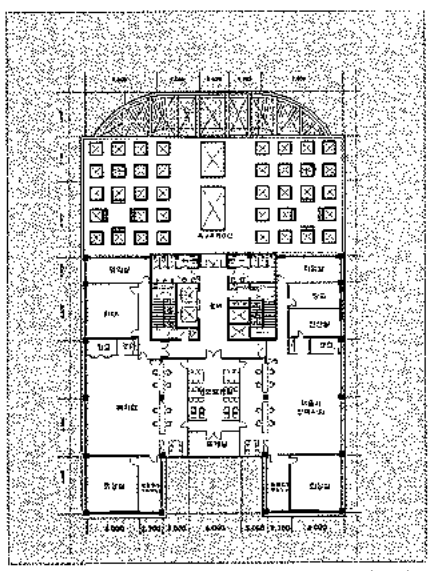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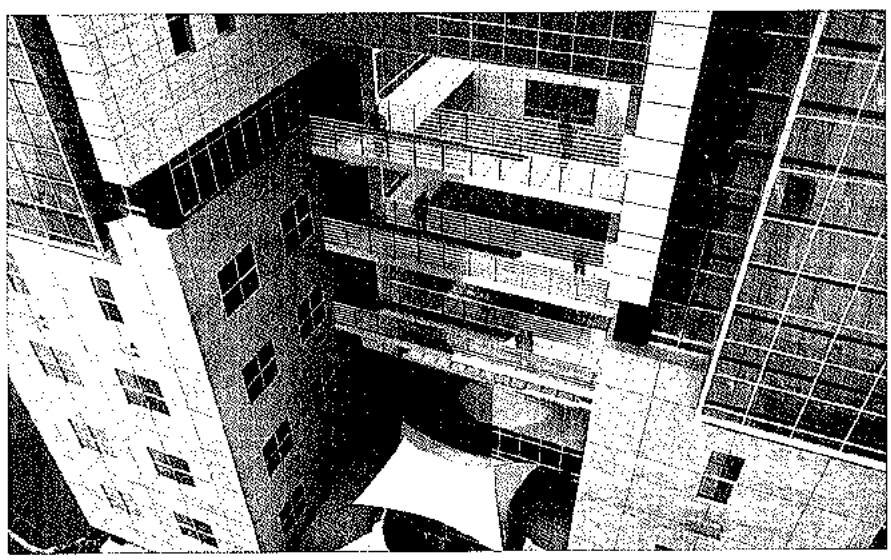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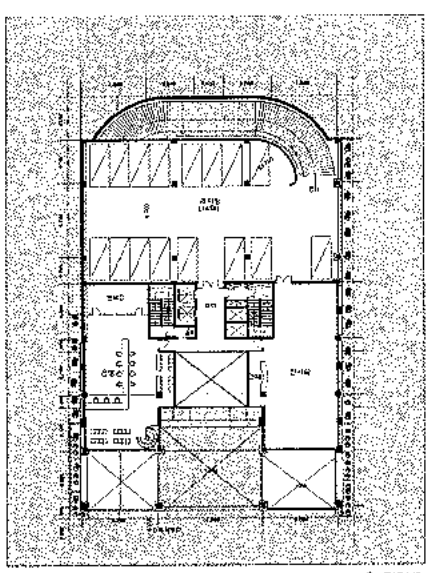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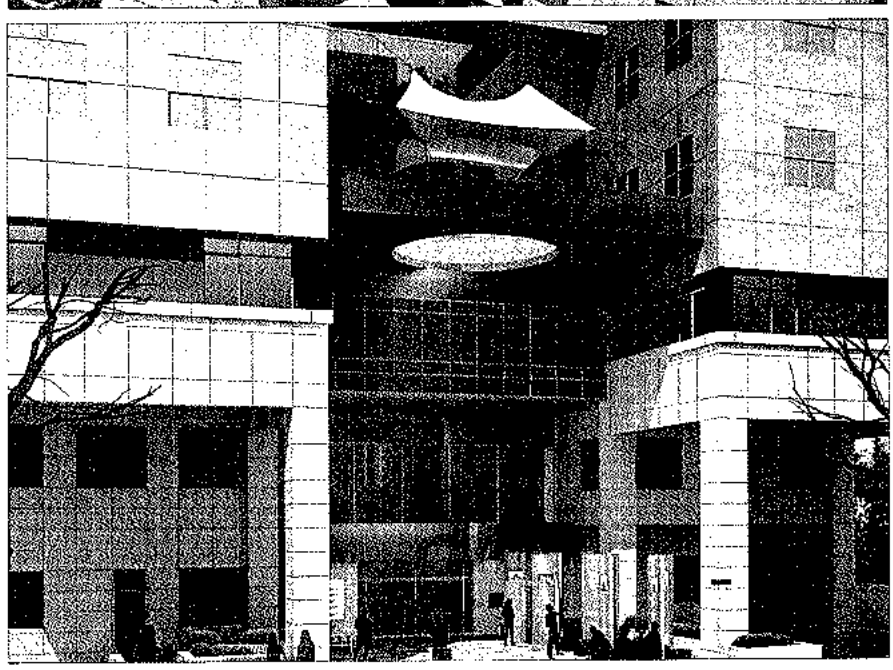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한도시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041.04㎡
연 면 적	9,920.26㎡
건 폐 율	55.24%
용 적 률	299.99%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다목적홀)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주차대수	계획 72대
외부마감	T24 컬러복층유리, T30 화강석 버너구이, 스테인레스스틸 루프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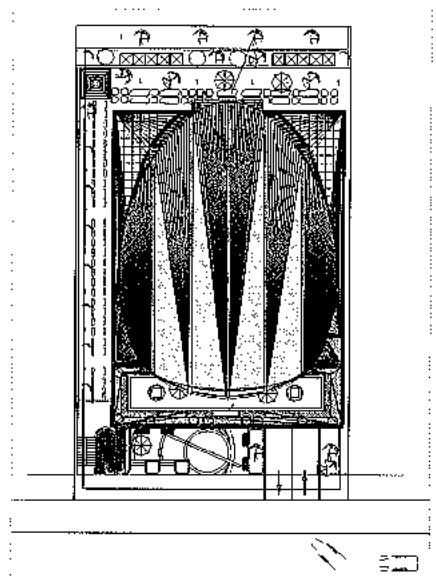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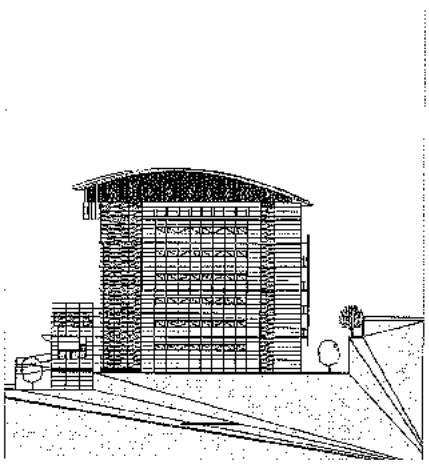

우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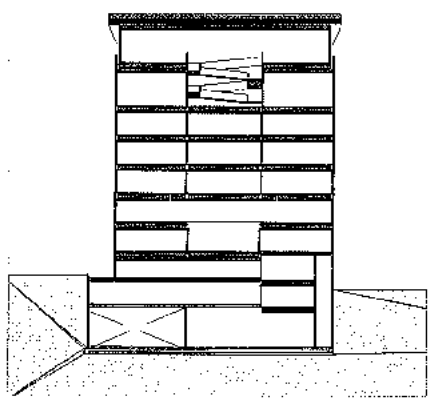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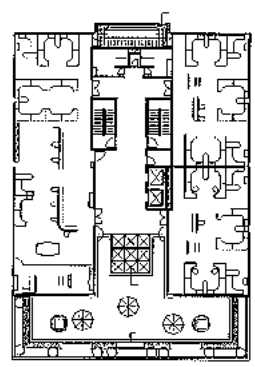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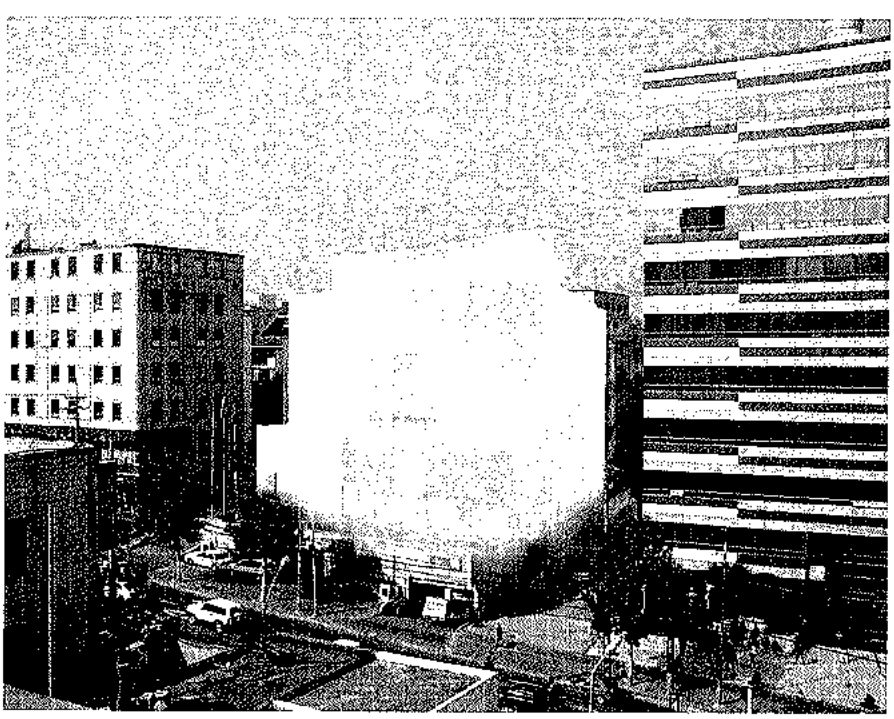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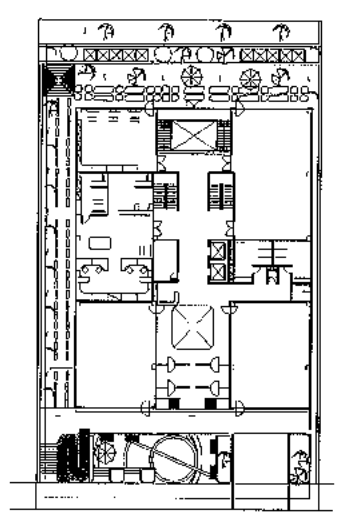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예터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658.84㎡
연 면 적	9,721.93㎡
건 폐 율	49.20%
용 적 률	299.84%
구 조	R.C구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10층
주차대수	계획 72대
외부마감	적벽돌, 마천석, 철재루버, 18착색 복층유리, 갈바철판위 우레탄페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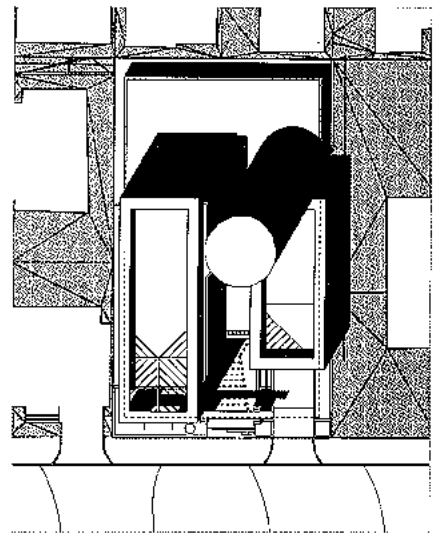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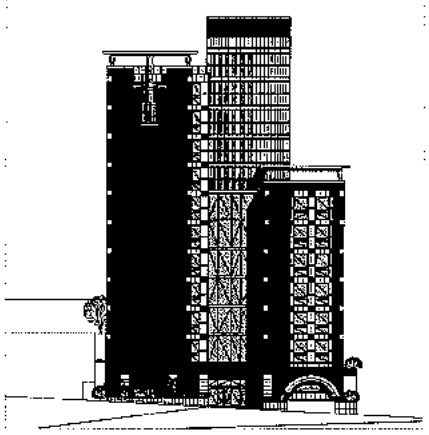

남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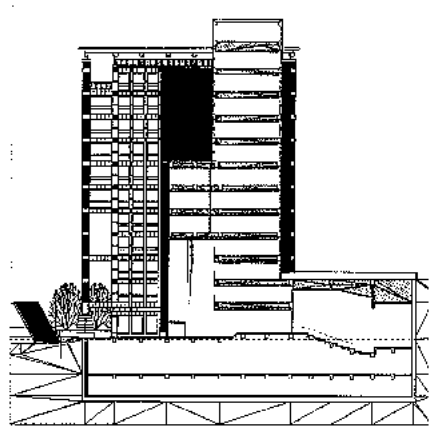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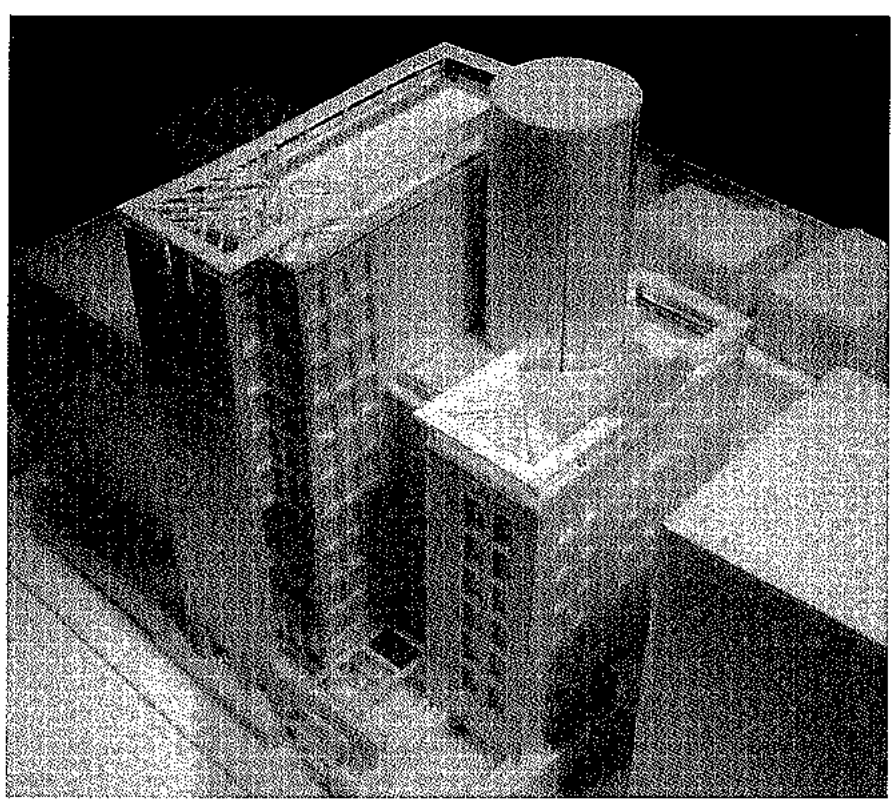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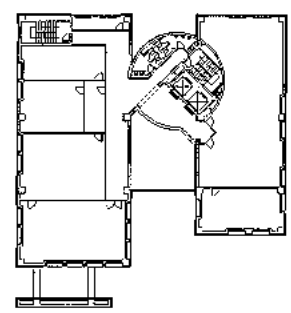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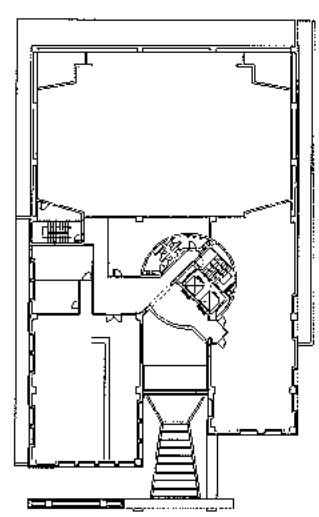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아키원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61.01㎡
연 면 적	11,441.10㎡
건 폐 율	52.43%
용 적 율	297.18%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골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6층
주차대수	지하 73대(장애인 주차 4대) (법정 73대)
외부마감	커튼월 및 컬러복층유리, 스톤코트 뿜칠 및 샌드스톤(지하 1층 도로노출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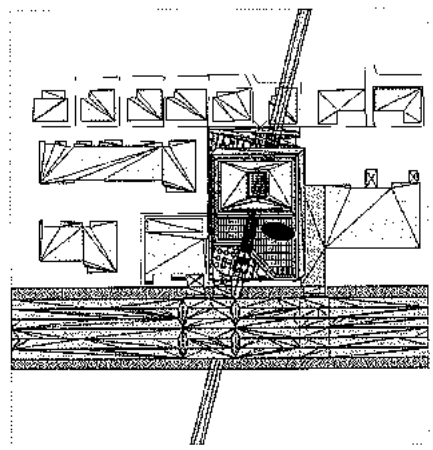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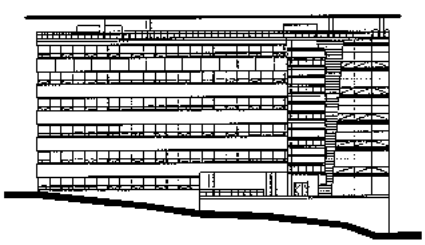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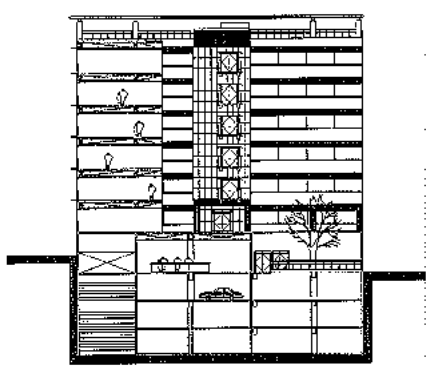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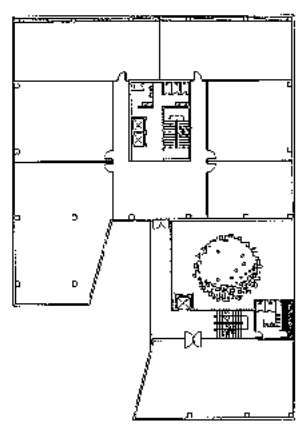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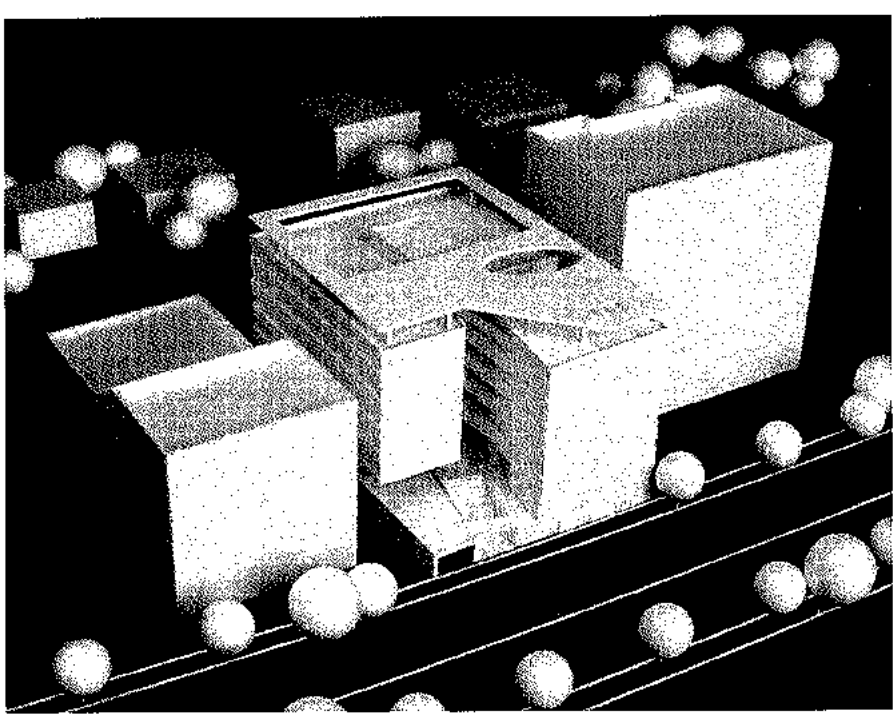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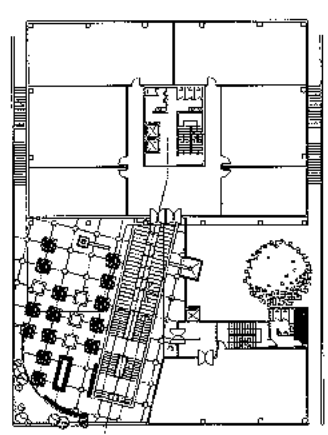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비욘드스페이스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 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관람집회시설
대지면적	1,834.40㎡
건축면적	1,108.3㎡
연 면 적	10,165.4㎡
건 폐 율	58.8%
용 적 률	298.1%
구 조	S.R.C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7층
주차대수	지하자주식 67대 (법정 : 59대)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알미늄쉬트, THK24컬러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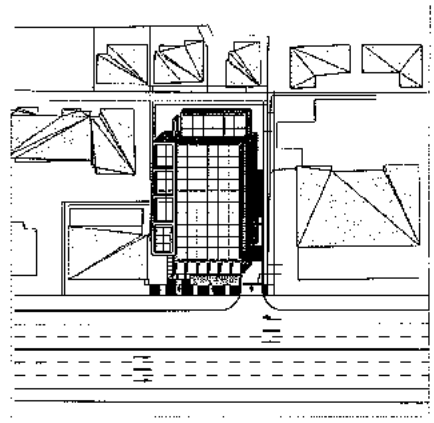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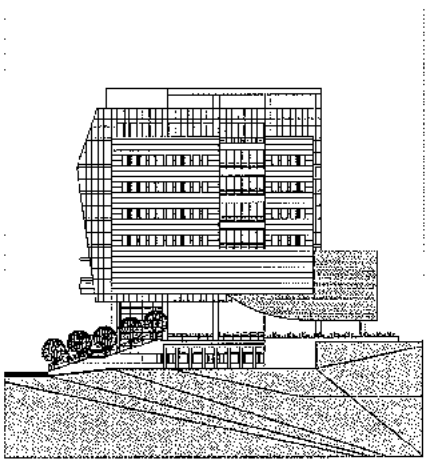

동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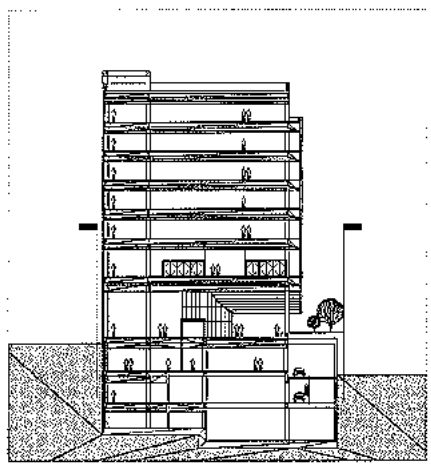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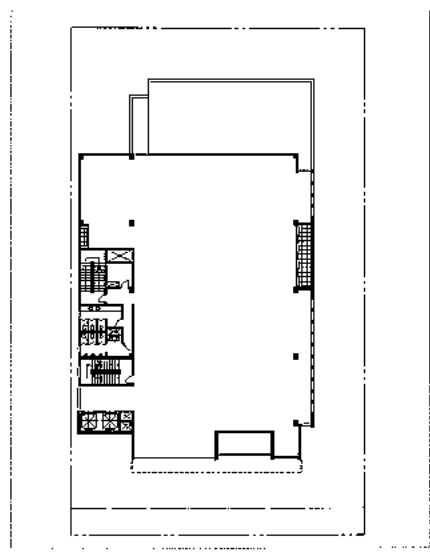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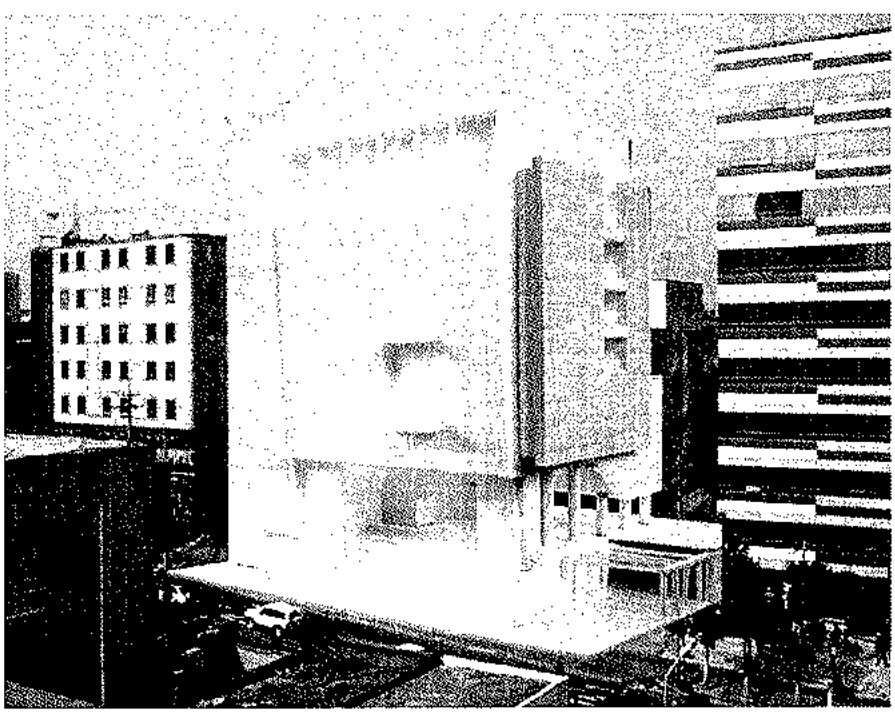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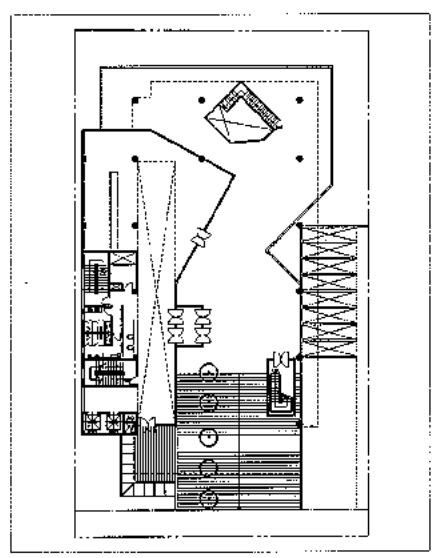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덕원종합건축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121.40㎡
연 면 적	11,366.40㎡
건 폐 율	59.51%
용 적 률	293.41%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7층
주차대수	지주식 86대, 지하 86대(법정 77.57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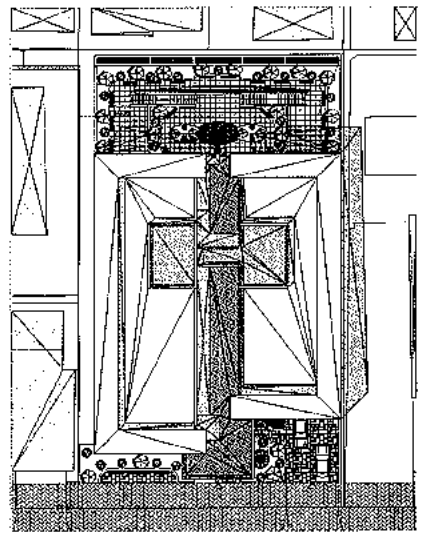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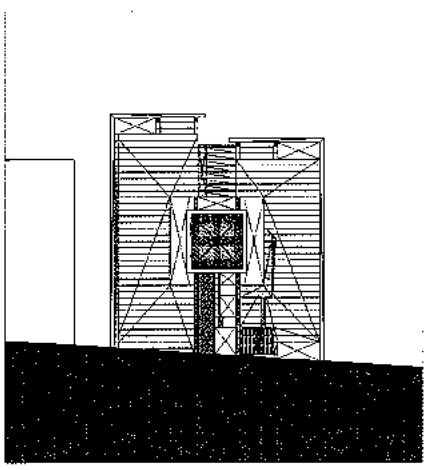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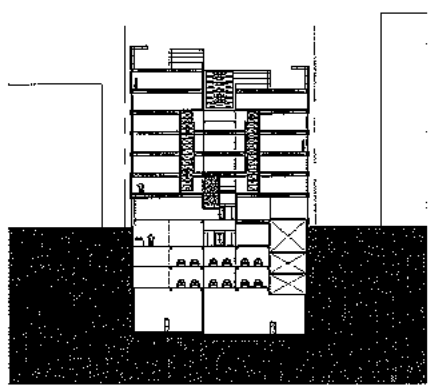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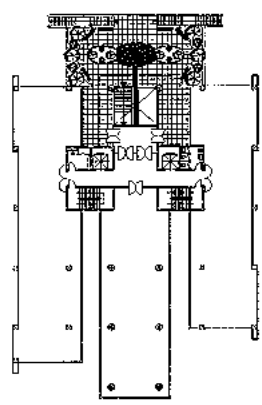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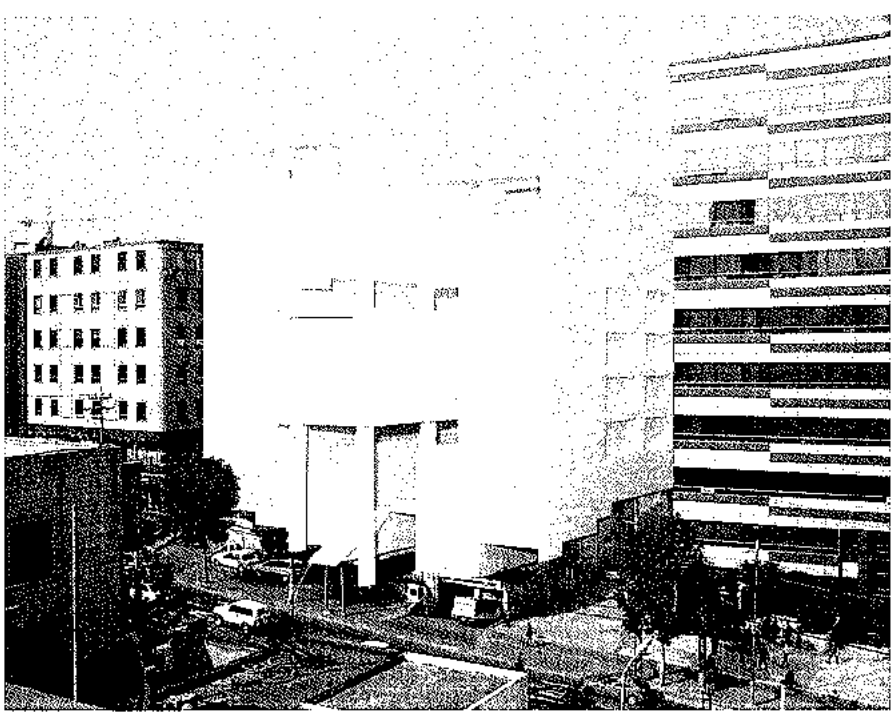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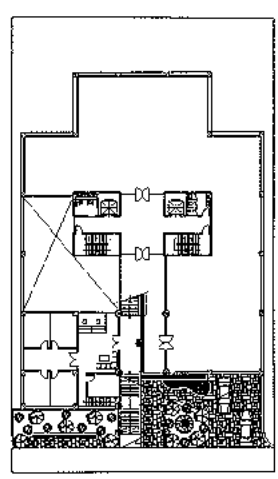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건축사사무소 케이피씨+(주)도반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13.44㎡
연 면 적	10,559.45㎡
건 폐 율	48.47%
용 적 률	294.79%
구 조	RC+SRC
규 모	지하 4층, 지상 14층
주차대수	계획 80대, 법정 77대
외부마감	알루미늄 복합패널 + T-8K19mm 복층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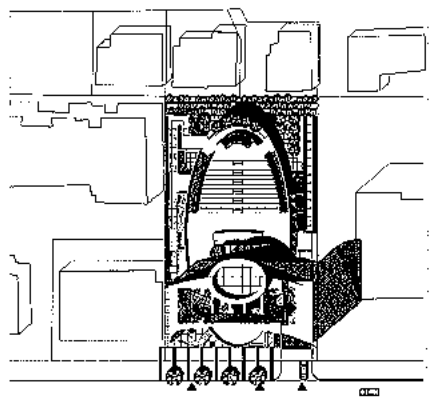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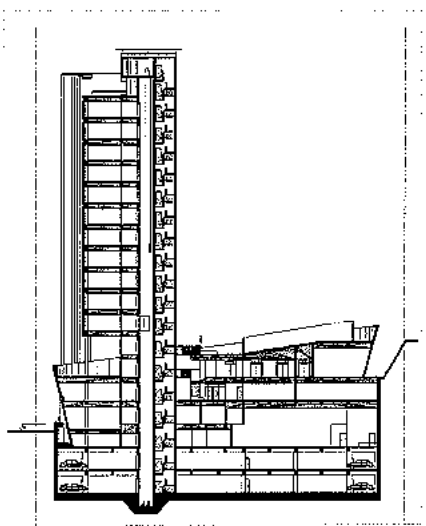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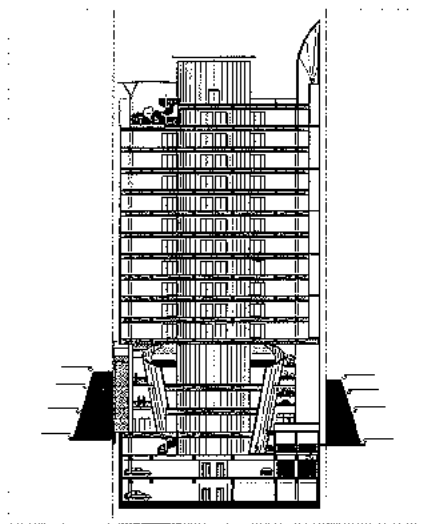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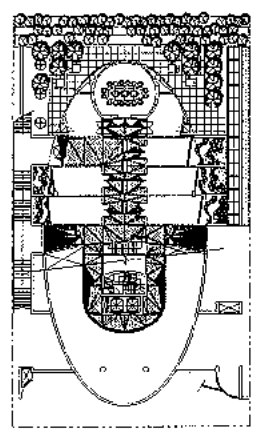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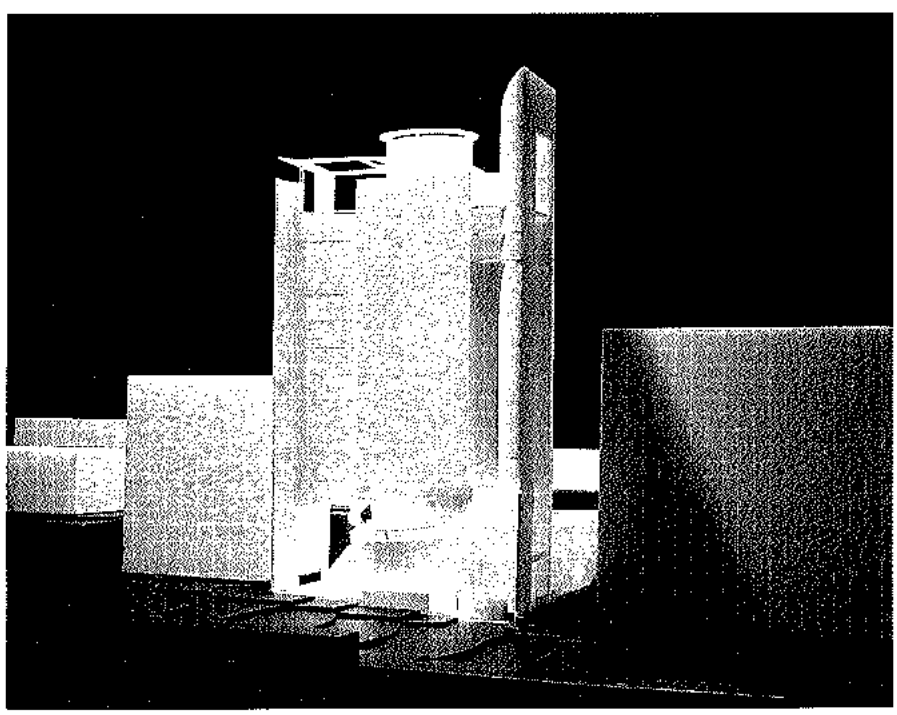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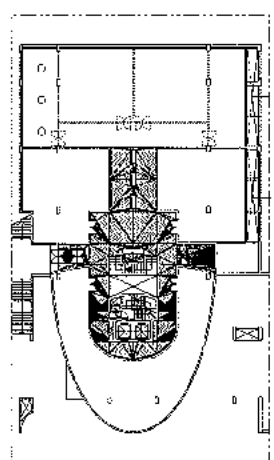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포인트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그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078.36㎡
연 면 적	10,527.68㎡
건 폐 율	296.68%
용 적 률	299.76%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9층
주차대수	7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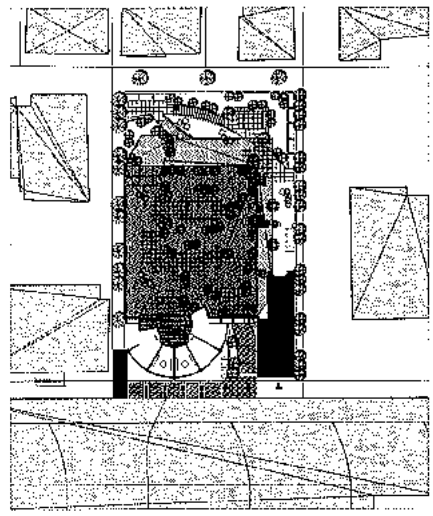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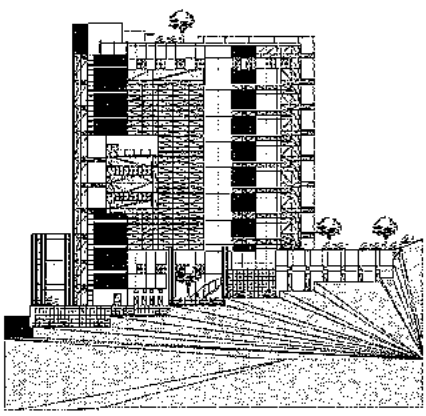

등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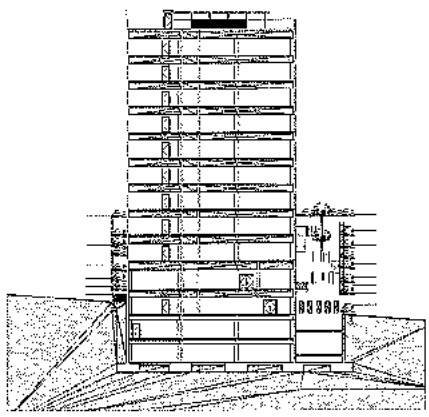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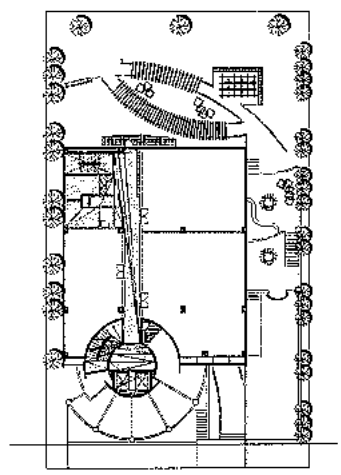

3, 7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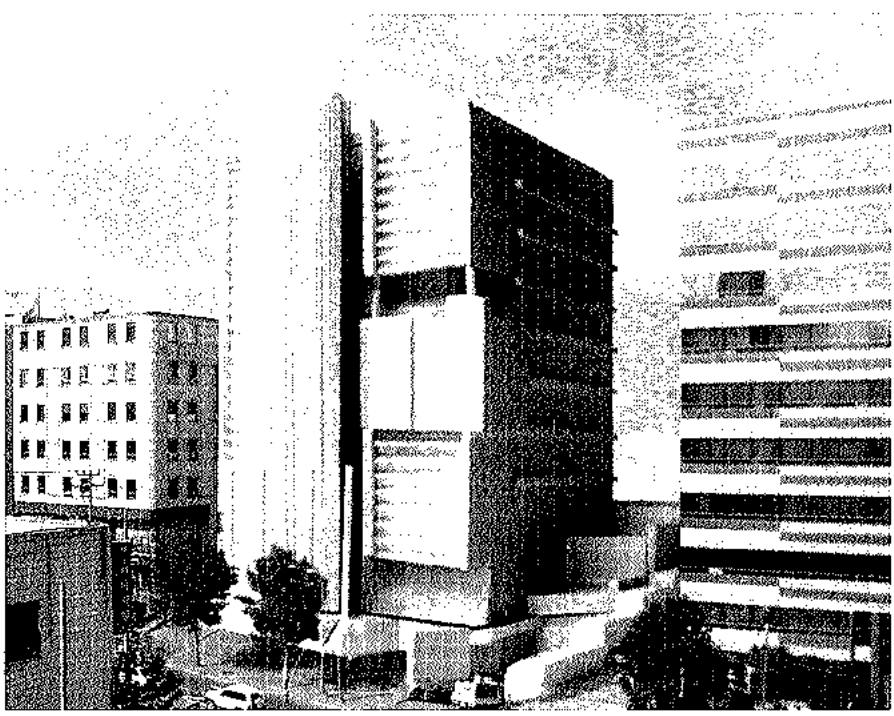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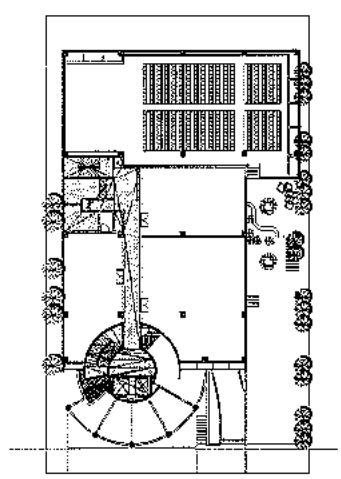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건축사사무소 일정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891㎡
연 면 적	9,478㎡
건 폐 율	47.3%
용 적 률	297.7%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SRC)
규 모	지하 3층, 지상 8층
주차대수	94대 (법정 7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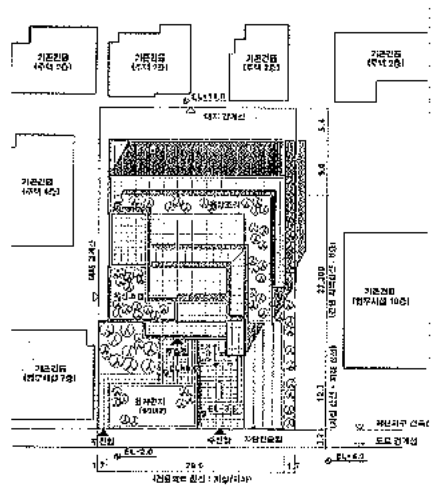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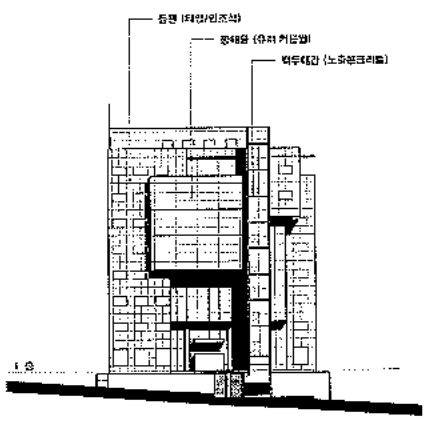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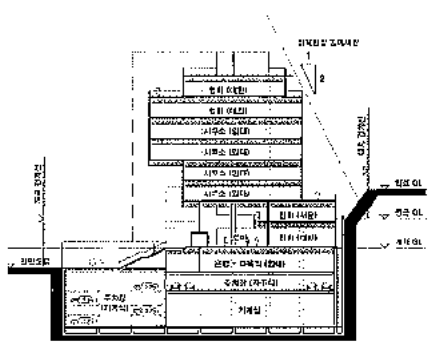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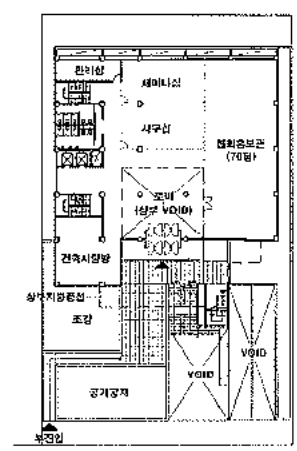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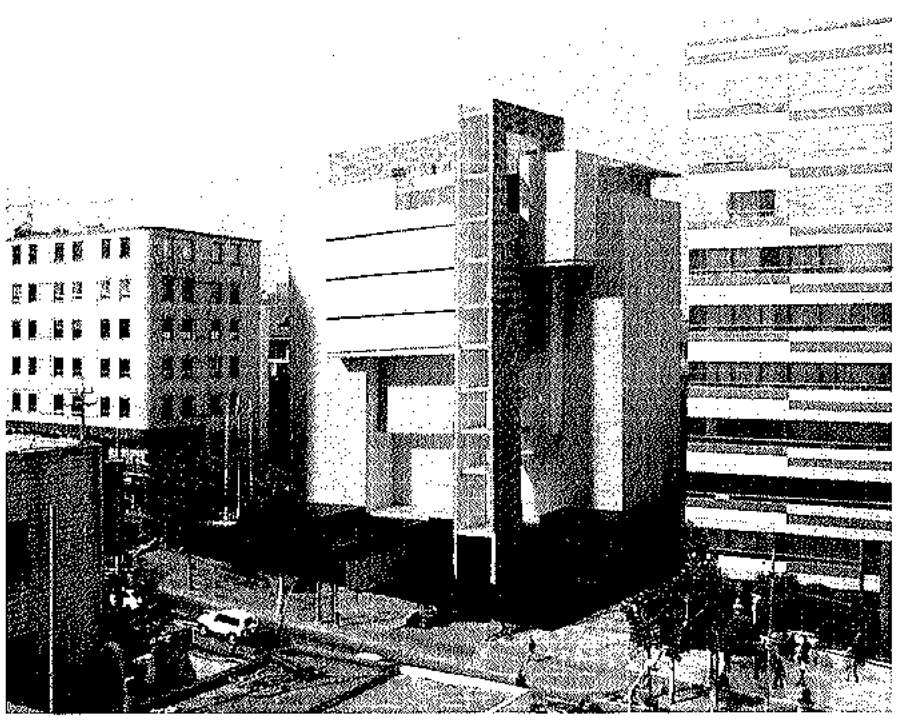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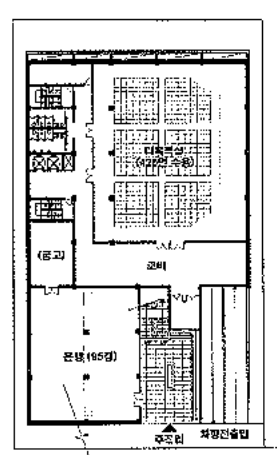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건축사사무소 한양건축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50.30㎡
연 면 적	11,966.38㎡
건 폐 율	50.43%
용 적 률	299.91%
구 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골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9층
주차대수	지주식 92대(장애인 6대 포함) 기계식 17대
외부마감	베이스패널, 목재패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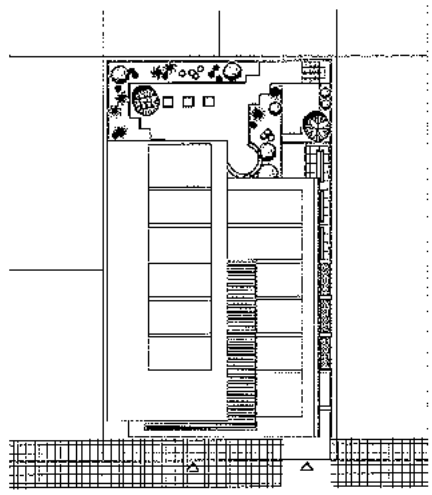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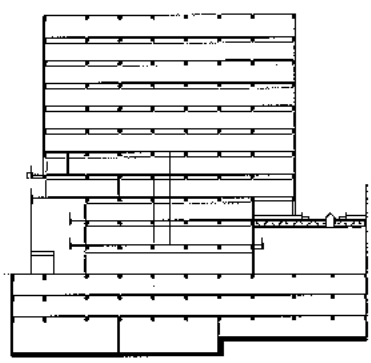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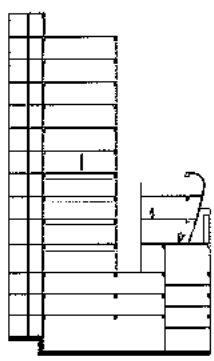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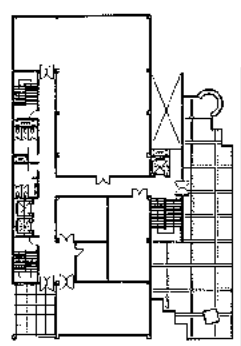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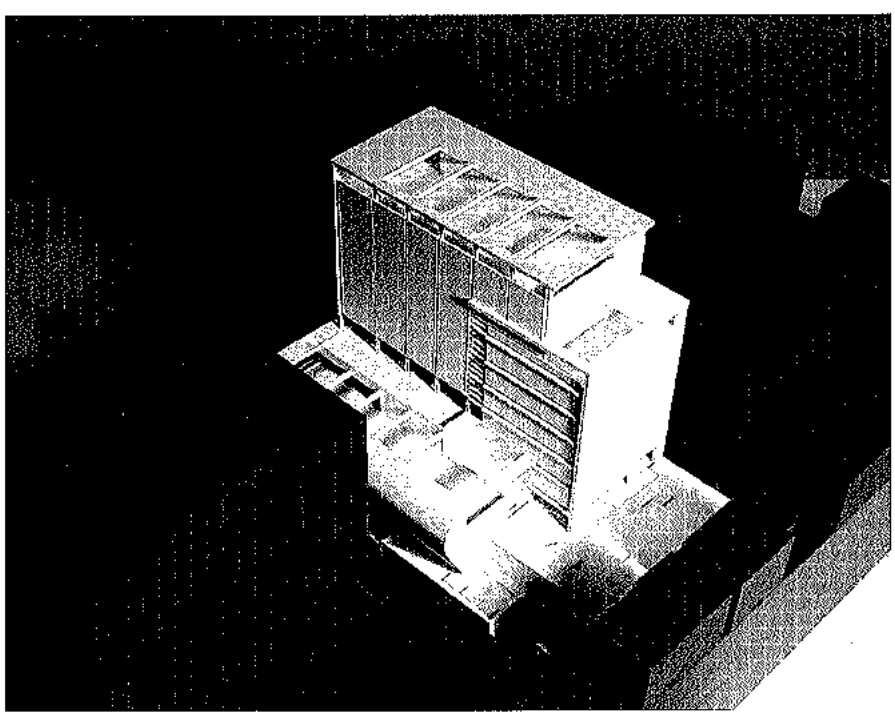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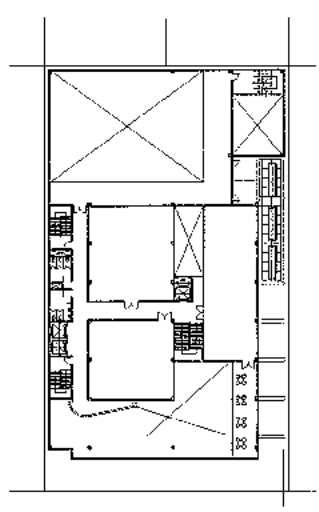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열린모임참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1,067.70㎡
연 면 적	11,211.12㎡
건 폐 율	56.66%
용 적 률	299.76%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9층
주차대수	지하 86대 + 지상 2대(장애자용) = 88대
외부마감	T30화강석 버너구이, T24커튼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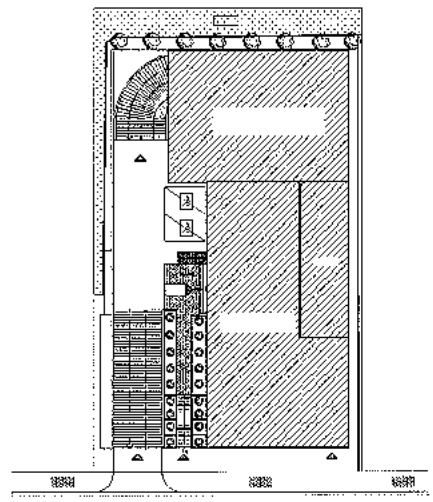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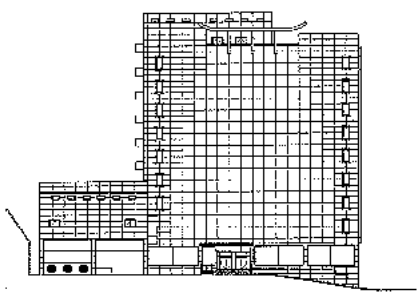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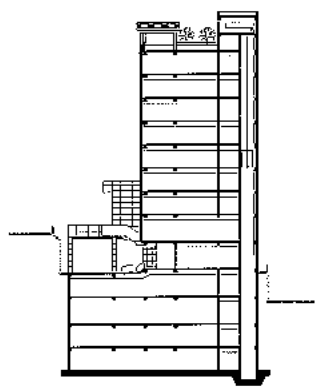

횡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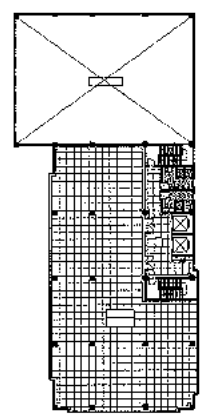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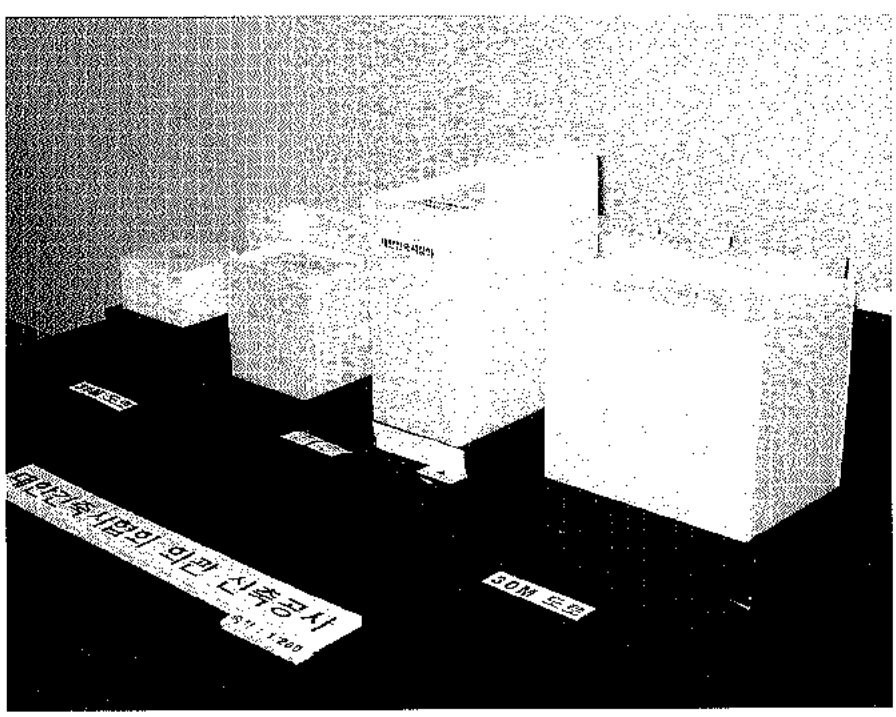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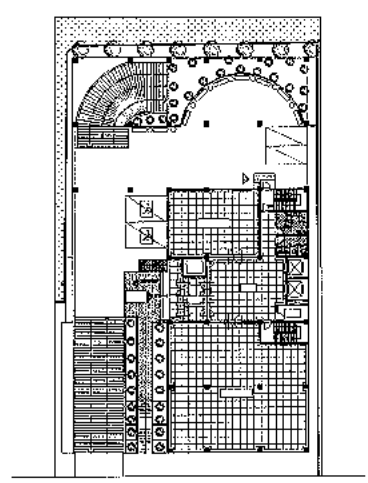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마루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709.16㎡
연 면 적	8,400.17㎡
건 폐 율	37.63%
용 적 률	294.51%
구 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2층, 지상 8층
주차대수	자주식 58대(장애인 2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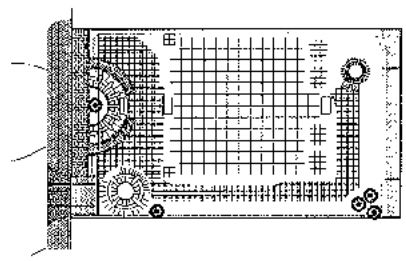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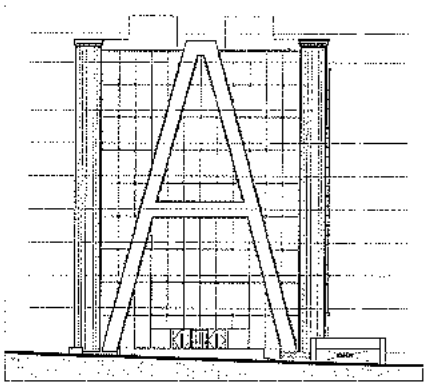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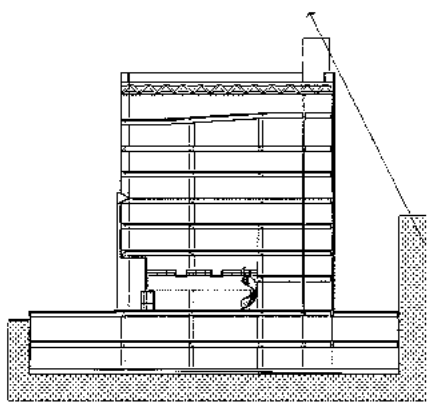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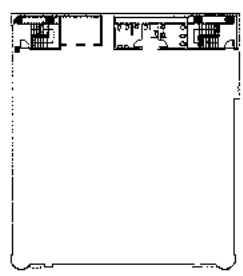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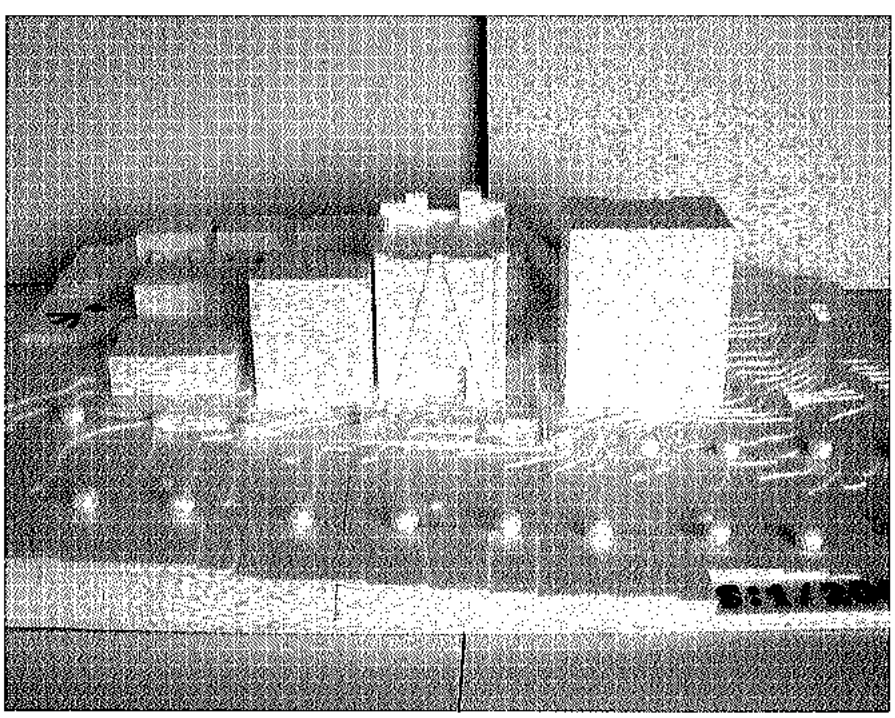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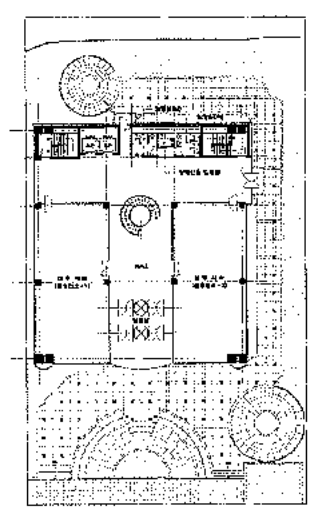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주)비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6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870.85㎡
연 면 적	9,353.13㎡
건 폐 율	46.2%
용 적 률	284.92%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지하 3층, 지상 8층
주차대수	66대
외부마감	THK18 복층유리, Glass She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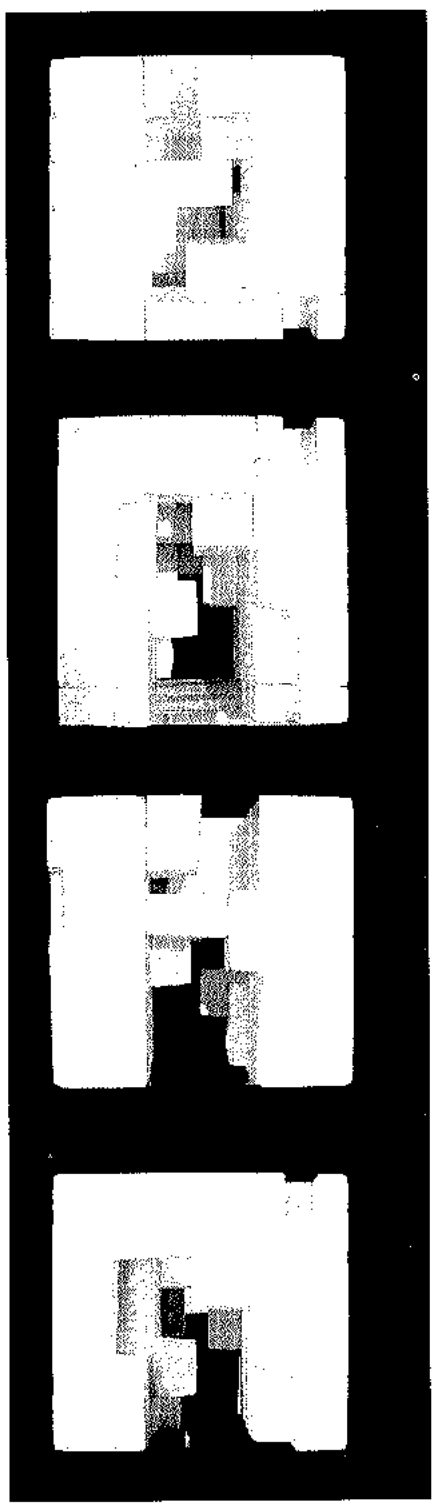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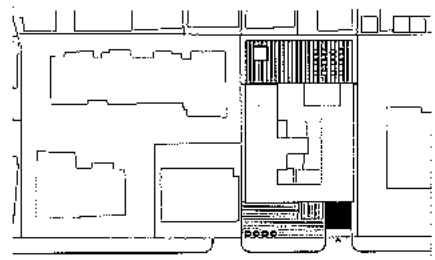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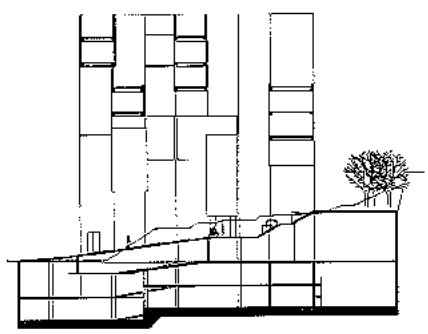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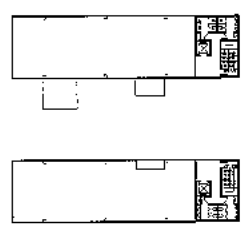

기준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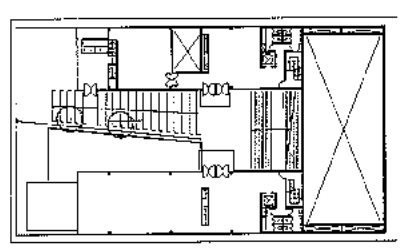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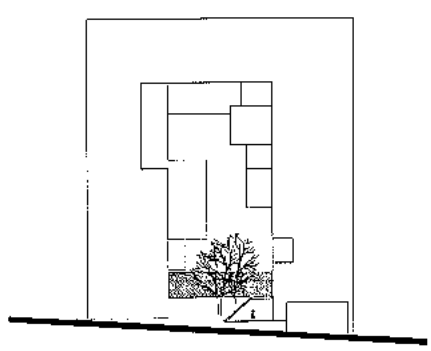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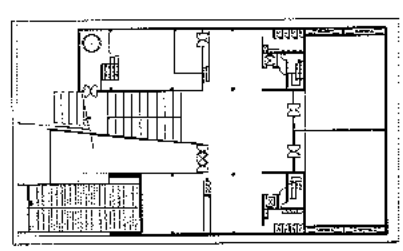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참가작 / 건축사사무소 도연건축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번지
지역지구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용 도	업무시설, 그린생활시설
대지면적	1,884.40㎡
건축면적	983.52㎡
연 면 적	10,391.26㎡
건 폐 율	52.20%
용 적 률	294.27%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하 4층, 지상 12층
주차대수	72대
외부마감	커튼월, 알루미늄복합패널, 화강석버너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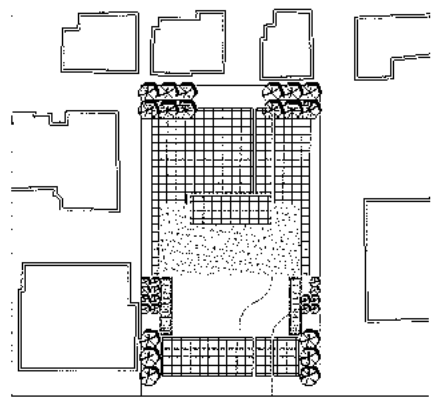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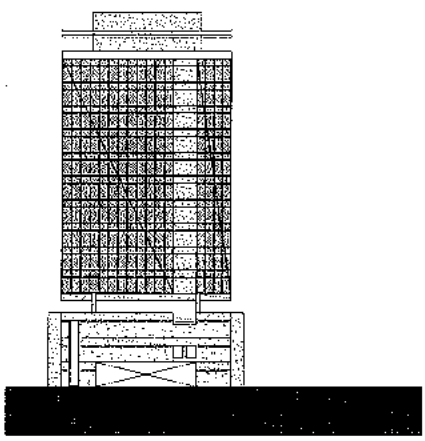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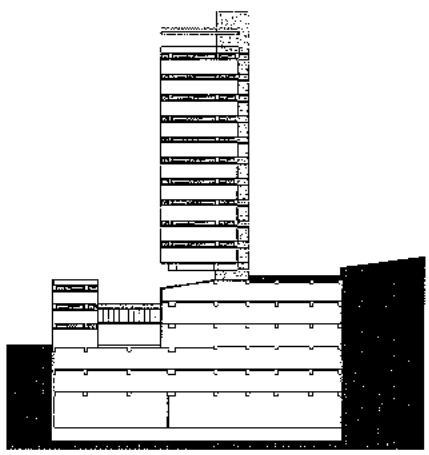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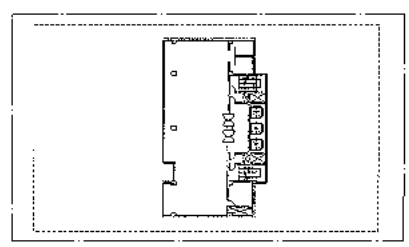

3~4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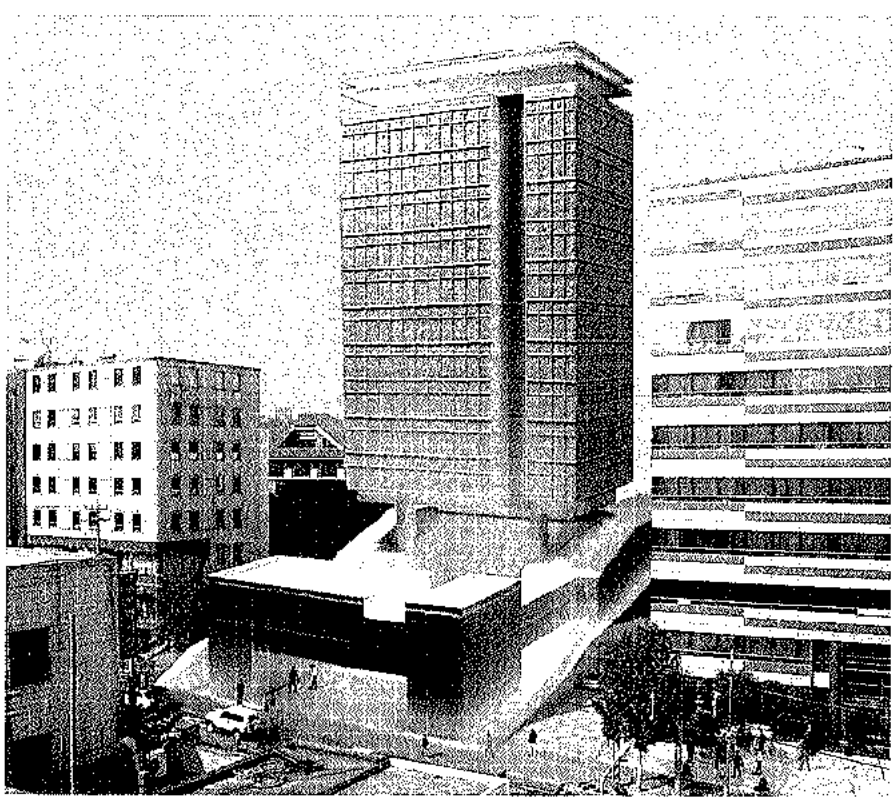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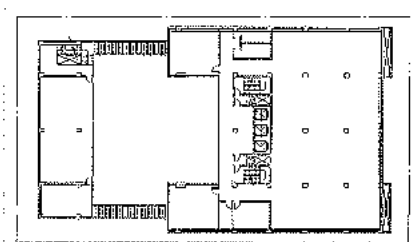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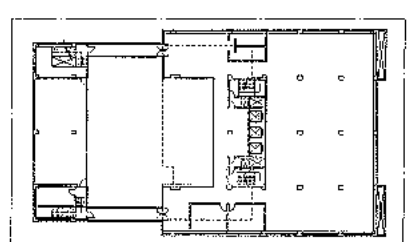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2003 건축사시험 466명 최종합격

건설교통부는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에 46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5천177명이 응시한 이번 시험의 합격률은 9%로 전년도(9.4%)에 비해 0.4%포인트 떨어졌으며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10.5%인 49명으로 집계됐다. 최종합격자 명단은 13일부터 건설교통부(www.moct.go.kr) 및 대한건축사협회(www.k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4목조건축기술세미나

"현대목조건축의 기술적 고찰"

한국목조건축협회, 한국목조건축기술협회,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하는 2004 목조건축기술세미나가 산림청과 서울건축사신문 등 후원으로 오는 2월 7일(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코엑스(COEX) 전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현대목조건축의 기술적 고찰"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날 세미나에서는 ▲ 국내 목조주택의 잘못된 건축사례 ▲ 목조주택의 품질보증제도 및 올바른 업체 선정요령 ▲ Hybrid건축의 사례 및 전망(조남호 / (주)솔토건축) ▲ Glulam Connection Detail(정태욱 / 미국임산물협회 한국사무소 기술이사) ▲ 방부목의 적용 사례 및 전망(홍태식 / (사)목재문화포럼 이사) 등의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 02-508-5106

제14회 건축사진아카데미

2004년 2월11일부터 4월28일까지 청암연구소에서

청암건축사진연구소(대표 임정의)는 제14회 건축사진아카데미를 2004년 2월11일부터 4월28일까지 12주간 청암연구소(광진구 구의동 소재)에서 개최한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12명이며 참가비는 30만원(학생은 20만원)으로 입금(외환은행 024-18-29934-0 예금주 임정의) 후 메일로 자기소개서를 보내면 된다. 매주 수요일 오후7시부터 이론과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실기를 병행하여 진행한다.

문의: 02-444-7088, www.freechal.com/imfoto, imfoto@hanmail.net

[일정]

01- 건축을 보는 눈
02- 건축사진의 작업과정
03- 빛과 공간의 이해
04- 인공광과 자연광의 비교
05- 현대건축 촬영실기(고건축과 현대건축)
06- 각종모형촬영 이론과 테크닉
07- 인테리어 촬영 이론과 테크닉
08- 고건축사진의 표현방법
09- 고건축 촬영실기 답사 (1박2일)
10- 흑백사진 현상,인화실기
11- 건축과 프레젠테이션
12- 포트폴리오제작 및 총평

* 건축답사는 추후 결정되며 일정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제13회 김태수 해외건축여행 장학제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김태수 건축여행 장학재단에서 해외건축 여행기금으로 미화 $10,000을 수여하는 제13회 김태수 해외 건축여행 장학제를 개최한다. 젊고 유능한 건축가에게 교육과 해외건축기행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조성된 이 기금은 수령자 본인이 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여행 목적이나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만 35세 미만의 국내에서 건축학위를 받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외국에서 공부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수상자는 포트폴리오 심사후 예선 통과자를 선정하고, 예선 당선자에 한해 여행목적 및 계획을 받아 2차 면접심사를 거친 후 최종 1명이 선발된다. 2004년 4월 30일까지 접수.

문의: 02-569-1536 www.tskaf.org

제 6회 후당(김인호)건축상

대구 · 경북지역의 향토 건축문화에 큰 족 적을 남긴 후당 김인호 선생의 건축문화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시상하는 후당 김인호 건축상의 제6회(2003) 수상은 (주)심 · 이건축사사무소의 대표이며 영남대학교 건축학부의 겸임교수인 심재익씨의 「대구 침산3동사무소」가 차지하였다.

수상자의 작품은 지난 2003년 11월 12일에 개최된 대구건축대전의 후당건축상 코너에 전시되어 15주기를 맞는 김인호 선생의 뜻을 기렸으며 본상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켰다.

이 상은 1998년에 시작하여 운영위원장(합동건축 권태식 건축사)과 후당건축상 운영위원 4명(경북대 최무혁 교수, 경북대 이정호 교수, 경일대 현택수 교수, 계명대 김종영 교수)이 후보작가와 작품 그리고 심사위원 3명(현대건축 김무권 건축사, 경일대 김원갑 교수, 계명대 김영철 교수)을 선정,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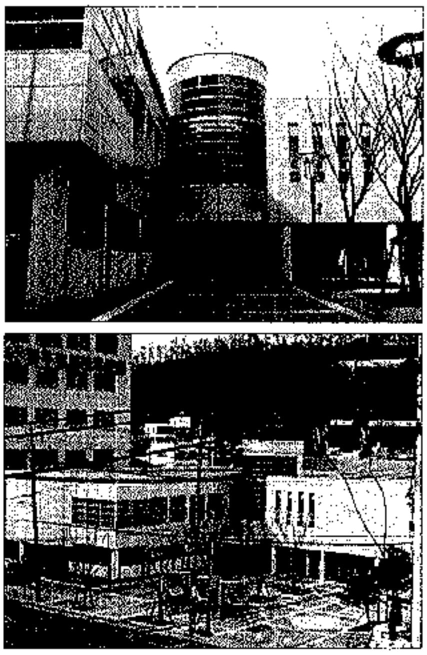

제6회 -심재익(대구 침산3동 사무소)

· 후당 김인호 건축상 역대 수상자

제1회	1998	윤 옥(호반레스토랑)
제2회	1999	박두용(낮과 밤의 주거)
제3회	2000	김일진(영남대 생활과학대학)
제4회	2001	해당 작가(작품) 없음
제5회	2002	김홍근(북삼 제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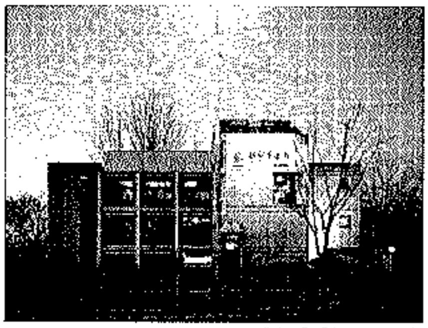

제1회-윤 옥(호반레스토랑)

제2회-박두용(낮과 밤의 주거)

제3회-김일진(영남대 생활과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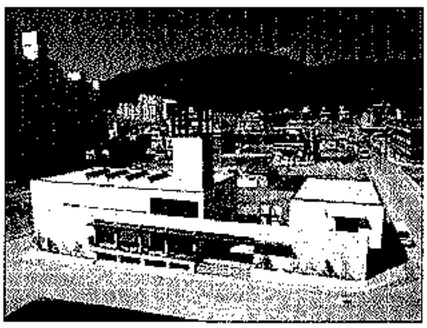

제5회-김홍근(북삼제일교회)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488-7475 · 강북구건축사회/903-2030 · 강서구건축사회/661-6999 · 관악구건축사회/877-4844 · 광진구건축사회/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864-5828 · 금천구건축사회/859-1588 · 노원구건축사회/937-1130 · 도봉구건축사회/990-8720 · 동대문구건축사회/967-6052 · 동작구건축사회/815-3029 · 마포구건축사회/333-6781 · 서대문구건축사회/338-5552 · 서초구건축사회/3474-3100 · 성동구건축사회/292-5855 · 성북구건축사회/922-5117 · 송파구건축사회/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694-5040 · 영등포구건축사회/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358-1466 · 종로구건축사회/725-3914 · 중구건축사회/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437-3300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52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80~3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6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8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268-5651
■ 경기도건축사회/(031)2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1)9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리지역건축사회/(031)5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6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1)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1)241-7907~8 · 시흥지역건축사회/(031)318-6713 · 안산건축사회/(031)4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1)449-2893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0459 · 이천지역건축사회/(031)635-0545 · 평택지역건축사회(031)657-6149 · 오산건축사회/(031)375-6648 · 용인지역건축사회/(031)336-0140 · 광주지역건축사회/(031)767-2204
■ 강원도건축사회/(033)254-2442
강릉지역건축사회(033)652-0126 · 삼척지역건축사회/(033)531-8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3)633-5080 · 영월지역건축사회/(033)374-2659 · 원주지역건축사회/(033)743-7290 · 춘천지역건축사회/(033)2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223-3084~6
청주지역건축사회/(043)223-3084 · 옥천지역건축사회/(043)7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3)643-3569 · 충주지역건축사회/(043)851-1587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2-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854-33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1)9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1)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1)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551-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41)6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3)251-6040
군산지역건축사회/(063)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3)631-2223 · 익산지역건축사회(063)852-3795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65-93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1)272-3340 · 순천지역건축사회/(0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1)652-7023 · 나주지역건축사회/(061)335-6161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5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4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432-0658 · 문경지역건축사회/(054)553-1412 · 상주지역건축사회/(054)535-88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4)553-0244 · 영주지역건축사회/(054)634-5550 · 영천지역건축사회/(054)334-9258 · 칠곡지역건축사회/(054)9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4)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2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635-6870 · 거창지역건축사회/(055)943-6090 · 김해시건축사회/(055)334-8644 · 마산시역건축사회/(055)245-3737 · 밀양지역건축사회/(055)355-1323 · 사천시건축사회/(055)833-0779 · 양산시건축사회/(055)384-3050 · 진주지역건축사회/(055)741-6403 · 진해시건축사회/(055)544-7744 · 통영지역건축사회/(055)641-4530 · 하동시역건축사회/(055)883-4612
■ 제주도건축사회/(064)75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733-5501

창덕궁과 창경궁

이 책은 궁궐에서 펼쳐진 일들을 통해 궁궐의 위상과 운명이 어떻게 바뀌어 갔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역사의 무대로서의 궁궐을 이야기한다. 1부에서는 두 궁궐이 처음 세워진 이래 일제 강점기에 궁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까지 역사가 왕조별로 전개되고, 2부에서는 창덕궁과 창경궁 및 후원에 자리한 건물에 대한 이야기, 건물과 관련된 인물, 사건 등 역사적인 사실이 소개된다.

환영우 지음 / 4만원 / 열화당 펴냄

경상북도의 향교건축-북동부편

이 책은 한국 전통 건축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교 건축물 가운데 향교 건축물에 대한 네 번째 조사 보고서이다. 조사시 작성한 실측 도면과 상세한 사진, 건축양식 및 가구 기법 등에 대한 해설 등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조영화 조상순 지음 / 국립문화재연구소 펴냄

리모델링의 이해

이 책은 자원절약과 효율적 자산 활용의 측면에서 기존 건물을 무분별하게 재건축하기 보다는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유지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리모델링을 소개하고 있다. 사업, 경제성 분석, 설계, 시공, 구조, 설비, 보존과 재생, 법규 등의 관련 분야별 전문가들이 집필했다.

한국퍼실리티매니지먼트학회 지음 / 1만8천원 / 기문당 펴냄

건축사법 제15조의 2 규정에 의거 2003년도 건축사자격시험 시행시 부정행위를 한 임화춘(61년생)에 대하여 2003. 9. 21~2006. 9. 20.까지 3년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 (건교부 건축 58574-2386, 03. 12. 26.) 되었음을 알립니다.

○○○소장을 ○○○건축사로 부릅시다

우리 협회에서는 건축사의 위상제고와 상호존중을 위해 현행 ○○○소장으로 통용되던 호칭을 ○○○건축사로 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건축사의 사회적 위상제고 및 상호존중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chitectural Record 128
a + u 129
신건축 131

Architectural Record

2003년 11월호

이번 호는 AIA의 2003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 Award 특집으로 수상작과 심사위원의 면모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아울러 Frank Gehry의 디즈니 콘서트홀의 완공을 계기로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이 속속 지어지고 있는 L.A.의 건축환경과, 캘리포니아 남부의 Case Study House 등을 시발로 Don Wexler의 1960년대 스틸 하우스, 그리고 최근 지어진 Hodgetts+Fung의 캘리포니아주 Sylmar Library 등을 통해 모더니즘의 진화를 다루었다.

■ 웰빙을 위한 디자인: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 환경

AIA의 2003 Business Week/Architectural Record Award 수상자들의 작품을 특집으로 다루었다. 좋은 건물 디자인은 사용자의 생산성과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 환경심리학자인 Judith H. Heerwagen 박사에 의하면 건물 디자인에 의해 결정되는 많은 요인들, 즉 자연에의 노출, 채광, 온도, 소음, 사회참여의 기회 등이 거주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사용자나 개발업자는 건물에의 투자가 매우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 가고 있다.

▶ Anmahian Winton Architects의 캠브리지, Orange Innovations

Anmahian Winton Architects의 캠브리지, Orange Innovations

영국에 본사를 둔 모바일 회사인 Orange Innovation의 의뢰에 의해 낡은 창고 건물이 최첨단 오피스로 거듭났다. 건축가는 다섯 개의 단층 창고건물을 합쳐서 단일 볼륨의 건물로 변형시켰다. 창고와 창고사이의 골목길은 대나무가 심어진 유리 아트리움이 되었으며, 세 개의 주요 프로그램(개인 사무실, 회의실, 회사공공공간)을 엮는 순환동선의 역할을 한다. 사무공간은 자리배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그 밖에 총 10개의 수상작과 6개의 후보작 그리고 1개의 계획안의 프로그램과 특징적인 부분이 자세히 다뤄졌다.

■ 로스앤젤레스의 건축

역사적으로 런던과 뉴욕에는 심각한 지적 중압감이 내재해 있었던 반면, L.A는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사고의 젊은 도시로 대표되었다. 그러나 지적 취향의 씨앗은 척박한 L.A에도 뿌리를 내렸다. Tom Gilmore와 같은 개발업자는 중심가의 별볼일 없던 지역에 새로운 활기와 고급문화를 불어넣었다. SCI-Arc, UCLA, USC 등의 서부소재 건축학교의 우세는 이 지역의 건축적 상황을 건축가들의 논의주제로 끌어 올렸다. 1997년 L.A.는 Richard Meier의 게티센터 완공으로 동부의 주의를 끌며 메이저리그에 진입했다. 뒤이어 José Rafael Moneo의 Cathedral of Our Lady of the Angels와 최근 완공된 Frank Gehry의 디즈니 콘서트 홀로 이 도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본 이슈에서 소개되는 Gehry의 콘서트 홀이 성숙된 작가의 작품이라면 다음에 이어지는 L.A. Now Project에서는 젊은 건축학도들이 제시하는 비전과 자유로운 창조적 사고를 만끽할 수 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 남부의 Neutra와 Shindler의 주택에서부터 최근의 Hudgetts+Fung의 하이브리드 도서관에 이르기까지 모더니즘의 진화를 읽을 수 있다.

▶ Hodgetts+Fung의 캘리포니아주 Sylmar Library

이 도서관은 L.A.가 추진하는 32개의 시립도서관 건립사업의 일환으로 세워졌다. 각 도서관들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각 지역의 요구에 맞춰 각각 다른 형식으로 지어졌다. 1에이커 크기의 코너 대지에 세워진 이 도서관에서 건축가는 San Gabriel 산을 올려다볼 수 있는 고창이 설치된 넓은 열람실을 만들고자 하였다. 내부공간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캐노피 같은 스틸 데크 지붕이 이용되었다. 지붕을 지지하는 스틸 프레임은 내부 공간과 완벽히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마치 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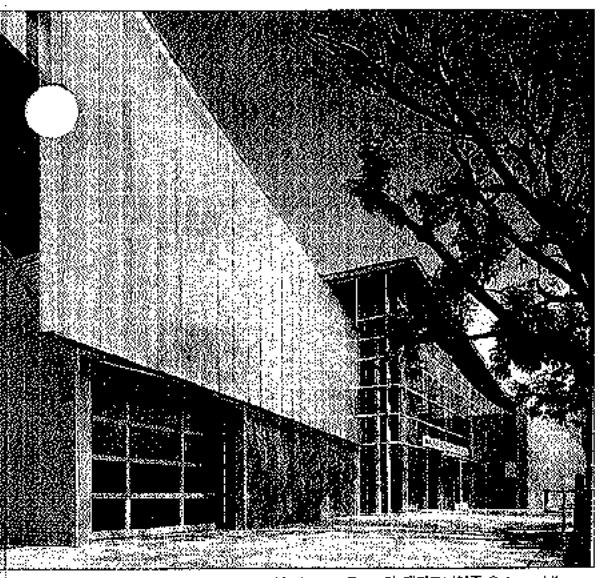

Hodgetts+Fung의 캘리포니아주 Sylmar Library

박자처럼 공간에 리듬을 부여하였고 건축가는 이를 마치 보사노바와 같다고 표현하였다. 접힌 지붕선은 산의 형상을 흉내낸 것일 뿐 아니라 다양한 각도의 내부 프레임을 만들어낸다. 어린이 열람실을 비롯하여 그 밖의 열람실도 다양한 각도를 가진 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재미를 준다. 재료는 경쾌하고 밝은 느낌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었다. 지붕의 두께도 8인치 밖에 되지 않는다.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캔버스로 된 천막과 같은 느낌을 전달하기 위하여 재료의 두께를 최소화 하였다. 외벽에는 알루미늄 커튼월과 반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벽으로 마감하였으며, 이는 내부로까지 이어져서 인내 데스크의 캐노피에 사용되었다.

▶ Don Wexler의 주택 연작

1960년대 초반의 Don Wexler의 우아한 스틸 하우스는 주택디자인에 있어서 혁명적이었으며 캘리포니아 사막에서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다. 1950년대 저렴한 비용으로 학교 건물을 짓기 위해 고안된 스틸 패널 시스템은 중산층을 위한 주택사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었다. 유리와 스틸의 사용, 그리고 테라조 마감의 바닥을 특징으로 하는 이 주택은 당시 15,000달러(오늘날 약 91,000달러)에 팔렸으며, 총 38개가 지어졌다. 당시 급진적인 계획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철강 관련 잡지와 건축잡지 등에 소개되었다. 가장 큰 특징은 경량의 표준 패널 시스템이었는데, 이는 구조적인 기능도 하여 내력벽인 동시에 전단벽과 지붕의 역할도 수행했다. 엔지니어의 시스템은 단순하고 내구적이며 지속성이 있었지만, 건축가는 비대칭적이며 복합적인 구성을 원했다. 값은 캔틸레버와 움직이는 듯한 스틸과 유리면에서 그의 디자인에서는 Richard Neutra의 영향을 읽을 수 있다. 최근 그의 주택연작 중 한 채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보수 되었다. 그 중 한 채는 Palm Spring 소재 설계회사 O'Donnell+Escalante에 의해 개보수 되었는데, 그들은 기존 주택의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현재의 건축법과 에너지 세이빙에 맞춰 보완하였다. 그리고 보완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세 개의 주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 건물유형연구- 대학 캠퍼스 건축

대학은 기술, 스튜디오, 전문적인 실험실등을 위한 새로운 공간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으며 학습을 위한 융통성있는 장소로 거듭나고 있다. 본지에 소개되는 캠퍼스 건축은 전통적인 교실이 아니라 이익을 창출하고 시장경제에 필요한 고등교육을 제공하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전달을 위한 장소로서의 대학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즉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의 극복이 가능한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며, 스튜디오 중심, 실습중심의 시설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학생들의 생활 스타일에 적합한 캠퍼스를 조성한다. 여기에 소개된 모든 캠퍼스 건축은 공통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과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 시설을 갖춘 오디토리움을 포함한다. 건축가들은 또한 학생들의 여가시간을 위한 장소도 세심하게 계획한다. 프린스턴의 Carl Icahn Lab은 기본적으로 연구실 영역과 강의실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건축가가 가장 강조한 부분은 카페로서 과학자들의 사회적 교류가 일어나는 장소이다. 또한 Lawrence 기술대학은 갤러리가, Carl Tech의 Broad Center는 넓은 라운지가 공공공간으로서 계획되어졌다. 위의 요건에 접합한 네 개의 대학 건물은 다음과 같다. ▶ Pei Cobb Freed & Partners의 캘리포니아 Carl Tech의 생물과학을 위한 Broad Center, ▶ Trahan Architects의 루이지애나 주립대학의 운동선수들을 위한 아카데믹 센터, ▶ Gwathmey Siegel & Associates의 미시간주 Lawrence 기술대학, ▶ Rafael Viñoly의 프린스턴대학의 Carl icahn Laboratory(번역 / 전신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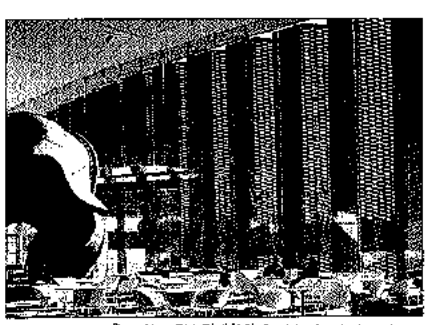

Rafael Viñoly의 프린스턴대학의 Carl Icahn Laboratory

a+u

12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최근 해외의 유명 건축가들 및 유수한 설계사무소들의 활동무대로 떠오른 중국이다. 중국은 대규모 프로젝트들의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세계의 유명 건축가들의 설계안들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에서의 해외 건축가들의 활약과 이들과의 협동작업을 통해 나날이 수준을 높이고 있는 중국 건축계의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특집이다. 최근 2~3년간 이루어진 해외 건축가의 작품들 및 중국 건축가들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다.

■특집: 중국의 건축 – 百花齊放

▶ 중국건축의 백화제방(百花齊放) – 마 웨이둥(馬衛東)

a+u 12월호의 표지에 쓰여진 '百花齊放'이라는 문구는 마오쩌뚱(毛澤東)이 1956년에 제창한 학술·예술 언론 자유화운동의 슬로건인 '百花齊放, 百家爭鳴'에서 따온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는 사회주의 개혁이 기본적으로 완성된 것으로 여기고, 학술·예술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서로 다른 다양한 내용의 학설이나 작품을 자유롭게 발표하거나 논의하는 일이 제창되었다. 문학이나 예술에 대해서는 '百花齊放', 학술에 있어서는 '百家爭鳴'이 해당된다. 그러나, 언론자유화 운동 속에서 지식인이나 학자, 예술가들 사이에서 공

산당이나 사회주의 국가에 대해 격한 비판이나 의견들이 잇따르고, '反右派鬪爭'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많은 수의 지식인들은 사상개조를 당했으며, '우파'라는 딱지를 달고 다녀야 했다. '百花齊放'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에게 긴 침묵을 강요한 꼴이 되었다.

1998년 북경에서 국립대극장의 국제현상설계공모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례적인 현상설계공모였다. 1년 4개월이라는 긴 심사기간 동안 재공모가 이루어져, 무려 3번의 수정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는 프랑스의 건축가 폴 앤드류의 안으로 결정되었으나, 이것이 대 사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후 역사와 전통, 문화와 상징에 대하여 중국 국내의 신문과 잡지, 인터넷이나 여러 회의에서 찬반양론의 열띤 논의가 펼쳐졌다. 중국의 전통과 문화의 상징인 자금성이 자리 잡고 있는 북경의 중심지에 전통과는 무관한 이질적인 현대건축을 삽입하는 일이 여러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앤드류의 국립대극장 안은 여러 학자가 중앙정부에 상서를 올려 공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으나, 이후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 안 자체에 대한 찬반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 보수와 진보, 동양과 서양이라는 선택에 있어서 중국이 최종적으로 후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이다. 국립대극장 사건은 중국현대건축사의 분수령이 되었다. 이후 중국건축은 서양의 현대건축을 수용하게 되어, 중국은 건축의 '百花齊放'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건축의 '백화제방'은 중국경제의 글로벌화 및 시장화와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다. 해외자본이 대량으로 중국에 유입되고, 경제의 발전을 이루게 된 것과 함께 도시도 급속도로 확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확장은 순수하게 경제적인 산물이 아니라 사회정치의 진화에 의한 것이다. 사회주의의 정치체제와 자본주의의 자유경제가 융합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이나 건축학은 정치와 경제라는 2중의 카드를 갖고, 지금까지의 서양사회에는 없는 힘을 발휘하여 사회나 도시,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국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적인 건축이 존재하는 한편, 자유경제가 지배하는 건축 또한 존재한다. 세계의 톱 아키텍트들이 참여한 수작이 있는 한편, 시장의 논리에 따르는 건축이 함께 존재한다. 또한 현대를 대표하는 첨단 건축이 존재하는 한편, 시대와는 맞지 않는 고전적인 양식건축도 있다. 20세기에 일어난 건축의 양식이나 이론이 현재의 중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건축의 대약진 시대에 돌입한 중국으로서는 해외의 건축이나 이론을 적극적으로 흡수할 뿐만 아니라 공상적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있는 아이디어도 현실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자유와 상상이 넘쳐나고 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독초도 함께 있는 것이다. '百花齊放', 이것은 현재의 중국건축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주는 문구일 것이다. 꽃이 만발하여도 열매를 맺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할 수는 있는 것이다.

▶ 인터뷰: 피터 로우(Peter G. Rowe)가 보는 중국

하버드GSD의 대학원장으로 있는 피터 로우(Peter G. Rowe)는 도시와 주택에 관한 여러 저서를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도시와 주택에 관한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본 그가 바라보는 중국과 중국건축의 모습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 과거 20년 정도의 기간에서 중국의 도시부 개발에 대하여 그 개요를 말해 달라(특히 해외의 설계사무소의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로우: 1978년 이래, 중국은 세계를 향해 문호를 열기 시작했다. 그 후 건축생산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이루어졌다. 1980년대 후반에 상해와 같은 대도시에서 재개발에 착수하기 위해 재정개혁이 시작된 점은 이러한 노력은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는 해외로부터의 많은 직접투자가 이루어져 그것이 서서히 해외의 건축가를 중국으로 몰려오게 만들었다. 내가 보는 일반적인 패턴은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전반에 걸쳐 도시를 개발하고 보다 근대적인 건축을 만들기 위한 수법을 배우기 위해 중국은 홍콩과 싱가폴을 시작으로 그 외 아시아의 지역을 세밀하게 연구해왔다. 이러한 수법의 이입은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설계사무소로 이동되었다. 예를 들어 많은 수의 미국 대형 사무소들이 상해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고, 또한 최근의 북경 개발에는 국제적으로 활약하는 다양한 유명 건축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들 두 개의 도시는 전혀 다른 곳이다. 상해는 해외로부터의 넓게 문호를 개방하고자 하는 자세를 항상 취하고 있었다. 북경은 진정한 중국으로서 보다 진중하여,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이와 같이 대규모 사업이나 복잡한 프로젝트를 건축가에게 발주하기 위해서 이미 해외로 향하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 중국인의 해외의 사무소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해왔다. 동상적으로는 현지의 파트너와 함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향하여 정력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로서 상당한 양의 기술의 이전과 직접적인 학습의 효과를 가져왔다. 이것은 정말로 감탄할 만한 일로, 국내 전문가의 능력, 그리고 중국의 설계원(設計院)의 질을 높이는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방법이었다. 오늘날 중국 설계원이 행하는 작업은 10년 전의 것과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보다 훨씬 세련되어졌고, 건축적으로 흥미로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질문: 중국의 젊은 세대의 건축가들은 어떠한가? 그들의 교육 수준은 어떠하며, 어떠한 커리어를 쌓아 가는가?

로우: 먼저 대학, 특히 청화대학과 같은 명문대학에의 입학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중국에선 설계, 건설, 부동산개발관련분야에 관한 일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따라서 중국 대학의 건축계 학부에는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다. 이들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는 그들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길이 있다. 설계원은 물론이고, 급속하게 대두하고 있는 일본과 유사한 부동산개발회사의 설계부문이나 설계와 시공을 함께하는 건설회사, 그리고 건설성이나 지방의 정부기관 등이 있다. 물론 젊은 졸업생들에게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민간의 설계사무소나 중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외국의 설계사무소도 선택할수 있는 길의 한 가지가 되어가고 있다. 중국에는 학내에 설계원이라는 것이 있다. 교수에게는 프로페셔널로서 활동을 계속해가는 것을 인정해주고, 또한 학생들에게는 장래의 직업에 실제로 참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전문적으로는 이들의 많은 수가 정부의 설계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문: 중국에서의 건축프로젝트에 있어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협력관계는 더욱 진전될 것으로 보는가?

이제까지 중국이 국제화를 강화해간 궤적을 보아온 바에 의하면, 중국은 앞으로도 한 10년 정도는 지금과 같은 움직임을 계속해갈 것이라 생각한다. 그때까지 중국인들은 선진국들에서는 어떻게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가는지를 습득하고, 외국의 영향은 그 속도를 늦춰 결국에는 약화시키기 시작할 것이다. 근대의 일본

에서 구미의 이념이 침투해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은 자신들의 힘으로 이러한 일을 스스로 해 갈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대로 모방을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반동의 시기가 있었으며, 그 반동은 거의 반(反)구미에 가까울 정도에까지 이르렀었다. 그리고 그 후 독자화의 시기를 걷고 있다. 나는 중국에서도 동일한 프로세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현재의 건설 프로젝트에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의 형식을 집어넣고자 하는 노력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로우: 문화적인 점에 대해서는 지금의 단계에서 주택건축을 예로 들자면, 도시적인 표현과 가로를 만들어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의식적으로 중국적인 것으로 보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현대적이고 모던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무원(國務院)과 같은 기관이 감시의 눈을 번득이며 관심을 보인 주요한 건설 프로젝트들, 예를 들어 폴 앤드류에 의한 북경의 국립대극장, 렘 콜하스에 의한 CCTV, 헤르조그 드 뫼롱에 의한 올림픽 스테디움, 쟝 마리 샤르판티에에 의한 상해의 상해대극장과 같은 주요한 건물과 상해에 거점을 두고 있는 상해 현대건축설계집단에 의한 상해도시계획전시홀 등은 모두 현대적이고 모던한 디자인이다. 더욱이 이들은 중국 당국에 있어서 현대적인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로서는 의식적으로 중국적이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커다란 지붕을 얹고, 덧지덧지 중국풍 혹은 동양풍의 장식적인 모티프를 건물에 부착시키는 것이 잘 어울리던 시기는 이미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다.

▶ 작품 소개

소개된 작품들로는 우선 외국의 건축가에 의한 것으로, AS&P의 「북경중심축 도시계획」, 사사키 어소시에이츠의 「2008년 북경 올림픽공원계획」, PTW아키텍츠+중국건축건축총공사+애럽(Arup)그룹의 「국립수영경기장」, 헤르조그 앤 드뫼롱의 「국립경기장」, 브루크하르트(Bruckhardt)와 파트너 AG의 「五棵松문화체육센터」, 렘콜하스 및 OMA의 「CCTV 본사사옥」, 폴 앤드류의 「국립대극장」, RTKL과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의 「중국영화박물관」 등을 들 수 있다. 중국 건축가에 의한 것으로는 마킹윤의 「제이드마운틴의 아버지의 집」, 리우 자쿤의 「류웨이완 석조각 미술관」, 아이웨이웨이의 「예술문건창고」 등이 소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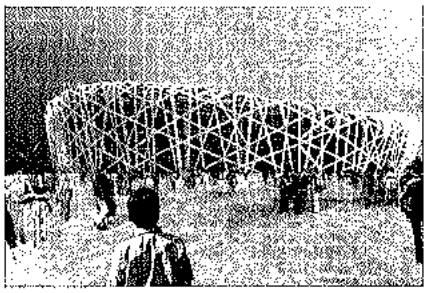
국립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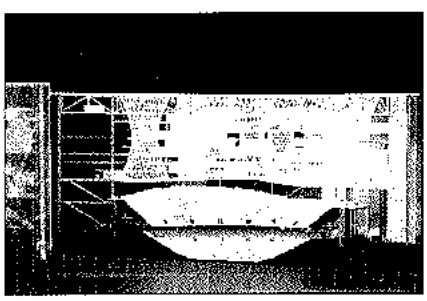
五棵松문화체육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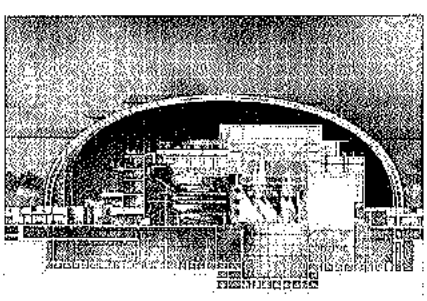
국립대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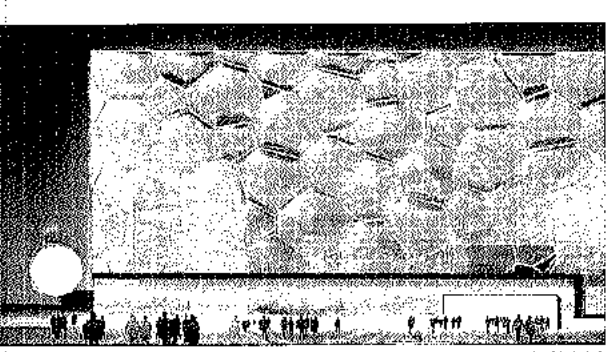
국립수영경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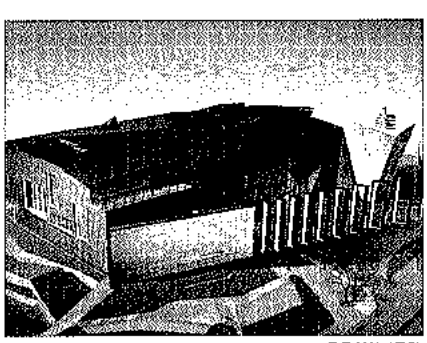
중국영화박물관

신건축

12월호

이번 호에서는 인터뷰로서 건축가 쟝 누벨과 렘 콜하스와의 인터뷰가 기획되었다. 쟝누벨과의 인터뷰는 「비물질적 이미지의 표출」이라는 테마로 진행되었으며, 렘 콜하스와의 인터뷰는 최근 당선된 북경 CCTV본사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자본주의 사회와 건축」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최근 작의 소개로는 이시모토(石本)건축사무소의 「애히메현 무도장」 및 타케나카(竹中)공무점의 「카나가와 치과대학 실습·교실동」 등이 소개되었으며, 특집으로 「집합주택은 변하는가 – 나가야(長屋)再考」가 꾸며져 일본의 근대기 도시주거였던 나가야의 현대적 해석에 대한 글과 현재의 도시형 저층 집합주택들을 소개하였다.

■인터뷰: 렘 콜하스(Rem Koolhaas)와의 인터뷰 – 자본주의 사회와 건축

a+u지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높은 관심이 렘 콜하스와의 인터뷰에도 나타난다. 「자본주의사회와 건축」이라는 제목이 붙은 이 인터뷰는 렘콜하스의 최근 중국에서의 활동, 즉 CCTV콤페에서의 당선을 중심으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와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사회에서의 건축활동에 대한 경험의 비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확실히 중국에서의 프로젝트는 세계 건축계의 관심거리이며, 또한 자본주의사회와는 다른 그들의 프로젝트 진행 방식은 세계의 기성 건축가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것임에 틀림없다. 다음은 인터뷰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질문: 중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에 크나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버드 GSD에서 연구된 테마는 중국이나 아시아의 도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러한 경험이 최근의 프로젝트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콜하스: 하버드 대학에서 이루어진 중국에 관한 리서치는 CCTV의 콤페인을 계획할 때 매우 중요한 기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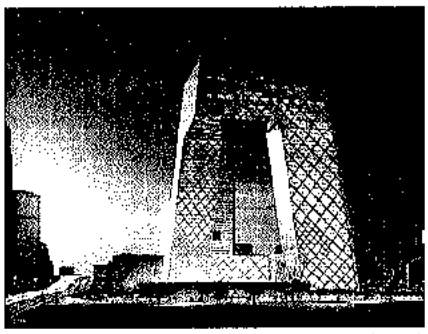

CCTV의 콤페안

되었다. 우리들은 어떠한 계획안을 수립해갈 때에도 먼저 리서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그 프로젝트의 성과를 건축에 반영하면서 디자인을 진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질문: 북경의 CCTV콤페에 참여하기 위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뉴욕의 WTC(세계무역센터) 콤페에는 참가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안다. 중국의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콜하스: 우리들이 행한 리서치의 성과를 통하여 중국이라는 공산주의사회에서 설계활동을 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문제 몇 가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아시아는 혼돈된 상태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북경이라는 도시는 고도로 조직화되어 정연한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흥미를 느꼈다. 공공의 공간을 공적인 입장에서 성립시킨다는 것이, 건축이라는 것이 취해야할 자세로 여겨지던 시대가 지나고, 시장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사적공간의 달성을 사적인 조직을 위해 추구한다는 것에 건축의 의미가 이동해가는 역사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었다. CCTV의 콤페에 참가한 것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추세와는 다른 요건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공산주의국가에 있어서 공공의 건축을 성립시키기 위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도 흥미를 끈 점이기도 하다.

질문: 미국 등 시장경제가 발전한 국가에서도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것으로 안다. 중국에서의 프로젝트와는 꽤 다른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콜하스: 콤페에 참가한 후 안 사실이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재량권을 가진 사람들은 꽤 젊은 사람들로서, 그들은 매우 에너지가 넘치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의에 차 있다는 점에 놀랐다. 동시에 CCTV의 콤페에서는 새로운 미디어의 근거지로서 건축적으로 엮어야 할 여러 테마에 참신함을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것과는 반대로, WTC의 콤페에서는 기념비적인 건축으로서의 숙명을 처음부터 지게 되어있었으며, 동시에 그것은 시장경제의 룰 속에서 실현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프로젝트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었다. WTC 콤페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만, 그러한 배경이 명확히 표현된 안이 선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논의가 되풀이되고 있다. 중국에서 재량권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특히 미국에서는 최후에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실력자이거나 식자로 불리는 고령의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판단을 내리는 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이것만 보더라도 CCTV의 콤페가 지니는 잠재력은 WTC와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당신에게 있어서 실현하지 못한 건축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이며, 반대로 건축이 완성(실현)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콜하스: 이미 완성된 일리노이 공과대학의 「매코믹 트리뷴 캠퍼스센터」나 현재 공사중인 「재베를린 네덜란드 대사관」, 「시애틀 공립도서관」, 포르토의 「까사 다 무지카」등의 경우, 건축의 복잡함이 심했던 것과 맞물려 실현의 기쁨도 한 층 큰 것처럼 느껴진다. 나 스스로 자기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왔다. 그것은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섞인 것과 같은 것이었다. 뉴욕의 「휘트니 미술관」이나 「LACMA(로스엔젤리스 카운티 미술관)」등, 실현되지 못한 건축들도 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들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낸 건축이 완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까지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의 원리 속에서는 단순히 사회적인 주목을 받기 위해 콤페를 개최하거나, 조직이나 개인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가에 설계를 의뢰하거나 하는 일도 있다. 그러한 프로젝트에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지혜를 내 놓아 보다 좋은 것을 생각해내려고 노력하지만 실현시키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일정 수준까지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걸린다. 앞으로 새로운 건축에 도전하려고 할 때, 설계나 콤페에의 참가 의뢰를 받은 때에는 그 프로젝트가 우리들의 창조적 행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CCTV의 콤페는 주최하는 측의 사람들의 열의와 의욕이 우리들의 동기부여를 높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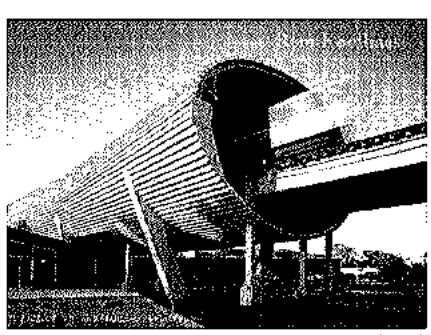

매코믹 트리뷴 캠퍼스센터

■작품

▶ 애히메(愛媛)縣 무도관

애히메현 무도관은 얼핏 보기에는 최근 일본에서 늘어나고 있는 목구조를 사용하여 거대공간구조물을 구축한 건물의 하나처럼 보인다. 그러나 여기에 사용된 목재는 건물이 세워지는 지역에서 산출되는 삼나무를 사용한 것이며, 그 기공 또한 그 지역에서 행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건물이 세워지는 지역의 목재를 이용하여 목조건축을 실현하는 일은 목재의 지역특성을 숙지하고, 그것들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설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마감재로서 주로 사용되고, 구조재로서는 낮은 강도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삼나무를 구조재로서 이용하는 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사용한 「伊予杉」은 다른 산지의 것보다 강도와 강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을 보이기는 했으나, 강성이 철의 1/30정도, 강도가 1/10정도로서 무서지기 쉬운 재료였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최대의 테마가 되었다. 이를 위해 통나무, 집성재의 재료 강도 및 강성, 그리고 부재의 촌법은 애히메현의 삼림관계자로부터 널리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을 참고로 최적해를 결정하였다. 집성재의 부재형상은 「伊予杉」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中木材(직경 16~22cm)을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부재폭을 110mm로 결정하여 그 지역의 집성재공정의 주택용 간주(間柱)생산라인에서 만들도록 하였다.(번역 / 강상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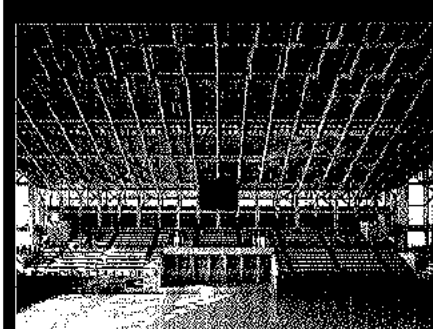

애히메(愛媛)縣 무도관